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65호
2022. 3. 3.(목)



목 차

자치법규

[조 례]

제83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4
제833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7
제83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10
제83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13
제83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83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8
제83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833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833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8339호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제834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고 시

제2022-88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1
제2022-89호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DMC홍보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
제2022-90호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36
제2022-9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한국외국어대학교)	50
제2022-9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59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⑥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개봉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62
제2022-94호	서울시립청소년센터 2022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91
제2022-96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32
제2022-97호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5
제2022-98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83

제2022-99호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94
제2022-100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05
제2022-101호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 등 변경고시	329
제2022-104호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전역 집회제한 변경고시	332

공 고

제2022-51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333
제2022-51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 공고	335
제2022-53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336
제2022-542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337
제2022-567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346
제2022-568호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347
제2022-585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48
제2022-589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50
제2022-590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공고	351
제2022-595호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안)	364
제2022-59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발 공고	367
제2022-601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369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2-67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373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2-2호	2022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374

구 고 시

제2022-33호	제2차 광진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완료 고시(광진구)	398
제2022-41호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동대문구)	400
제2022-2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402
제2022-33호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금천구)	404
제2022-41호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 (동작구)	406
제2022-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동작구)	413
제2022-3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416

제2022-4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418
제2022-4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420
제2022-39호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422

구 공 고

제2022-25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425
제2022-389호	도시계획시설(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은평구)	442
제2022-401호	진관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475
제2022-390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열람공고(구로구)	479
제2022-430호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481
제2022-328호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486
제2022-360호	사당동 1008-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을 위한 재열람 공고(동작구)	487
제2022-455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서초구)	488
제2022-4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연구시설,하천)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서초구)	492

사업소고시

제2022-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3
제2022-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4
제2022-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494

사업소공고

제2022-19호	소장작품구입공고(서울시립미술관)	495

기 타

제2022-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500

자치법규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833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로 인한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주차장”이란 이름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한정한다)의 교지나 실습지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주차장이 교내 보행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자동차의 출입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장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정지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이 안전하게 설치·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이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주차장 설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는 200㎡당 1대로 한다.

제6조(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학교 주차장의 면적, 면수 등 현황

2. 학교 주차장의 안전설비 현황
3. 학교 주차장의 개방 여부 및 시간 또는 기간

제7조(학교 주차장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2. 학교 주차장의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설치 한도 준수여부
3. 학교별 학교 주차장 이용자 현황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 및 안전 관리 계획
5. 그 밖에 학교 주차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운동장이나 통학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를 말한다)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 여부, 학교 주차장의 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설치한도,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내용, 제9조에 따른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주차장의 안전 확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비고 중 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본다.

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별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학교 부설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운동장 일부 및 공터를 활용하거나 사립학교는 부지를 공유하는 같은 재단의 학교와 주차장을 공동사용하고 있음.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한다고 하나, 학교 자체 여건에 따라 임의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따라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교 내 교육 공간 확보,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학교 주차장”, “안전설비” 등 조례에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다.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라.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마.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를 규정함(안 제5조)
- 바.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사. 학교 주차장 설치 또는 확장·이전 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 학교 주차장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개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안 제1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3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학습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학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습지원금의 지원액, 지원시기, 지급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학습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

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학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서울특별시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주소지 전출,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학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시기, 지원 방법
3. 학습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4. 학습지원금 지원 관련 교육, 홍보
5.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精算),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還收) 방안
7. 그 밖에 학습지원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산업체, 직업·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교육감은 학습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직업계고 취업률 및 진학률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저출생·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률 저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특성화고 취업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나. 이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전개함으로써 직업교육 강화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진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다. 학습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라. 학습지원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마.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바.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성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 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인성교육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1조).
- 마. 교원연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3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1.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2. 의자, 쉼터, 숲 해설판
3.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학교숲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숲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
6. 신설학교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학교숲 조성
7. 학교숲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8.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조성 목적, 학교 환경,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조성
4. 교육적 활용: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벽면 녹화, 옥상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
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학교의 장은 조성된 학교숲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보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학교숲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
3.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
4.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업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관리 및 활성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학교숲”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다.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자연성 확보, 접근성 확대 등의 학교숲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학교숲 활성화를 위해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아. 학교숲의 조성, 관리 및 활성화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자.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3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서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됨.
- 나.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의규정을 둠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5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833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텃밭을 활용한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농업 및 자연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유도하고, 학생의 정서 및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학교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와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텃밭이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생태전환교육 수행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매년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과 조성 기준

2.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3. 학교텃밭 조성·운영,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의 교육활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텃밭 조성·운영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학교텃밭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텃밭의 조성, 유지 및 관리

2. 학교텃밭을 활용해 진행되는 교육활동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학교텃밭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진행되는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활동
 4. 학교텃밭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지원
 5.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학교텃밭의 조성 기준)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을 확보하되 학교 환경과 교육 활동 여건에 적합할 것
 2. 교육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 구성할 것
 3. 실내와 옥상, 자투리 공간 등을 충분히 활용하되 학교텃밭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과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텃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텃밭 또는 도시농업 관련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2022년부터 서울시 내 모든 유치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책무가 커지고,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화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내 학교에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식생활 및 자연, 농업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학교텃밭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텃밭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라.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 학교텃밭 조성 기준과 학교텃밭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 사.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교와 교사, 단체 등의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3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조리장의 공기 질 개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에 적절한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학교급식시설의 정비 및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나. 이에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등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환기시설 등 설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5항)
- 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1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3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문화교육”이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5조제1항 중 “자문을”을 “자문에 응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문화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례상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조례의 명확성 및 신뢰 확보가 떨어짐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자 하며,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및 유능한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신설함(제5조제2항~제4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33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제외되어 있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복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주민 포함)의 자녀 등을 사업대상학생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339호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의 학교 교원과 학생에게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과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미래기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부설한다.

1.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4 (하계동)]
2. 서울공업고등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대방동)]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산업 분야 및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산학협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진로 및 직업능력 함양,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장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으로, 부센터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센터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 교사를 배치한다.
- 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학년말에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센터의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교육 계획
3. 교원 연수 계획

4. 센터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성과를 교육감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확충비

3. 신산업 분야 및 미래 직업세계 적응 능력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비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미래 산업사회에 대비하여 신산업분야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교 간 교육, 일반고 학생 전공 탐색 과정 등 기계공동실습소를 활용한 공동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미래기술교육센터 부설 학교(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미래기술교육센터의 프로그램 편성·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라. 미래기술교육센터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마. 미래기술교육센터 운영계획을 수립과 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바. 미래기술교육센터 예산·경비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834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단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총무부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조항 개정(안 제4조)

-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조문 삭제하고 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
- 2) 기금의 용도 각 호 삭제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항 개정(안 제5조제2항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다.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기금 집행 및 지출이 가능하도록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8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8호(2010.5.6.)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46호(2010. 7.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2-2단계, 2-4단계)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2-2단계, 2-4단계)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2133-5382) 및 농수산물식품공사 설계관리팀(☎3435-0363)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2-2단계, 2-4단계)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부지 면적 : 531,830㎡
- <금회시설>
- 2-2단계 채소2동 : 기정 60,615㎡ ⇨ 변경 59,476.74㎡, (감) 1,138.26㎡
 - 2-4단계 합동청사 : 1,138.26㎡

○ 건축물의 규모

사업단계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3-1단계 (완료)	2-2단계 (금회)	2-4단계 (금회)	2-3단계 (예정)	3-2단계 (예정)	비고
대지면적		531,830.00 ㎡							
건축 면적	기정	29,204.60㎡	33,623.23㎡ (4,418.63㎡)	35,464.23㎡ (1,841㎡)	78,277.55㎡ (42,813.32㎡)	-	112,291.19㎡ (34,013.64㎡)	265,760.73㎡ (153,469.54㎡)	

사업단계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3-1단계 (완료)	2-2단계 (금회)	2-4단계 (금회)	2-3단계 (예정)	3-2단계 (예정)	비고
	변경	29,204.60㎡	33,623.23㎡ (4,418.63㎡)	35,464.23㎡ (1,841㎡)	78,277.55㎡ (42,813.32㎡)	78,997.49㎡ (719.94㎡)	113,011.13㎡ (34,013.64㎡)	266,480.67㎡ (153,469.54㎡)	
	증감	-	-	-	-	719.94㎡(증)	-	-	
연면적	기정	211,576.05㎡	217,242.18㎡ (5,666.13㎡)	226,449.18㎡ (9,207㎡)	283,516.18㎡ (57,067.00㎡)	-	335,420.45㎡ (51,904.24㎡)	544,284.98㎡ (208,864.56㎡)	
	변경	211,576.05㎡	217,242.18㎡ (5,666.13㎡)	226,449.18㎡ (9,207㎡)	283,516.18㎡ (57,067.00㎡)	286,465.74㎡ (2,949.56㎡)	338,369.98㎡ (51,904.24㎡)	547,234.54㎡ (208,864.56㎡)	
	증감	-	-	-	-	2,949.56㎡(증)	-	-	
총 수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공사 기간	기정	2011년~ 2016년 완료	2013년~ 2014년 완료	2016년~ 2016년 완료	2020년~ 2023년	-	2023년~ 2029년	2026년~ 2031년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021년~ 2024년	변경없음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당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대표 김경호
 변경)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대표 문영표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31. 12. 31
- 1단계(업무동,판매동) : 2011년 ~ 2016년(완료)
 - 2-1단계(친환경센터) : 2013년 ~ 2014년(완료)
 - 2-2단계(채소2동) : 2020년 ~ 2023년(금회)
 - 2-3단계(수산물) : 2023년 ~ 2029년(예정)
 - 2-4단계(합동청사) : 2021년~2024년(금회)
 - 3-1단계 : 2016년 ~ 2016년(완료)
 - 3-2단계 : 2026년 ~ 2031년(예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관계인	
									주소	성명
1 2-2단계 2-4단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대	542,860	530,621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2	대	60	6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	관계인	
									주소	성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0	전	20	2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1	전	136	136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562	전	73	73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8	도	40	40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39	도	248	248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341-35	구	14	14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814-1	도	618	618	-	서울특별시			
합 계				544,069	531,830					

사. 인가에 따른 조건이행 사항

-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을 위한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인허가 관련 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이행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2133-5382) 및 서울시농수산물품공사 설계관리팀(☎3435-0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89호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DMC홍보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05호('21.4.22.)호로 결정(변경)된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22.) 심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50조의2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DMC홍보관) 지구단위계획 운용 신설

II.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입체연결통로 등 설치 및 운영계획 : : 변경없음
다. DMC 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 변경

1)~3) 생략

4) 가설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 운용(신설)

-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DMC홍보관)은 5년 이내(매각이나 중장기 활용계획에 따른 개발 전까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함.

III.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콘텐츠산업과(☎02-2133 -9212)와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0호

노원구 공릉동 684 - 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 면 적 : 1,032.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2년 3월 3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유한책임회사 문하
- 대표자 성명 : 김원경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341번길 118, 2층
- 법인등록번호 : 134515-0000933
- ※ 담보신탁 : 위탁자(유한책임회사 문하), 수탁자(수협은행)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관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지 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노원구 공릉동	684-41	대	161.6	161.6	유한 책임회사 문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341번길 118, 2층	1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탁자
2		684-43	대	509.6	509.6			1			
3		684-58	대	180.3	180.3			1			
4		684-59	대	180.5	180.5			1			
합계				1,032.0	1,032.0						

2)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노원구 공릉동	684-43	대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1981.2.20	907	1	4	유한책임회사 문하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탁자
2		684-58	대	건축물		1988.8.10	724.91	1	3				
3		684-59	대	건축물	연와조	1986.6.30	248.5	1	2				

※ 건축물 현황 및 노후도 : 20년이상 100%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032.0	-	1,032.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2.0	감)1,032.0	-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1,032.0	1,032.0	1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사유
		기정	변경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1,032.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 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	1,032.0	1,032.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	결정사유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032.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 면 적 : 1,032.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태릉입구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유한책임회사 문하
- 대표자 성명 : 김원경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341번길 118, 2층

○ 법인등록번호 : 134515-0000933

※ 담보신탁 : 위탁자(유한책임회사 문하), 수탁자(수협은행)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5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금융기관 조달 등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1,032.0	100.0	
합계	1,032.0	100.0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164인

2) 주택건설계획 : 100세대

구분			세대수		수용인구		비 고
			세대	비율(%)	인	비율(%)	
공공 임대주택	공공 기여	27TYPE	6	6.0	6	3.7	
		29TYPE	9	9.0	9	5.5	
		55TYPE	1	1.0	3	1.8	
		60TYPE	1	1.0	3	1.8	
		67TYPE	2	2.0	6	3.7	
		소계	19	19.0	27	16.5	
	SH 선매입	27TYPE	12	12.0	12	7.3	
		29TYPE	18	18.0	18	11.0	
		소계	30	30.0	30	18.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7TYPE	6	6.0	6	3.7	
		29TYPE	12	12.0	12	7.3	
		55TYPE	11	11.0	30	18.3	
		60TYPE	12	12.0	32	19.4	
		67TYPE	10	10.0	27	16.5	
		소계	51	51.0	107	65.2	
합계			100	100.0	164	100.0	

※ 공공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 포함), 사회초년생 등으로 하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서울특별시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의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함. 입주대상자 및 선정방법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공공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면적	비고
공공시설	노원청년창업센터	공공청사	지상2층	146.86㎡	감정평가 후 면적확정

※ 공공시설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자치구에 기부채납

- 공공시설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착공전 지구내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 옥상녹화, 우수 투수 및 저장을 위한 투수포장 등을 실시하여 생태환경 향상 도모
- 대상지는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상업 및 주거공간으로서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로, 조경녹지 등의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녹지체계 구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

나) 저탄소 친환경단지조성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고,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충분한 녹지 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및 자연지반의 확대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실시설계 시 에너지 효율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제재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	1,032.0	1,032.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	결정사유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032.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032.0	-	1,032.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2.0	감)1,032.0	-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1,032.0	1,032.0	1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사유
		기정	변경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1,032.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 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 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신설)

1) 획지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신설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1,032.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획지신설 - 면적 : 1,032.0㎡	·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신설)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지정용도 (A)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불허용도 (I)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폐율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 54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높이	· 60m 이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준용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건축물의 밀도 결정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물의 밀도 결정

■ 용적률 적용기준 (의무사항)

구분		기준	계획		완화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등 설치제공비율	· 부지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1032.0㎡×20%=206.4㎡이상)	· 임대주택부속토지면적		144.76㎡ (14.03%)	(비율)은 구역면적대 비
			· 공공시설	공사비환산면적	39.05㎡ (3.78%)	
				부속토지면적	22.92㎡ (2.22%)	
			· 소계		206.73㎡ (20.03%)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비주거 = 86.1%:13.9%(용적률기준)		기본용적률 540% 부여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20㎡ ~ 60㎡ 내외 - 1인(공유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 1인세대: 전용 20.01㎡ 23.98㎡ (63세대) · 2인세대: 전용 41.68㎡ 44.94㎡ 47.02㎡ (37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설치,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호 미만 : 100㎡ 이상 ·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 150㎡ 이상 · 300호 이상 ~ 364호 미만 : 200㎡ 이상 · 364호 이상 : (전체건립호-299호) × 2.5 × 1.25	· 182.95㎡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남측)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이면도로(서측)변	· 대지경계로부터 2m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건축한계선 지정 - 간선도로(남측)변 : 3m - 이면도로(서측)변 : 2m	•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차량 진출입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전면공지	• 간선도로(남측)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이면도로(서측)변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전면공지 신설 - 간선도로(남측)변 : 보도부속형 - 이면도로(서측)변 : 차도부속형	•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차량 진출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2)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신설)

구분	공공기여		계획내용	비고
	방식	기준		
신설	공공임대주택	부지면적의 20%이상	부속토지면적 : 144.76㎡	• 기본용적률
	공공시설		공사비환산면적 : 39.05㎡	
			부속토지면적 : 22.92㎡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공공기여량 - 부지면적의 20%이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방재계획 : 해당 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지 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노원구 공릉동	684-41	대	161.6	161.6	유한 책임회사 문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341번길 118, 2층	1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탁자
2		684-43	대	509.6	509.6			1			
3		684-58	대	180.3	180.3			1			
4		684-59	대	180.5	180.5			1			
합계				1,032.0	1,032.0						

나.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노원구 공릉동	684-43	대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1981.2.20	907	1	4	유한책임회사 문하	수협은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수탁자
2		684-58	대	건축물		1988.8.10	724.91	1	3				
3		684-59	대	건축물	연외조	1986.6.30	248.5	1	2				

※ 건축물 현황 및 노후도 : 20년이상 100%

다. 토지취득방법 : 협의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

라.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 내 건축물은 전면 철거예정으로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면적	비고
공공시설	노원청년창업센터	공공청사	지상2층	146.86㎡	감정평가 후 면적확정

- 공공시설은 노원구로 귀속되며, 노원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노원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공급토지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주택건설용지	1,032.0	100.0	자체사용	승인 후	
합계	1,032.0	100.0			

III. 관계도면 : [붙임]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고

V.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02-2133-6293) 및 노원구청 본관 3층 도시관리과(☎02-2116-38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붙임]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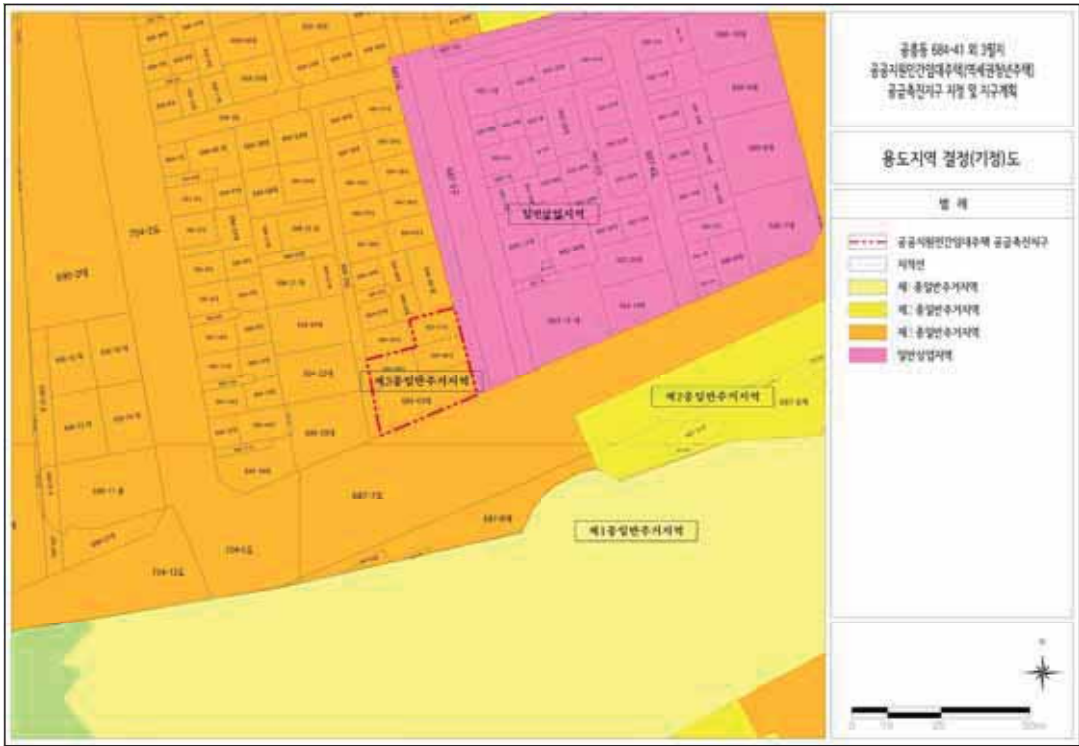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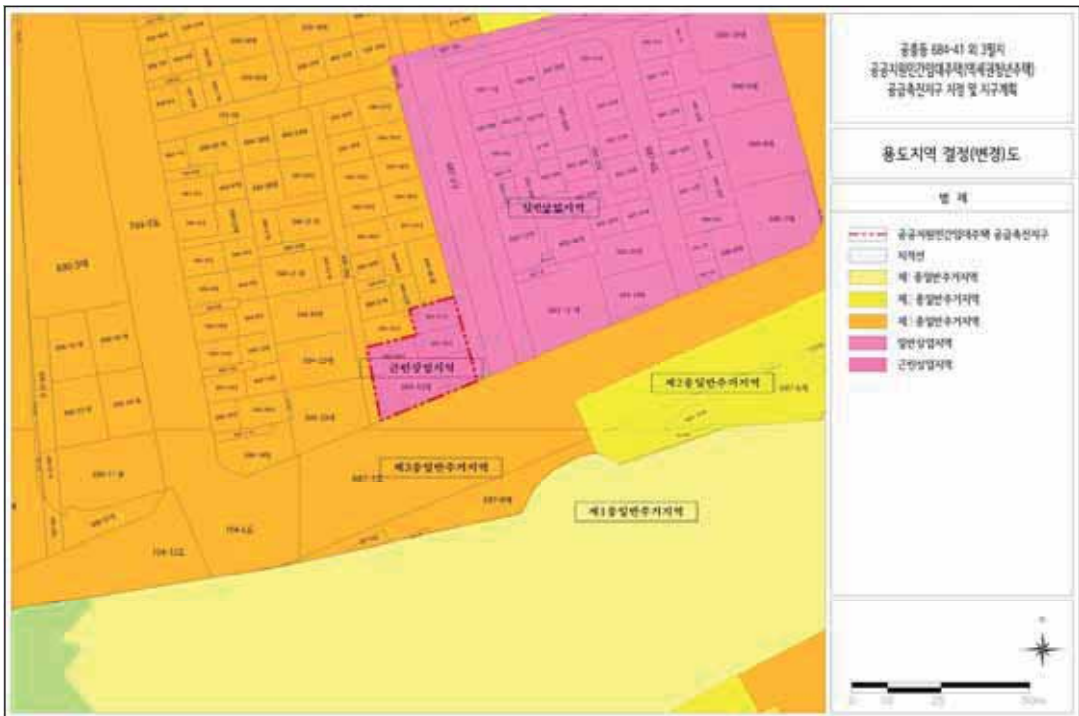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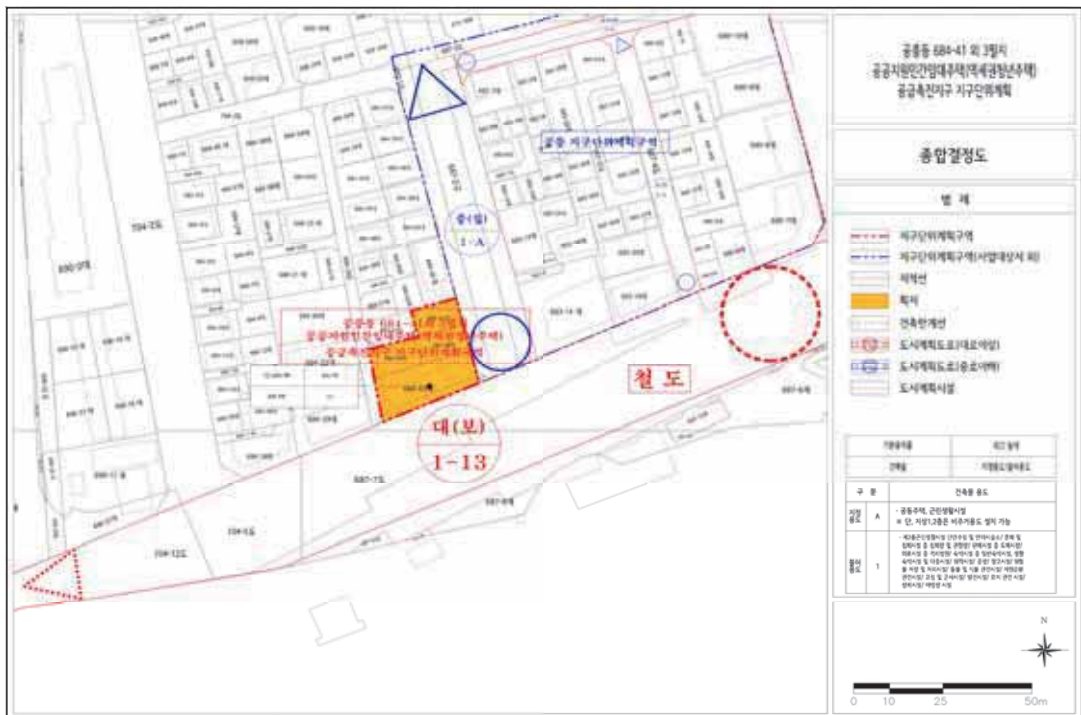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25호(1993.12.29.)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7호(2017.5.4.)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번지 일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내 학교 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계부 부지 일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 학교시설을 정형화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시설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합 계		81,127	감) 46	81,081	서울시고시 제1993-425호 (1993.12.29)	
			1캠퍼스	동대문구 이문동 270-1 일대	80,508	감) 46	80,462		
			2캠퍼스	동대문구 이문동 329-20 일대	619	-	619		

2)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하수도	동대문구 이문동350-15	동대문구 이문동288-3	한국외국어 대학교	342.5	2.0	서울시고시 제100호 (1977.4.9)	학교 중복결정 (685㎡)

3)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 분	명 칭	연 번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30,073	30,027	강의 및 연구동	1캠퍼스
		②	20,218	20,218	대학 본부	
		③	16,281	16,281	부속 시설	
		④	619	619	교수연구동	2캠퍼스
	계		67,191	67,145	감) 46㎡	
유 지	상징경관구역	⑤	9,150	9,150	역사관 및 미네르바 스퀘어	1캠퍼스
	외부활동구역	⑥	4,786	4,786	운동장	
	계		13,936	13,936		
합 계			81,127	81,081	감) 46㎡	

(2) 밀도계획

① 건폐율(캠퍼스별)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 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 건폐율 (%)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캠퍼스	제2종일반 주거지역	77,899	77,899	60.0	28.20	28.21	38.0	
	일반 상업지역	2,609	2,563	60.0				
2캠퍼스	제2종일반 (7층이하)	619	619	60.0	51.44	51.44	55.0	
합계		81,127	81,081 (감 46)	60.0	28.38	28.39 (증0.01)	38.0	

② 용적률 및 높이계획(구역별)

구역 구분	구역 면적(㎡)		법정 용적률 (%)	사용 용적률(%)		이전 용적률 (%)	관리 용적률 (%)	관리높이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①	30,073	30,027	220.0	102.68	102.84	0.0	220.0	· 지표면+36m~52m이하	일반관리구역
②	20,218	20,218	200.0	258.93	258.93	60.0	260.0	· 지표면+40m이하 (단,대학본부+65m이하, 학생회관 및 국제 학사 +50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⑤⑥구역에서이 전
③	16,281	16,281	253.0	199.20	199.20	0.0	240.0	· 지표면+40m이하	일반관리구역
④	619	619	200.0	268.26	268.26	0.0	200.0	· 지표면+36m이하	일반관리구역
⑤	9,150	9,150	211.0	18.42	18.42	-181.4	30.0	· 지표면+16m이하 (기존 건물의증·개축 및 부속 시설에 한하여 허용)	상정경관구역 ②구역으로 이전
⑥	4,786	4,786	200.0	0.00	0.00	-195.0	5.0	· 지표면+6m이하 (지하건축물 및 그에따른 출입 시설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②구역으로 이전
합계	81,127	81,081 (감 46)	219.0	146.69	146.78 (증0.09)		200.0		

※ 구역별 높이계획 : 고시도면 참조.

(3) 전체 건축물 조서 (변경없음)

구분	순번	건물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 고
1캠퍼스	1	1	역사관	628.45	12,439.89	1,685.59	3/3	
	2	1-1	대학본부	3,552.80	33,378.54	17,937.71	3/13	
	3	3	인문과학관	1,364.01	6,916.55	6,885.71	1/6	
	4	3-1	학교식당,강당	239.37	723.74	723.74	0/2	
	5	4	교수학습개발원	1,074.39	7,564.68	6,490.29	1/6	
	6	5	사회과학관	1,069.19	6,167.49	5,513.32	1/5	
	7	7	도서관	2,812.49	13,759.97	12,028.45	1/6	
	8	8	대학원	1,787.01	8,733.23	7,761.91	1/6	
	9	9	기숙사	57.55	57.55	57.55	0/1	
	10	10	창고	220.36	220.36	220.36	0/1	
	11	11	창고	88.13	88.13	88.13	0/1	
	12	15	외국어연수평가원	731.04	3,964.94	3,488.90	1/5	
	13	16	휴게소아피	129.60	129.60	129.60	0/1	
	14	20	정문안내실	81.51	81.51	81.51	0/1	
	15	21	교수회관	1,664.64	12,665.97	9,234.29	2/8	
	16	22	국제관	1,167.45	5,669.32	5,005.03	1/6	
	17	26	학생회관 및 기숙사	3,002.08	29,956.13	24,124.31	2/12	
	18	28	인문과학관 및 교수학습개발원연결통로	77.24	77.24	77.24	0/2	
	19	29	법학관	604.95	6,327.59	4,774.12	2/8	
	20	30	사이버관	2,349.58	16,501.17	11,039.80	2/8층	
소 계				22,701.84	165,423.6	117,347.56		
2캠퍼스	21	17	교수연구동	318.39	1,990.95	1,660.50	1/6	
	소 계			318.39	1,990.95	1,660.5		
합 계				23,020.23	167,414.55	119,0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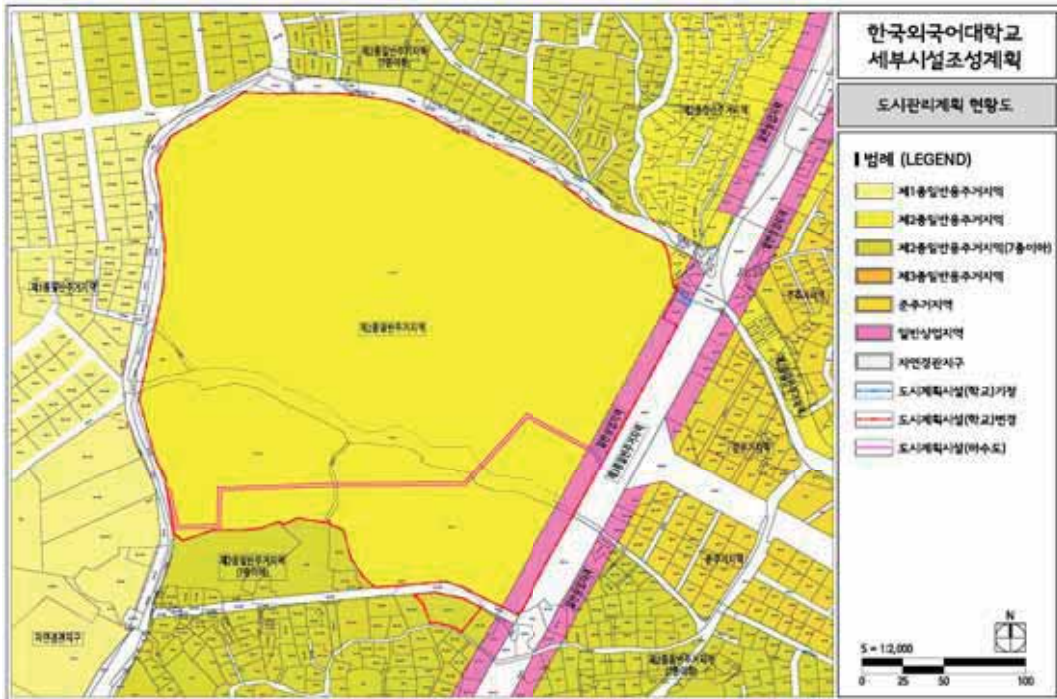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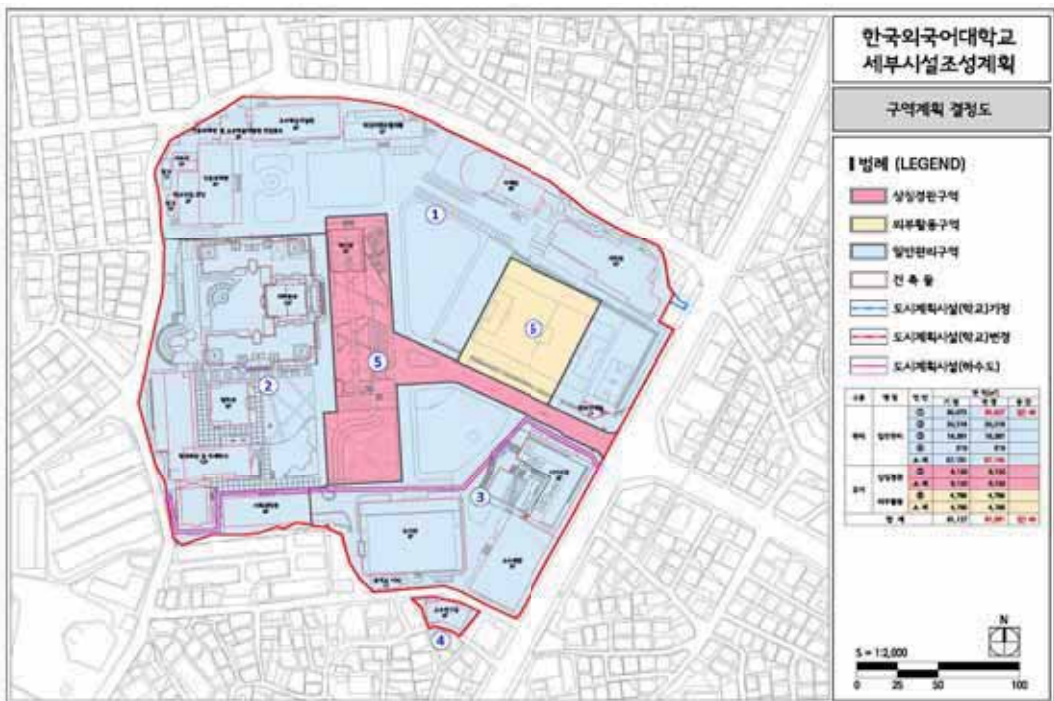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1)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58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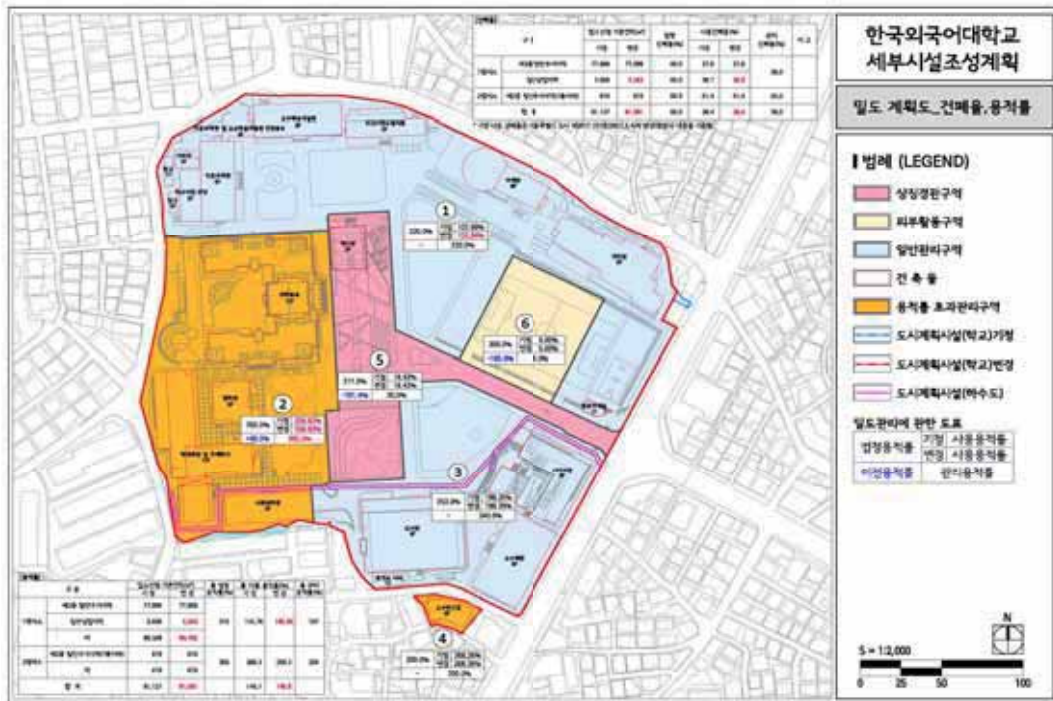
도 시 관 리 계 획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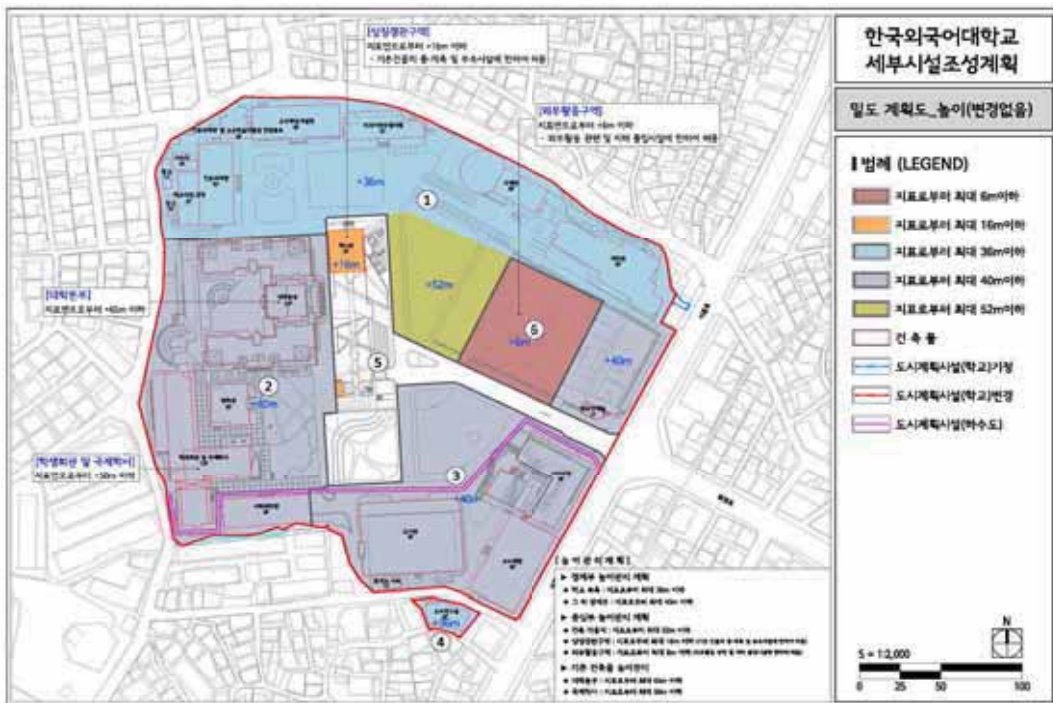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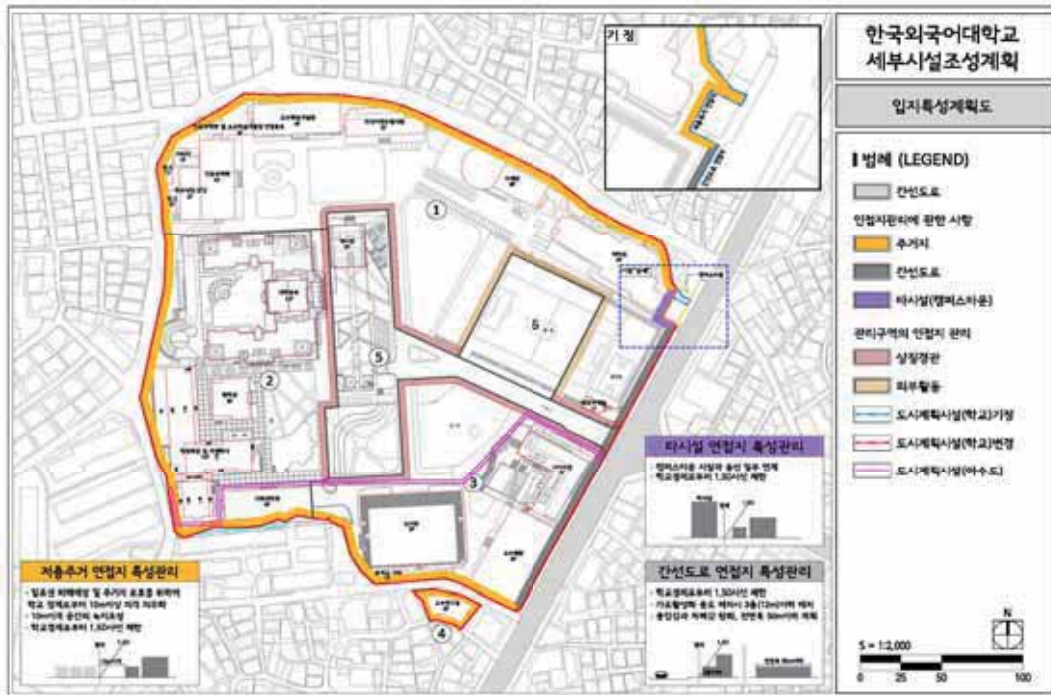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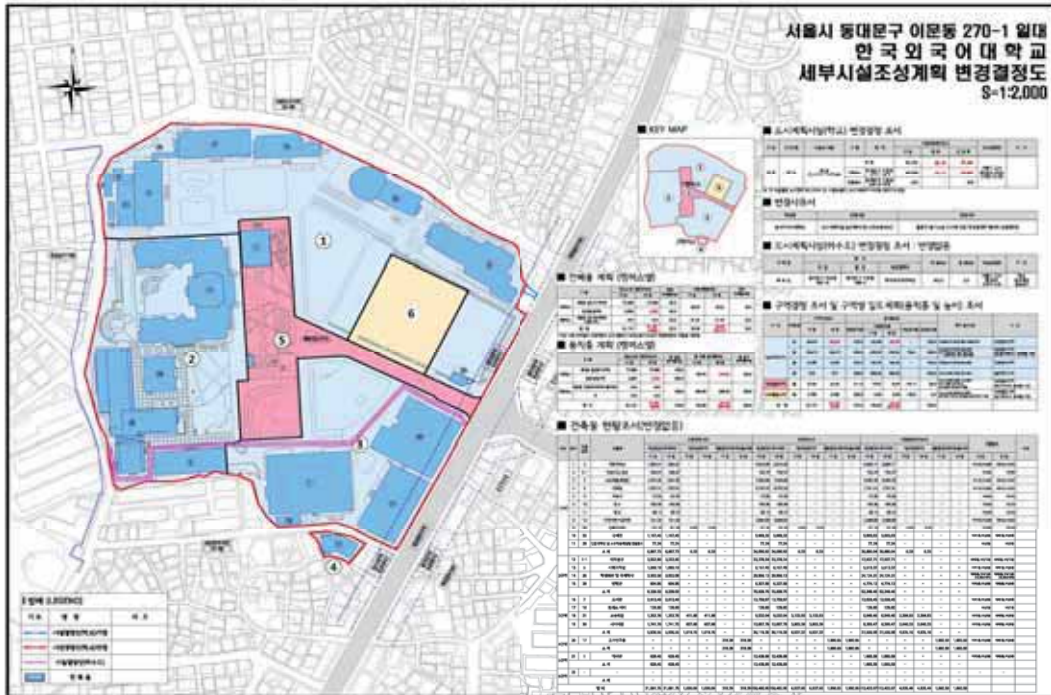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입지특성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77호(2009.3.5.)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개운산근린공원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공원형태로 이용중인 인접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개운산근린공원으로 편입하여 중복결정(공원,수도공급설비)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개운산 근린공원	근린 공원	성북구 돈암동 산 3-15 일대	208,618	증)1,884	210,502	총고 208 (1940.3.12.)	면적증가 및 중복결정 - 상부 : 공원 - 하부 : 배수지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개운산 근린공원	· 공원 면적 변경(증가) - 면적 : 208,618㎡ → 210,502㎡ (증 1,884㎡)	- 기존 공원시설로 이용중인 공원 인접토지 편입 (돈암동 산6-8 등 3필지)

※ 공원 편입면적 1,884㎡ 중 수도공급설비(1,377㎡)포함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도공급설 비	성북구 돈암동 산6-23 일대	4,500	-	4,500	서고 제2009-77호 (2009.3.5.)	개운산 배수지 (4,500㎡)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결정(1,377㎡) - 상부 : 공원 - 하부 : 배수지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수도공급 설 비	성북구 돈암동 산 6-18 등 2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	- 기존 중복결정(공원, 수도공급설비)된 인근 필지 연계, 수도공급설비(1,377㎡)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편입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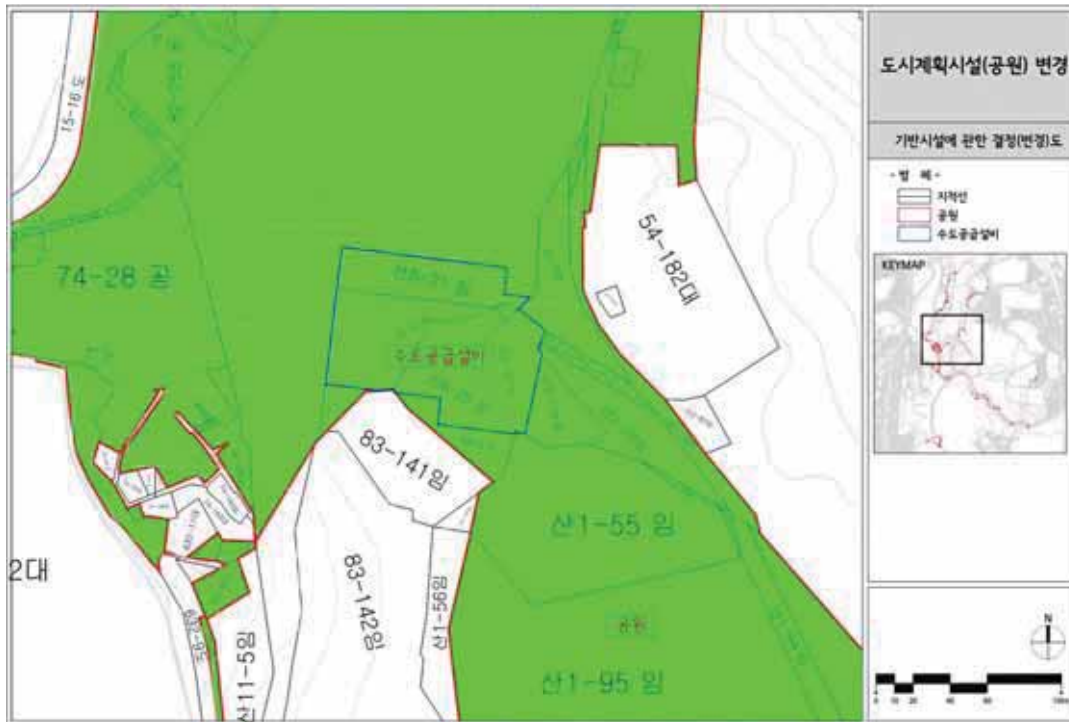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59) 및 성북구청 도시계획과(☎2241-2764)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3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⑥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99 - 4일원 개봉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로 결정(변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⑥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봉동 199-4일원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개봉역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⑥ 지정(5,140.3㎡)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	134,212.0	-	134,212.0	서고시 제1997-136호 (1997.5.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4,212.0	-	134,212.0	100.0	
주거 지역	소계	134,212.0	-	134,212.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3,178.9	감) 4,188.3	118,990.6	88.7	
	준주거지역	11,033.1	증) 4,188.3	15,221.4	11.3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개봉동 199-4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188.3	500% 이하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24	2,369	19,922	-	-	-	7	733	7,709	17	1,636	12,213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6	803	10,671	-	-	-	2	240	3,765	4	563	6,906
소로	18	1,566	9,251	-	-	-	5	493	3,944	13	1,073	5,307

■ 도로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4	개봉동 198-1 (남측구역계)	개봉동 199-7	일반 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2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88	개봉동 199-1	개봉동 202-37	일반 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폭원 및 도로선형 일부변경
	변경	소로	3	10	6~8	국지 도로	88	개봉동 199-1	개봉동 202-37	일반 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3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12	개봉동 202-37	개봉동 203-5	일반 도로	서고시 제2001-31호 (2001.2.7.)	도로선형 일부변경
	변경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12	개봉동 202-37	개봉동 203-5	일반 도로	서고시 제2001-31호 (2001.2.7.)	
4	기정	소로	3	23	4	국지 도로	49	개봉동 198-1 (남측구역계)	개봉동 202-8	일반 도로	서고시 제2001-31호 (2001.2.7.)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0	소로 3-10	·도로 폭원 변경 (6m → 6~8m)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가각부 일부 폭원 및 선형 변경
소로 3-13	소로 3-13	·도로 선형 변경	·개봉역 앞 광장 중 도로 선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소로3-13으로 변경

나)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㉔	광장	교통광장 (개봉역광장)	개봉동 203-5, 181-2일대	2,879.0	감) 24.3	2,854.7	서고시 제108호 (1974.8.3.)	

■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㉔	광장	·광장 선형 일부 변경 - 면적 2,879.0㎡→2,854.7㎡ 감) 24.3㎡	·개봉역 남측 광장 중 도로선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도로(소로 3-13)로 변경

나)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	㉕, ㉖	㉕	개봉동 199-4일원	5,113.0㎡	개봉동 199-4 외 3필지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가구 변경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기정 - 가구번호 : ㉞, ㉟ - 면적 : 4,514.0㎡ · 변경 - 가구번호 ㉞ - 면적 : 5,113.0㎡ ※ 폐지된 중로3-3(183-5도, 199-4대 일부) 도로면적(599.0㎡) 포함	· 개봉역세권(250m)내에 위치한 대상지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구계획 변경

2)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전구역	2,000㎡	-

※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의 범위 넘을 수 없음(단, 기존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경우, 특별계획구역, 기공동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공동개발 지정·권장한 필지 제외)

※ 상기 사항 이외의 최대개발규모 2,000㎡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 수립가능

3)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㉞	1	202-5	224.0	718.0	공동개발 지정	
		202-6	494.0			
㉟	1	199-4	3,796.0	3,796.0	단독개발	림괄아파트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변경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 번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㉞	1	202-5	226.0	5,113.0	특별계획구역 지정 (183-5도 포함)	
		202-6	497.0			
		199-4	4,166.7			림괄아파트
		183-5	223.3			폐지된 중로3-3 일부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특별계획구역 신설 - 지정 · 개봉동 202-5, 202-6(공동개발 지정) · 개봉동 199-4(단독개발) - 변경 · 개봉동 202-5, 202-6, 183-5, 199-4 (특별계획구역 지정)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 변경없음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기정	- 전구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A 간선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B 이면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C 간선부 (준주거)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D 기계발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E 준주거 (역세권 청년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 개봉동 179-11, 179-16, 179-49,

구 분			불허용도	비 고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79-50 역 세권 청년 주택에 한 함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개병동 199-4외 3필지(202-5, -6, 183-5) 특별계획구역 지정필지에 한하여 불허용도 변경(결정도 참조)
- 기정 : C(준주거), D(기개발지) → 변경 : C(준주거)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없음

구 분				권장용도
기정	1	간선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1층부 은행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2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	간선부 (준주거)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기개발지		-

※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전체 연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의 20% 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본다.

※ 1층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1층 연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의 40% 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지정용도

구 분				지정용도	비 고
기정	I	개봉역 보행길변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신설	II	개봉역 특별계획구역⑩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기정	III	개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주)	•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지정용도 I의 면적구성은 건물 1층 연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의 40% 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본다.

※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함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나)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상한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 고
		일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동 개발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450% 이하 - 상한 : 500% 이하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 역세권 공공임대 밀도체계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계획지침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가) 최고높이계획

구 분	적용대상	높이계획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공동주택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림팔아파트)	70m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배제 - 단, 공동개발 권장된 필지내에서 단독 개발 시행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기존 공동주택(삼환아파트)	65m	
	간선가로변(개봉로, 경인로) 기존 공동주택(청실아파트)	60m	
	준주거지역 및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50m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40m	
	준주거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63m	-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변경	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공동주택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70m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배제 - 단, 공동개발 권장된 필지내에서 단독 개발 시행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기존 공동주택(삼환아파트)	65m	
	간선가로변(개봉로, 경인로) 기존 공동주택(청실아파트)	60m	
	준주거지역 및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50m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40m	
	준주거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63m	-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특별계획구역⑧ (개봉동 202-5, 202-6, 199-4, 183-5)	90m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가 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 적용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 계획지침에 따름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적용기준	
			기정	변경
건축한계선	· 이면부 보행자 편의	·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3m	도로경계선에서 1~4m(주1)

구 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적용기준	
			기정	변경
	•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가로변 • 특별계획구역④	도로경계선에서 3m	변경없음
	• 도로(차도 및 보행공간) 일정 폭원 확보를 전면공지 확보	• 특별계획구역⑤ 동측 도로	도로경계선에서 2.7~3.7m(주2)	변경없음
건축지정선	• 개봉역 남측 도로 정연한 상점가 조성	• 개봉역 남측 15m 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m	변경없음
벽면지정선	• 광장 활성화	• 개봉역광장 인접필지	대지경계선에서 1m, 3m	변경없음

주1) 개봉동 199~4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라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원 일부 변경(결정도 참조)

주2) 특별계획구역⑤ 동측 도로(개봉로24길)는 일정 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2.7~3.7m로 계획함

차도폭원 (현형) 6.8~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적용목적	적용기준	적용구역
기정	건축물 형태	• 간선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권장 • 지상1층 외벽 투시율 50%이상 확보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면 노출 제한	경인로변, 개봉로변, 남부순환로변
	재료 / 색채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전구역
	가로환경의 연속성	•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cm이하 및 경사로 설치 •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전구역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 1층 가로 입면 개구부의 입면적 합 50% 이상 조성 • 투시된 셔터설치	전구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가이드 라인기준”을 준수	전구역
	야간 조명	•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전구역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 고
기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 조성지침 제시 • 준주거지역 4m 이하 도로는 도로로 조성 • 특별계획구역⑤ 동측도로(개봉)	변경없음 개봉로24길 조성단면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 고
		• 도로 일정폭원 확보		로24길의 전면공지는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고, • 차도폭원 (현황) 6.8~5.8m를 (변경) 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	세부개발계획 참조
	공개공지 (18개소)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 위치 지정	•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가로변 위치 지정 • 건축법 상 대상 확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1개소 위치 변경주)
	공공보행통로	• 공지와 연계 보행 환경 개선	• 간선가로 및 공지변 원활한 보행 환경 조성	• 필로티 구조일 경우 유효 높이 6m 이상	변경없음

주) 개봉동 199-4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공개공지 1개소 위치 변경(결정도 참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전체구역	• 차량출입불허구간	• 개봉동 199-4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조정(결정도 참조)

■ 공동주차출입구 : 변경없음

다) 공공기여 계획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개봉동 170-35번지 일대	5,008.0	-	5,008.0	
신설	특별계획구역㉡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개봉동 199-4일원	-	증) 5,140.3	5,140.3	
기정	특별계획구역㉢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개봉동 171-2번지 일대	2,637.0	-	2,637.0	

※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2)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㉔	개봉역 특별계획구역㉔	• 위치 : 개봉동 199-4일원 • 면적 : 5,140.3 - 183-5, 199-4, 202-5, 202-6 (4개 필지)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 구역 신설

3) 특별계획구역(가능지)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㉔ 계획지침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㉔ 계획지침 : 신설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 이상 기부채납 - 소로2-7, 소로3-10, 소로3-23 각각 확보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50/100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분토지는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용 45㎡ 이하 : 60% ~ 80% - 전용 45㎡ 초과 60㎡ 이하 : 20% ~ 40%	
가구 및 획지		•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함	
용도 계획	불허용도(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제조업소, 수리점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지정용도(II)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밀도	기준/허용/상한	• 250% / 450% / 500% • 공공용지 부담률 : 15% 이상	
최고높이		• 90m 이하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4m	
기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내 전면공지 조성 (간선도로변 3m, 이면도로변 2m, 4m)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위치 지정(1개소)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가각부 지정	
	자전거편의시설	• 건축물내 일반인에게 편의시설(보관소등) 개방	

구 분		계획지침	비 고
	생태면적률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이상 확보	
	운용기준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내용 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법정절차에 의거 조정가능	

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 서울시 관련지침 및 기준에 따름

6) 특별계획구역㉔ 계획지침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인센티브 운영계획 : 변경없음

III. 개봉역 특별계획구역㉕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㉕	개봉역 특별계획구역㉕	개봉동 199-4일원	-	증) 5,140.3	5,140.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40.3	-	5,140.3	100.0	
주거 지역	소계	5,140.3	-	5,140.3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4,211.6	감) 4,188.3	23.3	0.5	
	준주거지역	928.7	증) 4,188.3	5,117.0	99.5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개봉동 199-4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188.3	500% 이하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44	개봉동 198-1 (남측구역계)	개봉동 199-7	일반 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2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88	개봉동 199-1	개봉동 202-37	일반 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폭원 및 도로선형 일부변경
	변경	소로	3	10	6~8	국지 도로	88	개봉동 199-1	개봉동 202-37	일반 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3	기정	소로	3	23	4	국지 도로	49	개봉동 198-1 (남측구역계)	개봉동 202-8	일반 도로	서고시 제2001-31호 (2001.2.7.)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0	소로 3-10	· 도로 폭원 변경 (6m → 6~8m)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가각부 일부 폭원 및 선형 변경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가구	㉞, ㉟	㉞	개봉동 199-4일원	5,113.0㎡	개봉동 199-4 외 3필지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가구 변경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기정 - 가구번호 : ㉞, ㉟ - 면적 : 4,514.0㎡ · 변경 - 가구번호 ㉞ - 면적 : 5,113.0㎡ ※ 폐지된 중로3-3(183-5도, 199-4대 일부) 도로면적(599.0㎡) 포함	· 개봉역세권(250m)내에 위치한 대상지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구계획 변경

2)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전구역	2,000㎡	-

※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의 범위 넘을 수 없음(단, 기존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경우, 특별계획구역, 기공동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공동개발 지정·권장한 필지 제외)

※ 최대개발규모 2,000㎡ 이상인 블록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 수립

3)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㉓	1	202-5	224.0	718.0	공동개발 지정	
		202-6	494.0			
㉔	1	199-4	3,796.0	3,796.0	단독개발	림갈아파트

· 변경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 번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㉓	1	202-5	226.0	5,113.0	특별계획구역 지정 (183-5도 포함)	
		202-6	497.0			
		199-4	4,166.7			림갈아파트
		183-5	223.3			폐지된 중로3-3 일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특별계획구역 신설 - 기정 · 개봉동 202-5, 202-6(공동개발 지정) · 개봉동 199-4(단독개발) - 변경 · 개봉동 202-5, 202-6, 183-5, 199-4 (특별계획구역 지정)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가) 불허용도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간선부 준주거 (C)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제조업소, 수리점 ·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변경없음	

나) 지정용도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개봉역 특별계획구역⑧(Ⅱ)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 변경없음	

나)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45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 공공용지 부담률 : 15% 이상	· 변경없음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적용(신설)

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패키지 허용용적률)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 원화된 용적률의 50/100 이상(100% 이상) - 계획 : 5,114.8㎡(100.03%) > 법정 5,113.0㎡(100.0%)	· 기준용적률 250% · 허용용적률 450%
필수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계획(혼합구조)	· 적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 300세대 이상인 경우 3%(최소 450㎡ 이상) - 법정 : 674.38㎡(3.00%) - 계획 : 747.37㎡(3.32%)	· 적용
	에너지 효율 건축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평점합계 86점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 적용
	녹색 건축물	· 친환경 분야 성능인증(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 인증)	· 적용
선택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사업계획승인 시 득할 예정)	· 적용
(패키지)허용용적률		450%	

② 상한용적률 산정

■ 부담률 산정

구 분		공공시설 부담률		비 고
		면적(㎡)	비율(%)	
공공 시설	도로	27.3	0.5	
	사회복지시설	532.6	10.5	· 지분 : 175.9㎡, 환산부지 : 356.7㎡
	경로당주)	99.0	1.9	· 지분 : 35.3㎡, 환산부지 : 63.7㎡
	소 계	658.9	12.9	
공공임대주택(상한)		83.3	1.6	· 3세대(지분 : 34.2㎡, 환산부지 : 49.1㎡)
소 계		742.2	14.5	
공공임대주택 무상양여 지분 중 공공시설 부담률에 해당되는 면적(허용)		383.5	7.5	· 83세대(의무부담 면적의 1/2)
합 계		1,125.7	22.0%	· 의무부담 : 15%

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건물·토지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부여 가능

※ 무상으로 양여하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공공시설 설치·제공 비율의 1/2 한도까지 공공시설 부담기준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 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함

※ 상기 내역은 “202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에 의거 산정함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계략 설계사항으로, 향후 사업계획승인시 확정 예정

•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총 제공면적	742.2㎡	· 도로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 공공임대주택 = 27.3㎡ + 532.6㎡ + 99.0㎡ + 83.3㎡ = 742.2㎡	순부담
가중치	0.9556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7.3㎡×250% + 245.4㎡×450%) ÷ 272.7㎡] ÷ 450% = 0.9556	
α(토지)	0.0560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272.7㎡ / (5,140.3㎡ - 272.7㎡) = 0.0560	
α(건축물)	0.0965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469.5㎡ / (5,140.3㎡ - 272.7㎡) = 0.0965	
상한용적률	497.99%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공공임대 용적률 = 350% ×[1 + (1.3×0.9556×0.0560) + (0.7×0.0965)] + 100% = 497.99%	
상한용적률		500% 이하 적용	법정상한 500%

※ 허용용적률 = 350%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가) 최고높이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최고높이	• 90m 이하	• 변경없음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 적용

4)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4m	• 변경없음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개방역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형태	가로변 경관의 랜드마크	• 간선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권장 • 지상1층 외벽 투시율 50%이상 확보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면 노출 제한	• 변경없음	
건축물 외관	재료 / 색채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 변경없음	
	가로환경의 연속성	•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cm이하 및 경사로 설치 •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 변경없음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 1층 가로 입면 개구부의 입면적 합 50% 이상 조성 • 투시된 셔터설치	• 변경없음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기준”을 준수	• 변경없음	
	야간 조명	•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 권장	• 변경없음	

5)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기준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임대주택 규모별 건설 비용	• 전용면적 45㎡ 이하 : 60~80% • 전용면적 45㎡~60㎡ 이하 : 20~40%	• 전용면적 45㎡ 이하 : 79.1% (68세대) • 전용면적 45㎡~60㎡ 이하 : 20.9% (18세대)	

나)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 고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용	• 원화된 용적률의 50/100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50/100 = (450%-250%)×50/100 = 100%	• 공공임대주택 공급용적률 → 100.03% 계획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5,114.8㎡ (기부채납분 제외)
공공시설 부담률	• 용도지역 1단계 상항시 15%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공공시설 부담기준 - 15% 이상(767.0㎡ 이상)	• 공공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임대주택) : 742.2㎡ (14.5%) • 공공임대주택 대지권지분 인정분 : 383.5㎡ (7.5%) → 총 22.0% (1,125.7㎡ ≥ 767.0㎡)	※ 공공시설 부담률 의무 기준인 15% 초과하므로 지침에 부합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인정분은 의무부담면적의 1/2
커뮤니티 지원시설	•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 법정 : 674.38㎡ (3%, 450㎡ 이상)	• 계획 : 747.37㎡ (3.32%) - 지상 2층 히트니스센터	
비주거비용	•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권장 • 법정 : 2,545.99㎡ (10%)	• 계획 : 2,980.67㎡ (11.71%)	※ 지상층 연면적 : 25,459.85㎡

- 이 하 여 백 -

■ 배치도



※ 공공임대주택 사회혼합(Social mix) 계획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층별 위치 등은 전체 3개동에 혼합하여 공급 예정임
(각 동·호수는 추첨에 의함)

구 분	공공임대		일반분양		합 계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40A Type	45 세대	60.0%	30 세대	40.0%	75 세대	100.0%
40A-a Type	11 세대	44.0%	14 세대	56.0%	25 세대	100.0%
40B Type	12 세대	48.0%	13 세대	52.0%	25 세대	100.0%
45 Type	14 세대	56.0%	11 세대	44.0%	25 세대	100.0%
59A Type	2 세대	1.6%	124 세대	98.4%	126 세대	100.0%
59B Type	2 세대	7.7%	24 세대	92.3%	26 세대	100.0%
합 계	86 세대		216 세대		302 세대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차별 또는 이용상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반드시 계획하여야 하며, 사회혼합에 대한 별도 운영기준 수립된 경우 이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 3-3-5)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전면공지	• 남부순환로변(3m) : 보도부속형 • 개봉동 199-4 북측(2m) : 보도부속형 • 개봉동 202-5 서측(2m) : 차도부속형 • 개봉동 199-4 동측(4m) : 보도부속형(2m)+차도부속형(2m)	
공개공지	• 적용목표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적용대상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 위치 지정 • 적용기준 -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가로변 위치 지정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도로변 및 가각부 지정	• 변경없음	• 개봉동 199-4일원 역사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조정(결정도 참조)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자전거편의시설	• 건축물내 일반인에게 편의시설(보관소 등) 개방	• 변경없음	
생태면적률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이상 확보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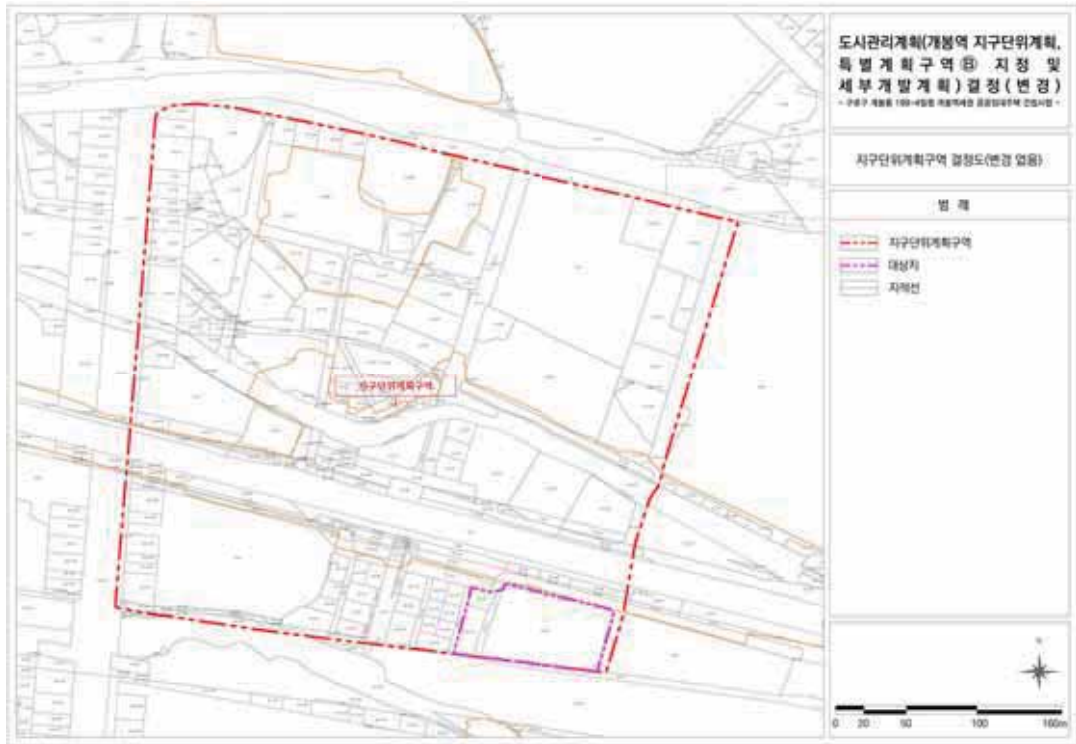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V.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사업과(02-2133-8239)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3249)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련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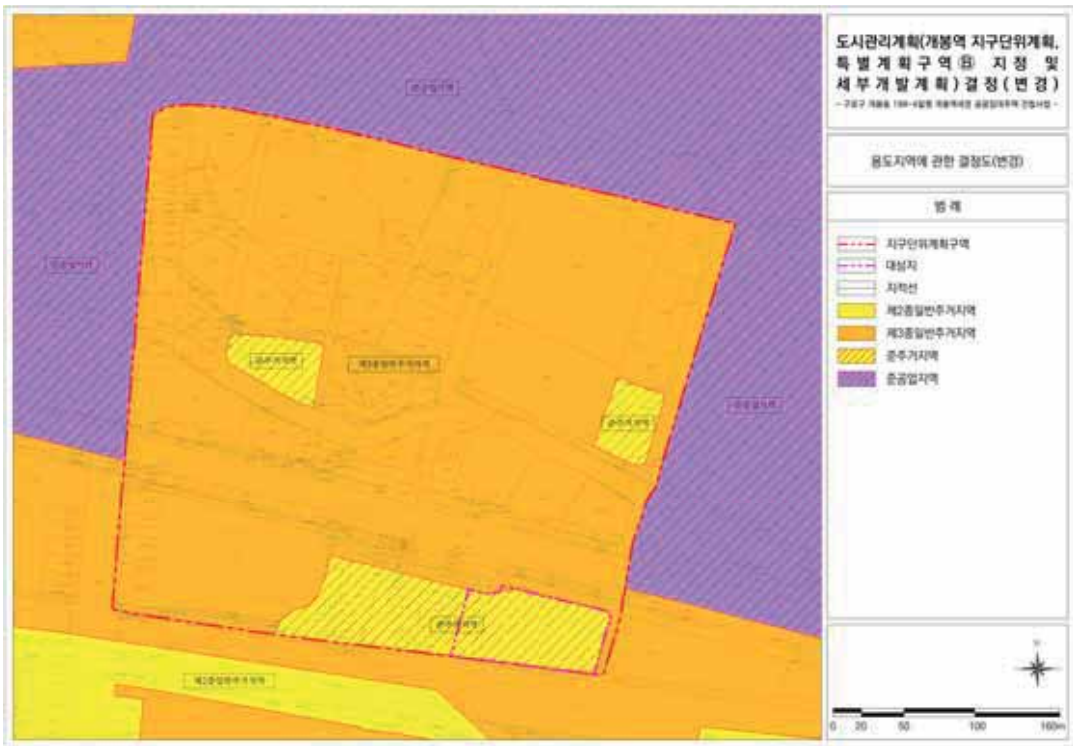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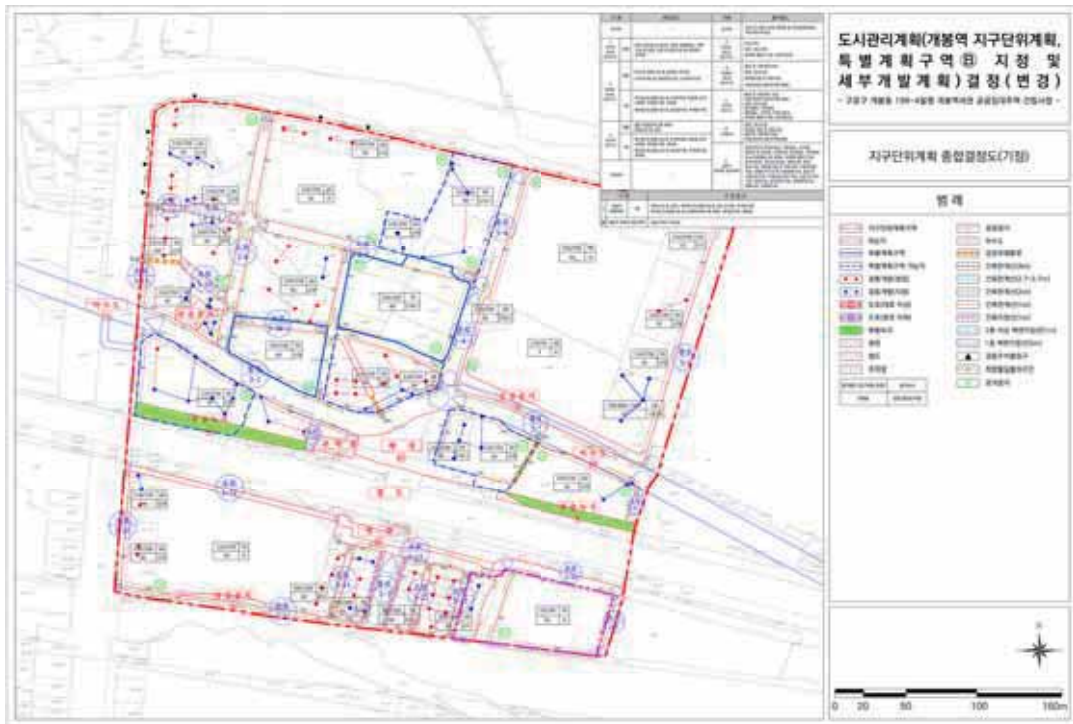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변경)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 결정도(기정)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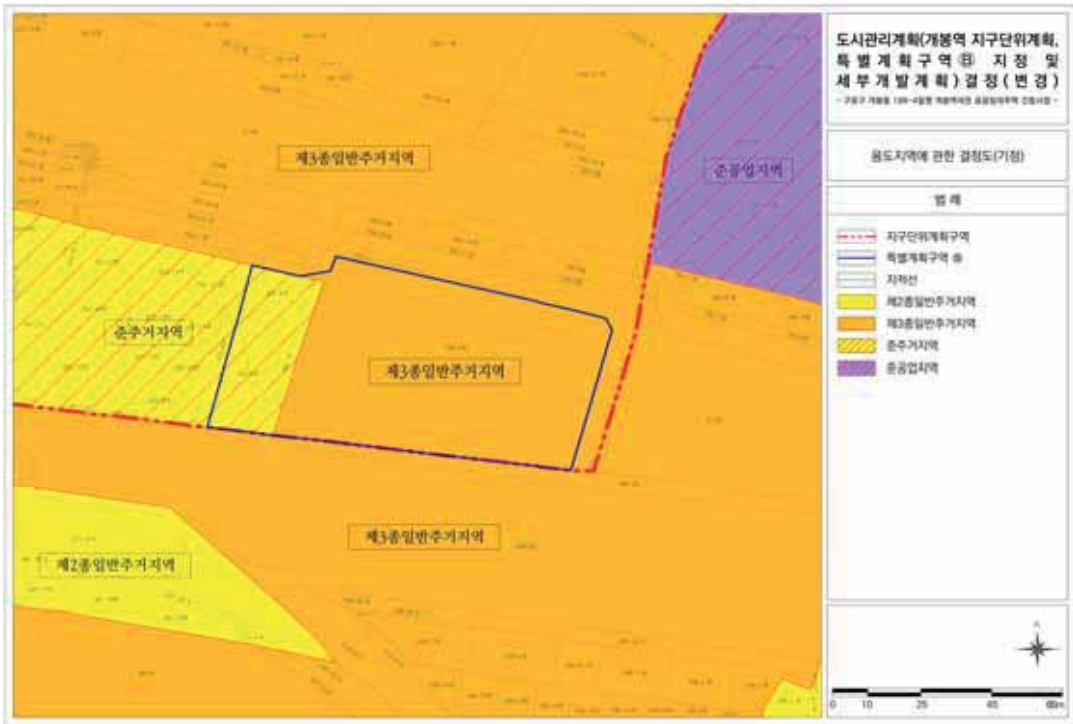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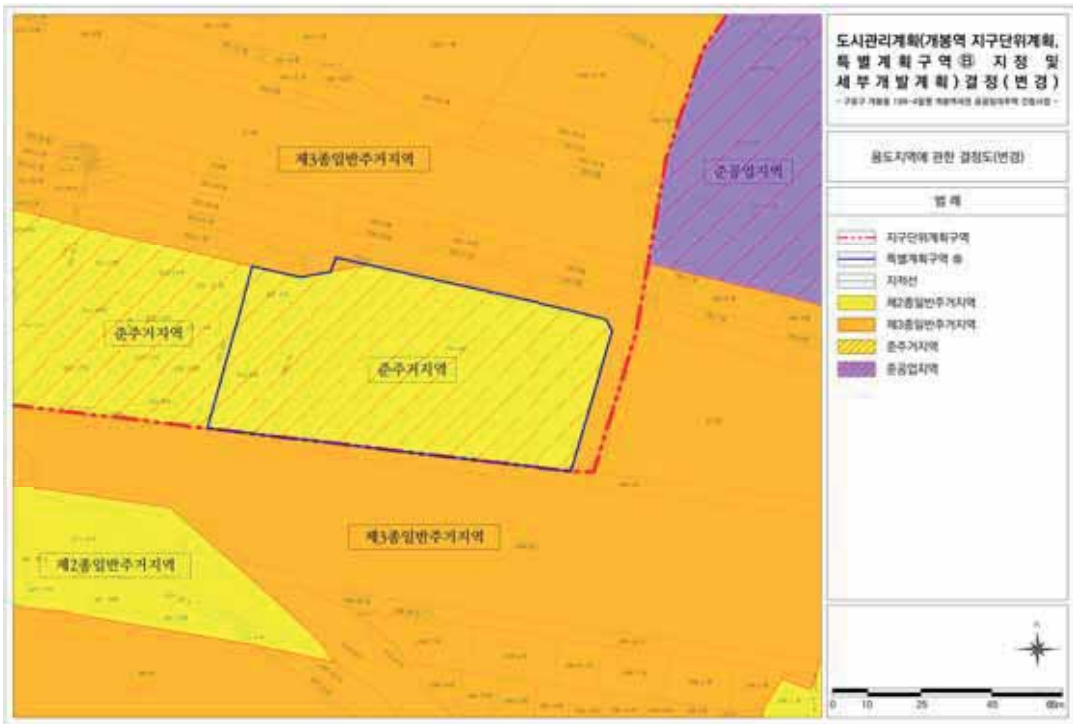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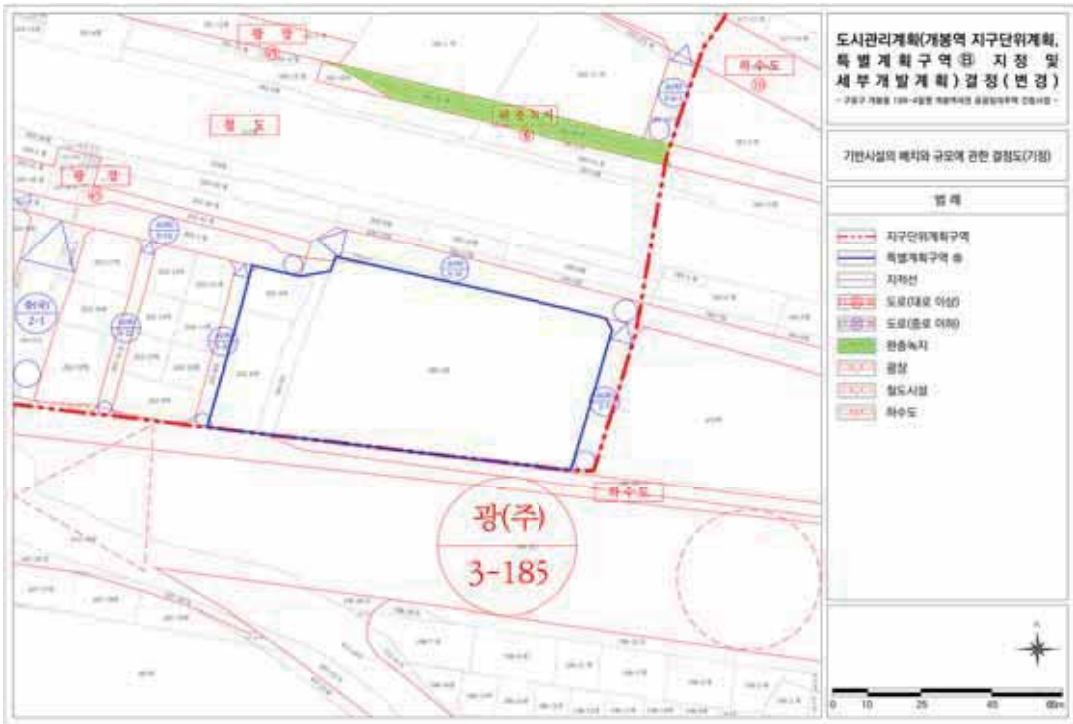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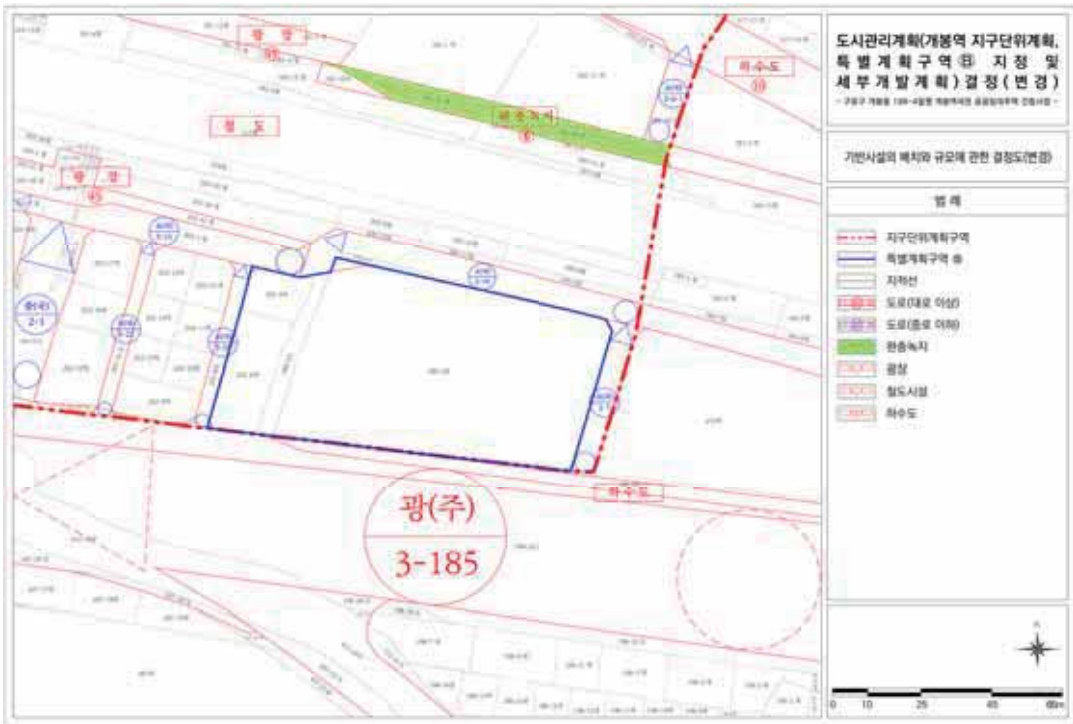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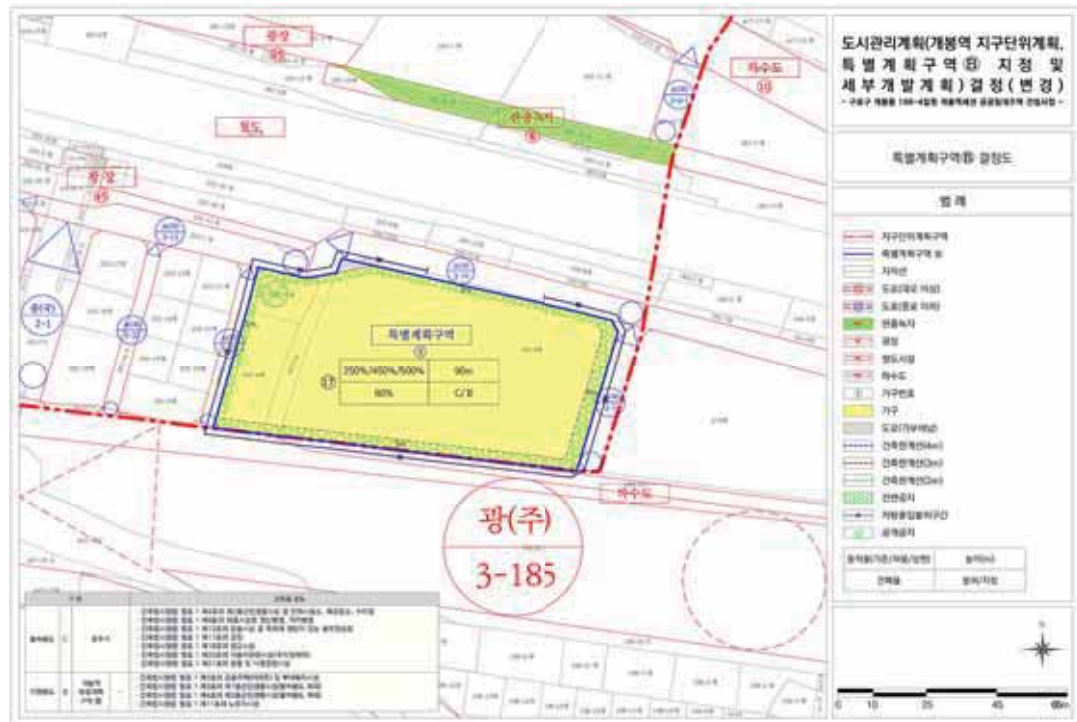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4호

서울시립청소년센터 2022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청소년센터 2022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2022년 서울시립청소년센터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연번	센터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총 계		72,743	31,188	6,979	34,576	72,743	21,335	9,342	4,631	3,369	28,499	5,567
1	서울	2,523	477	211	1,835	2,523	884	504	196	6	788	145
2	성동	4,732	3,047	296	1,389	4,732	1,016	676	282	247	2,227	284
3	광진	3,014	773	395	1,846	3,014	898	388	190	204	1,184	150
4	동대문	2,893	921	344	1,628	2,893	793	291	192	183	1,099	335
5	중랑	2,687	440	365	1,882	2,687	1,188	246	230	3	848	172
6	망우	5,073	2,028	1,394	1,651	5,073	1,219	365	232	168	1,895	1,194
7	성북	3,481	1,270	448	1,763	3,481	949	403	209	168	1,274	478
8	강북	4,050	1,297	617	2,136	4,050	1,139	360	239	260	1,514	538
9	창동	1,900	176	297	1,427	1,900	679	217	145	8	676	175
10	노원	4,715	2,189	43	2,483	4,715	1,214	477	337	195	2,482	10
11	은평	4,400	1,988	139	2,273	4,400	875	610	238	540	2,086	51
12	서대문	3,800	2,443	260	1,096	3,792	1,001	714	186	54	1,514	330
13	마포	3,750	2,153	76	1,521	3,750	1,080	758	239	336	1,284	53
14	목동	4,791	3,256	592	943	4,791	1,510	482	264	260	1,936	339
15	화곡	1,788	316	62	1,410	1,788	849	139	171	34	544	51
16	구로	3,038	1,752	121	1,165	3,038	749	573	156	54	1,388	118

구 분		세 입				세 출						
연번	센터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17	금천	2,998	772	266	1,960	2,998	974	450	203	104	1,011	256
18	문래	4,560	3,050	235	1,275	4,560	1,231	845	302	59	1,877	246
19	보라매	2,868	716	504	1,648	2,779	1,023	237	209	83	935	381
20	수서	3,505	1,602	214	1,689	3,505	1,101	359	212	353	1,246	234
21	강동	2,177	522	100	1,555	2,177	963	248	199	50	690	27

2. 2022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센터 사용료 및 강습료

서울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목적사업	청소년문화홍보단	청소년	명	50,000	청소년참여	내용없음	연 10회
	비대면기획단 2기	청소년	명	50,000	청소년참여	내용없음	연 20회
	청소년인권동아리 YTN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참여	내용없음	연 12회
	청소년지도사실습지도	청소년	명	7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2회
	국가대표	청소년	명	8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8회
	우리 지구를 지켜주세요!	청소년	명	5,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1회
	프라이빗 갤러리	청소년/ 성인	명	3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4회
	코딩가딩가	청소년	명	3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1회
	야! 한밤에	청소년	명	30,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연 1회
	꿀밤	청소년	명	20,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연 2회
	아띠420	청소년	명	50,000	봉사활동	내용없음	연 6회
	북유럽(Book U Love)	청소년	명	20,000	봉사활동	내용없음	연 7회
	청소년 길 JOB이	청소년	명	20,000	진로활동	내용없음	연 5회
	청소년 프로그램기획단 씨니	청소년	명	30,000	진로활동	내용없음	연 12회
	The Leaders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4회
	서울청소년 창의스쿨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12회
	빵싹빵싹	청소년	명	2,096,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4회
	진로 is 뭔들	청소년	명	35,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8회
	참새방앗간	청소년	명	24,000	지역연계	내용없음	연 10회
	청지로-청소년을 위한을지로	청소년	명	20,000	지역연계	내용없음	연 12회
	서울문화탐방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4회
	아지일보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1회
	밝은학교 만들기	장애 청소년	학급	130,000 (회당)	학교연계	내용없음	연 500회
	행복만빵	장애 청소년	학급	130,000 (회당)	학교연계	내용없음	연 72회
	예술로 다독다독	장애 청소년	학급	130,000 (회당)	학교연계	내용없음	연 40회
	여름방학 행복교실	장애 청소년	명	130,000	지역연계	내용없음	연 5회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해피선데이	장애 청소년	명	10,000	지역연계	내용없음	연 2회
	우.다.다 프로젝트	청소년	명	6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8회
	Money 뭐니?!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4회
	Job 어디에?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8회
	건대랑코딩할건대?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목적사업	내용없음	연 16회
	동그라미학교급식비	청소년	명	5,500	청소년참여	내용없음	연중
교육문화	요가/음악/미술/바리스타	성인	명	40,000	평생교육	61,000	주2회 (1시간)
		청소년	명	35,000		55,000	
		청소년지 도자	명	25,000		61,000	
	중국어교실	성인	명	56,000		56,000	주2회 (1시간)
		청소년	명	45,000		45,000	
		청소년지 도자	명	28,000		28,000	
생활체육	종합체력실	성인	명	55,000	생활체육	81,000	주5회
		청소년	명	35,000		72,000	
		청소년지 도자	명	35,000		81,000	
		주말	명	10,000		내용없음	
		개인 사물함	명	15,000		내용없음	
기타사업	주차장	성인	정기 주차	180,0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주차장	성인	시간 주차 (30분)	1,5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카페테리아)						
	커피	성인/ 청소년	1잔	3,5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에이드류	성인/ 청소년	1잔	3,5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티류	성인/ 청소년	1잔	3,0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요거트류	성인/ 청소년	1잔	3,5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과일주스류	성인/ 청소년	1잔	4,0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건강주스류	성인/ 청소년	1잔	4,0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베이커리	성인/ 청소년	1개	1,5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시설대관)	청소년은 성인의 50%					
	강당/ 대회의실	성인	3시간	220,000	내용없음	400,000	-
	세미나실	성인	3시간	165,000	내용없음	300,000	-
	소회의실	성인	3시간	82,500	내용없음	200,000	-
	댄스연습실	성인	3시간	99,000	내용없음	200,000	-
	빔사용료	-	1회	33,000	내용없음	내용없음	-

성동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주산식암산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어린이언어	유아, 청소년	월/주2회	45,000	외국어	45,000	
	어린이블록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창의수학가베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키즈교양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창의미술	유아, 청소년	월/주1회	40,000	예체능	35,000	1.5시간
	흥익킨더창의아트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만능공작!클레이&종이접기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조물조물 찰흙교실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키즈예능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이화yms체형교정발레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무용체조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인라인스케이트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키즈체육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토요기타교실	청소년, 성인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노래교실	성인	월/주1회	25,000	예체능	39,000	
	피아노 주5일	성인	월/주3회	77,000	예체능	77,000	
	피아노 주2일	성인	월/주2회	61,000	예체능	61,000	
	피아노 주1일	성인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피아노 청소년 주3일	청소년	월/주3회	70,000	예체능	70,000	
	피아노 청소년 주2일	청소년	월/주2회	55,000	예체능	55,000	
	피아노 청소년 주1일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한자교실	청소년, 성인	월/주1회	25,000	취미교양문화	25,000	
	사군자, 문인화	성인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한글서예	성인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취미 예술	청소년, 성인	월/주1회	35,000	예체능	39,000	
	자격증반	청소년, 성인	월/주1회	28,000	취미교양문화	28,000	
	여름/겨울방학특강	청소년, 성인	1회	35,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새벽수영	성인	월/주3회	56,000	생활체육	56,000	
		성인	월/주2회	43,000	생활체육	43,000	
	오전수영	성인	월/주3회	56,000	생활체육	56,000	
		성인	월/주2회	43,000	생활체육	43,000	
	효도수영	성인	월/주3회	56,000	생활체육	56,000	
		성인	월/주2회	43,000	생활체육	43,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저녁수영	성인	월/주3회	56,000	생활체육	56,000	
		성인	월/주2회	43,000	생활체육	43,000	
	초등수영	청소년	월/주3회	50,000	생활체육	50,000	
		청소년	월/주2회	37,000	생활체육	37,000	
	토요수영	청소년	월/주1회	37,000	생활체육	37,000	2시간
	단기속성	청소년	월/주2회	110,000	생활체육	130,000	지역평균
		성인	월/주1회	77,000	생활체육	내용없음	
생활체육	자유수영	성인	1회	4,300	생활체육	4,300	
		청소년	1회	2,500	생활체육	2,500	
		어린이	1회	1,800	생활체육	1,800	
	월자유수영 (주5회/3회/2회/1회)	성인	주/5회	87,500	생활체육	87,500	
		청소년	주/5회	50,000	생활체육	50,000	
		성인	주/3회	52,500	생활체육	52,500	
		청소년, 어린이	주/3회	30,000	생활체육	30,000	
		성인	주/2회	35,000	생활체육	35,000	
		청소년, 어린이	주/2회	20,000	생활체육	20,000	
		성인	주/1회	17,500	생활체육	17,500	
		청소년, 어린이	주/1회	10,000	생활체육	10,000	
	아쿠아로빅	성인	월/주3회	56,000	생활체육	56,000	
		성인	월/주2회	43,000	생활체육	43,000	
	방학특강(수영단기소그룹)	청소년	월/8회	110,000	생활체육	130,000	지역평균
	헬스	성인	월/주6회	54,000	생활체육	93,000	
		청소년	월/주6회	43,000	생활체육	80,000	
	방송댄스기초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8,000	예체능	61,000	
	방송댄스초급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8,000	예체능	61,000	
	피규어로빅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8,000	예체능	61,000	
	줌바 피트니스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8,000	예체능	61,000	
	밸리댄스(주2회)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8,000	예체능	61,000	
	밸리댄스(주1회)	청소년, 성인	월/주1회	30,000	예체능	39,000	
	건강체육	청소년, 성인	월/주3회	53,000	예체능	77,000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주1회)	청소년, 성인	월/주1회	40,000	예체능	39,000	1.5시간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주2회)	청소년, 성인	월/주2회	65,000	예체능	61,000	1.5시간
	라인업요가	청소년, 성인	월/주3회	55,000	예체능	77,000	
	웰빙요가	청소년, 성인	월/주3회	55,000	예체능	77,000	
	빈야사요가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0,000	예체능	61,000	
	힐링&테라피요가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0,000	예체능	61,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파워요가	청소년, 성인	월/주2회	40,000	예체능	61,000	
	필라테스(주3회)	청소년, 성인	월/주3회	190,000	건강활동	내용없음	
	필라테스(주2회)	청소년, 성인	월/주2회	130,000	건강활동	내용없음	
	필라테스(주1회)	청소년, 성인	월/주1회	70,000	건강활동	내용없음	
청소년 목적사업	청소년지도현장실습	청소년	1명	50,000	실습	내용없음	
	청소년 진로찾기 프로젝트	청소년	1명	7,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회	120,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리더십이 필요해	청소년	인당	7,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회당	120,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직업체험스쿨	청소년	인당	12,000	체험활동	내용없음	
	자유에 진로더하기	청소년	인당	7,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회당	120,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청소년 목적사업	초등생존수영	청소년	1명	8,000	학교연계	내용없음	
	미래로운클래스	청소년	1회기	20,000	체험활동	내용없음	
	창작스쿨	청소년	1회	7,000	체험활동	내용없음	
	성동 퓨처 DAY 캠프	청소년	1회	50,000	체험활동	내용없음	
	청소년 한국사교실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한자교실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세계사교실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과학교육 (폴에듀과학)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수학교실 (창의사고수학)	청소년	월/주1회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음악즐넵기	청소년	월/주2회	42,000	예체능	55,000	
	퍼펙트트레이닝(주3회)	청소년	월/주3회	300,000	건강활동	내용없음	
	퍼펙트트레이닝(주2회)	청소년	월/주2회	200,000	건강활동	내용없음	
	청소년취미체육(2회)	청소년	월/주2회	40,000	예체능	55,000	
	청소년취미체육(1회)	청소년	월/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무지개아카데미 입단비	유아	연/1회	3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회
	무지개아카데미 5세 수업료	유아	월1회	58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2회
	무지개아카데미 6세 수업료	유아	월1회	575,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2회
	무지개아카데미 7세 수업료	유아	월1회	58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2회
	무지개아카데미 5세 교재비	유아	월1회	85,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2회
	무지개아카데미 6세 교재비	유아	월1회	96,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2회
	무지개아카데미 7세 교재비	유아	월1회	96,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2회
	급식비	유아	월1회	105,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2회
	동복	유아	연중	44,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하복	유아	연중	38,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수영복(여)	유아	연중	29,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수영복(남)	유아	연중	24,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무지개아카데미 가방	유아	연중	39,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수영가방	유아	연중	7,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도시락	유아	연중	1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신학기물품비	유아	연/1회	17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발표회 의상비	유아	연/1회	4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1회
	출석카드	유아	연중	7,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출석카드케이스	유아	연중	3,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돌봄비	유아	연중	12,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무지개아카데미 방과후 수업비	유아	연중	18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방과후아카데미 교재비	청소년	연중	30,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연중
대관사업	대극장(213석) 평일	전체	회	350,000	시설대관	350,000	3시간
	대극장(213석) 주말	전체	회	455,000	시설대관	390,000	3시간
	대극장 추가시간	전체	시간당	30,000	시설대관	30,000	1시간
	대극장 냉방	전체	회	7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대극장 빔프로젝트	전체	회	5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체육관 평일	전체	회	150,000	시설대관	250,000	3시간
	체육관 주말	전체	회	195,000	시설대관	325,000	3시간
	체육관 추가시간	전체	시간당	25,000	시설대관	25,000	1시간

대관사업	체육관 냉난방	전체	회	7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프로그램실(大) 평일	전체	회	10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프로그램실(大) 주말	전체	회	13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프로그램실(小) 평일	전체	회	7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프로그램실(小) 주말	전체	회	91,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프로그램실 추가시간	전체	시간당	10,000	시설대관	10,000	1시간
	프로그램실(大) 냉난방	전체	회	5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프로그램실(小) 냉난방	전체	회	3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프로그램실 빔프로젝트	전체	회	5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마루방(大) 평일	전체	회	10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마루방(大) 주말	전체	회	13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마루방(小) 평일	전체	회	7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마루방(小) 주말	전체	회	91,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3시간
	마루방 추가시간	전체	시간당	10,000	시설대관	10,000	1시간
	마루방(大) 냉난방	전체	회	5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마루방(小) 냉난방	전체	회	30,000	시설대관	내용없음 (유사시설준용)	-
기타 사업	사물함	전체	연중	3,300	기타활동	내용없음	
	회원증	전체	연중	1,000	기타활동	내용없음	

광진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대 관	대극장대관	400석 이내	3시간	450,000	시설대관	450,000	
	소극장대관	200석 이내	3시간	200,000	시설대관	250,000	
교육문화사업	WIST과학탐구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과학실험놀이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로봇과 과학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주산식암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창의수학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드론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큐브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Play Science(과학놀이체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ASK과학탐구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사이언스오픈랩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노벨영재과학실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골드버그창의과학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레고놀이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신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비반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논술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한국사&세계사정복	청소년	주1회/2시간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독서논술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유아프뢰벨가베	어린이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창의융합보드게임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체스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스피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신의한수바둑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매직 쇼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경필쓰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독서미술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연기뮤지컬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신규
	독서토론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신규
	역사탐험대(위인, 역사)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신규
교육문화사업	Native English(주1회)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Native Phonics(주1회)	어린이	주1회/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Fun conversation English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Fun Art English(영어미술)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Fun Science(영어과학)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Fun Math(영어수학)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키즈외국어	어린이	주1회/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신규
	미술의 기초 토요아뜰리에	청소년	주1회/2시간	47,000	예체능	56,000	
	초등미술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2,000	예체능	56,000	
	어린이종합미술(점토)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그리기 집중지도반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55,000	예체능	56,000	
	나오미미술(주1시간)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나오미미술(주2시간)	청소년	주1회/2시간	42,000	예체능	56,000	신규
	종이접기&클레이(공예)	어린이	주1회/1시간	22,000	예체능	35,000	
	그리기 집중지도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초등융합미술(주1시간)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초등융합미술(주2시간)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2,000	예체능	56,000	
	이모티콘만들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5,000	예체능	56,000	
	힐링공방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2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창의력 미술놀이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2,000	예체능	56,000	
	드림교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5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최치우 드림교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5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통기타(청소년)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통기타(성인)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플루트(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플루트(성인)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수행평가대비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우쿨렐레(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우쿨렐레(성인)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보컬트레이닝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토요바이올린(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토요바이올린(성인)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월요바이올린(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55,000	예체능	56,000	
	월요바이올린(성인)	성인	주1회/2시간	61,000	예체능	62,400	
	일요바이올린(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55,000	예체능	56,000	
	일요바이올린(성인)	성인	주1회/2시간	61,000	예체능	62,400	
	가야금(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사업	가야금(성인)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엄지척칼림바(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예체능	35,000	
	엄지척칼림바(성인)	성인	주1회/1시간	38,000	예체능	39,000	
	성악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작곡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5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국악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오전피아노(바이엘, 주3회)	성인	주3회/1시간	60,000	예체능	77,000	
	오전피아노(체르니Ⅰ, 주3회)	성인	주3회/1시간	65,000	예체능	77,000	
	오전피아노(체르니Ⅱ, 주3회)	성인	주3회/1시간	70,000	예체능	77,000	
	오전피아노(바이엘, 주2회)	성인	주2회/1시간	50,000	예체능	61,000	
	오전피아노(체르니Ⅰ, 주2회)	성인	주2회/1시간	55,000	예체능	61,000	
	오전피아노(체르니Ⅱ, 주2회)	성인	주2회/1시간	60,000	예체능	61,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오후피아노(바이엘, 주5회)	어린이, 청소년	주5회/1시간	80,000	예체능	96,500	
	오후피아노(체르니 I, 주5회)	어린이, 청소년	주5회/1시간	85,000	예체능	96,500	
	오후피아노(체르니 II, 주5회)	어린이, 청소년	주5회/1시간	90,000	예체능	96,500	
	오후피아노(바이엘, 주3회)	어린이, 청소년	주3회/1시간	55,000	예체능	70,000	
	오후피아노(체르니 I, 주3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60,000	예체능	70,000	
	오후피아노(체르니 II, 주3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65,000	예체능	70,000	
	오후피아노(체르니 II, 주3회, 성인)	성인	주3회/1시간	70,000	예체능	77,000	
	오후피아노(바이엘,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5,000	예체능	55,000	
	오후피아노(체르니 I,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50,000	예체능	55,000	
	오후피아노(체르니 II,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55,000	예체능	55,000	
	오후피아노(체르니 II, 주2회, 성인)	성인	주2회/1시간	60,000	예체능	61,000	
	토요피아노(바이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토요피아노(체르니 I)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4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토요피아노(체르니 II)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45,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일요피아노(바이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일요피아노(체르니)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4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주말피아노(바이엘,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50,000	예체능	55,000	
	주말피아노(체르니 I,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55,000	예체능	55,000	
	주말피아노(체르니 II,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6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토요제과제빵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1시간	5,5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교육문화사업	플라워일일체험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1시간	5,5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부모와함께하는파티쉐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1시간	5,5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일일특강1	어린이, 청소년	1회/2시간	1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일일특강2	어린이, 청소년	1회/1시간	7,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청소년방송댄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예체능	35,000	
	신나는 음악즐거하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예체능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인라인 스케이트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배드민턴(주1회)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배드민턴(주2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탁구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키즈벨리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실내인라인스케이트(소수정예)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5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키즈발레	어린이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리듬체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스케이트보드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5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라인댄스(주2회)	성인	주2회/1시간	3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43,000	
	성인발레	성인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9,000	
	융합과학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교과서실험과학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2,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과학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로봇과 과학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사회교과서정복하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역사·지리·세계사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연대표(한국사)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5,200	
	제과제빵사따라잡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보드게임(체스, 바둑)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매직 쇼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교육문화사업	스피치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종이접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예체능	35,000	
	북아트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3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5,200	
	논술특강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공예교실(캘리, 플라워, 가죽)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5,000	예체능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배드민턴(주2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탁구교실(주1회)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음악줄넘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예체능	35,000	
	미술 아카데미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55,000	예체능	56,000	
	피아노집중지도(바이엘,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5,000	예체능	55,000	
	피아노집중지도(체르니 I,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50,000	예체능	55,000	
	피아노집중지도(체르니 II, 주2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55,000	예체능	55,000	
	피아노집중지도(바이엘, 주3회)	어린이, 청소년	주3회/1시간	55,000	예체능	70,000	
	피아노집중지도(체르니 I, 주3회)	어린이, 청소년	주3회/1시간	60,000	예체능	70,000	
	피아노집중지도(체르니 II, 주3회)	어린이, 청소년	주3회/1시간	65,000	예체능	70,000	
	일일특강1	어린이, 청소년	1회/2시간	1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일일특강2	어린이, 청소년	1회/2시간	7,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난타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5,000	예체능	35,000	
	드론항공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쟁쟁의큐브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독서미술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삼국지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5,200	
	배드민턴(주1회)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드럼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5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방송댄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예체능	35,000	
	경필쓰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천연제품만들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40,000	취미·교양 문화 등	61,000	
	우쿨렐레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창의코딩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기타	인근 공공유사시설	
	신문으로놀자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발레, 요가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점토미술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드림교실	성인	주1회/1시간	50,000	예체능(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성인영어회화	성인	주1회/1시간	30,000	외국어	39,000	
	성인일본어	성인	주1회/2시간	45,000	외국어	56,000	
	홈패션(공예)	성인	주1회/2시간	25,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캘리그래피	성인	주1회/2시간	35,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전통민화(초급)	성인	주1회/2시간	40,000	예체능	61,000	
	전통민화(중급)	성인	주1회/2시간	50,000	예체능	61,000	
	보태니컬 꽃그림그리기	성인	주1회/2시간	40,000	예체능	61,000	
	플로리스트자격증반	성인	주1회/2시간	35,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손뜨개	성인	주1회/2시간	2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성인미술	성인	주1회/2시간	40,000	예체능	61,000	신규
	가족공예	성인	주1회/2시간	3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신규
	오전 맞춤형방학 참가비1	어린이, 청소년	주5회/2시간	13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신규
	오전 맞춤형방학 참가비2	어린이, 청소년	주5회/2시간	14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신규
	맞춤형패키지 참가비1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5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신규
	맞춤형패키지 참가비2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7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신규
목적사업	광장유스오케스트라	청소년	주1회/3시간	7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광장유스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청소년	주1회/3시간	10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광장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5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시골역사한마당	어린이, 청소년	1회/8시간	3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평생교육실습지도	대학생, 성인	20회/8시간	5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교육문화축제"시골데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1시간	3,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평생학습동아리	청소년	1회/1시간	5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목적사업	시골청소년동아리	청소년	1인/1년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대학생 실습지도	청소년	1인/학기	5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도심 속 별빛산책	유아	1회/2시간	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청소년	1회/2시간	6,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성인	1회/2시간	7,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단체 별자리 여행	유아	1회/2시간	4,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청소년	1회/2시간	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성인	1회/2시간	7,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우리는 천문학자	청소년	1회/2시간	6,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Fly to the moon	유아, 청소년, 성인	1회/2시간	7,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테마가 있는 천문학	청소년	1회/2시간	8,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시끌벅적 과학축제1	유아, 청소년, 성인	1회/1시간	3,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시끌벅적 과학축제2	유아, 청소년, 성인	1회/2시간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천문과학지식봉사동아리1	청소년	한달/2회	10,000	청소년목적사업	가입비	
	천문과학지식봉사동아리2	청소년	한달/2회	70,000	청소년목적사업	활동비	
	천문천체관측동아리1	청소년	한달/2회	10,000	청소년목적사업	가입비	
	천문천체관측동아리2	청소년	한달/2회	70,000	청소년목적사업	활동비	
	창의과학 아카데미	청소년	1회/3시간	4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별난탐사단	청소년	1회/2시간	3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기관연계사업	유아, 청소년, 성인	1회/2시간	20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천문과학시설대관	유아, 청소년, 성인	3시간	500,000	시설대관	500,000	
	우주사색	청소년, 성인	3회/3시간	5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별지시기	청소년, 성인	1회/2시간	8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가족이 만드는 별잔치	유아, 청소년, 성인	1회/2시간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대학생천문동아리연합	청소년	1회/2시간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1	청소년	회/2시간	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2	청소년	회/2시간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3	청소년	회/2시간	11,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4	청소년	회/2시간	12,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5	청소년	회/2시간	12,5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6	청소년	회/2시간	13,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목적사업	학교연계 직업체험 7	청소년	회/2시간	14,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8	청소년	회/2시간	1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9	청소년	회/2시간	16,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10	청소년	회/2시간	17,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학교연계 직업체험 11	청소년	회/2시간	2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동대문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사업	댄스스포츠	성인	주2회/1시간	35,000 37,000	예체능	61,000	
	스윙댄스	성인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48,000 40,000	예체능	77,000 70,000	
			주2회/1시간	35,000 37,000 30,000		61,000 55,000	
	에어로빅	성인	주5회/1시간	50,000 53,000	예체능	106,000	
	아침요가	성인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48,000 40,000	예체능	77,000 70,000	
	저녁요가	성인 청소년	주2회/1시간	35,000 37,000 30,000	예체능	61,000 55,000	
	모닝필라테스	성인, 청소년	주2회/1시간	35,000 37,000 30,000	예체능	61,000 55,000	
	저녁필라테스	성인,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48,000 40,000	예체능	77,000 70,000	
	요리교실	성인, 청소년	주1회/1시간	28,000 22,000	취미/교양	28,000 22,000	
예능정서함양	유아발레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	37,000 40,000	예체능	55,000	
	국어논술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22,000	
	창의미술교실	유아,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요리쿡조리쿡	유아,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22,000	
수영	아침수영	성 인 초/중/고	주5회/1시간	81,000 7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1,000 72,000	
	자유정액	성 인 초/중/고	주5회/1시간	72,000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7,500 50,000	
	자유정액	성 인 대학생 초/중/고	주3회/1시간	47,000 3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2,500 30,000	
	저녁수영	성 인 초/중/고	주3회/1시간	56,000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50,000	
	오전수영	성 인 대학생	주3회/1시간	5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어린이수영	초/중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주2회/1시간	37,000		37,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단기속성	어린이	주2회/50분	12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유사시설 준용	JG전곡센터 220,000원 승인수영장 150,000원
			주1회/100분	130,000			
	자유수영	어린이	1회/2시간	3,500	체육시설 사용료	3,600	동대문복지관 어린이 4,000 청소년 4,000 성 인 5,000 JG전곡센터 어린이 5,000 청소년 5,000 성 인 8,000
		초/중/고	1회/2시간	4,000		5,000	
		성 인 대학생	1회/2시간	4,500		8,600	
수영 프로그램	아쿠아로빅	성 인 대학생	주3회 1시간	5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주2회 1시간	43,000		43,000	
	수중관절재활	성 인 대학생	주3회 1시간	5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존수영	초등학생	1회 1시간	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25,000	
	지역단체	초/중/고	1회 1시간	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25,000	
방학특강	수 영 소그룹	초/중	8회 1시간	8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유사시설 준용	JG전곡센터 110,000원 개운산센터 90,000원
대관	소극장	성 인	평일 주말	250,000 325,000	시설대관 150석	250,000 325,000	
		청소년	평일 주말	50,000 65,000	시설대관 150석	250,000 325,000	
	체육관	성 인	130분	70,000 90,000	시설대관	250,000 325,000	
		청소년클럽 /단체	130분	30,000 50,000	시설대관	250,000 325,000	
		동아리	130분	30,000	시설대관	250,000 325,000	
생활 체육사업	주말 야구교실	초/중/고	주1회/월4회 회당2시간	100,000	예체능	유사시설 준용	동대문유소년 노원유소년 2시간 120,000 3시간 150,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평일 야구교실	초/중/고	주2회/월8회 회당/2시간	120,000	예체능	유사시설 준용	동대문유소년 노원유소년 2시간 200,000 3시간 300,000
	평일 야구교실	성 인 대학생	주3회/월12회 회당/2시간	150,000	예체능	유사시설 준용	숨고레슨 12회 480,000
	평일 야구교실	성 인 대학생	주2회/월8회 회당/2시간	120,000	예체능		08회 320,000
	야구 일일입장	성 인 청소년	1회 x 100분	7,000 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800 6,400	
	야구기록원 양성교실	성 인 고3/대학생	4주/8회	150,000 200,000	자격취득	유사시설비교	대한심판아카데미 200,000
청소년 목적사업	진로체험 꿈담기	청소년	1회	13,000	청소년사업	-	
	드림서틀 대학탐방	청소년	1회	13,000	청소년사업	-	
	신나go 즐겁go	청소년	1회	70,000	청소년사업	-	
	문화동아리	청소년 대학생	1회	50,000	청소년사업	-	
청소년 목적사업	청량수환경지킴이	청소년	연1회	10,000	청소년사업	-	
	학습멘토링 봉사동아리 해피#	청소년	연1회	20,000	청소년사업	-	
	4차산업동아리 위잉위잉	청소년	연1회	10,000	청소년사업	-	
	푸드 봉사동아리	청소년	연1회	10,000	청소년사업	-	
	웹툰동아리 투니유스	청소년	연1회	10,000	청소년사업	-	
	영상동아리 Y_MOVIE	청소년	연1회	10,000	청소년사업	-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연간	6,000~20,000	청소년사업	-	
	상(想)상(像) 드림(Dream)	청소년	연간	6,000~16,000	청소년사업	-	
	학교연계 동동TEEN!	청소년	연간	45,000	청소년사업	-	
	리더십캠프 비스켓	청소년	연간	10,000	청소년사업	-	
	대학연계 사업	청소년	1회/4주	100,000	청소년사업	-	

중랑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시설대관	강당	성인	3시간	200,000	시설이용료	250,000	
		청소년		100,000			
	강의실	성인	3시간	100,000	시설이용료	유사시설준용	-
		청소년		50,000			
	미디어실	전체	3시간	110,000	시설이용료	유사시설준용	-
	댄스연습실	성인	3시간	50,000	시설이용료	유사시설준용	
		성인	1시간	16,500			
		청소년	1시간	5,500			
	냉난방비	성인	1시간	15,000	시설이용료	유사시설준용	
교육문화 사업	기자재	전체	1회	20,000	시설이용료	유사시설준용	
	토, 일, 공휴일 할증	성인	토, 일, 공휴일	30%할증	시설사용료	사용료 할증	
		청소년		-			
	청소년 드럼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3,000	예체능	35,0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
	드럼교실	성인	주1회/1시간	37,000	예체능	39,000	예체능/주1회/성인 상한 39,000
	색소폰교실	성인	주1회/1시간	37,000	예체능	39,000	예체능/주1회/성인 상한 39,000
	키즈발레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
	성인발레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예체능/주1회/성인 상한 39,000
	쥬바댄스	성인	주3회/1시간	50,000	예체능	77,000	예체능/주3회/성인 상한 77,000
	요가교실	성인	주2회/1시간	50,000	예체능	61,000	예체능/주3회/성인 상한 61,000
	어린이 바둑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초·중·고 상한 22,000
	이야기 주머니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초·중·고 상한 22,000
	쓱쓱 논리 글쓰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초·중·고 상한 22,000
	우주를 아는 체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초·중·고 상한 22,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미술 그리기 나라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초·중·고 상한 22,000
	그림책은 내친구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초·중·고 상한 22,000
	꽃꽂이교실	성인	주1회/1시간	17,500	취미·교양 문화	28,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성인 상한 28,000
교육문화 사업	생활도자기교실	성인	주1회/1시간	22,500	취미·교양 문화	28,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성인 상한 28,000
	타로카드	성인	주1회/1시간	28,000	취미·교양 문화	28,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성인 상한 28,000
	바리스타	성인	주1회/1시간	28,000	취미·교양 문화	28,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성인 상한 28,000
	민화그리기	성인	주1회/1시간	22,500	취미·교양 문화	28,000	취미·교양문화/ 주1회/성인 상한 28,000
	목공교실 (4차산업)	성인	주1회/2시간	105,000	기타(5. 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유사시설준용	헤시더우드 120,000 나무사랑방 116,000
생활체육	헬스	청소년	1개월	33,000	시설사용료	51,000	헬스장/주6회/초 ·중·고 상한 51,000
			2개월	66,000	시설사용료	102,000	헬스장/주6회/초 ·중·고 상한 102,000
			6개월	198,000	시설사용료	306,000	헬스장/주6회/초 ·중·고 상한 306,000
	헬스	성인	1개월	40,000	시설사용료	75,000	헬스장/주6회/성 인 상한 75,000
			2개월	80,000	시설사용료	150,000	헬스장/주6회/성 인 상한 150,000
			6개월	240,000	시설사용료	450,000	헬스장/주6회/성 인 상한 450,000
	헬스	개인레슨(PT)	1개월(10회)	200,000	프로그램료	유사시설준용	중랑구민체육센터 360,000 중랑문화체육센터 360,000
		사물함	1개월	3,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중랑구민체육센터 3,000 중랑문화체육관 3,000
생활체육	골프	청소년	1개월	60,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언남문화체육센터 88,000 동작구민체육센터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110,000
			2개월	120,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언남문화체육센터 176,000 동작구민체육센터 217,800
			6개월	360,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언남문화체육센터 528,000 동작구민체육센터 653,400
		성인	1개월	90,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언남문화체육센터 100,000 동작구민체육센터 130,000
			2개월	180,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언남문화체육센터 200,000 동작구민체육센터 260,000
			6개월	540,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언남문화체육센터 660,000 동작구민체육센터 780,000
생활체육	골프	개인레슨(PT)	1개월(10회)	80,000	프로그램료	유사시설준용	이문체육문화센터 300,000 광진구민체육센터 180,000
		사물함	1개월	5,000	시설사용료	유사시설준용	언남문화체육센터 9,000 동작구민체육센터 9,000
목적사업	학교연계 협력학교 운영	초,중,고	연12회	무료	프로그램료		
	학교축제 지원	초,중,고	연5회	1,200,000	프로그램료		
	방과 후 활동지원	초,중,고	연100회	100,000	프로그램료		
	자유학년제지원	중	연10회	100,000	프로그램료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초,중,고	연100회	100,000	프로그램료		
	굿리더	초,중,고	연10회	300,000	프로그램료		
	중3, 고3 전환기 청소년프로그램	중,고	연3회	3,000	프로그램료		
	학생봉사활동지원	초,중,고	연1회	무료	프로그램료		
	틈새학교지원	초,중,고	연1회	10,000	프로그램료		
	찾아가는 썬센터	초 중 고	연5회	무료	프로그램료		
	오늘도 건강썬	초 중 고	연12회	무료	프로그램료		
	찾아가는 진로체험	초,중,고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뚝딱이창의공작소 진로체험	초,중,고	연1회	무료	프로그램료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제로 프로젝트	초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창의동아리	초,중,고	연10회	30,000	프로그램료		
	요리조리 동아리	초,중,고	연10회	30,000	프로그램료		
	핸드메이드 봉사동아리	중,고	연20회	30,000	프로그램료		
	청소년바리스타 동아리	중,고	연10회	30,000	프로그램료		
	아마라스동아리	중,고	연15회	30,000	프로그램료		
	라운 동아리	초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너나들이 동아리	초,중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상상믹스 동아리	초,중,고	연10회	30,000	프로그램료		
	청소년운영위원회	초,중,고,대	연15회	무료	프로그램료		
	글로벌청소년위원회	중,고	연20회	30,000	프로그램료		
	청소년 문화예술단	초,중,고	연20회	50,000	프로그램료		
	청소년 도서문화 동아리	초,중,고	연10회	30,000	프로그램료		
	청소년기자단 특(talk)특(talk)	초,중,고	연10회	30,000	프로그램료		
	제23회 서울청소년 경연대회	초 중 고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나라사랑청소년축제	초,중,고,일반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똑딱이메이커축제	초,중,고,일반	연1회	10,000	프로그램료		
	서울 YOUTH EXPO	초,중,고,일반	연1회	무료	프로그램료		
	청소년 드림(Dream)페스티벌	초,중,고,대	연1회	무료	프로그램료		
	스팀교육	초,중,고	연5회	8,000	프로그램료		
목적사업	댄스동아리	중, 고	연 10회	30,000	프로그램료	-	-
	똑딱이TV	초, 중, 고, 일반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행복한 미래학교	초,중,고	연10회	10,000	프로그램료	-	-
	중랑사랑교실	초,중,고	월2회	30,000	프로그램료	-	-
	특성화사업 똑딱이 창의공작소	초,중,고,일반	연1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야! 너도 코딩 할 수 있어!	초, 중	연1회	5,000	프로그램료	-	-
	연택트 장학퀴즈	초,중,고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고드림스포츠클럽	고	연61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인성역사탐방기	초,중,고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된다! 봉사활동마스터	초,중,고	연6회	무료	프로그램료	-	-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우리가족 농장체험	초,중,고	연9회	100,000	프로그램료	-	-
	우리가족 텃밭 나누기	초,중,고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우리동네 환경 지킴이	초,중,고	연5회	무료	프로그램료	-	-
	함께나누고 행복굽하기	초,중,고	연2회	5,000	프로그램료	-	-
	외국어로 놀자!	중·고	연8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장애이해체험활동 '다름'	중,고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온라인 장애인식 교육	초,중,고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가족애(愛) 시간	초,중,고,대	연1회	10,000	프로그램료	-	-
	एको프렌들리	초,중,고	연4회	5,000	프로그램료	-	-
	2050 우리를 위해	초,중,고	연4회	무료	프로그램료	-	-
	탄소중립리더	초,중,고	연10회	10,000	프로그램료	-	-
	푸른상상	초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온라인 게임대회	초, 중, 고	연5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야 너도 봉사활동 할수있어	초, 중, 고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안전 짱 지킴이	초, 중, 고	연5회	무료	프로그램료	-	-
	톡톡튀는 요리교실	초,중,고	연1회	10,000	프로그램료	-	-
	뜨물뜨물 도자기교실	초,중,고	연1회	10,000	프로그램료	-	-
	꼬물꼬물 쿠키메이커	중	연1회	8,000	프로그램료	-	-
	달그락바리스타교실	초,중,고	연1회	10,000	프로그램료	-	-
	똑딱이창의공작소-목공교실	중	연1회	8,000	프로그램료	-	-
	꿈나무 골프스쿨	초	연85회	60,000	프로그램료	-	-
	썩튜브	초,중,고,대	연6회	5,000	프로그램료	-	-
목적사업	크레이트	고, 대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날씨박사	초, 중, 고	연6회	5,000	프로그램료	-	-
	청소년인권 바로알기	초,중,고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세상을 바꾸는 우리들의 외침	초,중,고,대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열여덟살의 선택	초,중,고,대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Re' start 행복한 센터	초,중,고,대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워크정-WORK청소년	초, 중, 고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어깨동무	초, 중, 고	연50회	무료	프로그램료		
	마을을 달리는 지하철	초,중,고,대	연7회	무료	프로그램료	-	-
	PBL(골목홍보 프로젝트)	초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즐거운 마을연계	초,중,고,대	연4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찾아가는 안전지대	초,중,고,대	연4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청소년 자립학교	초,중,고,대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우리학교 인문학콘서트	초,중,고	연3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시우터	대	연2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초,중,고,대	연12회	30,000	프로그램료	-	-
	경이로운 도전	초	연1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대학생 실습지도	대	연3회	100,000	프로그램료	-	-
	내가 바로 독서왕!	초	연1회	무료	프로그램료	-	-
	방과후아카데미 '썸스쿨프렌드'	초	연23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고드림학교(위탁형)	고	연19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청소년전용공간 유스페이스	초,중,고	연350회	무료	프로그램료	-	-
	탐나는군	초,중,고	연4회	무료	프로그램료	-	-
	BOOK소리	초,중,고	연3회	무료	프로그램료		
	동화 속 젠더이야기	초,중,고	연5회	무료	프로그램료	-	-
상담사업	집단상담	초,중,고	연120회	60,000	프로그램료	-	-
	미술치료	초,중,고	연100회	30,000	프로그램료	-	-
	찾아가는 청소년디톡스	초,중,고,성인	연2회	무료	프로그램료	-	-

망우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대관사업	소극장	-	3시간	250,000	시설대관	250,000	
	체육관	-	1시간	40,000	시설대관	-	평일
	체육관	-	1시간	50,000	시설대관	-	주말
	프로그램실	-	1시간	30,000	시설대관	-	
수영장 시설사용	평일어린이자유수영	초,중,고	1시간	2,500	시설사용료	2,500	
	주말어린이자유수영	초,중,고	2시간	4,000	시설사용료	5,000	
	평일성인자유수영	성인	1시간	3,909	시설사용료	4,300	
	주말성인자유수영	성인	2시간	5,000	시설사용료	8,600	
생활체육	유아수영	유아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어린이수영	어린이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조기수영	성인	주3회/1시간	56,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조기청소년수영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성인수영(월수금)	성인	주3회/1시간	56,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성인수영(화목토)	성인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성인수영 월수금 패키지(주간)	성인	주3회/1시간	53,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성인수영 화목토 패키지(주간)	성인	주3회/1시간	43,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아간직장인수영	성인	주5회/1시간	78,000	체육시설이용수업	81,000	
	아간청소년수영	청소년	주6회/1시간	60,500	체육시설이용수업	72,000	
	실버수영	성인	주3회/1시간	38,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자모수영	유아	주3회/1시간	6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106,000	성인+유아
	아쿠아로빅	성인	주3회/1시간	56,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월자유수영	성인	주5회/1시간	66,000	체육시설이용수업	81,000	
	수영 소수정예	누구나	주2회/1시간	100,000	예체능그룹활동	-	
			주3회/1시간	140,000	예체능그룹활동		-
			주1회/1시간	60,000	예체능그룹활동		56,000
	초등학생(수영선수반)	초등학생 이상	주5회/1시간	90,000	예체능그룹활동		
	수영 자격증 취득양성과정	성인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헬스일반	성인	주6회/1시간	5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93,000	
	헬스청소년	청소년	주6회/1시간	4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80,000	
	헬스패키지	성인	주6회/1시간	41,000	체육시설이용수업	93,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요가	성인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요가	청소년	주3회/1시간	4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에어로빅	성인	주5회/1시간	5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81,000	
생활체육	줌바댄스	성인	주2회/1시간	38,000	체육시설이용수업	43,000	
	줌바댄스	청소년	주2회/1시간	3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37,000	
	파워로빅	청소년	주3회/1시간	4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파워로빅	성인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6,000	
	성인발리 댄스	성인	주2회/1시간	4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43,000	
	어린이발레	유아	주2회/1시간	37,000	체육시설이용수업	37,000	
		초등학생					
		고급					
	키즈 발리댄스	초등학생	주2회/1시간	37,000	체육시설이용수업	37,000	
	키크는 농구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주말농구(일요농구)	청소년	주1회/2시간	3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37,000	
	주말농구(토요농구)	청소년	주1회/1시간	25,000	체육시설이용수업	25,000	
	주말유아축구	6~7세	주1회/1시간	3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25,000	인근구민체육센터2개소 비교
	k pop댄스	청소년	주1회/1시간	25,000	예체능	25,000	
	주말축구	어린이	주1회/2시간	37,000	체육시설이용수업	37,000	
	방탁 수영	청소년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방탁 농구	청소년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이용수업	50,000	
	방탁 축구	청소년	주2회/1시간	37,000	체육시설이용수업	37,000	
	방탁 음악줄넘기	청소년	주2회/1시간	37,000	예체능	37,000	
	방탁 방송댄스	청소년	주2회/1시간	37,000	예체능	37,000	
	생존수영	청소년	6회/1시간	8,300	체육시설이용수업	-	교육청 예산
	스키캠프	청소년	1회/1일	150,000	청소년사업	-	
아기 스포츠단	5~7세 교육비	5~7세	1개월	480,000			주5회
	형제10%교육비	5~7세	1개월	432,000			주5회
	5~7세 종일반	5~7세	1개월	160,000			주5회
	1일종일반(시간당)	5~7세	1회	5,000			-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종일반 간식비	5~7세	1회	2,000			-
	특강비	5~7세	1개월	35,000			월1회
	교재비	5~7세	1개월	90,000			월1회
	급식비	5~7세	1개월	70,000			월1회
	체험비	5~7세	1개월	30,000			월1회
	입단물품비	5~7세	1회	220,000			년1회
	운영비	5~7세	1회	30,000			년1회
	앨범비	5~7세	1회	80,000			년1회
	진급비	5~7세	1회	30,000			년1회
	의상비	5~7세	1회	30,000			년1회
	센터에서 공부하자_원어민영어	청소년	1개월	45,000	외국어	45,000	주2회
문화체험활동사업	센터에서 공부하자_주산암산	초등(8~12세)	1개월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주1회
	센터에서 공부하자_과학실험실	초등	1개월	33,000	기타	-	주1회 (마포청소년센터 35,000원/ 목동청소년센터 40,000원)
	망우뮤직아카데미_월수금피아노(초급)	청소년	1개월	60,000	예체능	70,000	주3회
	망우뮤직아카데미_월수금피아노(중고급)	청소년	1개월	65,000	예체능	70,000	주3회
	망우뮤직아카데미_화목피아노(초급)	청소년	1개월	50,000	예체능	55,000	주2회
	망우뮤직아카데미_화목피아노(중고급)	청소년	1개월	55,000	예체능	55,000	주2회
	망우뮤직아카데미_토요피아노	청소년	1개월	30,000	예체능	35,000	주1회
	드로잉교실_영재미술(초등)	청소년	1개월	32,000	예체능	35,000	주1회
	드로잉교실_중학영재미술	청소년	1개월	35,000	예체능	35,000	주1회
	놀라운토요일_독서토론논술	청소년	1개월	30,000	기타	-	주1회 (문래청소년센터 30,000원/ 서대문청소년센터 40,000원)
	놀라운토요일_토요플룻	청소년	1개월	30,000	예체능	35,000	주1회
	놀라운토요일_지능개발바둑	청소년	1개월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주1회
	놀라운토요일_한국사문제풀이반	청소년	1개월	30,000	기타	-	주1회 (서대문청소년센터 30,000원/ 노원청소년센터 30,000원)
	놀라운토요일_생각하는한국사	청소년	1개월	30,000	기타	-	주1회 (노원청소년센터 30,000원/ 목동청소년센터 40,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방학특강_외국어체험	청소년	8회	45,000	청소년사업	-	주2회
	방학특강_취미교양체험	청소년	4회	22,000	청소년사업	-	주1회
	단기특강_코딩	청소년	1회	35,000	청소년사업	-	주1회 (금천청소년센터4 0,000원/ 구로청소년센터3 5,000원)
	단기특강_공예	청소년	1회	35,000	청소년사업	-	주1회
	SNOW&ICE패키지	청소년	2주	170,000	청소년사업	-	연1회
	COOL&HOT패키지	청소년	2주	170,000	청소년사업	-	연1회
	청소년창업동아리 '파스타'	청소년	1년	20,000	청소년사업	-	
마·적·사·업	청소년체인지메이커활동 'NEW 파일럿'	청소년	1년	20,000	청소년사업	-	
	미디어동아리 '헤이데이'	청소년	1년	20,000	청소년사업	-	
	청소년동아리ENT '정규'	청소년	1년	50,000	청소년사업	-	
	청소년동아리ENT '일일'	청소년	2시간	10,000	청소년사업	-	
	청소년동아리ENT '일일' (밴드)	청소년	2시간	20,000	청소년사업	-	
	대학실습	청소년	1개월	100,000	청소년사업	-	
목적사업	1박2일 청소년캠프 '캠성캠핑'	청소년	1회	25,000	청소년사업	-	
	사회봉사활동 '스타트업'	청소년	1시간	7,000	청소년사업	-	
	망고 Youth 페스티벌	청소년 및 지역주민	1회	1,000	청소년사업	-	
	망고 Youth 페스티벌	청소년 및 지역주민	1회	2,000	청소년사업	-	
	테마가있는청소년창업카페 '망고c afe'	청소년 및 지역주민	1회	4,000	청소년사업	-	
	창의클럽데이 (재료비없는 경우)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창의클럽데이 (재료비있는 경우)	청소년	1회	30,000	청소년사업	-	
	JOB A DREAM 망고업진로특강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JOB A DREAM 망고진로체험/꿈꾸는 동아리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	
	JOB A DREAM, 창업돌보기	청소년	1회	25,000	청소년사업	-	
상담사업	학교연계심리검사	청소년	1회	230,000	상담	-	-
	슬기로운학교탐구생활	청소년	1회	50,000	상담	-	-
	슬기로운내맘탐구생활	청소년	1회	50,000	상담	-	-
	슬기로운ON택트생활	청소년	1회	50,000	상담	-	-
	외부연계상담	청소년	1회	45,000	상담	-	-
	놀이치료	아동	1회	45,000	상담	-	-
	미술치료	아동,청소년,성인	1회	45,000	상담	-	-
	언어치료	아동,청소년,성인	1회	45,000	상담	-	-
	인지치료	아동청소년	1회	45,000	상담	-	-
	성인상담	성인	1회	45,000	상담	-	-
	종합심리검사	아동,청소년,성인	1회	230,000	심리검사	-	-
	MMPI-2,A	성인청소년	1회	20,000	심리검사	-	-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SCT	아동, 청소년, 성인	1회	10,000	심리검사	-	-
	HTP, KFD	아동, 청소년, 성인	1회	10,000	심리검사	-	-
	지능검사(DSM-IV)	아동, 청소년, 성인	1회	130,000	심리검사	-	-
	HOLLAND(진로탐색)	청소년, 성인	1회	20,000	심리검사	-	-
	MBTI(성격유형검사)	청소년, 성인	1회	20,000	심리검사	-	-
특별지원사업	메이커 동아리IF	청소년	1년	20,000	청소년사업	-	1년
	메이킹 붓	청소년	8회	50,000	청소년사업	-	1회
	M-School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	1회
	메이커 아카데미	청소년	5회	100,000	청소년사업	-	1회
	메이커 캠프	청소년	1회	50,000	청소년사업	-	1회
	온&오프 토요메이커 스쿨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	1회
	온&오프 가족 메이커데이	전체	1회	10,000	청소년사업	-	1회
	3D프린터 장비사용	청소년	6시간이내	5,000	청소년사업	-	1회
	3D프린터 장비사용	청소년	6시간이상	10,000	청소년사업	-	1회
	3D프린터 장비사용	청소년	12시간 이상	15,000	청소년사업	-	1회
	레이저커터 사용료	청소년	2시간	2,000	청소년사업	-	1회
	3D펜 사용료	청소년	1시간	2,000	청소년사업	-	1회
	비닐커터 사용료	청소년	2시간	2,000	청소년사업	-	1회
	장비교육참가비 _3D프린터, 레이저커터	청소년	2시간	20,000	청소년사업	-	1회
특별지원사업	장비교육 참가비 -3D펜	청소년	1시간	2,000	청소년사업	-	1회
	유스메이커그룹 참가비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연중
	청소년비즈쿨	청소년	1회	70,000	청소년사업	-	7시간기준
	3D모델링 출력비	청소년	1회	150,000	청소년사업	-	1회(작품크기/ 출력수량에 따라 상이)
	M-KIT	청소년	1회	50,000	청소년사업	-	1개당
	서울유스데이	청소년	1회	1,000	청소년사업	-	
	서울유스데이 망고컵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찾아가는 센터 -머선일이고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기타	사물함이용료(대)	-	1개월	5,000	-	-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5,000원/ 온조대왕문화체 육관 6,000원
	사물함이용료(소)	-	1개월	3,000	-	-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5,000원/ 온조대왕문화체 육관 6,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회원카드발급	-	1회	2,000	-	-	-
	키 분실료	-	1회	10,000	-	-	-
	장비사용료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	장비별상이
	장비교육1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	2시간
	장비교육2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2시간
	자유공작실패키지	청소년	1회	50,000	청소년사업	-	3개월
	m-kit판매	아동,청소년,성인	1회	5,000	청소년사업	-	1개기준
	레인보우운영지원단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1년
	메이커캠프	청소년	1회	150,000	청소년사업	-	2박 3일
	웨어러블 시즌2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5회

성북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시설 사용료 수입	공연장, 강당	청소년 성 인	1회 (3시간)	247,000	시설대관	250,000	주말
				195,000			주말
				190,000			평일
				150,000			평일
			1회(1시간)	20,000		25,000	추가(시간당)
교육 문화사업	일일자유수영 (토~일)	어린이 청소년 성 인	1회	3,000 5,000 6,000	시설사용료 (수영장)	3,600 5,000 8,600	2시간
	집중피아노	청소년 성 인	주5회	85,000 90,000	예체능	96,500 106,000	1시간
	저녁피아노	청소년 성 인	주2회	55,000 60,000	예체능	55,000 61,000	“
	쇼팽	청소년 성 인	주2회	50,000 55,000	예체능	55,000 61,000	“
	베토벤	청소년 성 인	주3회	65,000 70,000	예체능	70,000 77,000	“
	토요피아노	청소년 성 인	주1회	50,000 55,000	예체능	52,500 58,500	90분
	드 럼	청소년 성 인	주1회	50,000 60,000	예체능	55,000 61,000	2시간
	통기타	청소년 성 인	주1회	45,000 55,000	예체능	52,500 58,500	90분
	바이올린	청소년 성 인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39,000	1시간
	칼림바	청소년 성 인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39,000	1시간
	어린이 동요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39,000	1시간
	토탈공예	청소년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1시간
	종이접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1시간
	미술수행평가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1시간
	흥익창의아트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1시간
	바둑&체스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교양문화 등	33,000	90분
	요리교실 '내가 요리사'	청소년	주1회	35,000	취미,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교당드론	청소년	주1회	40,000	취미,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드론축구	청소년	주1회	40,000	취미,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목공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교양문화 등	33,000	90분
	마술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교양문화 등	33,000	90분
	취미개발반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교양문화 등	33,000	90분
	바리스타	청소년 성 인	주2회	60,000 80,000	취미,교양문화 등	99,000 117,000	3시간
	홈카페	청소년 성 인	주1회	60,000 80,000	취미,교양문화 등	66,000 84,000	3시간
	요리교실	청소년 성 인	주1회	50,000 60,000	취미,교양문화 등	66,000 84,000	3시간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디지털카페 마스터 창업반	청소년 성 인	주1회	50,000 60,000	취미, 교양문화 등	66,000 84,000	3시간
	창의독서논술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등	33,000	90분
	두근두근역사이야기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등	33,000	90분
	생명과학 '동식물은 내 친구'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등	33,000	90분
	주산수리셈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등	33,000	90분
	한자급수(한자속독)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등	33,000	90분
	창의사고력수학교실 '수학아 놀자 '	청소년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창의사고력국어교실 '책이랑 보드랑 '	청소년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퍼즐한국사	청소년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기타 문화 행사	한눈에 세계사	청소년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한국사 자격증반	청소년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등	44,000	2시간
	놀이 파닉스	청소년	주2회	80,000	외국어	90,000	2시간
	문법정복	청소년	주2회	80,000	외국어	90,000	2시간
	SNPE	청소년 성인	주3회	50,000 55,000	예체능	50,000 56,000	70,000 77,000
	스트레칭 요가	청소년 성인	주2회	35,000 40,000	예체능	37,000 43,000	70,000 77,000
	필라테스	청소년 성인	주2회	35,000 40,000	예체능	37,000 43,000	70,000 77,000
	청소년 농구	청소년	주1회	25,000	예체능	35,000	1시간
생활 체육 행사	성인수영	성인	주3회	5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1시간
	성인소그룹수영	성인	주2회	99,000	예체능	유사시설준용	"
	소그룹수영	청소년	주3회	135,000	예체능	유사시설준용	"
	소그룹수영	청소년	주2회	90,000	예체능	유사시설준용	"
	소그룹수영	청소년	주1회	50,000	예체능	유사시설준용	"
	방학특강 (소그룹수영)	청소년	주2회	90,000	예체능	유사시설준용	"
	학교연계 생존수영	청소년	1회	6,000~ 7,000	예체능	유사시설준용	"
	지역연계	청소년	1회	6,000	예체능	유사시설준용	"
목적사업	진로DAY	청소년	1회	8,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1회			
				1회			
				1회			
				1회			
	예비지도자양성과정	청소년	1회	100,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대안교실 '미.우.새'	청소년	1회/1시간	7,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	1회	30,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그린라이트를 켜라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청소년도시농부	청소년	6회	50,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스마트유스센터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우리 다같이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SB체험관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유사시설준용	
	1318 YOP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10,000			
				20,000			
	드론축구단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드론축구장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드론축구대회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드론클래스	청소년	1회	25,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스스로방학	청소년	1달 (1일 6시간)	300,000	청소년목적사업	실비	
상담지도사업	성북유스 안전망	청소년 성인	1회	5,000	상담	유사시설준용	1시간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60,000			
				120,000			
기타사업 수입	식당운영	성 인 청소년	1회	2,200	시설대관	유사시설준용	
				4,300			
				5,000			
				10,000			

강북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시설대관사업	채움빌 4인실(장애인실)	청소년 성인	1실/1박	60,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채움빌 8인실	청소년 성인	1실/1박	100,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채움빌 20인실	청소년 성인	1인/1박	10,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채움빌 세미나실 기본대관	청소년 성인	1실/3시간	220,000	시설대관	250,000	인근 유사시설 비교
	채움빌 세미나실 추가대관	청소년 성인	1시간	22,000	시설대관	25,000	인근 유사시설 비교
	객실스튜디오 기본대관	일반	기본 3시간	20,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객실스튜디오 추가대관	일반	추가 1시간	5,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객실스튜디오 기본대관	청소년	기본 3시간	10,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객실스튜디오 추가대관	청소년	추가 1시간	2,5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객실스튜디오 장비대여비(기본)	누구나	회당	20,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객실스튜디오 장비대여비(특별)	누구나	회당	50,000	기타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자유수영 (평일)		성인	1개월 (주3회)	35,000	수영장	105,000	
		유아, 청소년		30,000		60,000	
		성인	1개월 (주5회)	45,000		105,000	
		유아, 청소년		40,000		60,000	
		성인	1회/1시간	5,000		8,6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유아	1회/1시간	2,500	예체능	5,000	
	자유수영 (평일, 주말)	청소년	1회/1시간	3,000		3,600	
	독서토론논술	초등생	1개월/주1회	30,000		35,000	상한가없는 프로그램 타기관 가격비교
	발레	유아~초등저	1개월/주2회	38,000		55,000	
	월금미술	유아~초등저	1개월/주2회	38,000		55,000	
	종이접기	초등저	1개월/주1회	35,000		35,000~ 39,000	
	드럼	청소년	1개월/주1회	35,000		35,000	
		성인		39,000		61,000	
	통기타	청소년	1개월/주1회	35,000		35,000~ 39,000	
	(토요)피아노 스토리	청소년	1개월/주1회	45,000		55,000~ 61,000	
				50,000		55,000~ 61,000	
				55,000		55,000~ 61,000	
	(화목)피아노 스토리	유아, 청소년	1개월/주2회	45,000		55,000~ 61,000	
				50,000		55,000~ 61,000	
				55,000		55,000~ 61,000	
	(수금)피아노 스토리	유아, 청소년	1개월/주2회	45,000	예체능	55,000~ 61,000	
				50,000		55,000~ 61,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55,000		55,000~61,000	
	SNPE척추운동	청소년	1개월/주2회	40,000	취미, 교양	45,000	1시간 30분 수업
		성인	1개월/주2회	50,000		50,000	
	바둑교실	초등	1개월/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생활 활 제 요 구 사 업	성인헬스	성인	1개월/주5회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3,000	
	청소년헬스	청소년	1개월/주5회	30,000		80,000	
	아쿠아로빅교실	성인	1개월/주3회	55,454	수영장	56,000	
		성인	1개월/주2회	41,818		43,000	
	인라인교실	유아, 청소년	1개월/주2회	3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농구교실	청소년	1개월/주1회	38,000		50,000	
			1개월/주3회	44,000		50,000	
	검도교실	성인	1개월/주5회	73,000		81,000	
		청소년	1개월/주5회	60,000		72,000	
		청소년	1개월/주2회	41,000		50,000	
	주니어ACE	청소년	연 2회	430,000		-	단일사업
	지역연계 1	유아/청소년	1개월/주5회	20,000		실비	단일사업
	지역연계 2 (스포츠포터)	유아/청소년	1개월/주3회	50,000		실비	단일사업
	지역연계 3	누구나	1회	6,000		실비	단일사업
지역 사 업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	팀당	20,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마을 속 난나	청소년	1인	5,500 ~35,000		실비	단일사업
	농구대회	청소년	1회	20,000		실비	단일사업
	청소년생존프로젝트비상 구(EXIT)	청소년	1회	6,000~ 12,000		실비	단일사업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청소년암벽교실	청소년	1개월/주1회	30,000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성인클라이밍	성인	1개월/주1회 주2회	40,000~ 60,000		실비	인근 유사시설 비교
	인공암벽대회	청소년,성인	1회	20,000		실비	단일사업
	클라이밍아카데미	중고등청소년	1개월/주2회	100,000		실비	주2회 강습 주2회 자율운동 120분 수업
	네이처드림센터 참가비 1형	청소년	1인	5,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네이처드림센터 참가비 2형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네이처드림센터 참가비 3형	청소년	1인	20,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네이처드림센터 참가비 1박2일형	청소년	1인	45,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네이처드림센터 참가비 2박3일형	청소년	1인	90,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네이처드림센터 10인 이하 단체	청소년	회당	100,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예비지도자양성과정 참가비 1형	청소년	회당	100,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예비지도자양성과정 참가비 2형	청소년	회당	50,000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드림스퀘어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방구석 진로교육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메이커교실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아임크리에이터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난나대로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드림네비게이션	청소년	1반	10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드림네비게이션 체험재료비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잡클래스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채움교실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드림업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소원교실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모의직업체험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상담 사업	진로개인상담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성인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인근청소년시설비교
기타 사업	직원월식비	성인	월정액	80,000	-	-	-
	방과후식비	초등	1식	5,000	-	-	-
	주니어에이스식비	초등	월정액 1식기준 2식기준	50,000 100,000	-	-	-
	일일식대	성인 및 청소년	1식	6,600 8,000 10,000			
	캠프식대	성인 및 청소년	1식	3,000 5,500 6,600	-	-	-

창동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프로그램강습료	뎃생과수채화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7,000 성인:40,000	예체능	청소년:55,000 성인:61,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신나는 창의미술	유아~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프로그램강습료	어린이화가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프로그램강습료	민화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40,000	예체능	청소년:55,000 성인:61,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실용민화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40,000	예체능	청소년:55,000 성인:61,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난타교실	성인	주2회	50,000	예체능	61,000	
프로그램강습료	서예교실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드림아카데미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성인드림 아카데미	청소년~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수요드림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토요드림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월수금피아노	청소년~성인	주3회	초급:50,000 중급:55,000 고급:60,000	예체능	청소년:70,000 성인:77,000	
프로그램강습료	화목피아노	청소년~성인	주2회	초급:40,000 중급:45,000 고급:50,000	예체능	청소년:55,000 성인:61,000	
프로그램강습료	클래식피아노	청소년~성인	주1회	초급:30,000 중급:35,000(1시간) 초급:45,000 중급:60,000(2시간)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1시간) 청소년:55,000 성인:61,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금요피아노	청소년~성인	주1회	초급:30,000 중급:35,000 고급: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쓰담쓰담 칼림바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타악기교실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쉽게배우는 통기타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통기타교실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프로그램강습료	기초탄탄 통기타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우쿨렐레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EBS주판 셈놀이	유아~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33,000	1시간30분
프로그램강습료	바둑&체스	유아~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33,000	1시간30분
프로그램강습료	바이올린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50,000 성인:55,000	예체능	청소년:55,000 성인:61,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흥익미술연구소	유아~청소년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프로그램강습료	글쓰기&논술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33,000	1시간30분
프로그램강습료	한국사능력시험대비반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33,000	1시간30분
프로그램강습료	플룻	청소년~성인	주1회	초급:35,000 중급:40,000 고급:45,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온가족통기타	청소년~성인	주1회	청소년:35,000 성인:39,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친환경화장품&비누	성인	주1회	39,000	취미	성인:39,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우리아이헤어리본	성인	주1회	35,000	취미	성인:39,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손주랑놀이주기클라쓰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규방공예	성인	주1회	35,000	취미	성인:39,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미술수행평가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프로그램강습료	토탈공예	청소년~성인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프로그램강습료	‘동식물은내친구’ 생 명과학	청소년	주1회	30,000	취미 교양문화	33,000	1시간30분
프로그램강습료	창의야! 교구놀이수학	유아~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프로그램강습료	책이랑보드랑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프로그램강습료	신나는우쿨렐레	청소년~성인	주1회	35,000	예체능	청소년:35,000 성인:39,000	
프로그램강습료	해금의 시작	청소년~성인	주1회	50,000	예체능	청소년:55,000 성인:61,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오감창의공작소	7세~초등저	주1회	30,000	예체능	청소년:35,000	
프로그램강습료	마스터클래스	청소년~성인	주1회~6회	30,000~ 70,000	예체능	청소년:107,000 성인:118,000	2시간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프로그램강습료	키즈쿠킹&베이킹	청소년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44,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세상모든 샌드위치	청소년~성인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청소년:44,000 성인:56,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한입디저트 'RICE CAKE'	청소년~성인	주1회	35,000	취미 교양문화	청소년:44,000 성인:56,000	2시간
프로그램강습료	리틀잉글리시아카데미	유아~초등1	주2회	80,000	외국어	실비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강습료	리틀잉글리시아카데미	유아~초등1	주1회	40,000	외국어	실비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강습료	주니어잉글리시아카데미	청소년	주1회	60,000	외국어	실비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강습료	주니어잉글리시아카데미	청소년	주2회	80,000	외국어	실비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강습료	주니어잉글리시아카데미	청소년	주1회	40,000	외국어	실비	특화 프로그램
프로그램참가비	평생교육 실습	대학교(원)생	1인	100,000원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비교대상없음
프로그램참가비	활동형대안교실 '별술'	중·고등	1인/1시간	7,000원	청소년사업	실비	단일사업 비교대상없음
프로그램 참가비	리더십프로젝트 'Leader하라'	초·중·고	1인/1회	1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프로그램 참가비	학교동아리	중등	1인/1회	5,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참가비	상상진로스쿨캠핑	중등 청소년	1인/1회	3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 참가비	진로월드	중등	1인/1회	1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 참가비	진로체험클래스	중·고등	1인/1회	7,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 참가비	진로토크콘서트	중·고등	1개교/1회	15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참가비	대학교(원) 전공실습교육	대학생	1인/1회	6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 참가비	활동형대안교실 '별술'	중·고등	1인/1일	35,000	청소년사업	-	-
프로그램참가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1시간/1팀	멤버스(연간) 20,000 Daily(평일, 주말) 3,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참가비	헌법제1조	초등 4~6학년	1인/4회	1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참가비	자신있게 소문내는 나의 서사	중등	1인/4회	1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프로그램참가비	기억을넘는녀석들	초등 4~6학년	1인/4회	1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프로그램참가비	청소년전용공간 '영토'	초등~대학생	1회	1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프로그램참가비	상상유스데이	청소년 및 가족	1인/1회	15,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프로그램참가비	로봇영재지원프로젝트 'RPG'	청소년	1인/연중	120,000	청소년사업	설비	
프로그램참가비	플랫폼클래스	청소년	1인/10회	50,000	청소년사업	설비	
프로그램참가비	프로젝트 '모과'	청소년	1인/10회	30,000	청소년사업	설비	
프로그램참가비	루프탑 로봇캠프	청소년	1인/1회	50,000	청소년사업	설비	
프로그램참가비	지역 네트워크운영	학교 단체	1회(10명 기준)	150,000원	청소년사업	설비	단일사업 비교대상없음
프로그램참가비	지역 네트워크운영	청소년~성인	1회	7,000원	청소년사업	설비	단일사업 비교대상없음

노원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시설사용	강당 대관	전체	3시간	250,000	시설대관	250,000		방역관리 비용 반영
시설사용	공연 연습실	전체	3시간	75,000	시설대관	-		도봉서원복지관 3시간 50,000원 장동문화센터 3시간 100,000원
시설사용	프로그램실	전체	3시간	60,000	시설대관	-		학마을도서관 3시간 90,000원 도봉구민회관 3시간 30,000원
생활체육 시설사용	일일수영 (평일)	청소년	1회/1시간	2,000	수영장	2,500		
		성인		3,850		4,300		
생활체육 시설사용	일일수영 (휴일)	청소년	1회/2시간	3,000		5,000		
		성인		4,400		8,600		
생활체육 시설사용	농구장대관 (평일)	청소년	1회/1시간	1,300	체육관	1,800		
		성인		1,800		2,500		
생활체육 시설사용	농구장대관 (휴일)	청소년	1회/1시간	1,300		1,800		
		성인		1,800		2,500		
생활체육 시설사용	수영장대관	성인	1회/1시간	1,800	수영장	4,300		
교육문화 사업	모닝 피아노	성인	주2회/1시간	55,000	예체능	61,000		진도별 레슨이 상이하여 수강료 차등 적용
				60,000		61,000		
				61,000		61,000		
교육문화 사업	음악과 함께 하는 피아노	유아~초등	주2회/1시간	50,000	예체능	55,000		진도별 레슨이 상이하여 수강료 차등 적용
				54,000		55,000		
				55,000		55,000		
			주3회/1시간	60,000		70,000		진도별 레슨이 상이하여 수강료 차등 적용
				65,000		70,000		
				70,000		70,000		
교육문화 사업	월수금 피아노	유아~ 청소년	주3회/1시간	60,000		70,000		진도별 레슨이 상이하여 수강료 차등 적용
				65,000		70,000		
				70,000		70,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사업	화목피아노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	50,000		55,000		
				54,000		55,000		
				55,000		55,000		
교육문화 사업	토요 피아노	유아~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52,500		
교육문화 사업	금요 드럼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1시간	39,000		39,000		
교육문화 사업	토요 드럼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사업	어린이 성악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사업	바이올린	청소년	주2회/1시간	55,000	예체능	55,000		
교육문화 사업	칼림바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사업	미술세계	성인	주1회/2시간	50,000	예체능	78,000	예체능/주1회 39,000 * 2시간	
교육문화 사업	어린이 미술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사업	금요 화실	유아~중등	주1회/1.5시간	40,000	예체능	52,500	예체능/주1회 35,000 * 1.5시간	
교육문화 사업	내신대비 댕생 수채화	초등~중등	주1회/2시간	45,000	예체능	70,000	예체능/주1회 35,000 * 2시간	
교육문화 사업	종이접기	유아~초등	주1회/1시간	2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사업	아이 클레이	유아~초등	주1회/1시간	25,000	예체능	35,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사업	미니어처 만들기	유아~초등	주1회/1.5시간	27,000	예체능	52,500	예체능/주1회 35,000 * 1.5시간	
교육문화 사업	캘리 그라피	성인	주1회/2시간	39,000	예체능	78,000	예체능/주1회 39,000 * 2시간	
		청소년		39,000		70,000	예체능/주1회 35,000 * 2시간	
교육문화 사업	키즈 쿠킹	유아~초등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교육문화 사업	한국사	초등~중등	주1회/1시간	30,000	학교 보습과정	인근공공 유사시설		구립잠실청소년센터 한국사따라잡기 1개월 30,000원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한국사능력검정대 비비반 1개월 33,000원
교육문화 사업	세계사	초등~중등	주1회/1시간	30,000				
교육문화 사업	두뇌개발 한자속독	유아~초등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주1회/2시간	40,000	취미교양 문화	44,000	취미,교양/주1회 22,000 * 2시간 *	
교육문화 사업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독서 & 말하기교실	유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교육문화 사업	초등시사독서&논술교실	초등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교육문화 사업	바둑 & 체스	유아~초등	주2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유아~초등	주2회/2시간	44,000		44,000	취미,교양/주1회 22,000 * 2시간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사업	키즈몬 잉글리쉬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5,000	외국어	35,000		
교육문화 사업	핸드드립 커피 바리스타	성인	주1회/2시간	25,000	취미교양 문화	56,000	취미,교양/주1 회 28,000 * 2시간	
			주2회/2시간	40,000	취미교양 문화	78,000	취미,교양/주2 회 39,000 * 2시간	
교육문화 사업	손뜨개	성인	주1회/2시간	20,000	취미교양 문화	56,000	취미,교양/주1 회 28,000 * 2시간	
	퀵트	성인		28,000	취미교양 문화	56,000		
교육문화 사업	어린이 블럭 교실	유아 청소년	1회/1시간	4,500 (회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상계동 지니어스 블록여행 1시간 6,000원 공동동 오즈블럭카페 1시간 5,000원
				5,000 (비회원)				
교육문화 사업	브레인 사이언스 (아이큐키)	초1~2	주1회/1시간	35,000	학교 교과목 보습과정	유사시설 준용		소그룹활동 정원 8명 브레인스쿨 (한솔교육) 을 모티브로 기획한 수업으로 브레인스쿨 노원센터 기준 월 4회 수강료 183,000원 씨매스 월4회 2시간기준 16만원
교육문화 사업	방학특강	유아~초등	주1회/1시간 주1회/2시간	22,000	취미 교양 문화	22,000	취미,교양/주1 회 22,000 * 2시간	
				35,000		44,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주1회/2시간	55,000		70,000	예체능/주1회 35,000 * 2시간	
생활체육 사업	유스단 5세	유아	10시~15시 5시간	540,000	예체능	인근 공공 유사 시설		송파 ymca 750,000
생활체육 사업	유스단 6세	유아	9시~15시 6시간	600,000	예체능			
생활체육 사업	유스단 7세	유아	9시~15시 6시간	610,000	예체능			
생활체육 사업	종일반	유아	15시~19시 4시간	120,000	예체능	인근공공유사 시설		태화사회복지관 100,000 노원구민체육센터 150,000
생활체육 사업	방과후 교실	유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사업	어린이 [올챙이]	유아~청소년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생활체육 사업	어린이 [금붕어]	유아~청소년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생활체육 사업	어린이 [돌고래]	유아~청소년	주2회/1시간 (화목)	2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사업	어린이 [날치]	유아~청소년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생활체육 사업	어린이 [상어]	유아~청소년	주2회/1시간 (화목)	2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사업	수영단	유아~청소년	주5회/1시간 (월화수목금)	7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0,000		
생활체육 사업	선수단	유아~청소년	주5회/2시간 (월화수목금)	14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144,000	유아청소년 1시간기준 72,000 * 2시간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조기A]	중고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만24세		48,000		56,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조기B]	중고	주2회/1시간 (화목)	2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만24세		32,000		43,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아침A]	중고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만24세		48,000		56,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아침B]	중고	주2회/1시간 (화목)	2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만24세		32,000		43,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고급A]	만24세	주3회/1시간 (월수금)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고급B]	만24세	주2회/1시간 (화목)	3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상급A]	만24세	주3회/1시간 (월수금)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상급B]	만24세	주2회/1시간 (화목)	3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자유형이상]	만24세	주3회/1시간 (월수금)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자유형이상]	만24세	주2회/1시간 (화목)	3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기초A]	만24세	주3회/1시간 (월수금)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기초B]	만24세	주2회/1시간 (화목)	3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건강]	만24세	주3회/1시간 (월수금)	4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저녁]	중고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만24세		48,000		56,000		
생활체육 사업	건강수영 [심야]	중고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만24세		48,000		56,000		
생활체육 사업	실버수영	60세 이상	주3회/1시간 (화목)	35,2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사업	화목수영	중고	주2회/1시간 (화목)	2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만24세		30,000		43,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생활체육 사업	저녁 아쿠아로빅	성인	주2회/1시간 (화목)	44,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사업	데이 아쿠아로빅	성인	주3회/1시간 (월수금)	5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사업	실버 아쿠아로빅	성인	주2회/1시간 (화목)	44,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사업	헬스	중고	주6회/4시간 (월~토)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0,000		
		만24세		52,000		93,000		
생활체육 사업	프리타임	만24세	주6회/종일	6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3,000		
생활체육 사업	탁구	만24세	주2회/80분 (화목)	38,0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사업		만24세	주3회/80분 (월수금)	42,000		77,000		
		만24세	주2회/70분 (화목)	38,000		61,000		
생활체육 사업	검도	초중고	주3회/1시간 (월수금)	39,000	예체능	70,000		
		초중고	주2회/1시간 (화목)	35,000	예체능	55,000		
		만24세	주2회/1시간 (화목)	42,000		61,000		
생활체육 사업	필라테스	중고	주3회/1시간 (월수금)	40,000	예체능	70,000		
		만24세		45,000		77,000		
생활체육 사업	방송댄스	초등~중등	주1회/1시간 (목)	29,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사업	발레	유아~초등	주3회/1시간 (월수금)	46,000	예체능	70,000		
생활체육 사업	태보	성인	주2회/1시간	41,000	예체능	61,000		
		청소년	주3회/1시간	43,000		70,000		
		성인	주3회/1시간	49,000		77,000		
생활체육 사업	바디트레이닝	만24세	주2회/1시간 (화목)	50,000	예체능	61,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생활체육 사업	요가	만24세	주3회/1시간 (월수금)	45,000	예체능	77,000		
생활체육 사업	음악줄넘기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 (화목)	38,000	예체능	55,000		
생활체육 사업	인라인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 (월수)	38,000	예체능	55,000		
생활체육 사업	농구	초중	주3회/1시간 (월수금)	42,000	예체능	70,000		
	주말농구	초중	주2회 /1시간	32,000		55,000		
생활체육 사업	줌바	성인	주2회/1시간 (화목)	40,0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사업	풋살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 (화목)	38,000	예체능	55,000		
생활체육 사업	방학특강 [수영]	유아 청소년	주3회/1시간	90,000	예체능 (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생활체육 사업	방학특강 [수영]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	60,000	예체능 (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생활체육 사업	방학특강 [음악줄넘기]	유아 청소년	주3회/1시간 (월수금)	50,000	예체능	70,000		
생활체육 사업	방학특강 [방송댄스]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 (수,금)	40,000	예체능	55,000		
생활체육 사업	방학특강 [농구]	유아 청소년	주3회/1시간 (월수금)	42,000	예체능	70,000		
생활체육 사업	특강수영 (유아수영단)	유아	주5회/1시간	71,000	예체능 (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노원구민회관 주2회 110,000 성북레포츠타운 주2회 90,000
생활체육 사업	소그룹특강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12회 (월수금1:3)	180,000	예체능 (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마린스포츠 150,000 (주3회 8명 기준) 삼성골드스포츠클 럽 160,000 (주2회 6명기준)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6회 (화목1:6)	60,000	예체능 (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주2회/1시간 8회 (화목1:6)	80,000	예체능 (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생활체육 사업	수영대회	유아 청소년	1회/2시간	1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체육시설/주1 회 25,000 * 2시간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목적사업	청소년문화플랫폼 [문화놀이터 노래방]	청소년	1팀/3곡	500	시설대관 (부대시설)	인근 공공유사시설		청동청소년문화의 집 1시간 4,000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3곡 500
목적사업	청소년문화플랫폼 [문화놀이터 게임기]	청소년	1팀/30분	500	시설대관 (부대시설)	인근 공공유사시설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1,000 청동청소년문화의 집 1인 500
목적사업	청소년참여활동사 업 [연합워크숍]	청소년	2회	20,000	청소년 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보성군청소년수련 원 1인 30,000원
목적사업	청소년문화플랫폼 [장소대관]	청소년	1인/1시간	1,000	시설대관 (공연 연습실)	인근 공공유사시설		문화공간 스파클링 1시간 7,000원
목적사업	학교연계 환경체험활동	청소년	1인/1회	5,000원 ~15,000 원	청소년 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1인 5,000~20,000
목적사업	학교연계 공감리더십캠프	청소년	1인/1회	5,000원 ~15,000 원	청소년 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화성시청소년수련 관 꿈여울리더십 1인 20,000원
목적사업	학교연계 전환기청소년 활동	청소년	학교/1회	250,000	청소년 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1인 5,000~20,000 송파청소년수련관 1인 6,000
목적사업	학교연계 학과체험엑스포	청소년	1인/1회	5,000원 ~15,000 원	청소년 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1인 5,000~20,000
상담지도 사업	개인상담(청소년)	청소년	1회	25,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사설 7~10만원
상담지도 사업	개인상담(부모상담)	성인	1회	30,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사설 7~10만원
상담지도 사업	인테이크(접수상담)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30,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사설 7~10만원
상담지도 사업	심리검사 I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25,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사설 7~10만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상담지도 사업	심리검사 II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40,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사설 7~10만원
상담지도 사업	종합심리검사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250,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 30만원 사설 45만원
상담지도 사업	미술치료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40,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 5만원 사설 7~10만
상담지도 사업	놀이치료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40,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병원 5만원 사설 7~10만
상담지도 사업	집단상담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10,000	상담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실비적용
				40,000	상담			
특화사업	생활안전체험	청소년	2시간	2,000	기타 (5. 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금천청소년센터(해 양안전체험) 6,000원 수서청소년센터 (창의융합체험활동) 10,000원
특화사업	신변안전체험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2시간	2,000	기타 (5. 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보라매청소년센터(인성교육) 5,000원 중랑청소년센터(메 이커) 10,000원
목적사업	메이커판	유아 청소년 성인	1시간	5,000~ 6,000	청소년 사업	인근 메이커유사시 설		노원청소년미래진 로센터 5,000 노원목예원 2,000
목적사업	메이커 프로그램	유아 청소년 성인	1회	10,000~ 30,000	청소년사업	인근 메이커유사시 설		노원 메이커스원 20,000 노원캠포레 20,000
목적사업	메이커재료비	청소년 성인	1회	1,000	장비대여	인근 메이커유사시 설		망우청소년센터 1,000 노원목예원 3,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목적사업	3D프린트	청소년 성인	1시간	1,000~ 2,000	장비대여	인근 메이커유사시 설		노원메이커스원 2,000 광진펍라이브러리 1,000
목적사업	디지털진공성형기	청소년 성인	1회	1,000~ 2,000	장비대여	인근 메이커유사시 설		광진펍라이브러리 1,000 망우청소년센터 2,000
목적사업	실루엣카메오	청소년 성인	1회	1,000~ 2,000	장비대여	인근 메이커유사시 설		광진펍라이브러리 1,000 망우청소년센터 2,000
목적사업	플라스틱압출분쇄 기	청소년 성인	1회	2,000	장비대여	인근 메이커유사시 설		광진펍라이브러리 1,000 망우청소년센터 2,000
기타사업	음료수자판기			300~ 2,000				
기타사업	드라이기			100				
기타사업	휴카페			1,000~ 5,000				
기타사업	사물함(소)			5,000				
기타사업	사물함(대)			6,000				
기타사업	식권판매(대)			5,500				
기타사업	식권판매(소)			4,500				
기타사업	자원봉사자 식비			3,500				
기타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4,000				
기타사업	급량비 (조식식비)			3,000				
체육프로그램(만25세 이상의 성인), 임대사업, 기타사업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은평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시설 사용료	일일 자유수영	대학생 성인 (토요일)	1회 (2시간)	5,500	수영장	7,740	수영장사용료 대학생·성인 상한 4,300*2시간* 10%할인	
		대학생 성인	1회 (2시간)	6,600	수영장	7,740	수영장사용료 대학생·성인 상한 4,300*2시간* 10%할인	
		초·중·고생	1회 (2시간)	4,000	수영장	4,500	수영장사용료 초·중·고생 상한 2,500*2시간* 10%할인	
		어린이	1회 (2시간)	3,000	수영장	3,240	수영장사용료 어린이 상한 1,800*2시간* 10%할인	
	강당, 공연장등	200석이내	기본 (3시간)	250,000	시설대관	250,000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기본 (3시간)	30,000	시설대관	유사시설 준용		은평문화 예술회관 50,000 은평청소년문 화의집 30,000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교육문화프로 그램	피아노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3,000	예체능	35,000		
		어린이 초·중·고생	주2회 (1시간)	45,000 (초급)		55,000		
				50,000 (중급)		55,000		
				55,000 (상급)		55,000		
		어린이 초·중·고생	주3회 (1시간)	54,000 (초급)	예체능	70,000		
				59,000 (중급)		70,000		
				64,000 (상급)		70,000		
		대학생 성인	주1회 (1시간)	26,300	예체능	39,000		
			주2회 (1시간)	49,000 (주말)		61,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교육문화프 로그램	피아노교실	대학생 성인	주3회 (1시간)	53,000 (초급)	예체능	77,000		
				58,000 (중급)		77,000		
				63,000 (상급)		77,000		
	현악기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월4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대학생 성인	월3회 (1시간)	26,300		39,000		
	우쿨렐레 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월4회 (1시간)	35,000		35,000		
		대학생 성인	월3회 (1시간)	26,300		39,000		
	관악기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월4회 (1시간)	35,000		35,000		
		대학생 성인	월3회 (1시간)	26,300		39,000		
	통기타& 클래식기타	어린이 초·중·고생	월4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대학생 성인	월3회 (1시간)	26,300		39,000		
	드럼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월4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대학생 성인	월3회 (1시간)	26,300		39,000		
	실용음악	어린이 초·중·고생	월4회 (1시간)	35,000		35,000		
		대학생 성인	월3회 (1시간)	26,300		39,000		
	음악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월4회 (1시간)	30,000		35,000		
	미술마당	어린이 초등학생	주1회 (1시간)	32,000	예체능	35,000		
	창작교실 (미술)	어린이 초등학생	주1회 (1시간)	32,000		35,000		
	뎃생& 수채화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3,000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교육문화프 로그램	재능미술	대학생 성인	주1회 (2시간)	40,000	예체능	62,400	예체능강습료 대학생·성인 상한 39,000*2시간* 20%할인	
	미술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2,000	예체능	35,000		
	유초등영어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주3회 (1시간)	55,000		56,000		
			주3회 (1시간)	56,000		56,000		
	성인영어	대학생 성인	주1회 (1시간)	39,000	기타	39,000		
			주1회 (1.5시간)	56,000		58,500	외국어강습료 대학생·성인 상한 39,000*1.5시간	
	외국어교실	대학생 성인	주1회	39,000	외국어	39,000		
	한자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기타 취미·문화	22,000		
	바둑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22,000		
	체스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22,000		
	주산/암산 수학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22,000		
	한국사&세계사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22,000		
	글쓰기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22,000		
	사고력개발 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22,000		
	아동요리 만들기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22,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교육문화프 로그램	브리코 건축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로켓교실 (4차산업)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0,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30,000 망원청소년 문화센터 35,000
	탐구력교실 (수학)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0,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65,000(주2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30,000
		어린이 초·중·고생	주2회 (1시간)	50,000				
	장애인교실 (노래)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5,000	예체능	39,000		
	예쁜 글씨쓰기	대학생 성인	주1회 (1.5시간)	35,000	기타 취미·문화	37,800	기타 취미·문화 강습료 대학생·성인 상한 28,000*1.5시간 *10%할인	
		대학생 성인	주1회 (1시간)	28,000		28,000		
	예쁜글씨쓰기	대학생 성인	주1회 (2시간)	40,000	기타 취미·문화	44,800	기타 취미·문화 강습료 대학생·성인 상한 28,000*2시간* 20%할인	
	자격증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바리스타) -12회기	대학생 성인	주1회 (2시간)	50,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종로구민회관 168,000 (12회기) 도화청소년 문화의집 180,000 (12회기)
			주1회 (3시간)	75,000				
			주2회 (2시간)	100,000				
	자격증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대학생 성인	주1회 (1시간)	25,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롯데문화센터 67,000(2시간) 홈플러스 문화센터 50,000
			주1회 (2시간)	50,000				
	태권도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3회 (1시간)	43,000	예체능	70,000		
	어린이댄스 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5,000	예체능	35,000		
	파워댄스	대학생 성인	주2회 (1시간)	43,000	예체능	61,000		
			주3회 (1시간)	48,000		77,000		
			주3회 (1시간)	52,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교육문화프로그램	발레 리듬체조	어린이 초·중·고생	주2회 (1시간)	39,000	예체능	55,000		
	요가 필라테스	대학생 성인	주3회 (1시간)	50,000	예체능	77,000		
		대학생 성인	주2회 (1시간)	40,000		61,000		
	체능교실	어린이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3,000	예체능	35,000		
			주2회 (1시간)	39,000	예체능	55,000		
			주3회 (1시간)	50,000	예체능	70,000		
	취미교실 (교정운동)	대학생 성인	주2회 (1시간)	43,000	예체능	61,000		
	취미교실 (일반취미)	대학생 성인	주1회 (1시간)	23,000	기타 취미·문화	28,000		
		대학생 성인	주2회 (1시간)	40,000	예체능	61,000		
	음악특강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주2회 (1시간)	55,000		55,000		
	미술특강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주2회 (1시간)	50,000		55,000		
	외국어특강	초·중·고생	주2회 (1시간)	45,000	외국어	45,000		
	표현사고력 특강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기타 취미·문화	22,000		
	탐구력특강 (일반취미)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2,000	기타 취미·문화	22,000		
	탐구력특강 (수학)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30,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65,000(주2회) 서대문 도서관공단 30,000
	댄스특강 교실	초·중·고생	주1회 (1시간)	25,000	예체능	35,000		
			주2회 (1시간)	39,000		5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교육문화프 로그램	체능특강 교실	초·중·고생	주2회 (1시간)	39,000 (4주)	예체능	55,000		
			주1회 (1시간)	25,000		35,000		
	일일특강 경진대회	어린이 초·중·고생 대학생성인	1회 (2시간)	10,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마포 청소년센터 10,000 서대문 청소년센터 10,000
		어린이 초·중·고생 대학생성인	1회 (1시간)	5,000		인근 유사시설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생활체육프 로그램	수영	대학생 성인	주6회 (1시간)	82,000	체육시설 이용수입	93,000		
			주5회 (1시간)	70,000		81,000		
			주3회 (1시간)	55,000 (강습3회)		56,000		
			주3회 (1시간)	52,000 (강습2회+ 비강습1회)		56,000		
			주2회 (1시간)	41,000		43,000		
		어린이	주3회 (1시간)	47,000	체육시설 이용수입	50,000		
			주2회 (1시간)	37,000		37,000		
		초등학생	주1회 (1시간)	35,800	기타 (소그룹)	인근 유사시설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120,000(주2회) 78,000(주1회) 종로구올림픽 기념생활관 183,700(주2회) 48,950(주1회)
			주2회 (1시간)	88,000				
			주3회 (1시간)	132,000				
		초등학생	주3회 (1시간)	47,000	체육시설 이용수입	50,000		
			주2회 (1시간)	37,000		37,000		
			주1회 (1시간)	17,500		25,000		
	아쿠아로빅	대학생 성인	주5회 (1시간)	74,000	체육시설 이용수입	81,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생활체육 프로그램	아쿠아로빅	대학생 성인	주3회 (1시간)	55,000 월수금	체육시설 이용수입	56,000		
			주3회 (1시간)	51,000 화목토		56,000		
			주3회 (1시간)	50,000 비인기시간		56,000		
			주2회 (1시간)	41,000		43,000		
	건강헬스	대학생 성인	주6회 (1시간)	37,000	체육시설 이용수입	93,000		
				80,000				
			주6회 (1시간)	26,000 패키지		93,000		
				29,637 패키지				
				18,182 패키지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목적사업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사업 / CA	초·중·고생	1회	5,000	청소년 사업	인근 유사시설		동대문 청소년센터 30,000
		초·중·고생	1회	8,000				화곡청소년센터 5,000
		초·중·고생	1회	10,000				
	지역사회 연계사업 / 현장체험 참가비	초·중·고생	1회	3,000				문래청소년센터 10,000
		초·중·고생	1회	5,000				목동청소년센터 5,000
	지역사회 연계사업 / 문화프로그램참 가비	초·중·고생	1회	20,000				화곡청소년센터 35,000 광진청소년센터 25,000
	인증프로그램참 가비	초·중·고생	1회	10,000				문래청소년센터 20,000 창동청소년센터 15,000
	교육, 보호 프로그램 참가비	초·중·고생	1회	10,000				문래청소년센터 10,000 서울청소년센터 16,000
	특성화사업 참가비	초·중·고생	1회	5,000				화곡청소년센터 10,000 광진청소년센터 10,000
	동아리활동 가입비	초·중·고생 대학생	1회	10,000				화곡청소년센터 20,000 문래청소년센터 10,000
	대학생현장 실습지도비	대학생	1회	50,000				화곡청소년센터 50,000 목동청소년센터 50,000
	청소년캠프	초·중·고생 대학생	1회	60,000				노원청소년센터 90,000 문래청소년센터 40,000
	청소년진로 활동참가비	초·중·고생 대학생	1회	20,000				광진청소년센터 50,000
		초·중·고생 대학생	1회	15,000				서울청소년센터 15,000
	청소년활동 참가비	초·중·고생 대학생	1회	5,000				화곡청소년센터 15,000 목동청소년센터 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유사시설비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상담지도 프로그램	심리검사비 종합검사Ⅰ	어린이 초·중·고생	1회	170,000	상담	인근 유사시설		IN공감심리발달센터 300,000 허그맘허그인 550,000
	심리검사비 종합검사Ⅱ		1회	200,000				IN공감심리발달센터 300,000 허그맘허그인 550,000
	심리검사비 종합검사Ⅲ		1회	230,000				IN공감심리발달센터 300,000 허그맘허그인 550,000
	심리검사비 종합검사Ⅳ		1회	260,000				IN공감심리발달센터 300,000 허그맘허그인 550,000
	심리검사비 파라다이스 MMPI		1회	30,000				마음달심리센터 200,000 IN공감심리발달센터 300,000
	심리검사비 지능검사		1회	40,000				마음달심리센터 200,000 IN공감심리발달센터 300,000
	심리검사비 심리검사		1회	10,000				라비에벨 상담소 70,000 허그맘허그인 70,000
	발달재활 바우처		1회	45,000				라비에벨 상담소 70,000 허그맘허그인 70,000
	특수교육 바우처		1회	45,000				라비에벨 상담소 70,000 허그맘허그인 70,000
	심리지원 바우처		1회	45,000				라비에벨 상담소 70,000 허그맘허그인 70,000
	일반상담 치료		1회	45,000				라비에벨 상담소 70,000 허그맘허그인 70,000
	성인매체 치료	대학생 성인	1회	45,000				라비에벨 상담소 70,000 허그맘허그인 70,000
	상담특강,교육	어린이 초·중·고생 학부모	1회	10,000				라비에벨 상담소 70,000 허그맘허그인 70,000
기타 접수입	회원증발급 수수료	어린이 초·중·고생 대학생성인	1회	1,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은평구민체육센터 1,000 서대문체육회관 1,000
	개인사물함	어린이 초·중·고생 대학생성인	1회	3,000	기타	인근 유사시설		은평구민체육센터 3,000 서대문체육회관 4,000

서대문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생활체육 시설 사용 수입	월 자유수영		성인	주6회	87,500	수영장	105,000	주6회
			청소년	주6회	50,000		60,000	주6회
			어린이 /유아	주6회	37,500		45,000	주6회
	일일 사용	주중	자유수영 성인	1회(2시간)	4,700		4,300	1회(1시간)
			자유수영 청소년	1회(2시간)	2,500		2,500	1회(1시간)
			자유수영 어린이	1회(2시간)	1,800		1,800	1회(1시간)
			일일헬스 (성인)	1회(1시간)	3,000		3,000	1회(1시간)
		주말	일일헬스 (중고생)	1회(1시간)	2,000		2,000	1회(1시간)
			자유수영 성인	1회(2시간)	6,100		5,590	1회(1시간)
			자유수영 청소년	1회(2시간)	3,200		3,250	1회(1시간)
			자유수영어린이	1회(2시간)	2,300		2,340	1회(1시간)
			일일헬스 (성인)	1회(1시간)	3,900		3,900	1회(1시간)
			일일헬스 (중고생)	1회(1시간)	2,600		2,600	1회(1시간)
교육문화	뮤지컬 잉글리쉬		유아	주1회 (총 주 2시간)	30,000	외국어	유사시설 준용	
	영어동화 놀이터		유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키즈파닉스		유아	주2회	45,000	외국어	45,000	
	네클 세계로 영어		성인	주2회	50,000	외국어	56,000	
	타임스 홍사회화		성인	주2회	50,000	외국어	56,000	
	틀립레벨영어A		성인	주2회	50,000	외국어	56,000	
	틀립레벨영어B		성인	주2회	50,000	외국어	56,000	
	자신감키즈 한글완벽 대비반		유아	주1회	35,000	기타	유사시설준용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신나는 미술세상	유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아동 창의미술	유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생활도예	성인	주1회 (총 주2시간)	40,000	예체능	61,000	
	월요드럼	성인	주1회	35,000	예체능	39,000	
	월요기타	성인	주1회	35,000	예체능	39,000	
	성인피아노	성인	주2회	55,000	예체능	61,000	
	성인피아노 체르니 30번이상	성인	주2회	60,000	예체능	61,000	
	성인피아노	성인	주3회	70,000	예체능	77,000	
	성인피아노 체르니 30번이상	성인	주3회	75,000	예체능	77,000	
	바리스타 2급자격증과정	성인	주1회 (총 주1.5시간)	40,000	취미,교양 문화 등	유사시설준용	
	홈헤어	성인	주1회 (총2시간)	40,000	취미,교양 문화 등	유사시설준용	
	캘리그래피	성인	주1회	30,000	취미,교양 문화 등	유사시설준용	
	플라워레슨	성인	주1회 (총 주2시간)	3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퀵트	성인	주1회 (총 주2시간)	3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어른들의 미술관	성인	주1회 (총 주2시간)	4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리본공예와 선물포장	성인	주1회 (총 주2시간)	30,000	취미,교양 문화 등	39,000	
	동화 속 요리세상	유아	주1회	35,000	기타	유사시설준용	
목적사업 동네 학교	PhonicsA	청소년	주2회	45,000	외국어	45,000	
	Reading StarterA	청소년	주2회 (총 주2.5시간)	50,000	외국어	45,000	
	레벨A-1	청소년	주2회 (총 주2.5시간)	50,000	외국어	45,000	
	레벨A-2	청소년	주2회 (총 주2.5시간)	50,000	외국어	45,000	
	레벨A-3	청소년	주3회 (총 주4시간)	60,000	외국어	56,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레벨A-4	청소년	주3회 (총 주4시간)	60,000	외국어	56,000	
	레벨A-5	청소년	주3회 (총 주4시간)	60,000	외국어	56,000	
	레벨B-1	청소년	주2회 (총 주2.5시간)	50,000	외국어	45,000	
	레벨B-2	청소년	주2회 (총 주2.5시간)	50,000	외국어	45,000	
	레벨B-3	청소년	주2회 (총 주2.5시간)	50,000	외국어	45,000	
	원어민 기초회화	청소년	주1회	36,000	외국어	유사시설 준용	
	원어민 영어회화	청소년	주2회	65,000	외국어	유사시설 준용	
	니하오 중국어 초급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니하오 중국어 중급	청소년	주1회	35,000	외국어	33,000	
	구문독해와 영작문	청소년	주2회	45,000	외국어	45,000	
	바둑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체스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브리코건축교실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빅뱅사이언스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보드게임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온라인보드게임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스피치 &파워자신감	청소년	주1회	35,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창의독서토론	청소년	주1회	4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꿈을 빛는 도예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아동미술 토요일아틀리에	청소년	주1회 (1시간30분)	40,000	예체능	55,000	
	청소년미술 토요일아틀리에	청소년	주1회 (1시간30분)	45,000	예체능	55,000	
	학교미술 따라잡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토탈공예	청소년	주1회	33,000	예체능	35,000	
	홍익초등미술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드림교실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바이올린	청소년	주2회	50,000	예체능	55,000	
	토요바이올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토요우쿨렐레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핑거&클래식기타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클래스피아노	청소년	주2회	50,000	예체능	55,000	
	클래스피아노 체르니30번이상	청소년	주2회	55,000	예체능	55,000	
	클래스피아노	청소년	주3회	65,000	예체능	70,000	
	클래스피아노 체르니30번이상	청소년	주3회	70,000	예체능	70,000	
	토요피아노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어드벤처 피아노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제과제빵자격증반	청소년	주1회	6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키즈쿡	청소년	주1회	35,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원데이클래스	청소년	1회	7,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방학특강	청소년	주1~2회	30,000~5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정예ACE수학	청소년	주2회	5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정예ACE수학 (고급)	청소년	주2회	6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Prime수학	청소년	주2회	6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한자급수반	청소년	주1회	33,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스토리한국사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주산과암산	청소년	주1회	30,000	기타	유사시설 준용	
목적사업	자유학기제	청소년	1회	10,000	진로체험	유사시설 준용	1회 기준
생활체육사업	수영	성인	주3회	55,000	체육 시설 이용 수업	61,600	주3회
		청소년	주3회	42,000		50,000	주3회
	수영	성인	주2회	45,000		47,300	주2회
		청소년	주2회	37,000		37,000	주2회
	수영	성인	주5회	85,000		89,100	주5회
		청소년	주5회	66,000		72,000	주5회
	아쿠아로빅 (월, 수, 금)	성인	주3회	55,000		84,700	주3회
	아쿠아로빅	성인	주2회	50,000		67,100	주2회
	아쿠아로빅	성인	주1회	30,000		42,900	주1회
	수영	성인	3개월 (주6회)	229,500		255,000	3개월 (주6회)
	수영, 아쿠아	성인	3개월 (주3회)	148,500		유사시설준용	3개월 (주3회)
	헬스	성인	3개월	175,500		유사시설준용	3개월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헬스	청소년	3개월	135,000		195,000	3개월
	헬스	성인	주5회	65,000		89,100	주5회
	헬스(B)	성인	주5회	55,000		89,100	
	헬스	청소년	주5회	50,000		72,000	주5회
	헬스패키지	성인	주5회	10,000		89,100	주5회
	슈퍼워크	성인, 청소년	주3회	100,000		유사시설준용	주3회
	스피닝	성인, 청소년	주3회	65,000		77,000	주3회
	스피닝	성인, 청소년	주2회	55,000		61,000	주2회
	모닝파워 댄스	성인	주3회	55,000		77,000	주3회
	걸스킵합	성인	주3회	55,000		77,000	주3회
	다이어트 댄스	성인	주3회	55,000		77,000	주3회
	춤바댄스	성인	주2회	50,000		61,000	주2회
	파워 트레이닝	성인	주3회	55,000		77,000	주3회
	요가	성인	주3회	55,000		77,000	주3회
	요가	성인	주2회	42,000		61,000	주2회
	필라테스	성인	주3회	55,000		77,000	주3회
	필라테스	성인	주2회	42,000		61,000	주2회
	필라테스 심화과정	성인	주3회	75,000		77,000	주3회
	성인발레	성인	주2회	50,000		61,000	주2회
	SNPE 바른자세운동	성인, 청소년	주3회	65,000		77,000	주3회
	SNPE 바른자세운동	성인, 청소년	주2회	50,000		61,000	주2회
	성인농구 (2시간)	성인	주2회	70,000		77,000	주2회

마포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창의교구과학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목동30,000 서대문30,000
교육문화	바둑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1.5h	33,000	취미,교양,문화	33,000	
교육문화	교과연계암산수학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목동30,000 서대문30,000
교육문화	체스과학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목동30,000 서대문30,000
교육문화	카이로봇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서대문 35,000 수서33,000
교육문화	과학정보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목동40,000 수서35,000
교육문화	4차산업혁명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5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수서54,000 마포중앙 도서관 50,000
교육문화	과학정보특강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4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수서54,000 마포중앙 도서관 50,000
교육문화	독서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4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서대문30,000 수서33,000
교육문화	셀파키즈(국어,수학)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25,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서대문60,000 목동60,000 (2h기준)
교육문화	연극표현활동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웅변스피치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서대문35,000 목동40,000
교육문화	자기표현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3h	66,000	취미.교양.문화	66,000	
교육문화	자기표현특강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3h	66,000	취미.교양.문화	66,000	
교육문화	자기표현특강교실	성인/대학생	월(주1회)2h	44,000	취미.교양.문화	44,000	
교육문화	아나운서스피치	유아/초, 중, 고 성인/대학생	월(주1회)	10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쓰리에스연기학원 350,000
교육문화	성인영어	성인/대학생	월(주1회)1.5h	58,500	외국어	58,500	
교육문화	성인영어	성인/대학생	월(주2회)	56,000	외국어	56,000	
교육문화	원어민영어	유아/청소년 / 성인	월(주3회)	10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마포중앙 도서관 142,000 청담여학원 230,000
교육문화	원어민영어	유아/청소년 / 성인	월(주2회)	7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서대문80,000 청담여학원 230,000
교육문화	일본어	청소년/성인	월(주2회)	45,000	외국어	45,000	
교육문화	중국어	청소년/성인	월(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교육문화	한자교실	청소년, 성인	월(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교육문화	뮤지컬잉글리쉬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교육문화	세계화교실	유아/청소년 / 성인	월(주2회)	45,000	외국어	33,000	
교육문화	세계화특강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1.5h	49,500	외국어	49,500	
교육문화	꽃그림&연필스케치	성인/대학생	월(주1회)2h	78,000	예체능	78,000	
교육문화	도자기공예	유아/청소년 / 성인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리틀아티스트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서양화	성인/대학생	월(주1회)2h	78,000	예체능	78,000	
교육문화	수행닷컴	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수행닷컴	성인/대학생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썸!미술	유아, 청소년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연필인물화	성인/대학생	월(주1회)2h	78,000	예체능	78,000	
교육문화	종이접기	유아/청소년 /성인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클레이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홈캐치	성인/대학생	월(주1회)2h	78,000	예체능	78,000	
교육문화	미술창의력교실	유아/청소년 /성인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미술창의력특강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1.5h	52,500	예체능	52,500	
교육문화	미술창의력특강교실	성인/대학생	월(주1회)1.5h	58,500	예체능	58,500	
교육문화	응용미술교실	유아/청소년 /성인	월(주1회)2h	70,000	예체능	70,000	
교육문화	드럼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드럼교실	성인/대학생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바이올린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바이올린	성인/대학생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통기타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통기타	성인/대학생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피아노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피아노	성인/대학생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피아노	유아/초, 중, 고	월(주2회)	55,000	예체능	55,000	
교육문화	피아노	성인/대학생	월(주2회)	61,000	예체능	61,000	
교육문화	피아노	유아/초, 중, 고	월(주3회)	70,000	예체능	70,000	
교육문화	피아노	성인/대학생	월(주3회)	77,000	예체능	77,000	
교육문화	악기연주교실	유아/초, 중, 고	월(주1회)1.5h	52,500	예체능	52,500	
교육문화	악기연주교실	성인/대학생	월(주1회)1.5h	58,500	예체능	58,500	
교육문화	노래교실	성인/대학생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보컬트레이닝	유아/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보컬트레이닝	성인/대학생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발라드	성인/대학생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판소리	성인/대학생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음악감성교실	유아, 초, 중, 고	월(주1회)1.5h	58,500	예체능	58,500	
교육문화	음악감성교실	성인	월(주1회)1.5h	58,500	예체능	58,500	
교육문화	냅킨아트	성인	월(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예쁜글씨POP	성인	월(주1회)2h	78,000	예체능	78,000	
교육문화	요리교실	유아, 초, 중, 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요리교실	성인	월(주1회)2h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홈패션	성인	월(주1회)2h	56,000	취미, 교양, 문화	56,000	
교육문화	교양취미교실	성인	월(주1회)2h	56,000	취미, 교양, 문화	56,000	
교육문화	교양취미특강교실	유아, 초, 중, 고	월(주1회)2h	56,000	취미, 교양, 문화	56,000	
교육문화	교양취미특강교실	대학생, 성인	월(주1회)2h	56,000	취미, 교양, 문화	56,000	
교육문화	독서지도	성인	월(주1회)2h	56,000	취미, 교양, 문화	56,000	
교육문화	방과후지도사	성인	월(주1회)2h	56,000	취미, 교양, 문화	56,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부모교육	성인	월(주1회)2h	56,000	취미,교양,문화	56,000	
교육문화	평생교육교실	성인	월(주1회)2h	56,000	취미,교양,문화	56,000	
교육문화	민간자격시험반	성인	월(주1회)2h	3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휴넷센터 30,000 한국교육 진흥협회 40,000
교육문화	민간자격자격반	성인	월(주1회)2h	3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휴넷센터 30,000 한국교육진흥협회 40,000
교육문화	청소년진로지도사	성인	월(주1회)2h	44,000	취미,교양,문화	56,000	
교육문화	통합놀이교실	유아/초,중, 고	월(주5회)5h	400,000	기타5. 「그밖에요금을 정하지아니한사용료」	유사시설	폴리어학원 500,000 목동거스텝 970,000
교육문화	파워에어로빅	성인/대학생	월(주3회)	50,000	취미,교양,문화	50,000	
교육문화	다이어트댄스	성인/대학생	월(주3회)	50,000	취미,교양,문화	50,000	
교육문화	라인댄스	성인/대학생	월(주2회)	35,000	취미,교양,문화	39,000	
교육문화	라인댄스	성인/대학생	월(주3회)	50,000	취미,교양,문화	50,000	
교육문화	웰빙요가	성인/대학생	월(주2회)	39,000	취미,교양,문화	39,000	
교육문화	웰빙요가	성인/대학생	월(주3회)	50,000	취미,교양,문화	50,000	
교육문화	파워요가	성인/대학생	월(주2회)	39,000	취미,교양,문화	39,000	
교육문화	필라테스	성인/대학생	월(주2회)	39,000	취미,교양,문화	39,000	
교육문화	필라테스	성인/대학생	월(주3회)	50,000	취미,교양,문화	50,000	
교육문화	줄바댄스	성인/대학생	월(주3회)	50,000	취미,교양,문화	50,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춤바댄스	성인/대학생	월(주2회)	39,000	취미,교양,문화	39,000	
교육문화	SNPE바른자세운동	성인/대학생	월(주2회)	39,000	취미,교양,문화	39,000	
생활체육	수영교실	성인/대학생	월(주3회)	5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수영교실	성인/대학생	월(주2회)	4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수영교실	초,중,고	월(주3회)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생활체육	수영교실	초,중,고	월(주2회)	3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아쿠아로빅	성인/대학생	월(주3회)	5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생활체육	아쿠아로빅	성인/대학생	월(주2회)	4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생활체육	아쿠아로빅	청소년	월(주3회)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생활체육	아쿠아로빅	청소년	월(주2회)	3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수영패키지	성인	월(주5회)	81,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1,000	
생활체육	수영패키지	청소년	월(주5회)	7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72,000	
생활체육	소그룹수영	유아/초등	월(주2회)	80,000	예체능(그룹)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생활체육	소그룹수영	유아/초등	월(주1회)	55,000	예체능(그룹)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생활체육	스트리트댄스	초,중,고	월(주3회)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생활체육	어린이방송댄스	초,중,고	월(주2회)	3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어린이발레교실	초,중,고	월(주2회)	3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배드민턴교실	성인/청소년	월(주6회)	33,000	체육관	52,800	
생활체육	배드민턴교실	초,중,고	월(주3회)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생활체육	초등농구	초,중,고	월(주2회)	3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초등농구	초,중,고	월(주3회)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생활체육	초등음악줄넘기	초,중,고	월(주2회)	3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탁구교실	성인/대학생	월(주3회)1.5시간	48,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4,000	1.5시간
생활체육	탁구교실	초,중,고	월(주2회)1.5시간	44,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5,500	1.5시간
생활체육	리듬체조교실	초,중,고	월(주2회)	3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생활체육	치어애틀블링	초,중,고	월(주3회)2시간	140,000	예체능	140,000	2시간
생활체육	유아트레이닝 (성장체육)	초,중,고	월(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목적사업	공연동아리지원	청소년	1인/1회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청소년지도실습	청소년	1인	5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진로동기화	청소년	1회 학급단위	15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진로콘서트	청소년	1인/1회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청소년포상제	청소년	1인/1회	3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방송미디어콘테스트	청소년	1인/1회	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청소년미디어플랫폼	청소년	1인/1회	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디지털리터러시사업	청소년	1회 학급단위	5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방송문화콘텐츠 진로활동	청소년	1회 학급단위	15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방송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청소년	1회	5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e스포츠활동	청소년	1인	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VR영상제작활동	청소년	1시간/1회 학급단위	2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목적사업	인증 미디어크리에이티브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인증 '스마일'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인증 '전자적방송시점'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인증 '렛미인트로'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방송문화예술 육성프로젝트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문화관광콘텐츠 힐링프로젝트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방송부역량지원활동	청소년	1인	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청소년해양캠프	청소년	회/1인 2박3일	22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청소년스키캠프	청소년	회/1인 2박3일	22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치어리딩(타이거즈)	청소년	월(주1회)	2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농구(나루바스켓)	청소년	월(주1회)	2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수영(돌핀)	청소년	월(주1회)	2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배드민턴(스매싱)	청소년	월(주1회)	2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리듬체조(마포R.G)	청소년	월(주1회)	2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음악줄넘기(스키피)	청소년	월(주1회)	2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청소년3on3 농구대회	청소년	회	5,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학교연계(의무수영)	청소년	회	6,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적사업	역사체험	청소년	회	50,000	청소년사업	유사시설	유사시설평균

목동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글쓰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한국사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세계사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아나운서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자신감한글대비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스피치&파워자 신감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셀프리더십&멘 토링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논술	청소년	주1회	38,000	예체능	52,500	1.5H
	풀이한자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사고력독서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브릭스리딩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파닉스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스토리영어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디즈니영어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미술	청소년	주1회	31,000	예체능	35,000	
	도예	청소년	주1회	31,000	예체능	35,000	
	대생& 수채화	청소년	주1회	36,000	예체능	52,500	1.5H
	종이접기	청소년	주1회	31,000	예체능	35,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웹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캐리커처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이모티콘 만들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주산점 프샘	청소년	주1회	33,000	예체능	35,000	
	바둑	청소년	주1회	33,000	예체능	35,000	
	보드	청소년	주1회	33,000	예체능	35,000	
	체스	청소년	주1회	33,000	예체능	35,000	
	코딩	청소년	주1회	33,000	예체능	35,000	
	큐브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하프	청소년	주1회	52,000	예체능	52,500	1.5H
	우쿨렐레	청소년	주2회	38,000	예체능	55,000	
	동요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바이올린	청소년	주1회	52,000	예체능	52,500	1.5H
	비올라	청소년	주1회	52,000	예체능	52,500	1.5H
	플루트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기타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보컬트레이닝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작사&작곡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제빵	청소년	주1회	38,000	예체능	52,500	1.5H
	댄스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미술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댄스	성인	주2회	38,000	취미·교양·문화 등	39,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연필인물화	성인	주1회	33,000	취미·교양·문화 등	39,000	2H
	베이킹	성인	주1회	39,000	취미·교양·문화 등	39,000	2H
	도예	성인	주1회	45,000	취미·교양·문화 등	50,000	3H
	요가	청소년~성인	주2회	38,000	예체능	55,000	
	플로리스트	성인	주1회	36,000	취미·교양·문화 등	39,000	2H
	영어	성인	주1회	43,000	외국어	58,500	2H
	클래식기타	성인	주2회	43,000	예체능	61,000	
	경전	성인	주1회	33,000	취미·교양·문화 등	42,000	1.5H
	나도 수화 통역사	성인	주1회	55,000	외국어	58,500	1.5H
	나도 수화 통역사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부모교육	성인	주1회	42,000	취미·교양·문화 등	42,000	1.5H
	손뜨개	성인	주1회	42,000	취미·교양·문화 등	42,000	1.5H
	공방DIY	성인	주1회	42,000	취미·교양·문화 등	42,000	1.5H
	창의과학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드론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융합과학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영재과학 실험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융합수학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원어민 영어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원어민 영어	성인	주1회	55,000	외국어	58,500	1.5H
	중국어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중국어	성인	주1회	55,000	외국어	58,500	1.5H
	일본어	청소년	주1회	33,000	외국어	33,000	
	일본어	성인	주1회	55,000	외국어	58,500	1.5H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생활체육	미래청소년	5세	주5회/6시간	395,000	예체능+체육시설 이용수업	463,000	
	미래청소년	6세	주5회/6시간	396,000	예체능+체육시설 이용수업	463,000	
	미래청소년	7세	주5회/6시간	398,000	예체능+체육시설 이용수업	463,000	
	청소년수영	초1~6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청소년수영	초1~6	주2회/1시간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돌고래수영	초,중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토요청소년 수영교실	중,고	주1회/1시간	21,500	체육시설 이용수업	25,000	
	생존수영	초등	주2회/4시간	6,250	체육시설 이용수업	6,250	
	청소년 평일농구	청소년	주1회/1시간	24,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일요농구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예체능	35,000	
	어린이수영 (특)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인라인 (특)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예체능	70,000	
	청소년농구 (특)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예체능	70,000	
	음악즐넘기 (특)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예체능	70,000	
	청소년소수정예 다이어트(특)	청소년	주3회/1시간	53,000	예체능	70,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SNPE바른자세 (특)	청소년	주3회/1시간	50,000	예체능	70,000	
	배드민턴 (특)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예체능	70,000	
	CA(농구)	청소년	월1회/1시간	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250	
	CA(헬스)	청소년	주1회/1시간	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250	
생활체육	영유아수영	4세~6세	주3회/1시간	98,000	생활체육	내용없음	
	영유아수영	4세~6세	주2회/1시간	78,000	생활체육	내용없음	
	주니어수영	7세, 초1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주니어수영	7세, 초1	주2회/1시간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어린이수영단	초1~4	주2회/1시간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유아인라인	7세	주2회/1시간	42,000	예체능	55,000	
	어린이인라인	초등생	주2회/1시간	42,000	예체능	55,000	
	음악줄넘기	청소년	주1회/1시간	24,000	예체능	35,000	
	토요 음악줄넘기	청소년	주1회/1시간	24,000	예체능	35,000	
	풋살교실	청소년	주1회/1시간	24,000	예체능	35,000	
	리듬체조	청소년	주2회/1시간	45,000	예체능	55,000	
	조기건강	성인	주3회/1시간	5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조기직장인	성인	주3회/1시간	5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조기직장인	성인	주2회/1시간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성인수영	성인	주3회/1시간	5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연화	성인	주3회/1시간	6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3,000	
	저녁수영	성인	주3회/1시간	5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저녁수영	청소년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저녁수영	성인	주2회/1시간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저녁수영	청소년	주2회/1시간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핀수영교실	성인	주1회/1시간	3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1,000	
	효도수영	성인	주3회/1시간	4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아쿠아로빅	성인	주3회/1시간	5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다이어트댄스	성인	주3회/1시간	55,000	예체능	77,000	
	연화 에어로빅	성인	주3회/1시간	46,000	예체능	77,000	
	줌바댄스	성인	주2회/1시간	42,000	예체능	61,000	
	필라테스	성인	주2회/1시간	42,000	예체능	61,000	
	필라테스	성인	주1회/1시간	26,000	예체능	39,000	
	SNPE바른자세 척추운동	성인	주2회/1시간	42,000	예체능	61,000	
	SNPE바른자세 척추운동	성인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9,000	
생활체육	검도교실	초,중,고	주3회/1시간	45,000	예체능	70,000	
	검도교실	성인	주3회/1시간	55,000	예체능	77,000	
	배드민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42,000	예체능	55,000	신규
	배드민턴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24,000	예체능	35,000	신규
	단전호흡	청소년 성인	주5회/1시간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1,000	신규
	헬스	청소년	주6회/1시간	4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0,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헬스	성인	주6회/1시간	5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3,000	
	헬스(3개월)	성인	주6회/1시간	13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167,400	
	기구필라테스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180,000	예체능	인근공공 유사시설	
	기구필라테스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120,000	예체능	인근공공 유사시설	
	기구필라테스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7,000	예체능	인근공공 유사시설	
	수영(주3회) ·헬스	성인	주6회/1시간	82,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104,300	
	수영(주2회) ·헬스	성인	주6회/1시간	7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5,200	
	수영(주3회)· 아쿠아	성인	주6회/1시간	8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104,300	
	수영(주3회)· 에어로빅	성인	주5회/1시간	78,000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수업	93,100	
	헬스+필라테스(2)	성인	주6회/1시간	72,000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수업	107,800	
	수영(주3회)+ 필라(2)	성인	주5회/1시간	82,000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수업	81,900	
	수(주3회)·수(주2)	성인	주5회/1시간	7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1,000	
	수(주3회)+ 수(주3회)	성인	주6회/1시간	8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3,000	
	헬스·아쿠	성인	주6회/1시간	8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104,300	
생활체육	수영장일일입장	어린이	1시간	1,800	시설사용	1,800	
	수영장일일입장	청소년	1시간	2,500	시설사용	2,500	
	수영장일일입장	성인	1시간	4,300	시설사용	4,3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헬스장일일입장	청소년	1시간	1,500	시설사용	2,000	
	헬스장일일입장	성인	1시간	1,900	시설사용	3,000	
	수영장공개 (토,일,공휴일)	어린이	1시간	1,800	시설사용	1,800	
	수영장공개 (토,일,공휴일)	청소년	1시간	2,250	시설사용	2,500	
	수영장공개 (토,일,공휴일)	성인	1시간	2,750	시설사용	4,300	
	자유수영월회원	성인	주5회	55,000	시설사용	87,500	
	자유수영월회원	청소년	주5회	43,000	시설사용	50,000	
시설대관	청소년극장대관	성인(평일)	1회/3h	400,000	시설대관	450,000	
	청소년극장대관	성인(주말)	1회/3h	520,000	시설대관	570,000	
	청소년극장대관	청소년, 관련단체	1회/5h	220,000	시설대관	450,000	
청소년 사업	체험학습	청소년	1회	15,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CA활동 (교육활동)	청소년	1회	6,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CA활동 (영화감상)	청소년	1회	2,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실습지도	청소년	1회	5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진로활동	청소년	1회	1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자원봉사	청소년	1회	1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동아리활동	청소년	1회	5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테마캠프	청소년	1회	1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겨울캠프	청소년	1회	21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교육복지사업	청소년	1회	18,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가족교육복지사업	가족	1회	5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상담지도	PLAY매체치료	청소년	주1회/50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공감상담	청소년	주1회/50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부모TALK&교육	성인	주1회/50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PLAY집중 관찰평가	청소년	1회/50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사회성발달 짝공상담 (짝치료)	청소년	1회/50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자존감UP친구 UP집단상담 (장기)	청소년	주1회/50분	6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종합심리검사	청소년	1회/180분	195,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심리검사	청소년,성 인	1회/180분	15,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방학특강 (단기)	청소년,성 인	주1회/50분	6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화곡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공공유사시설 비교 (2개소)
교육문화	일일특강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1시간	5,000	예체능	8,750	예체능/주1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35,000/4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1시간	6,000	예체능	8,750	예체능/주1회 어린이, 청소년, 성인 35,000/4회	
교육문화	초등미술 (금요 리틀화가, 창의미술, 수채화 캘리그래피, 종이접기)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유아미술 (화요리틀화가, 금요리틀화가)	어린이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창의력교실	어린이, 청소년 (영유아&엄마랑)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어린이 요리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 문화	22,000		
교육문화	성인미술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아이클레이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유아피아노	어린이	주1회/1시간	32,000	예체능	35,000		
	토요피아노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32,000	예체능	35,000		
	실용음악반주	성인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9,000		
	화목피아노, 수금피아노 초급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화목피아노, 수금피아노 중급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44,000	예체능	55,000		
	화목피아노, 수금피아노 고급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2회/1시간	47,000	예체능	55,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공공유사시설 비교 (2개소)
	월수금피아노 초급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53,000	예체능	70,000		
	월수금피아노 중급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57,000	예체능	70,000		
	월수금피아노 고급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3회/1시간	58,000	예체능	70,000		
교육문화	드럼교실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33,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기타교실	청소년, 성인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노래교실	성인	주1회/1시간30분	11,000	예체능	55,000		
교육문화	악기교실 (가야금, 우쿨렐레, 칼림바, 바이올린, 리코더)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난타	청소년, 성인	주1회/2시간	50,000	예체능	55,000		
교육문화	사고력 (보드,바둑, 체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30,000 관악청소년회관 30,000
교육문화	사고력 (브리코건축, 레고,글쓰기, 가베)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8,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성동청소년센터 30,000 연남문화체육센터 33,000
교육문화	사고력 (독서토론논술, 한자)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관악청소년회관 30,000 유락종합 사회복지관 30,000
교육문화	사회교실 (로봇과학, STEAM)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강서청소년회관 30,000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33,000
교육문화	과학실험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30,000 용산청소년센터 31,5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공공유사시설 비교 (2개소)
교육문화	수학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7,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관악청소년회관 40,000 신월종합 사회복지관 50,000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관악청소년회관 40,000 신월종합 사회복지관 50,000
교육문화	사회교실 (한국사, 세계문화유산, 스피치, 한글)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28,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강서평생학습관 30,000 등촌9종합사회 복지관 45,000
교육문화	영어 (Bricks Reading, English A Class, Phonics World)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외국어	33,000		
교육문화	일본어, 중국어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외국어	33,000		
교육문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성인	주1회/1시간	39,000	외국어	39,000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5,000	외국어	45,000		
		성인	주2회/1시간	50,000	외국어	56,000		
교육문화	POP 예쁜손글씨 (꽃그림)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공예교실 (도예)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바리스타	성인	주1회/1시간	80,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설		도화청소년 문화의집 80,000 강서평생학습관 90,000
		청소년	주2회/2시간	60,000				
		성인	주1회/2시간	40,000				
		청소년	주1회/2시간	30,000				
교육문화	쿠킹교실 (홈베이킹 클래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1회/ 1시간30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1시간30분	39,000	예체능	39,000		
		어린이, 청소년	주1회/2시간	50,000	예체능	55,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공공유사시설 비교 (2개소)
		성인	주1회/2시간	60,0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체육교실 (생활체육)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1시간	37,400	예체능	39,000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성인	주2회/1시간	46,2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발레교실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1시간	37,400	예체능	39,000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생활체육	뮤직줄넘기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요가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성인	주2회/1시간	46,2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댄스교실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성인	주1회/1시간	37,400	예체능	39,000		
		성인	주2회/1시간	46,2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태권도	어린이, 청소년	주3회/1시간	43,000	예체능	70,000		
		어린이, 청소년	주4회/1시간	50,000	예체능	82,500		
		성인	주4회/1시간	23,100	예체능	91,000		
생활체육	탁구교실	청소년	주2회/1시간	40,000	예체능	55,000		
		성인	주2회/1시간	46,2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일일 자유탁구	청소년	1회/2시간	1,5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250	주1회 / 1시간 37,000/4회	
		성인	1회/2시간	3,300	체육시설 이용수업	10,750	주1회 / 1시간 43,000/4회	
생활체육	스포츠 클라이밍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40,000	예체능 (그룹활동)	인근 공공유사시설	-	마곡레포츠센터 33,000
		어린이, 청소년	주1회/1시간	41,000				ICN클라이밍 100,000
		성인	주1회/1시간	48,4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공공유사시설 비교 (2개소)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51,000				마곡레포츨센터 33,000 KBS스포츠월드 200,000
		성인	주2회/1시간	62,700				
		어린이, 청소년	주2회/1시간	56,000				
		성인	주2회/1시간	68,200				
생활체육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4시간	5,000	예체능	8,750	예체능 주1회/1회 유 초·중·고·성인 조례 상한가 기준 35,000/4회	
목적사업	내 손으로 Grow food	청소년	3회/3시간	30,000	청소년사업	청소년 사업		목동청소년센터 30,000 광진청소년센터 40,000
목적사업	도전 요리왕	청소년	1회	35,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슬기로운 집콕생활	청소년, 성인	1회	32,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같이의 가치	청소년, 성인	3회	45,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도심 속 숲속	청소년	1회	25,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청소년의 美, 美치겠다!	청소년	3회	20,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돈이 머니?	청소년	3회	10,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건강해 GYM	청소년	1회/100분	15,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학교동아리활동	청소년	1회/90분	5,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문래청소년센터 5,000
목적사업	알쓸봉사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아이엠어리더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진로 특 투유	청소년	1회/2시간	400,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	청소년	1회	5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문래청소년센터 50,000 금천청소년센터 50,000
목적사업	항공우주 시뮬레이션 (4차산업)	청소년	1회/90분	5,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보라매청소년 센터 10,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공공유사시설 비교 (2개소)
목적사업	드론 시뮬레이션 (4차산업)	청소년	1회/1시간	3,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항공과학 진로특강 (4차산업)	청소년	1회/2시간	8,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 69,000
목적사업	코딩드론 (4차산업)	청소년	2회/210분	22,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검단 청소년센터 50,000
목적사업	에어로 스페이스	청소년	1회/2시간	1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시립동대문 청소년센터 25,000
목적사업	코딩아이	청소년	2회/120분	18,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오조봇코딩	청소년	3회/2시간	21,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트렌드시	청소년	1회/90분	15,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인천계양구 청소년수련관 20,000
목적사업	메이커드론	청소년, 성인	2회/90분	6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사내청소년 문화의집 70,000
목적사업	홈씨어런스	청소년	1회/1시간	10,000	청소년사업	해당없음		
목적사업	항공체험이 뿔다	청소년	1회/6시간	1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시립구로 청소년센터 15,000
목적사업	패밀리클래스	청소년, 성인	2회/90분	4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검단청소년센터 50,000
목적사업	클라이밍 레슨	청소년	3회/120분	30,000	청소년사업	인근 공공유사시설		연희청소년센터 30,000
대관 및 기타사업	대강당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3시간	297,000	시설대관	350,000		
			초과 1시간	22,000				
대관 및 기타사업	체육활동장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3시간	110,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함)	인근 공공유사시설		강서구민올림픽 체육센터 120,000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200,000
			초과 1시간	11,000				
대관 및 기타사업	프로그램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3시간	55,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함)	인근 공공유사시설		양천해누리타운 70,000
			초과 1시간	11,000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조례상한가 산출	인근 공공유사시설 비교 (2개소)
대관 및 기타사업	강의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1회/3시간	22,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시설)	인근 공공유사시설		강서구민회관 30,000 해오름평생교육원 50,000
			초과 1시간	11,000				
대관 및 기타사업	암벽화 대여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1개월	11,000	기타 (5. 그 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시설)	인근 공공유사시설		KBS스포츠월드 12,000 ICN클라이밍 12,000

구로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교육문화	피아노	바이엘 19세이하	주3회	50,000	예체능	70,000		
		체르니 19세이하	주3회	60,000		70,000		
		바이엘 19세이하	주2회	40,000		55,000		
		체르니 19세이하	주2회	45,000		55,000		
		바이엘 19세이하	주1회	30,000		35,000		
		체르니 19세이하	주1회	35,000		35,000		
	드 럼	19세이하	주1회	30,000		35,000		
	바이올린	19세이하	주1회	35,000		35,000		
	클래식기타	19세이하	주1회	30,000		35,000		
	성인노래교실	성인	주1회	30,000		39,000	일일 2시간수업	
	바리스타	19세이하	주1회	35,000		35,000	재료비 별도	
	코마미술쟁	초등	주1회	35,000		35,000		
	대생수채화	유아~초등	주1회	35,000		35,000		
	창의미술	유아~초등	주1회	30,000		35,000		
	종이접기 수학교형	유아	주1회	35,000		35,000		
	토탈공예교실	청소년	주1회	35,000		35,000		
	영어교실	유아~초등	주1회	30,000	외국어	33,000		
	바둑교실	유아~초등	주1회	22,000	기타·취미 문화	22,000	재료비 별도 (8,000원)	
	수학교실	유아~초등	주1회	22,000		22,000	재료비 별도 (8,000원)	
	독서토론교실	초등	주1회	22,000		22,000		
	디지털 캘리그라피	19세이하	주1회	22,000		35,000	사용료 별도 (13,000원)	
	코딩교실	19세이하	주1회	22,000		22,000		
	미디어웹툰	19세이하	주1회	22,000		22,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생활체육	수영교실 (조기반, 오전반, 저녁반)	대학생 성인	주3회	5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부가세 별도	
		19세이하		45,000		50,000		
	수영교실 (조기반, 오전반, 저녁반)	대학생, 성인	주2회	40,000		43,000	부가세 별도	
		19세이하		35,000		37,000		
	어르신수영교실	70세이상	주3회	50,000		56,000	부가세 별도	
			주2회	35,000		43,000	부가세 별도	
	수영교실 (어린이)	유아~ 초등생	주3회	42,000		50,000		
			주2회	32,000		37,000		
	수영교실 (월자유수영)	대학생/성인	주5회	50,000		87,500	부가세 별도	
		대학생/성인	주3회	30,000		52,500	부가세 별도	
		19세이하	주5회	40,000		50,000		
		19세이하	주3회	30,000		30,000		
	수영소수반 (3~5명정원)	19세이하	주3회	120,000		유사 시설 준용		구로구민체육센터 130,500원 영등포스포츠허브 132,000원
			주2회	100,000		유사 시설 준용		구로남초등학교 140,000원 조원초등학교 150,000원
			주1회	70,000		유사 시설 준용		50플러스수영장 69,000원 문래청소년수련관 80,000원
		대학생/성인	주2회	160,000		유사 시설 준용	부가세 별도	
			주1회	120,000		유사 시설 준용	부가세 별도	
		성인	주3회	55,000		56,000	부가세 별도	
			주2회	42,000		43,000		
	생존수영	중학생	주1회	8,000	수영장 월 사용료	10,000		
	축구교실	유아~초등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농구교실	유아~중등	주1회	30,000		35,000		
	음악줄넘기	유아~초등	주1회	30,000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배드민턴	초등~중등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인라인	유아~초등	주1회	30,000		35,000		
	에어로빅	대학생~성인	주3회	53,000		77,000		
		19세이하	주3회	45,000		70,000		
	줌바	대학생~성인	주3회	53,000		77,000		
			주2회	40,000		61,000		
		19세이하	주3회	45,000		70,000		
			주2회	35,000		55,000		
	월빙댄스	성인	주2회	35,000		61,000		
	라인댄스	성인	주2회	30,000		61,000		
	필라테스 (매트, 소도구)	대학생~성인	주3회	60,000		77,000		
			주2회	40,000		61,000		
		19세이하	주3회	45,000		70,000		
			주2회	35,000		55,000		
	리듬체조	유아~초등	주1회	30,000		35,000		
목적사업	꾸·미·다	청소년	주1회/ 2시간	12,000	청소년 사업	실비		
		청소년	주1회/ 2시간	25,000		실비		
	희망틈새 학교	청소년	주1회/ 2시간	20,000		실비		
			주1회/ 2시간	25,000		실비		
	리더십 봉사단 'Present'	청소년	월~금 /1회 당 2시간	15,000		실비		
	자유롭고 신나서 감탄하는캠프 '자신감'	청소년	금, 토	5,000		실비		
	꿈 찾기 체험 캠프	청소년	월~토	75,000		실비		
	글로벌청소년교류	청소년	금~일	1,500,000		실비		
	4BEYOND	청소년	주1회/ 1시간	15,000		실비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상담사업	개인상담	유아/청소년/성인	1회/1시간	50,000	상담	검사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50,000원 × 1회	
	심리검사	유아/청소년/성인	1회/1시간	20,000			20,000원 × 1회	
	미술치료	유아/청소년/성인	1회/1시간	60,000			60,000원 × 1회	
	청소년교육 상담자원봉사자양성교육	성인	15회/3시간	50,000			50,000원 × 1회	
기타사업	소극장대관	단체	평일	250,000	시설대관	250,000		
			토, 휴일	325,000		325,000		
	프로그램실 댄스연습실	성인	평일	30,000	기타 (5. 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 공공유사시 설		구로아트밸리 (60,000원/3시간) 영등포시설관리공단 (55,000원/2시간)
			토, 휴일	39,000				
		성인	평일	30,000				
			토, 휴일	39,000				
	체육관	성인	1인/1시간	2,500	시설 사용료	2,500		부가세미포함 (성인)
		청소년		1,800		1,800		
		유아		1,300		1,300		

금천청소년센터

(단위: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시설대관	대관(평일)	전체	-	250,000	시설대관	250,000		
	대관(주말)	전체	-	325,000	시설대관	325,000	주말할증	
	장비사용료	전체	1회	20,000	-	-	실비	강북:50,000 목동:35,000
	마이크사용료	전체	1개	5,000	-	-	실비	화곡:5,000 중랑:5,000
시설사 영리	평일자유수영(1시간)	어린이	1회	1,800	수영장	1,800		
	평일자유수영(1시간)	청소년	1회	2,500	수영장	2,500		
	평일자유수영(1시간)	성인	1회	3,300	수영장	4,300		
	토요일자유수영(2시간)	어린이	1회	2,200	수영장	3,600		
	토요일자유수영(2시간)	청소년	1회	2,800	수영장	5,000		
	토요일자유수영(2시간)	성인	1회	3,900	수영장	8,600		
	일요일자유수영(2시간)	어린이	1회	2,200	수영장	3,600		
	일요일자유수영(2시간)	청소년	1회	2,800	수영장	5,000		
	일요일자유수영(2시간)	성인	1회	3,900	수영장	8,600		
	평일 체육관	어린이	1회	1,300	체육관	1,300		
	주말 체육관	어린이	1회	1,690	체육관	1,690	주말할증	
	평일 체육관	청소년	1회	1,800	체육관	1,800		
	주말 체육관	청소년	1회	2,340	체육관	2,340	주말할증	
	평일 체육관	대학생	1회	2,500	체육관	2,500		
	주말 체육관	대학생	1회	3,250	체육관	3,250	주말할증	
	평일 체육관	성인	1회	2,500	체육관	2,500		
	주말 체육관	성인	1회	3,250	체육관	3,250	주말할증	
	일일자유헬스	성인	2시간	4,000	헬스장	6,000		
	일일자유헬스	청소년	2시간	3,600	헬스장	4,000		
교양·민 화·사·예	논술&요리	초/중/고	주1회	22,000	예체능	35,000		
	영재바둑	초등	주1회	22,000	예체능	35,000		
	코딩	유아, 초등	주1회	40,000	-	-	실비	송파:40,000 수서:40,000
	창의수학가베	유아, 초등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영어	초등	주1회	50,000	외국어	66,000	2시간	
	토요 드럼	전체	월2회	24,000	예체능	26,250	1시간30분	
	토요 드럼	전체	월4회	48,000	예체능	52,500	1시간30분	
	토요 드럼	전체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수요 드럼	전체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통 기타	전체	주1회	48,000	예체능	52,500	1시간30분	
	통 기타	전체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영재 피아노	초등	주2회	37,000	예체능	55,000	바이엘	
	영재 피아노	초등	주2회	42,000	예체능	55,000	체르니	
	영재 피아노	초등	주2회	47,000	예체능	55,000	체르니	
	영재 피아노	초등	주3회	49,000	예체능	70,000	바이엘	
	영재 피아노	초등	주3회	54,000	예체능	70,000	체르니	
	영재 피아노	초등	주3회	59,000	예체능	70,000	체르니	
	취미 피아노	청소년	주2회	47,000	예체능	55,000	바이엘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취미 피아노	성인	주2회	47,000	예체능	61,000	바이엘		
		청소년	주2회	52,000	예체능	55,000	체르니		
		성인	주2회	52,000	예체능	61,000	체르니		
	취미 피아노	성인	주2회	57,000	예체능	61,000	체르니		
	우쿠렐레(신규)	초등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토요 피아노(바이엘)	청소년	주1회	37,000	예체능	52,500	1시간30분		
		성인	주1회	37,000	예체능	58,500	1시간30분		
	토요 피아노(체르니)	청소년	주1회	42,000	예체능	52,500	1시간30분		
		성인	주1회	42,000	예체능	58,500	1시간30분		
	토요 피아노(반주법)	청소년	주1회	42,000	예체능	52,500	1시간30분		
		성인	주1회	42,000	예체능	58,500	1시간30분		
		토요 피아노(체르니)	청소년	주1회	57,000	예체능	52,500	1시간30분	노원:57,000(1시간30분) 송파:52,000(1시간)
성인			주1회	57,000	예체능	58,500	1시간30분		
꽃꽂이		전체	주1회	20,000	취미교양문화등	28,000	1개월		
꽃꽂이		전체	주1회	60,000	취미교양문화등	84,000	3개월		
해피노래교실		전체	주1회	10,000	취미교양문화등	28,000	1개월		
해피노래교실		전체	주1회	30,000	취미교양문화등	84,000	3개월		
POP&캘리그래피		전체	주1회	20,000	취미교양문화등	28,000	1개월		
POP&캘리그래피		전체	주1회	60,000	취미교양문화등	84,000	3개월		
생각을 그리는 미술		어린이	주2회	34,000	예체능	55,000			
창의아트플레이		유아, 초등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즐거움 미술 여행		유아	주2회	34,000	예체능	55,000			
꼬마화가미술		유아	주2회	34,000	예체능	55,000			
방학특강(단기특강)		청소년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생 활 체 육 사 료		새벽 수영	성인	주3회	43,000	체육시설	56,000		
		새벽 수영	청소년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새벽 수영	성인	주3회	47,000	체육시설	56,000			
	새벽 수영	청소년	주3회	41,000	체육시설	50,000			
	새벽 수영	성인	주5회	63,000	체육시설	81,000			
	새벽 수영	청소년	주5회	56,000	체육시설	72,000			
	새벽 수영	성인	주6회	58,000	체육시설	93,000			
	새벽 수영	성인	주6회	63,000	체육시설	93,000			
	새벽 수영	성인	주6회	67,000	체육시설	93,000			
	새벽 수영	청소년	주6회	60,000	체육시설	80,000			
	아침 수영	성인	주3회	43,000	체육시설	56,000			
	아침 수영	청소년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아침 수영	성인	주3회	47,000	체육시설	56,000			
	아침 수영	청소년	주3회	41,000	체육시설	50,000			
	아침 수영	성인	주5회	63,000	체육시설	81,000			
	아침 수영	청소년	주5회	56,000	체육시설	72,000			
	아침 수영	성인	주6회	58,000	체육시설	93,000			
	아침 수영	성인	주6회	63,000	체육시설	93,000			
	아침 수영	성인	주6회	67,000	체육시설	93,000			
	아침 수영	청소년	주6회	60,000	체육시설	80,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오전수영	성인	주3회	43,000	체육시설	56,000		
	오전수영	청소년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오전수영	성인	주3회	47,000	체육시설	56,000		
	오전수영	청소년	주3회	41,000	체육시설	50,000		
	오전수영	성인	주5회	63,000	체육시설	81,000		
	오전수영	청소년	주5회	56,000	체육시설	72,000		
	오전수영	성인	주6회	58,000	체육시설	93,000		
	오전수영	성인	주6회	63,000	체육시설	93,000		
	오전수영	성인	주6회	67,000	체육시설	93,000		
	오전수영	청소년	주6회	60,000	체육시설	80,000		
	성인 수영	성인	주3회	47,000	체육시설	56,000		
	성인 수영	청소년	주3회	41,000	체육시설	50,000		
	성인 수영	성인	주5회	63,000	체육시설	81,000		
	성인 수영	청소년	주5회	56,000	체육시설	72,000		
	성인 수영	성인	주6회	63,000	체육시설	93,000		
	성인 수영	성인	주6회	67,000	체육시설	93,000		
	성인 수영	청소년	주6회	60,000	체육시설	80,000		
	실버 수영	65세 이상	주3회	31,000	체육시설	56,000		
	실버 수영	64세 이하	주3회	40,000	체육시설	56,000		
	아쿠아로빅	성인	주3회	48,000	체육시설	56,000		
	아쿠아로빅	청소년	주3회	41,000	체육시설	50,000		
	아쿠아로빅	성인	주2회	34,000	체육시설	43,000		
	아쿠아로빅	청소년	주2회	36,000	체육시설	37,000		
	유아 수영	유아	주2회	26,000	체육시설	37,000		
	유아 수영	유아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어린이 수영	어린이	주2회	26,000	체육시설	37,000		
	어린이 수영	어린이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생 활 체 육 사 건	오후 성인 수영	성인	주3회	47,000	체육시설	56,000		
	단기 속성반	전체	주2회	99,00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00,000 마포문화:135,000
	단기 속성반	전체	주3회	148,00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50,000 마포문화:165,000
	단기 속성반	전체	주1회	50,000	체육시설	-	실비	용산:50,000 목동:50,000
	단기 속성반	전체	월4회	50,000	체육시설	-	실비	동작:65,000 강북:65,000
	단기 속성반	전체	월5회	62,500	체육시설	-	실비	동작:65,000 강북:65,000
	단기 속성반	전체	월7회	86,630	체육시설	-	실비	용산:87,500 마포문화:118,120
	단기 속성반	전체	월8회	99,00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00,000 마포문화:135,000
	단기 속성반	전체	월9회	111,37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00,000 마포문화:135,000
	단기 속성반	전체	월10회	123,34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25,000 마포문화:137,500
	단기 속성반	전체	월11회	135,67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37,500 마포문화:151,25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단기 속성반	전체	월12회	148,00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50,000 마포문화:165,000
	단기 속성반	전체	월13회	160,33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62,500 마포문화:178,750
	단기 속성반	전체	월14회	172,66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75,000 마포문화:192,500
	저녁수영	어린이	주2회	26,000	체육시설	37,000		
	저녁수영	어린이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저녁수영	어린이	주5회	51,000	체육시설	72,000		
	아간수영	성인	주3회	43,000	체육시설	56,000		
	아간수영	청소년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아간수영	성인	주3회	47,000	체육시설	56,000		
	아간수영	청소년	주3회	41,000	체육시설	50,000		
	아간수영	성인	주5회	63,000	체육시설	81,000		
	아간수영	청소년	주5회	56,000	체육시설	72,000		
	아간수영	성인	주6회	58,000	체육시설	93,000		
	아간수영	성인	주6회	63,000	체육시설	93,000		
	아간수영	성인	주6회	67,000	체육시설	93,000		
	아간수영	청소년	주6회	60,000	체육시설	80,000		
	심아수영	성인	주3회	43,000	체육시설	56,000		
	심아수영	청소년	주3회	36,000	체육시설	50,000		
	심아수영	성인	주3회	47,000	체육시설	56,000		
	심아수영	청소년	주3회	41,000	체육시설	50,000		
	심아수영	성인	주5회	63,000	체육시설	81,000		
	심아수영	청소년	주5회	56,000	체육시설	72,000		
	심아수영	성인	주6회	58,000	체육시설	93,000		
	심아수영	성인	주6회	63,000	체육시설	93,000		
	심아수영	성인	주6회	67,000	체육시설	93,000		
	심아수영	청소년	주6회	60,000	체육시설	80,000		
	토요 수영	어린이	주1회	25,000	체육시설	25,000		
	월 자유수영	청소년	주6회	56,000	체육시설	80,000		
	월 자유수영	성인	주6회	56,000	체육시설	93,000		
	수영참가비	누구나	-	5,000	-	-	실비	용산:3,000 노원:5,000
	장애우 수영	장애우	주2회	24,000	체육시설	37,000		
	단체위탁수영	청소년	주1회	6,000	수영장	10,000		
	수영+헬스	성인	주6회	89,600	-	-	패키지	국제:105,000 성동:90,500
	수영+헬스	성인	주5회+6회	86,400	-	-	패키지	용산:102,900 강북:80,000
	수영+헬스	성인	주5회+6회	86,400	-	-	패키지	국제:96,000 서대문:88,000
	수영+헬스	성인	주6회	82,400	-	-	패키지	용산:86,100 성동:90,500
	수영+헬스	성인	주3회 6회	73,600	-	-	패키지	목동:86,100 강북:78,000
	수영+헬스	성인	주2회 6회	70,400	-	-	패키지	목동:77,700 강북:78,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수영+아쿠아로빅	성인	주3회	76,000	-	-	패키지	용산:85,500 목동:75,900
	수영+아쿠아로빅	성인	주3회	72,800	-	-	패키지	용산:83,500 서대문:75,900
	자유수영+헬스	성인	주6회	80,800	-	-	패키지	목동:86,400 용산:88,000
	수영+요가	성인	주5회 3회	84,000	-	-	패키지	국제-96,000 서대문:86,900
	수영+요가	성인	주3회	71,200	-	-	패키지	관악:78,500 용산:86,400
	수영+요가	성인	주3회	68,000	-	-	패키지	목동:75,000 서대문:86,900
	수영+줄바	성인	주3회	67,200	-	-	패키지	목동:75,000 은평:81,400
	헬스+줄바	성인	주6회 2회	65,600	-	-	패키지	문래:75,000 동작구민:79,650
	헬스+아쿠아로빅	성인	주6회 3회	74,400	-	-	패키지	목동:83,500 강북:78,000
	헬스+아쿠아로빅	성인	주6회 3회	76,000	-	-	패키지	목동:83,500 강북:78,000
	헬스+아쿠아로빅	성인	주6회 2회	63,200	-	-	패키지	목동:83,500 강북:72,000
	헬스+요가	성인	주6회 3회	69,600	-	-	패키지	동작:79,650 서대문:83,600
	발레 Level 1	유아, 초등	주2회	37,000	예체능	55,000		
		유아, 초등	주3회	42,000	예체능	70,000		
	발레 Level 2	유아, 초등	주2회	37,000	예체능	55,000		
		유아, 초등	주3회	42,000	예체능	70,000		
	발레 Level 3	초등	주3회	55,000	예체능	70,000		
	필라테스	전체	주3회	42,000	예체능	70,000		
	요가테라피	전체	주3회	42,000	예체능	70,000		
	요가&필라테스	전체	주3회	42,000	예체능	70,000		
	SNPE바른자세 척추교정	성인	주2회	50,000	예체능	61,000		
	줄바	성인	주2회	37,000	예체능	61,000		
	Kpop 댄스(키즈댄스)	청소년	주2회	37,000	예체능	55,000		
	방송댄스	초등	주2회	37,000	예체능	55,000		
	재즈댄스	초등	주2회	40,000	예체능	55,000		
	헬스 성인	전체	주6회	45,000	헬스장	75,000		
	헬스 성인	성인	주6회	121,500	헬스장	225,000	3개월	
	헬스 청소년	청소년	주6회	31,000	헬스장	51,000		
	음악줄넘기	초등	주2회	35,000	예체능	55,000		
	음악줄넘기	초등	주2회	38,000	예체능	55,000		
	외발자전거	청소년	주1회	25,000	예체능	35,000		
	외발자전거	성인	주1회	30,000	예체능	39,000		
	풋살	초등	주1회	30,000	예체능	35,000		
	토요농구	초등,청소년	주1회	33,000	예체능	35,000		
	학교농구	초등,청소년	주1회	52,500	예체능	35,000	1시간30분	
	점핑하이	성인	주3회	50,000	예체능	77,000		
	점핑하이	성인	주2회	40,000	예체능	61,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점핑하이	청소년	주3회	50,000	예체능	70,000		
	점핑하이	청소년	주2회	40,000	예체능	55,000		
	방학특강 무용	전체	주2회~5회	40,000~ 55,000	예체능	55,000	2회기준	
	방학특강 수영	7세 ~ 초등	주2회~5회	30,000	체육시설	37,000	2회기준	
		전체	주2회	99,000	체육시설	-	실비	용산:100,000 마포문화:135,000
	방학특강 체육	초,중,고	주2회~5회	30,000	예체능	55,000	2회기준	
목적 사업	생존수영	청소년	주1회	7,000	수영장	10,000		
	대학생전공실습비	청소년	1회	50,000	청소년사업	-		은행:50,000 광진:50,000
	대안학교원두	청소년	1회	150,000	청소년사업	-		꿈이있는학교: 150,000 덕움터학교: 150,000
기 타 사 업	보증금 및 기본실	전체	개	10,000	-	-	실비	구조:10,000 목동:10,000
	회원카드재발급	전체	개	909	-	-	실비	구조:1,000 문래:1,000
	식당수입	전체	월	80,000	-	-	실비	망우:60,000 강북:80,000
	사물함	전체	소,대	3,000~5,000	-	-	실비	구조:3,850(소) 문래:3500(소)
	임대관리비	상담복지센터	월	350,000	-	-	실비	관악청소년회관: 600,000 방배유스센터: 350,000
	아지트수입 (코인노래방,게임)	전체	1회	91	-	-	실비	
	휴카페	전체	월	500,000	-	-	실비	
	아메리카노	전체	1회	2,500	-	-	실비	빌리엔젤:3,900 커피에반하다:1,500
	카페라떼	전체	1회	3,000	-	-	실비	빌리엔젤:4,900 커피에반하다:2,500
	카푸치노	전체	1회	3,000	-	-	실비	빌리엔젤:4,400 커피에반하다:2,500
	카페모카	전체	1회	3,500	-	-	실비	빌리엔젤:4,900 커피에반하다:3,500
	카라멜 마끼아또	전체	1회	3,500	-	-	실비	빌리엔젤:4,900 커피에반하다:3,500
	바닐라라떼	전체	1회	3,500	-	-	실비	빌리엔젤:4,900 커피에반하다:3,000
	페퍼민트	전체	1회	2,500	-	-	실비	빌리엔젤:3,800 커피에반하다:1,500
	얼 그레이	전체	1회	2,500	-	-	실비	빌리엔젤:3,800 커피에반하다:3,000
	핫초코	전체	1회	3,500	-	-	실비	빌리엔젤:5,000 커피에반하다:3,000
	녹차 라떼	전체	1회	3,500	-	-	실비	빌리엔젤:4,900 커피에반하다:3,5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요청근거
	자색고구마 라떼	전체	1회	3,500	-	-	실비	빌리엔젤:4,900 커피에반하다:3,500
	레몬 에이드	전체	1회	3,300	-	-	실비	빌리엔젤:5,300 커피에반하다:3,000
	자몽 에이드	전체	1회	3,500	-	-	실비	빌리엔젤:5,300 커피에반하다:3,000
	딸기/망고/요거트 스무디	전체	1회	4,000	-	-	실비	빌리엔젤:5,500 커피에반하다:3,500

※ 생활체육프로그램(만25세 이상의 성인), 기타사업 부가기치세 10% 별도 부과

문래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교육문 화사업	엘리샘아트쿡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바이올린	유아-성인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드럼	초등-성인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등요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열려라미술세상	유아-고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찰흙조형놀이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생각쑥쑥종이접기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홍익킨더창의아트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다빈치창의미술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성인난타	성인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미술	성인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9,000	
	성인영어(초급)	성인	주2회/1시간	56,000	외국어	56,000	
	창의교육 (체스, 레고, 퍼즐)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취미.교양.문화	22,000	홈플러스 33,400
	인지교육 (바둑, 주산)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취미.교양.문화	22,000	홈플러스 42,000
	라즈키즈영어도서	유아-초등	주2회/1시간	45,000	외국어	45,000	
	잉글리쉬스쿨	유아-초등	주2회/1시간	45,000	외국어	45,000	
	funfun키즈영어	유아-초등	주2회/1시간	45,000	외국어	45,000	
	토요 연상한자	초등-고등	주1회/1.5시간	30,000	취미.교양.문화	33,000	문화/주1회/ 22,000×1.5시간
	토요드럼(1일)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토요드럼(1일)	성인	주1회/1시간	37,000	예체능	39,000	
교육문 화사업	토요 신의한수 홀과백	청소년	주1회/1시간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토요 홍익킨더 창의아트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학교미술 따라잡기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4,000	예체능	35,000	
	오카리나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플룻	청소년	주1회/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토요 청소년미술	유아-고등	주1회/1.5시간	34,000	예체능	52,5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1.5시간
	피아노	유아- 청소년	주3회/1시간20 분(이론20분)	80,000	예체능	93,300	예체능/주3회/초·중·고 상한 70,000×1시간20분
	피아노	성인	주3회/1시간20 분(이론20분)	99,000	예체능	102,600	예체능/주3회/성인 상한 77,000×1시간20분
	피아노	유아- 청소년	주2회/1시간20 분(이론20분)	50,000	예체능	66,600	예체능/주2회/초·중·고 상한 50,000×1시간20분
	피아노	성인	주2회/1시간20 분(이론20분)	66,000	예체능	81,300	예체능/주2회/성인 상한 61,000×1시간20분
	토요피아노교실	청소년	주1회/1.5시간	50,000	예체능	52,5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1.5시간
	토요피아노교실	성인	주1회/1.5시간	50,000	예체능	58,500	예체능/주1회/대학생,성인 상한 39,000×1.5시간
	성인한자교실	성인	주2회/1.5시간	40,000	취미,교양. 문화	58,500	취미/주2회/성인 상한 39,000×1.5시간
	독서지도사	성인	주2회/2시간	60,000	취미,교양. 문화	60,000	취미/주2회/성인 상한 39,000×2시간
	두뇌개발한자속독	유아-초등	주1회/1.5시간	30,000	취미,교양.문화	33,000	취미/주1회/초·중·고 상한 22,000×1.5시간
	토요유아영어민영여(그룹)	유아	주1회/1시간	33,000	원어민 (소그룹)	인근유사시설 비교	사당문화회관 40,000 신월문화체육센터 45,000
	멘사보드게임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기타 (4차산업연계)	인근유사시설 비교	용산꿈나무문화센터 30,000 CBS문화센터 30,000
	한국사	초등	주1회/1시간	3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유사시설 비교	용산꿈나무터운 35,000 CBS문화센터 33,000
생활체육사업	토론,논술교실	유아-초등	주1회/1시간	3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유사시설 비교	용산꿈나무터운 30,000 동대문구민체육센터 38,000
	요가(3일)	성인	명	55,000	예체능	77,000	
	요가(3일)	청소년	명	37,000	예체능	70,000	
	요가(2일)	성인	명	37,000	예체능	61,000	
	요가(2일)	청소년	명	30,000	예체능	55,000	
	필라테스(3일)	성인	명	55,000	예체능	77,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필라테스(3일)	청소년	명	37,000	예체능	70,000	
	필라테스(2일)	성인	명	37,000	예체능	61,000	
	필라테스(2일)	청소년	명	30,000	예체능	55,000	
	SNPE바른자세척추운동(2일)	성인	명	37,000	예체능	61,000	
	SNPE바른자세척추운동(2일)	청소년	명	30,000	예체능	55,000	
	다이어트로빅(5일)	성인여성	명	80,000	예체능	106,000	
	근력스트레칭(3일)	성인	명	55,000	예체능	77,000	
	근력스트레칭(3일)	청소년	명	37,000	예체능	70,000	
	근력스트레칭(2일)	성인	명	37,000	예체능	61,000	
	근력스트레칭(2일)	청소년	명	30,000	예체능	55,000	
	성인발레A(3일)	성인	명	55,000	예체능	77,000	
	성인발레A(3일)	청소년	명	37,000	예체능	70,000	
	성인발레B(3일)	성인	1.5h/ 명	80,000	예체능	123,200	예체능/주3회/대학생,성인 상한 77,000×2시간×강습료 할인 20%
	성인발레B(3일)	청소년	1.5h/ 명	50,000	예체능	112,000	예체능/주3회/초중고 상한 70,000×2시간×강습료 할인 20%
	스포츠댄스(취미)(2일)	성인	명	45,000	예체능	61,000	
	스포츠댄스(취미)(2일)	청소년	명	35,000	예체능	55,000	
	발리댄스(2일)	성인	명	37,000	예체능	61,000	
	발리댄스(2일)	청소년	명	30,000	예체능	55,000	
	결그룹방송댄스(2일)	성인	명	37,000	예체능	61,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생활체육사업	결그룹방송댄스(2일)	청소년	명	30,000	예체능	55,000	
	쑤바댄스A(3일)	성인여성	명	55,000	예체능	77,000	
	쑤바댄스B(2일)	성인	명	37,000	예체능	61,000	
	쑤바댄스B(2일)	청소년	명	27,000	예체능	35,000	
	토요방송댄스A,B	초등	명	27,000	예체능	35,000	
	토요유아방송댄스A,B	유아	명	27,000	예체능	35,000	
	토요음악줄넘기	초등	명	27,000	예체능	35,000	
	새벽A,C 저녁A,B,D, 오전A	성인	주3회/1시간	5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vat별도
	새벽A,C 저녁A,B,D, 오전A	중고생	주3회/1시간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새벽B,D 저녁C,E, 오전B,C	성인	주2회/1시간	4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vat별도
	새벽B,D 저녁C,E, 오전B,C	중고생	주2회/1시간	3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실버수영교실A	성인	주3회/1시간	45,65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실버수영교실B	성인	주2회/1시간	34,65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성인수영클럽(소그룹)	성인	주2회/1시간	100,000	예체능 (그룹)	인근유사시설비 교	구로구민체육센터 109,000 고척체육센터 100,000
	올챙이	유아	주2회/1시간	3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거북이,물개	초등	주2회/1시간	3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날치,상어,초등수영	초등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아쿠아A,C,F	성인	주3회/1시간	5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vat별도
	아쿠아A,C,F	중고생	주3회/1시간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아쿠아B,D,E	성인	주2회/1시간	4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vat별도
	아쿠아B,D,E	중고생	주2회/1시간	3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일일자유수영 (영, 유아)	영, 유아	주1회/1시간	1,800	수영장	1,800	
생활체육 사업	일일자유수영 (청소년)	청소년	주1회/1시간	2,500	수영장	2,500	
	일일자유수영 (성인)	성인	주1회/1시간	4,300	수영장	4,300	
	10회헬스PT	성인	주2회/1시간	400,000	기타	인근유사시설비 교	신림체육센터 400,000 영등포제1체육센터 440,000
	1개월 헬스	성인	주5회/1시간	49,500	헬스장	75,000	
	어르신 헬스	성인	주5회/1시간	33,000	헬스장	75,000	
	패키지 (수영, 스피닝+헬스)	성인	주5회/1시간	33,000	헬스장	75,000	
	청소년 헬스	청소년	주5회/1시간	27,500	헬스장	51,000	
	패키지 (수영+헬스)	청소년	주5회/2시간	16,500	헬스장	51,000	
	방학특강 수영교실	초등	주2회/1시간	3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방학특강 수영교실	초등	주3회/1시간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새벽스피닝A	성인	주3회/1시간	61,600	예체능	77,000	
	스피닝A,B,C,D,E	성인	주3회/1시간	61,600	예체능	77,000	
	건강스피닝 A,B,C,D,E	성인	주2회/1시간	50,600	예체능	61,000	
	토요어린이인라인	초등	명	28,000	예체능	35,000	
	토요스턴트치어리딩(대회)	초등	명	50,000	예체능	56,0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2시간×강습료 할인 20%
	토요스턴트치어리딩(취미)	초등	명	33,000	예체능	35,0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2시간×강습료 할인 20%
	토요양뽕놀이즐넘기	초등	명	27,000	예체능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토요양뽀유아줄넘기	유아	명	33,500	예체능	56,0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2시간×강습료 할인 20%
	토요성장줄넘기	초등	명	33,500	예체능	56,000	예체능/주1회/초·중·고 상한 35,000×2시간×강습료 할인 20%
	토요유아축구	유아	명	27,000	예체능	35,000	
	토요초등축구	초등	명	27,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사업	대학생기획단	청소년	명	50,000	청소년사업	-	연중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사업	-	연중
	청소년마을기획단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사업	-	연중
	커스텀 동아리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사업	-	연중
	창의적체험활동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시간당)
	청소년리더십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시간당)
	청소년활동재료비	청소년	명	15,000	청소년사업	-	재료비
	청소년지도실습	청소년	명	5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청소년 진로진학콘서트	청소년	명	5,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청소년아웃도어캠핑	청소년	명	2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	명	2,00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청소년환경기자단 '이크예코'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사업	-	
	청소년환경봉사단	청소년	명	10,000	청소년사업	-	
	대학생환경서포터즈 '그린나래'	청소년	명	30,000	청소년사업	-	
	달촌원데이	청소년	회	100,000(단체)	청소년사업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허브는 선물이다	청소년	명	60,000	청소년사업	-	
	환경을 잡(job)자!	청소년	1회	100,000	청소년사업	-	
	달촌 허니비	청소년	명	14,000(다회기) 7,000(단회기)	청소년사업	-	
	어린이농부학교@달촌	청소년	명	60,000(다회기) 6,000(단회기)	청소년사업	-	
	달촌은새미로	청소년	1회	60,000(단체) 6,000(명)	청소년사업	-	
	기후학교	청소년	1회	100,000(단체) 5,000(명)	청소년사업		
	업밴드(UP-BAND)	청소년	회	100,000	청소년사업	-	
	지역사회연계지원	청소년	학급/ 단체	25,000(일)	청소년사업	-	관리비
	줄넘기(2일)	초등	명	38,000	예체능	55,000	
	초등생방송댄스(2일)	초등	명	38,000	예체능	55,000	
청소년 사업	리듬체조(2일)	유아,초등	명	38,000	예체능	55,000	
	어린이인라인(3일)	초등	명	50,000	예체능	70,000	
	양뺨줄넘기(1일)	유아,초등	명	25,000	예체능	35,000	
	유아축구(2일)	유아	명	29,000	예체능	55,000	
	초등축구(1일)	초등	명	25,000	예체능	35,000	
	스팀영재과학	청소년	주1회/1시간	4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양천구민체육센터40,000 신길7동주민센터40,000
	스크래치코딩	청소년	주1회/1시간	4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양천구민체육센터40,000 신길7동주민센터40,000
	교과과학 실험교실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양천구민체육센터40,000 신길7동주민센터40,000
	EQ생명과학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양천구민체육센터40,000 신길7동주민센터40,000
	뉴튼영재과학	청소년	주1회/1시간	4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양천구민체육센터40,000 신길7동주민센터40,000
	영재과학실험	청소년	주1회/1시간	30,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양천구민체육센터40,000 신길7동주민센터40,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powerful잉글리쉬 (스토리텔링)	청소년	주2회/1시간	55,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마포청소년교육센터 57,000(주1회)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60,000(주1회)	
	powerful잉글리쉬 (파닉스)	청소년	주3회/1시간	71,7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마포청소년교육센터 57,000(주1회)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60,000(주1회)	
	초등 원어민 영어회화	청소년	주2회/1시간	55,000	기타 (교과연계)	인근 공공유사시설	마포청소년교육센터 57,000(주1회)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60,000(주1회)	
	방과후 종합반	청소년	주5회/3시간	30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청소년 사업	미 래 청소 년영 성과 정	교육비(7세)	유아	월/명	435,000	-	-	1개월
		교육비(5,6세)	유아	월/명	465,000	-	-	1개월
		교재비	유아	월/명	60,000	-	-	1개월
		급식비	유아	월/명	4500	-	-	1개월
		입단비	유아	월/명	200,000	-	-	1개월
		오후돌봄A	유아	월/명	30,000	-	-	1개월
		오후돌봄B	유아	월/명	100,000	-	-	1개월
		오후돌봄C	유아	월/명	160,000	-	-	1개월
		체험행사비	유아	월/명	35,000	-	-	1개월
		예능발표회비	유아	월/명	40,000	-	-	1개월
		졸업여행비	유아	월/명	130,000	-	-	1개월
		졸업사진(졸업앨범)	유아	월/명	50,000	-	-	1개월
		졸업사진(졸업액자)	유아	월/명	35,000	-	-	1개월
		졸업사진(수료사진)	유아	월/명	8,000	-	-	1개월
		긴급돌봄교실(6시간)	유아	일/명	12,000	-	-	1일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긴급돌봄교실(8시간)	유아	일/명	16,000	-	-	1일
	청소년생존수영	초등	명	50,000 (6회)	청소년사업	-	교육부 생존수영 지원금반영 연계사업
	신나는 주말학교	초등	명	5,000	청소년사업	-	대한체육회 지원금 반영 연계사업
	토요청소년수영클럽	초등	주1회/1.5시간	8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토요청소년수영클럽	중고생	주1회/1.5시간	9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스포츠지도자양성과정 (수영,헬스)	청소년	주1회/1시간	25,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수영대회	청소년	연 1회/명	20,000	청소년사업	-	참가비
	방학특강수영클럽A (소그룹)	초등	주3회/1시간	120,000	예체능 (그룹)	인근유사시설비 교	구로구민체육센터 130,500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132,000
청소년 사업	방학특강수영클럽B (소그룹)	초등	주2회/1시간	80,000	예체능 (그룹)	인근유사시설비 교	구로구민체육센터 87,000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88,000
	청소년수영클럽A (소그룹)	초등	주3회/1시간	120,000	청소년사업	인근유사시설비 교	구로구민체육센터 130,500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132,000
	청소년수영클럽B (소그룹)	초등	주2회/1시간	100,000	청소년사업	인근유사시설비 교	구로구민체육센터 87,000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88,000
	계절스포츠클럽 (캠프)하절기	청소년	1박2일/명	250,000	청소년사업	-	1박2일
	계절스포츠클럽 Poolparty	청소년	명	4,000	청소년사업	-	1일(연중)
	계절스포츠클럽 (캠프)동절기	청소년	2박3일/명	350,000	청소년사업	-	2박3일
대관사 업	영상미디어실 대관	성인 및 청소년	평일/3시간	100,000	시설대관	250,000	
	공연장 대관	성인 및 청소년	평일/3시간	250,000	시설대관	250,000	
	냉난방비(공연장, 영상실)	성인 및 청소년	1시간당	10,000	시설대관	-	
기타사 업	카드제발급수수료	성인 및 청소년	회	1,000	기타사업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개인 사물함	성인 및 청소년	월	3,500	기타사업		
	개인 신발장	성인 및 청소년	월	1,500	기타사업		
	주차비	성인	10분	500	기타사업		

보라매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목적사업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탐험활동	청소년	1회	80,000	청소년사업	군산청소년수련관 100,000원 인천서구청청소년수련관 100,000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청소년 (학급)	1회 1시간	75,000	청소년사업	마천청소년센터 75,000원 강남청소년수련관 150,000원	학급당 참가비 기준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스마트양천미래연구소 10,000원 G밸리4차산업체험관 13,000원	
	특수학급 지원활동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목동청소년센터 6,000원 청소년드림센터 5,000원	
	특수학급 신체활동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목동청소년센터 6,000원 청소년드림센터 5,000원	
	일반학급 지원활동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목동청소년센터 6,000원 청소년드림센터 5,000원	
	청소년 리더십 연계사업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마천청소년센터 75,000원 강남청소년수련관 150,000원	학급당 참가비 기준
	취미공예 교실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마천청소년센터 7,500원 문래청소년센터 5,000원	
	제빵요리 교실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서울청소년센터 17,500원 문래청소년센터 10,000원	
	노래창작소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창동청소년센터 8,750원 송파썸 5,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family 창의 투게더	청소년 및 일반	1회 1시간	10,000	청소년사업	김해시청 30,000원 파밍하우스 60,000원	
	나도 K-POP 스타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광명국민체육 센터 7,500원 김해서부문화 센터 4,500원	
	하나되는 목소리!더빙놀이터	청소년	1회 1시간	5,000	청소년사업	성우더빙체험스튜디오 5,000원 체험학습플랫폼 아자 스쿨 15,000원	
	전공실습생	청소년	15회	50,000	청소년사업	청미청소년문화의집 100,000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100,000원	
	자유학기제 연계 사업	청소년	1회 1시간	2,500	청소년사업	신월청소년문화센터 4,500원 목동청소년센터 3,000원	
	우리 동네 직업체험	청소년	1회 1시간	5,000	청소년사업	관악청소년회관 10,000원 상계청소년문화의집 10,000원	
	교실토론대회 말하는대로	청소년	1회 1시간	5,000	청소년사업	서대문청소년센터 8,750원 창동청소년문화의집 8,750원	
	진로 온앤오프	청소년 (학급)	1회 1시간	75,000	청소년사업	성북청소년센터 150,000원 신월청소년센터 150,000원	학급당 참가비 기준
	서울문화 교류대장정	청소년	4박 5일	200,000	청소년사업	용산구국제캠프 250,000원 미지센터 490,000원	
	방콕문화 교류대장정	청소년	4박 5일	750,000	청소년사업	군포시(일본) 1,200,000원 국립부산과학관(싱가폴) 1,670,000원	1일8시간 (5일운영)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청소년 세계문화 원정대	청소년	1회 3시간	5,000	청소년사업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5,000 원 통진청소년문화의집 15,000원	
	청소년 진로탐험대_미국 편	청소년	7박 10일	3,950,000	청소년사업	MBC연합캠프 5,050,000원 한국국제스쿨 5,100,000원	1일8시간 (7일운영)
	달려라 과학교실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배틀드론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하이드론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오늘은 내가 조종사!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커리어에듀 15,000원 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 15,000원	
	우리가 만드는 APP	청소년	1회 2시간	2,5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보람 오조봇 Master	청소년	1회 2시간	2,5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보람 3D Master	청소년	1회 2시간	2,5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교실 밖 과학놀이터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생활 속 과학이야기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즐거운 실험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스쿨핑	청소년	1박 2일	20,000	청소년사업	마포청소년센터 30,000원 서울청소년센터 40,000원	1일8시간 (2일운영)
	리더 스쿨핑	청소년	1박 2일	25,000	청소년사업	마포청소년센터 30,000원 서울청소년센터 40,000원	1일8시간 (2일운영)
	친환경 그린 캠핑: 나도 환경도 즐거워 캠핑	청소년	1회 1시간	7,500	청소년사업	녹색치유탐험팔린지학교 50,000원 코오롱스포츠 50,000원	
	보라매 기후학교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20,000	청소년사업	사)숲광동청소년교육 17,000원 문래청소년센터 50,000원	
	보라매 농부학교	청소년 및 일반	1회 2시간	50,000	청소년사업	문래청소년센터 50,000원 수정청소년수련관 50,000원	연중 5회 이상 프로그램
	기후환경 가족동아리 - 패밀리커버리	청소년 및 일반	1회 2시간	20,000	청소년사업	산울림청소년수련관 50,000원 시화호환경학교 30,000원	연중 5회 이상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우리가(家) Green 캠프	청소년	1박 2일	20,000, 30,000	청소년사업	마포청소년센터 30,000원 서울청소년센터 40,000원	1일8시간 (2일운영)
	스마트하게 팜벼볼까!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청소년사업	화곡청소년센터 10,000원 계양구청소년수련관 30,000원	
	3D로 만드는 36.5℃ 기술	청소년	1회 1시간	5,000	청소년사업	한국융합과학교육원 10,000원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10,000원	
	다함께 놀(면서) 자(란다)!	청소년	1회 2시간	38,000	청소년사업	생각하는 박물관 40,000 미술관이야기 45,000	
	드림업! 진로탐험대	청소년	1회 2시간	20,000	청소년사업	망우청소년센터 20,000 마인즈그라운드 23,000	
	녹색성장 "에코자람"	청소년	1회 2시간	5,000	청소년사업	(사)환경교육센터 5,000원 (사)녹색교육센터 5,000원	
	꿈꾸는 나무 수강료	유아	월1회	590,000	기타	내용없음	
	꿈성장 레벨업	청소년	월1회	420,000	기타	내용없음	
	찾아가는 자살예방특강	청소년	1회 1시간	150,000	상담	내용없음	
	관찰아 토닥토닥	초1~3 학급 (30명기준)	1회 1시간	20,000	상담	내용없음	
	너의 꿈을 잡아라	청소년	1회2시간	30,000 (6명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상담	내용없음	
	온라인 예방교육	청소년	1회 1시간	150,000	상담	내용없음	
	생명사랑 수호천사 포레활동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생명사랑 활동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커피향기 배우기	청소년	1회 2시간	15,000 (6명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	청소년사업	내용없음	
	청소년문화플랫폼: D	청소년, 일반	1회 1시간	50,000	청소년사업	내용없음	
상담사업	심리검사	청소년, 일반	1회	5,000 ~130,000 (검사별상이)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매체 상담	만5세~ 성인 (학부모)	주1회 1시간	4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사회성 프로그램 '어울림'	청소년	1회 1시간	4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생명사랑 팔레트	청소년	1회 2시간	3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청소년 개인상담	초5~고등 학생	주1회 1시간	1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학부모 개인상담	성인 (학부모)	주1회 1시간	2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사이공감	성인 (학부모)	1회 1시간	2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그림으로 여는 세상	청소년	1회 2시간	4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너의 삶은 의미심장한 선물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높이 날아올라 새롭 게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온라인 집단상담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우리 반 서로 알기	청소년	1회 2시간	1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스트레스 빠잉	만5세~ 성인 (학부모)	주1회 1시간	20,000	상담	수준에 따라징수	
기타사업	픽처 그래픽 스토리	청소년	1회 1시간	5,000	청소년사업	생각놀이연구소 10,000원 충북일보문화센터 10,000원	
	일러스트레이터 스토리	청소년	1회 1시간	5,000	청소년사업	남부새일센터 10,000원 아시아허브 20,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생활교육 사업	탁구교실	청소년 /일반	1시간	초,중,고 단식 2,000 복식 2,500 일반 단식 2,500 복식 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조례상한가 적용	
	당구(포켓)	청소년 /일반	1시간	청소년 4,800 일반 6,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조례상한가 적용	
	탁구강습	일반	주2회/2시간 주3회/2시간	52,000 65,000 (부가세 포함)	체육시설 이용수업	조례상한가 적용	
	포켓볼강습	일반	주2회/2시간	65,000 (부가세 포함)	체육시설 이용수업	조례상한가 적용	
	탁구강습 (개인)	청소년 /일반	주2회/2시간	120,000 (부가세 포함)	체육시설 이용수업	조례상한가 적용	
	포켓볼강습 (개인)	청소년 /일반	주2회/2시간	150,000 (부가세 포함)	체육시설 이용수업	조례상한가 적용	
대관사업	공연장 대관	청소년/일반	1회 (3시간)	250,000	시설대관	조례상한가 적용	
	강의실외 대관	청소년/일반	1회 (3시간)	110,000 (40석)	시설대관	조례상한가 적용	
				150,000 (60석)	시설대관	조례상한가 적용	
				180,000 (100석)	시설대관	조례상한가 적용	
	보물섬	청소년 /일반	1회 (3시간)	40,000	시설대관	조례상한가 적용	

수서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교육 문화 사업	종합영어	청소년	주1회/ 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청소년	주2회/ 1.5시간	67,000	외국어	67,500	
	생활외국어	청소년	주1회/ 1시간	33,000	외국어	33,000	
		성인	주1회/ 1시간	39,000	외국어	39,000	
		청소년	주2회/ 1시간	45,000	외국어	45,000	
	글쓰기논술 (독서논술)	청소년	주1회/ 1시간	33,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1회/ 2시간	41,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1회 /1.5시간	46,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서당& 경필쓰기	청소년	주1회/ 1시간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성인	주1회/ 1시간	28,000	취미.교양.문화	28,000	
	주산암산	청소년	주1회/ 1시간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수학	청소년	주1회/ 1시간	33,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1회/ 1시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1회/ 2시간	54,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1회/ 2시간	6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2회/ 2시간	10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중학생과정)	주2회/ 2시간	12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교육 문화 사업	바둑	청소년	주1회/ 1시간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체스	청소년	주1회/ 1시간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은물창의력 (가베, 두뇌개발외)	청소년	주1회/ 1시간	22,000	취미.교양.문화	22,000	
	동화구연& 스피치응변	청소년	주1회/ 1시간	33,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자신감& 리더쉽교실	청소년	주1회/ 1시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열린사회 이야기	청소년 역사	주1회/ 1시간	33,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코딩	주1회/ 1시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1회/ 2시간	54,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역사	주1회/ 2시간	56,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코딩	주1회/ 2시간	6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OA과정	주2회/ 2시간	10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서예	청소년	주1회/ 1시간	30,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2시간	36,000	예체능	62,400	
	미술	청소년	주1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1.5시간	38,000	예체능	58,500	
		청소년	주1회/ 2시간	56,000	예체능	56,000	
	쿠키& 클레이아트	청소년	주1회/ 1시간	33,000	예체능	35,000	
			주1회/ 1.5시간	35,000	예체능	52,500	1.5시간
	영재미술 아카데미	청소년	주1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즐거운 미술창작	청소년	주1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종이공작	청소년	주1회/ 1시간	33,000	예체능	3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성인	주1회/ 1.5시간	35,000	예체능	58,500	1.5시간
교육 문화 사업	만화교실	청소년	주1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주1회/ 2시간	56,000	예체능	56,000	
	피아노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청소년, 성인	주2회	55,000	예체능	61,000	
		성인	주2회	61,000	예체능	61,000	
		청소년, 성인	주3회	70,000	예체능	77,000	
	리틀모짜르트	유아	주2회	55,000	예체능	55,000	
	바이올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첼로	청소년, 성인	주1회	80,000	예체능	97,500	소수반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클래식기타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청소년, 성인	주1회	45,000	예체능	52,500 58,500	2시간
	일렉기타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관악기(플루트, 클라리넷)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청소년, 성인	주1회	80,000	예체능	97,500	소수반 집중반
	드럼	청소년, 성인	주1회	50,000	예체능	58,500	소수반
		청소년, 성인	1회	3,000	예체능	3,000	
		청소년, 성인	1회	5,000	예체능	5,000	
	수서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주1회	70,000	예체능	70,000	2시간
	수서주니어 오케스트라	청소년	주1회	70,000	예체능	70,000	2시간
	전통국악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청소년, 성인	주1회	80,000	예체능	97,500	소수반
	우쿨렐레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성인	주1회	39,000	예체능	39,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발성(동요교실, 성악교실, 보컬, 노래교실)	청소년, 성인	주1회	40,000	예체능	52,500 58,500	소수반
		성인	주1회	50,000	예체능	58,500	1.5시간
		성인	주1회	30,000	예체능	39,000	
	제과제빵	청소년, 성인 (3회)	주1회/ 2시간	30,000	취미.교양.문화	44,000	
		청소년, 성인 (4회)	주1회/ 2시간	40,000	취미.교양.문화	44,000	
교육 문화 사업	필라데스 .요가	청소년, 성인	주3회/ 1시간	56,000	예체능	70,000 77,000	
		청소년, 성인	주3회/ 1시간	53,000	예체능	70,000 77,000	
		청소년, 성인	주2회/ 1시간	42,000	예체능	55,000 61,000	
		청소년, 성인	주1회/ 1시간	35,000	예체능	35,000 39,000	
		청소년, 성인	주1회/ 1시간	33,000	예체능	35,000 39,000	
	원데이특강	청소년, 성인	1회/ 2시간	10,000	예체능	10,000	
	농구교실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검도	청소년	주5회	65,000	예체능	96,500	
		성인	주5회	80,000	예체능	106,000	
	배드민턴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주2회	42,000	예체능	55,000	
		청소년	주3회	47,000	예체능	70,000	
		성인	주5회	44,000	예체능	106,000	
	뉴스포츠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실용댄스	성인	주5회	73,000	예체능	106,000	
		성인	주2회	50,000	예체능	61,000	
		성인	주1회	35,000	예체능	39,000	
	발레	유아, 청소년, 성인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39,000	
	음악줄넘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주2회	50,000	예체능	55,000	
	리듬체조	청소년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청소년	주2회	55,000	예체능	55,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바른자세운동	청소년, 성인	주1회	35,000	예체능	35,000 39,000	
		청소년, 성인	주2회	45,000	예체능	55,000 61,000	
		청소년, 성인	주3회	58,000	예체능	70,000 77,000	
교육 문화 사업	전문지도자 과정	성인	주1회/ 1시간	35,000	취미, 교양, 문화	42,000	
		성인	주2회/ 1시간	50,000	취미, 교양, 문화	78,000	
		성인	주3회/ 1시간	75,000	취미, 교양, 문화	97,500	
		성인	주2회/ 2시간	120,000	기타	인근 공공 유사시설	
		성인	주3회/ 2시간/ 3개월	150,000	기타	인근 공공 유사시설	
		성인 바리스타 자격증	주2회/ 3시간	225,000	기타	인근 공공 유사시설	정원4명
	과학	청소년	주1회/ 1시간	35,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청소년	주1회/ 1시간	40,000	기타	인근공공 유사시설	
생활 체육 사업	취미수영	청소년	주3회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어린이수영	청소년	주4회	44,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2,000	
	청소년매일수영	청소년	주6회	6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0,000	
	학교수영	청소년	주2회	3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소그룹수영	청소년	주3회	180,000	기타(5.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공공 유사시설	태화기독교 256,000 송파체육문화 256,000
	소그룹수영	청소년	주2회	120,000	기타(5.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공공 유사시설	태화기독교 166,000 송파체육문화 128,000
	매일헬스	성인	주5회	5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1,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매일헬스	청소년	주5회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72,000	
	매일헬스	1:1근력(성)	10회	380,000	기타(5.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공공 유사시설	문래 1:1 400,000원 용산 1:1 500,000원
	매일헬스	1:1근력(청)	10회	350,000	기타(5.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공공 유사시설	문래 1:1 400,000원 용산 1:1 500,000원
	매일헬스	청소년 소그룹 프로그램	10회	70,000원	기타(5.그밖의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인근공공 유사시설	문래 1:1 400,000원 용산 1:1 500,000원
	헬스건강운동교실	청소년, 성인	주5회	34,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1,000	
	건강수영교실	청소년	주4회 (강습3+자유1)	44,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2,000	
	건강수영교실	성인	주4회 (강습3+자유1)	6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8,000	
	건강수영교실	청소년	주3회 (강습2+자유1)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건강수영교실	성인	주3회 (강습2+자유1)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매일건강수영	청소년	주6회 (강습5+자유1)	6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0,000	
	매일건강수영	성인	주6회 (강습5+자유1)	7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3,000	
	주말수영교실	청소년	주3회 (강습2+자유1)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주말수영교실	성인	주3회 (강습2+자유1)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토요,일요수영교실	청소년	주2회 (강습1+자유1)	27,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37,000	
	토요,일요수영교실	성인	주2회 (강습1+자유1)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43,000	
	실버수영교실	성인	주4회 (강습3+자유1)	4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8,000	
	실버수영교실	성인	주3회 (강습2+자유1)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아쿠아교실	성인	주4회 (강습3+자유1)	6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8,000	
	아쿠아교실	성인	주3회 (강습2+자유1)	5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6,000	
	아쿠아교실	성인	주6회 (강습5+자유1)	7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93,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생활 체육 사업	청소년건강수영	청소년	주3회 (강습2+자유1)	39,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50,000	
	청소년특별수영	청소년	주4회 (강습3+자유1)	44,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62,000	
	방특매일수영	청소년	주6회 (강습5+자유1)	60,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80,000	
	청소년매일헬스	청소년	주5회	35,000	체육시설 이용수업	72,000	
시설 사용료	자유수영	유아	1회	3,000	수영장	3,600	2시간
	자유수영	청소년	1회	4,000	수영장	5,000	2시간
	자유수영	성인	1회	6,000	수영장	8,600	2시간
	일일헬스(일)	청소년	1일	3,000	헬스장	4,000	2시간
	일일헬스(일)	성인	1일	4,500	헬스장	6,000	2시간
	지역사회체육활동	청소년성인	주6회	80,000	체육관	105,600	2시간
	청소년극장 대관	청소년성인	200석 (3시간)	325,000	시설대관	325,000	주말
		청소년성인	200석 (3시간)	250,000	시설대관	250,000	평일
		청소년성인	200석 (1시간)	25,000	시설대관	25,000	초과
		청소년성인	부대시설	10,000	시설대관	10,000	
	세미나실대관	청소년성인	3시간	110,000	시설대관	110,000	세미나실
		청소년성인	3시간	30,000	시설대관	30,000	공연연습실
		청소년성인	1시간	10,000	시설대관	10,000	
상담 사업	종합심리검사	청소년, 성인	1회	180,000	상담	180,000	청소년5개, 성인2개검사 결과상담포함
	놀이치료	청소년	1회	40,000	상담	40,000	
	미술치료	청소년	1회	40,000	상담	40,000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 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목적 사업	공연동아리연회비		청소년	1년	30,000	청소년사업	30,000	
	동아리실 대관	청소년	1회/1시간	3,000	청소년사업	3,000		
		청소년	1회/2시간	5,000	청소년사업	5,000		
		청소년	1월	10,000	청소년사업	10,000		
	청소년체험활동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10,000	
	지역연계활동	청소년	1회/1인	5,000	청소년사업	5,000	활동별 상이	
				7,000	청소년사업	7,000		
				10,000	청소년사업	10,000		
			1회/1반	90,000	청소년사업	90,000		
	청소년지도사실습		청소년	1회/1인	50,000	청소년사업	50,000	
	평생교육실습		청소년, 성인	1회/1인	100,000	청소년사업	100,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1인	10,000	청소년사업	100,000	
	가족추억만들기	청소년, 성인	1회/1팀	10,000	청소년사업	10,000	활동별 상이	
				15,000	청소년사업	15,000		
				20,000	청소년사업	20,000		
	레시피대전		청소년	1회/1팀	10,000	청소년사업	10,000	
	SDGs연계사업		청소년	1회/1인	10,000	청소년사업	10,000	
	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	1회	35,000	청소년사업	35,000	활동별 상이
			청소년	1회	39,000	청소년사업	39,000	
			청소년	1회	44,000	청소년사업	44,000	
청소년			1회	60,000	청소년사업	60,000		
청소년 미래융합체험활 동	체험비A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10,000	활동별 상이	
	체험비B	청소년	1회	13,000	청소년사업	13,000		
	체험비C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20,000		
	체험비D	청소년	1회	40,000	청소년사업	40,000		
	체험비E	청소년	1회	60,000	청소년사업	60,000		
	체험비F	청소년	1회	80,000	청소년사업	80,000		
기타사업	락카		청소년, 성인	1회	5,000	부대시설	5,000	
			청소년, 성인	1회	3,000	부대시설	3,000	
	회원카드비 및 열쇠제발급		청소년, 성인	1회	2,000	부대시설	2,000	
				1회	10,000	부대시설	10,000	
				1회	20,000	부대시설	20,000	
	자판기운영		청소년, 성인	1회	80,000	부대시설	80,000	

강동청소년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만화그리기&일러스트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미술여행	유아	주 1회	35,000	예체능	35,000	
교육문화	바이올린	유아 청소년 성인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드럼교실	청소년 성인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드럼교실	청소년 성인	주 2회	58,000	예체능	61,000	
교육문화	피아노교실(주3회)	유아 청소년 성인	주 3회	65,000	예체능	77,000	
교육문화	피아노교실(주2회)	유아 청소년 성인	주 2회	55,000	예체능	61,000	
교육문화	주말피아노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주말드럼교실	청소년 성인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기타교실	청소년 성인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칼림바	청소년 성인	주 1회	35,000	예체능	39,000	
교육문화	어린이요리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22,000	취미교양 문화 등	22,000	
교육문화	바리스타	청소년 성인	주 1회	28,000	취미교양 문화 등	28,000	
교육문화	바둑교실	유아 청소년	주 2회	33,000	취미교양 문화 등	33,000	
교육문화	손뜨개	청소년 성인	주 1회	28,000	취미교양 문화 등	28,000	
교육문화	외국어교실	유아 청소년	주 2회	45,000	외국어	45,000	
교육문화	연산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30,000	기타	-	①성북청소년센터 30,000원 ②성동청소년센터 35,000원
교육문화	국어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30,000	기타	-	①성북청소년센터 30,000원 ②성동청소년센터 30,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교육문화	사이언클래스	유아 청소년	주 1회	30,000	기타	-	①성북청소년센터 35,000원 ②광진청소년센터 30,000원
교육문화	한국사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30,000	기타	-	①성북청소년센터 35,000 ②수서청수년센터 41,000원
생활체육	놀이발레	유아	주 1회	30,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줄넘기	유아 청소년	주 1회	35,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키성장균형운동	유아 청소년	주 1회	35,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K-POP댄스	청소년 성인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생활체육	방송댄스	청소년	주 2회	44,000	예체능	55,000	
생활체육	줌바피트니스	청소년 성인	주 2회	50,0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라인댄스	청소년 성인	주 2회	50,0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검도교실	청소년 성인	주 2회	44,0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바른자세운동SNPE	청소년 성인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생활체육	축구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35,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농구교실	유아 청소년	주 1회	35,000	예체능	35,000	
생활체육	플라잉요가(주1회)	청소년 성인	주 1회	38,000	예체능	39,000	
생활체육	플라잉요가(주2회)	청소년 성인	주 2회	60,000	예체능	61,000	
생활체육	플라잉요가(주3회)	청소년 성인	주 3회	72,000	예체능	77,000	
생활체육	청소년헬스	청소년	주 6회	15,000	헬스장	51,000	
생활체육	성인헬스	성인	주 6회	35,000	헬스장	75,000	
목적	우.행.시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① 영통문화의 집 진로드림큐:25,000원 ②잠실청소년센터 포이가 간다 : 20,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목적	Dream up(드림업)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① 소사청소년수련관 창의진로프로그램 : 20,000원 ②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미래직업찾기: 30,000원
목적	진로토크콘서트 '진담'	청소년	1회	12,000	청소년사업	-	① 범칸다컴퍼니 청년토크콘서트: 20,000원 ② 아이지니어스 진로직업체험센터 진로토크콘서트: 11,000원
목적	창의적체험활동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① 보라매청소년센터 학교연계활동 : 20,000원 ② 창의인성교육넷 창의체험활동 : 20,000원
목적	창의리더십스쿨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	① 금천청소년센터 리더십 교육: 20,000원 ② 성북청소년센터 임원리더십: 20,000원
목적	생태전환교육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① 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도시농부프로젝트 : 50,000 ② 시립중앙청소년센터 우리는 청소년 에너지 리더 : 30,000
목적	슬기로운체험학습	청소년	1회	26,000	청소년사업	-	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존중과배려캠프(당일형) : 28,700원 ②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어울림투데이캠프(당일형): 27,700원
목적	소통공작소 '와글와글' 스크린사격	유아 청소년	1회	1,000	청소년사업	-	
목적	소통공작소 '와글와글' 플레이스테이션	유아 청소년	1회	1,000	청소년사업	-	
목적	소통공작소 '와글와글' 교인노래방	유아 청소년	1회	100	청소년사업	-	
목적	에코캠프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① 담양군청소년수련원 숲생태탐방 (1박2일): 25,000원 ② 국립청도숲체원 맑은 길 숲캠프 : 21,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목적	위드나눔	청소년 가족	1회	50,000	청소년사업	-	①서울청소년센터 Volun-스토리북:60,000 ②시립마포청소년센터 무한봉사 : 50,000
목적	스쿨핑	청소년	1회	35,000	청소년사업	-	①서울청소년센터 아띠 420 : 50,000 ②시립화곡청소년센터 마천스쿨핑 : 40,000
목적	Youth 테마기행	청소년 가족	1회	35,000	청소년사업	-	①서울청소년센터 서울도보여행 : 40,000 ②광진청소년센터 세계사 테마체험 : 50,000
목적	재미패밀리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국립청소년우주센터 로켓과 함께 하는 가족우주 과학캠프(1박2일):59,100원 ②누림청소년문화의집 가족캠프 한겨울의캠프:40,000원
목적	재(생)미(래)탐방대	청소년	1회	15,000	청소년사업	-	①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 터 미래를 JOB아라:20,000원 ②누림청소년문화의집 화성역사탐방랜선으로 드루와!:11,000원
목적	발달장애청소년 건강증진-근두운	청소년	주 1회	8,750	청소년사업	-	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40,000원 ②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30,000원
목적	3D퓨처랩 체인지업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광주시청소년수련관 아트 3D:10,000원 ②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3D프린터 전문가 상상교실:15,000원
목적	우리스마트하게놀자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 터 앤드월드 단순체험:5,000원 ②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 터 마스터클래스:20,000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고
목적	Job & Start Up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가좌청소년센터 드론만들러가좌:20,000원 ②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행복드림 체험활동 '미래를 준비하는 4차산업':30,000원
목적	초록별미래지킴이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수성구청청소년수련관 업사이클 디자이너:20,000원 ②서울YMCA 업사이클링 공예 교실(3회):20,000원
목적	미래야놀자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 터 에듀클래스(16회):160,000 원 ②가좌청소년센터 무한상상 메이커 마스터(4회):30,000원
목적	청소년건강클리닉비상	청소년	1회	3,000	청소년사업	-	①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바른자세를 위한 요가&필라테스(10회):24,00 0원 ②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건강한 코어 만들기:15,000원
목적	내가만든미래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상놀이터 메이커 공작소:15,000원 ②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 터 미래역량강화교육(3회):60,00 0원
목적	오조봇!로봇코딩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	①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 터 로봇코딩(12회):120,000원 ②보라매청소년센터 보람오조봇MASTER:10,000원
목적	비행시대 '활활'	청소년	1회	20,000	청소년사업	-	①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 터 드론조종끝내기(8회):80,00 0원 ②성북청소년센터 드론비행체험:10,000원

3. 2022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사용료 및 강습료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 상한가	비고
시설사용료	강당 (허브홀)	누구나	300석이내/ 3시간	350,000	시설대관	350,000	서울시 시설사용료 기준(300석 이내 / 350,000원) VAT별도/청소년 30%할인, 토·일·공휴일 기본요금의 30%범위내 할증 가능
시설사용료	강당 (999)	누구나	200석이내/ 3시간	250,000	시설대관	250,000	서울시 시설사용료 기준(200석 이내 / 250,000원) VAT별도/청소년 30%할인, 토·일·공휴일 기본요금의 30%범위내 할증 가능
시설사용료	다목적공간(청소년카페, 원탁방)	누구나	3시간	200,000	시설대관	300,000	유사시설(유스호스텔) 중회의실 4시간기준 VAT별도 토·일·공휴일기본요금의30% 범위내할증가능
시설사용료	미니극장	누구나	3시간	60,000	시설대관	100,000	유사시설(유스호스텔) 회의실 4시간기준 VAT별도 토·일·공휴일 기본요금의 30%범위내 할증 가능
시설사용료	세미나룸(회의실)	누구나	3시간	80,000	시설대관	100,000	유사시설(유스호스텔) 회의실 4시간기준 VAT별도 토·일·공휴일기본요금의30% 범위내할증가능
시설사용료	무용실	누구나	3시간	60,000	시설대관	100,000	유사시설(유스호스텔) 회의실 4시간기준 VAT별도 토·일·공휴일기본요금의30% 범위내할증가능
시설사용료	세미나룸 장비대여(빔)	누구나	시간당	10,000	시설대관	10,000	유사시설(마포 보라매수련관) 장비대여 기준 VAT별도 토·일·공휴일기본요금의30% 범위내할증가능
시설사용료	강당 장비대여(빔,음향)	누구나	3시간	50,000	시설대관	100,000	유사시설(마포 보라매수련관) 장비대여 기준 VAT별도 토·일·공휴일기본요금의30% 범위내할증가능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하자ON	청소년 (만13-18 세)	1회(2시간)	10,000	청소년사업	35,000	서울시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예체능 기준> 대학생·성인39,000원/초중고어 린이35,000원 주1회/월금액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또 하나의 교실	청소년 (만9-19 세)	1회(2시간)	10,000	청소년사업	35,000	서울시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예체능 기준> 대학생·성인39,000원/초중고어 린이35,000원 주1회/월금액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오디세이학교(현장학습 비)	청소년 (만16-18 세)	1회	334,000	청소년사업		실비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 상한가	비고
영역별프로그램 강습료	대외협력사업(투어)	누구나	1인	10,000	청소년사업		실비
영역별프로그램 강습료	어린이 작업장	청소년 및 아동 (만7-14 세)	1회	30,000	청소년사업	35,000	서울시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예체능 기준> 대학생.성인39,000원/초중고어 린이35,000원 주1회/월금액
영역별프로그램 강습료	하자공방 운영	누구나	1회	10,000	청소년사업	35,000	서울시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예체능 기준> 대학생.성인39,000원/초중고어 린이35,000원 주1회/월금액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단위 : 원)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 상한가	비고
프로그램별 강습료	동아리운영 및 지원	청소년	1회/명	10,000	청소년사업	-	유사시설비교 (강북청소년센터)
	퓨처로드	청소년	1회/명	10,000	청소년사업	-	-
	e-sports 랩실 이용료	청소년팀 (5명 이내)	1회/팀	3,000	청소년사업	-	-
	e-sports 대회 참가비	청소년	1회/명	5,000	청소년사업	-	-
	찾아가는 앤드센터	9~24세 청소년 및 기관	1회/인	10,000	청소년사업	-	교육지원
			1개부스	100,000	청소년사업	-	축제지원
	튜터쉽	청소년	1회/명	60,000	청소년사업	-	유사시설비교 (강북청소년센터)
	퓨처잡스	청소년	1회/명	10,000~ 20,000	청소년사업	-	
			1과정/회	100,000~ 200,000	청소년사업	-	
	썩썩콘서트	청소년(개별)	1회/명	2,000	청소년사업	-	
		청소년(단체)	1과정/회	100,000	청소년사업	-	
	앤드커리어랩	청소년	1회	1,000	청소년사업	-	
		성인	1회	3,000	청소년사업	-	
	에듀클래스	청소년	1회/명	1,000~ 40,000원	청소년사업	44,000 (취미·교양·문 화 등)	월 강습료 주1회 2시간 기준 재료비 별도
		대학생/ 성인	1회/명	1,000~ 50,000원	청소년사업	56,000 (취미·교양·문 화 등)	
	앤드월드	청소년	1회/명	5,000원	청소년사업	44,000 (취미·교양·문 화 등)	월 강습료 주1회 2시간 기준 재료비 별도
	청소년에듀투어	청소년(체험)	1회/명	2,000원	청소년사업	44,000 (취미·교양·문 화 등)	
		청소년(교육)	1회/명	5,000원		44,000 (취미·교양·문 화 등)	
	미래공간자율체험운영	청소년	1회/명	2,000원 ~5,000원	청소년사업	44,000 (취미·교양·문 화 등)	월 강습료 주1회 4시간 기준 재료비 별도
	앤드밋업	청소년	1회/명	20,000원	청소년사업	88,000 (취미·교양·문 화 등)	
		대학생/성인	1회/명	30,000원	청소년사업	112,000 (취미·교양·문 화 등)	월 강습료 주1회 3시간 기준 재료비 별도
	마이드림 포트폴리오	청소년	1회/명	50,000원	청소년사업	56,000 (취미·교양·문 화 등)	
	융합교육 프로젝트	청소년	1회/명	50,000원	청소년사업	70,000 (예체능)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 상한가	비고
	미래를 JOB아라	청소년	1회/명	20,000원	청소년사업	22,000 (취미·교양·문 화 등)	-
	신규콘텐츠 개발지원	청소년	1회/개	30,000원	청소년사업	56,000 (취미·교양·문 화 등)	-
	메이커 스페이스	청소년	1회/명	무료~ 50,000원	청소년사업	56,000 (취미·교양·문 화 등)	월 강습료 주1회 2시간 기준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단위 : 원)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시설사용료	공리팝카페 (3층-301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10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서울혁신센터)
				성인	200,000			
시설사용료	디지털 굿즈전시관 (3층-302호)	누구나	1일	청소년	5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강동문화재단)
				성인	100,000			
시설사용료	에코스퀘어 (3층-304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125,000	시설대관	250,000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성인	250,000			
시설사용료	다목적실1 (3층-305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4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성인	80,000			
시설사용료	다목적실2 (3층-306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5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성인	100,000			
시설사용료	엔진룸1 (4층-401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10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성인	200,000			
시설사용료	엔진룸II (4층-402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6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성인	120,000			
시설사용료	엔진룸III (4층-403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6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역삼청소년수련관)
				성인	120,000			
시설사용료	소리룸 (4층-404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8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은평생활문화센터_모여락,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성인	160,000			
시설사용료	공리홀 (4층-405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125,000	시설대관	250,000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성인	250,000			
시설사용료	쉐프클래스 (5층-501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10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알지엠푸드아카데미)
				성인	200,000			
시설사용료	청소년 동아리룸 (5층-503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6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평문화재단)
				성인	120,000			
시설사용료	회의룸 (5층-507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8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운평문화재단)
				성인	160,000			
시설사용료	화상회의룸 (6층-601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10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은평생활문화센터_모여락, 시립노원직업체험센터)
				성인	200,000			
시설사용료	미디어 스튜디오 (6층-602호)	누구나	3시간	청소년	8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은평생활문화센터_모여락,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성인	160,000			
시설사용료	기본시간 초과 시	누구나	1시간	전체이용료의 10%		시설대관	-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시설사용료	토, 일, 공휴일 사용료 할증	성인	3시간	전체이용료의 30%		시설대관	-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	조례영역구분	조례상한가	비 고
시설사용료	장비대여 (오븐기)	누구나	대관이용 시간 기준	3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은평문화재단,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료	장비대여 (빔/스크린)	누구나	대관이용 시간 기준	3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은평문화재단,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료	장비대여 (음향/마이크)	누구나	대관이용 시간 기준	3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은평문화재단,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기준	이용료(원)	조례영역 구분	조례 상한가	비 고
시설사용료	장비대여 (전자칠판)	누구나	대관이용 시간 기준	30,000	시설대관	-	VAT별도/유사시설 기준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엔진룸 프로젝트 4차 공리단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진로공리 4차산업 마스터 클래스	청소년	1강좌	20,00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공리 올림픽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자연환경에너지 탐방 공리에너지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디지털투어	청소년	1회	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재료비 별도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좋은 삶 좋은 일	청소년	1회	10,00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서울클라스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원스톱 진로공리 박람회	청소년	1회	5,000	청소년사업	22,000	서울시_취미교양문화등_초중 고생, 어린이기준(주1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6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20호(1989.05.04)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6-171호(1996.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21.12.9,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취지

-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동 1477번지 일원 폐교(공진중) 및 이전 완료된(공진초)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활용하여,
- 서진학교 및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문화시설, 도로, 녹지)을 결정(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	976,515.4	-	976,515.4	서고시171 (’96.6.2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76,515.4	-	976,515.4	100.0	
주거지역	소계	836,740.8	-	836,740.8	85.7	
	제1종일반주거지역	108,203.9	-	108,203.9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3,103.8	-	103,103.8	10.5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43.4	-	36,043.4	3.7	
	제3종일반주거지역	589,389.7	-	589,389.7	60.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723.3	-	21,723.3	2.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540.0	-	540.0	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7,511.3	-	117,511.3	12.0	

나. 용도지구

■ 보호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공항)	가양동 일원	57,931,000 (847,108)	서고시120 (77.4.22)	

주) ()는 구역 내 면적임

■ 고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①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수평표면 (57.86m미만)	29,129,000 (2,384)	서고시120 (77.4.22)	
기 정	②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원추표면 (112.86m미만)	12,804,000 (844,724)	서고시120 (77.4.22)	

주) ()는 구역 내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변경)

■ 도로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7	8,155	135,037	4	950	19,097	13	3,490	36,948	10	3,715	78,992
광 로	1	230	9,200	-	-	-	-	-	-	1	230	9,200
대 로	3	2,936	75,420	-	-	-	1	404	12,120	2	2,532	63,300
중 로	7	1,307	23,441	4	950	19,097	1	20	300	2	337	4,044
소 로	16	3,682	26,976	-	-	-	11	3,066	24,528	5	616	2,448

주) 상기사항은 구역 내 해당 사항임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86	40	주간선	230	가양동 1481-3	가양동 1481-3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대로	2	85	30 ~34.4	주간선	404	가양동 1457-6	가양동 1457-4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대로	3	188	25	보조간선	2,254	가양동 1484-6	가양동 1458-12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대로	3	200	25	국지도로	278	가양동 1479-14	가양동 1479-14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중로	1	376	20	국지도로	106	가양동 1463-1	가양동 1463-1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중로	1	326	20	보조간선	352 (292)	가양동 18-25	가양동 1475-1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변경	중로	1	326	20	보조간선	352 (292)	가양동 18-25	가양동 1475-1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중로	1	325	20	보조간선	144	가양동 1484-2	가양동 1484-2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중로	1	324	20	보조간선	408	가양동 1493-3	가양동 1493-1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중로	2	499	15	국지도로	20	가양동 1494-4	가양동 1494-4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중로	3	349	12	국지도로	145	가양동 1461-2	가양동 1461-2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중로	3	350	12	국지도로	192	가양동 1485-4	가양동 1485-4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58	가양동 1459-2	가양동 1459-8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8	가양동 1456-5	가양동 1456-5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8	가양동 1457-9	가양동 1457-9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80	가양동 1458-11	가양동 1458-11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0	가양동 1458-11	가양동 1458-11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72	가양동 1469-3	가양동 1469-3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72	가양동 1472-6	가양동 1472-6	일반도로		서고시289 (90.8.27)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08	가양동 1479-13	가양동 1479-13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12	가양동 1480-11	가양동 1480-11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622	가양동 1485-4	가양동 1485-2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86	가양동 1488-13	가양동 1488-13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6	가양동 1457-3	가양동 1457-3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60	가양동 1479-13	가양동 1479-13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70	가양동 1488-13	가양동 1488-13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48	가양동 1479-13	가양동 1479-13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기정	소로	3	5	1~3	국지도로	312	가양동 1482-3	가양동 1483-2	일반도로		서고시171 (96.6.25)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326	중로 1-326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문화시설(도서관) 신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가양동 1457-1	1,436.0	-	1,436.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②	주차장	가양동 1480-10	2,308.8	-	2,308.8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주차장	가양동 1488-12	1,721.6	-	1,721.6	서고시289 (90.8.27)	

(3) 자동차정류장 (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정류장	-	가양동 1456-1	3,070.4	-	3,070.4	서고시289 (90.8.27)	
기정	②	자동차정류장	-	가양동 1456-2	1,587.4	-	1,587.4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자동차정류장	-	가양동 1456-3	1,876.1	-	1,876.1	서고시289 (90.8.27)	

나. 공간시설

(1)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62-1	1,008.3	-	1,008.3	서고시289 (90.8.27)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64-1	1,353.9	-	1,353.9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76-1	520.4	-	520.4	서고시289 (90.8.27)	
변경	④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76-2	1,548.6	감)526.3	1,022.3	서고시289 (90.8.27)	
기정	⑤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77-1	1,266.5	-	1,266.5	서고시289 (90.8.27)	
기정	⑥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59-10, 11	3,489.0	-	3,489.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⑨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81-2 일원	1,807.1	-	1,807.1	서고시289 (90.8.27)	
기정	⑩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85-1	3,738.1	-	3,738.1	서고시289 (90.8.27)	
기정	⑪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82-2	1,933.9	-	1,933.9	서고시289 (90.8.27)	
기정	⑫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83-1	903.2	-	903.2	서고시289 (90.8.27)	
기정	⑬	녹지	완충녹지	염창동 1492-1	1,898.0	-	1,898.0	서고시289 (90.8.27)	
신설	⑭	녹지	완충녹지	가양동 1476-2	-	증)429.5	429.5	-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가양동 1456	3,894.6	-	3,894.6	서고시289 (90.8.27)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가양동 1494-2	607.3	-	607.3	서고시289 (90.8.27)	
기정	⑥	녹지	경관녹지	가양동 1479-12	592.4	-	592.4	서고시289 (90.8.27)	
기정	⑦	녹지	경관녹지	가양동 1480-9,12	499.3	-	499.3	서고시289 (90.8.27)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④	완충녹지	· 면적 감소 A = 1,548.6㎡ → 1,022.3㎡ (감 526.3㎡)	· 문화시설(도서관) 신설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구간 폐지
⑭	완충녹지	· 신설(시설분리) A = 429.5㎡ (증 429.5㎡)	· 문화시설(도서관) 진출입로 확보로 인하여 단절된 잔여 완충녹지에 대하여 신규 시설번호 부여

(2)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공원	가양동 1459-9	25,680.4	-	25,680.4	서고시289 (90.8.27)	
기정	②	공원	근린공원	가양동 1471 일원	29,843.8	-	29,843.8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공원	근린공원	가양동 1485-5	22,002.9	-	22,002.9	서고시289 (90.8.27)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59-1	1,500.0	-	1,500.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②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61-1	1,510.7	-	1,510.7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65	1,956.0	-	1,956.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④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78-1	1,511.6	-	1,511.6	서고시289 (90.8.27)	
기정	⑤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74-1	1,500.0	-	1,500.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⑥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81-1	1,562.0	-	1,562.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⑦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82-1	1,612.3	-	1,612.3	서고시289 (90.8.27)	
기정	⑧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86-1	1,500.0	-	1,500.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⑨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89-1	1,622.8	-	1,622.8	서고시289 (90.8.27)	
기정	⑩	공원	어린이공원	가양동 1462-2	1,500.0	-	1,500.0	서고시49 (03.3.20)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열공급설비	가양동 487-1	697.0	-	697.0	서고시171 (96.6.25)	

(2)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수도공급설비	취수시설	가양동 1470-1	224.5	-	224.5	서고시171 (96.6.25)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가양동 1472-4	1,099.4	-	1,099.4	서고시289 (90.8.27)	동사무소
기정	②	공공청사	-	가양동 1472-3	204.2	-	204.2	서고시289 (90.8.27)	파출소
기정	③	공공청사	-	가양동 1472-2	454.0	-	454.0	서고시289 (90.8.27)	우체국
기정	④	공공청사	-	가양동 1472	660.0	-	660.0	서고시289 (90.8.27)	소방파출소
기정	⑤	공공청사	-	가양동 1472-1	737.8	-	737.8	서고시289 (90.8.27)	기 타
기정	⑥	공공청사	-	가양동 1488-1	1,013.1	-	1,013.1	서고시171 (96.6.25)	동사무소
기정	⑦	공공청사	-	가양동 1488-2	184.0	-	184.0	서고시171 (96.6.25)	파출소
기정	⑧	공공청사	-	가양동 1488-9	948.9	-	948.9	서고시171 (96.6.25)	구청별관
기정	⑨	공공청사	-	가양동 1462-3	1,682.5	-	1,682.5	서고시273 (05.9.15)	공공청사

(2) 학교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학교	초등학교	가양동 1473	11,194.0	-	11,194.0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학교	초등학교	가양동 1477	11,184.5	감)11,184.5	-	서고시289 (90.8.27)	
변경	①	학교	특수학교	가양동 1477	-	증)8,528.3	8,528.3		
기정	④	학교	초등학교	가양동 1484	11,080.3	-	11,080.3	서고시289 (90.8.27)	
기정	⑤	학교	초등학교	가양동 1492	11,076.5	-	11,076.5	서고시289 (90.8.27)	
기정	①	학교	중학교	가양동 1463	11,202.3	-	11,202.3	서고시289 (90.8.27)	
변경	②	학교	중학교	가양동 1476	11,081.4	감)4,029.2	7,052.2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학교	중학교	가양동 1483	11,187.5	-	11,187.5	서고시289 (90.8.27)	
기정	①	학교	고등학교	가양동 1464	11,527.9	-	11,527.9	서고시289 (90.8.27)	
기정	②	학교	고등학교	가양동 1468	13,659.9	-	13,659.9	서고시289 (90.8.27)	
기정	③	학교	고등학교	가양동 1491	11,252.8	-	11,252.8	서고시289 (90.8.27)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학교 (특수학교)	60% 이하	16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학교 (중학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향후 운동장(체육장) 부지에 서진학교 증축을 시행하는 경우 서진학교와 협의하여 축소되는 운동장(체육장)의 추가확보 검토(2021년 제20차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학교 (특수학교)	· 시설의 종류 변경 초등학교 → 특수학교 · 면적 감소 A = 11,184.5㎡ → 8,528.3㎡ (감 2,656.2㎡)	· 공진초등학교 이전(마곡지구)에 따라 서진학교(특수학교)로 활용 중인 현황에 맞게 학교시설 종류 변경 · 서진학교 설립과 함께 계획된 문화시설(도서관) 신설을 위해 공진초 일부구간 제척
②	학교 (중학교)	· 면적 감소 A = 11,081.4㎡ → 7,052.2㎡ (감 4,029.2㎡)	· 문화시설(도서관) 신설을 위한 공진중 일부구간 제척

(3) 문화시설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도서관	가양동 1477	-	증)6,685.4	6,685.4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건폐율, 용적률, 높이)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문화시설 (도서관)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도서관)	· 신설 A = 6,685.4㎡ (증 6,685.4㎡)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4)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가양동 1466	4,314.1	-	4,314.1	서고시289 (90.8.27)	
기정	②	사회복지시설	가양동 1470-2	1,499.9	-	1,499.9	서고시171 (96.6.25)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유수지	가양동 1493	30,145.3	-	30,145.3	서고시289 (90.8.27)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1)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38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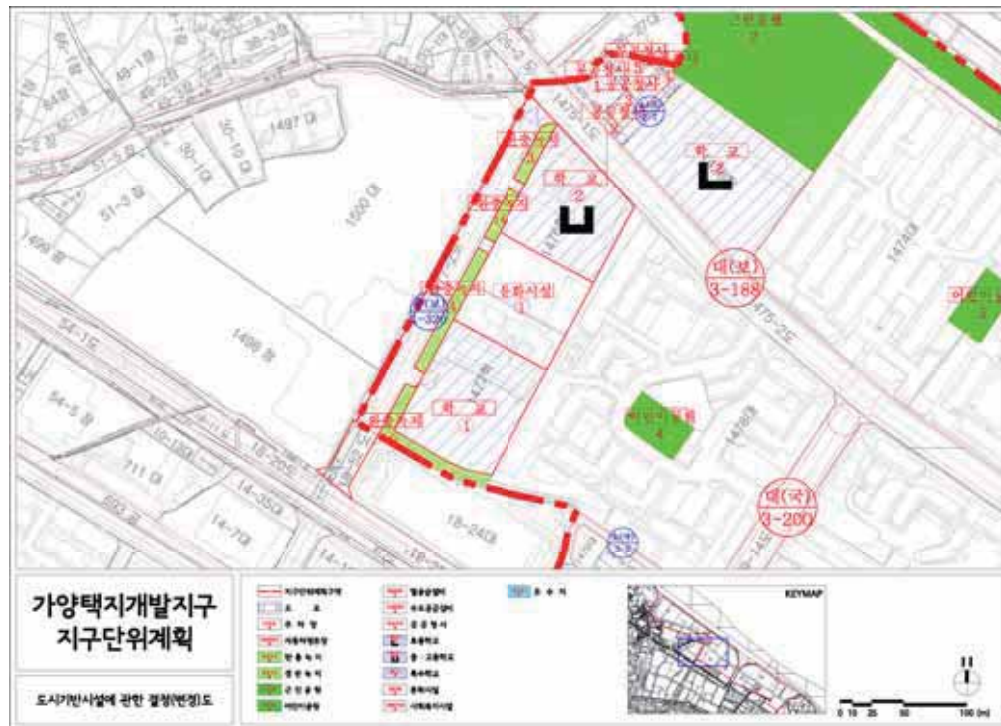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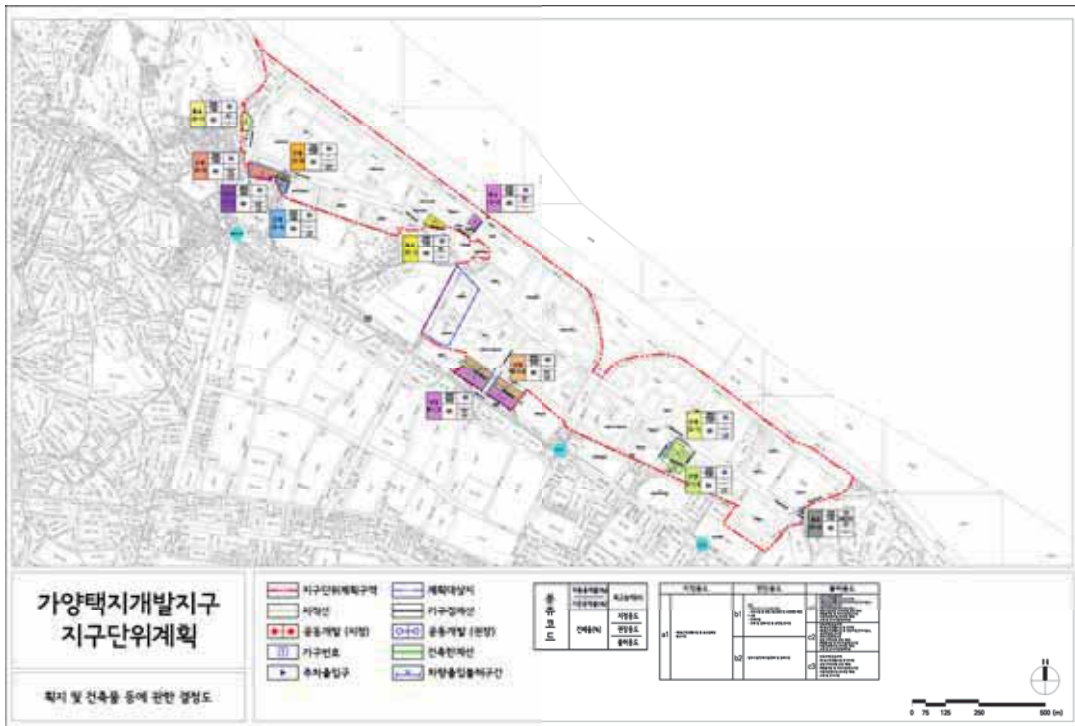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변경부분 상세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부분 상세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7호

**봉천 제4 - 1 - 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 05. 12.) 및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2021. 11. 15.)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79,826.6	-	79,826.6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9,826.6	-	79,826.6	100.0	
관악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계		41,439.8	감) 203.1	41,236.7	51.7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996.0	감) 3,063.3	5,932.7	7.4	
		도 로	915.0	증) 32.7	947.7	1.2	
		소공원	8,081.0	감) 4,081.0	4,000.0	5.0	
		사회복지시설	-	증) 985.0	985.0	1.2	
	획지	소 계	32,443.8	증) 2,860.2	35,304.0	44.3	
		획 지 1	30,080.9	증) 3,581.5	33,662.4	42.2	공동주택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입체적 결정 포함)
		획 지 2	1,255.6	-	1,255.6	1.6	종교용지1
		획 지 3	985.0	감) 599.0	386.0	0.5	종교용지2
		획 지 4	122.3	감) 122.3	-	-	복지시설(노인)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개 별 택 지 사 업 부 지	계	38,386.8	증) 203.1	38,589.9	48.3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24,838.3	31.1	
		학 교	-	13,828.3	17.3	구암초교
		도 로	-	11,010.0	13.8	
	획지	소 계	증) 203.1	13,751.6	17.2	
		획 지 4	증) 203.1	203.1	0.3	공동주택 사업부지 → 개별택지사업부지
		획 지 5-1	-	141.9	0.2	
		획 지 5-2	-	179.3	0.2	
		획 지 5-3	-	93.2	0.1	
		획 지 5-4	-	99.9	0.1	
		획 지 5-5	-	130.1	0.2	
		획 지 5-6	-	143.2	0.2	
		획 지 5-7	-	161.8	0.2	
		획 지 5-8	-	218.8	0.3	
		획 지 5-9	-	289.1	0.4	
		획 지 6-1	-	182.9	0.2	
		획 지 6-2	-	820.1	1.0	
		획 지 7	-	992.7	1.2	
		획 지 8	-	1,010.6	1.3	
		획 지 9-1	-	401.2	0.5	
		획 지 9-2	-	770.0	1.0	
		획 지 10-1	-	158.0	0.2	
		획 지 10-2	-	171.3	0.2	
		획 지 10-3	-	163.1	0.2	
		획 지 11-1	-	185.4	0.2	
		획 지 11-2	-	177.9	0.2	
		획 지 11-3	-	169.5	0.2	
		획 지 11-4	-	199.0	0.2	
		획 지 11-5	-	159.2	0.2	
		획 지 11-6	-	162.0	0.2	
		획 지 12-1	-	116.9	0.1	
		획 지 12-2	-	235.8	0.3	
		획 지 12-3	-	172.1	0.2	
		획 지 12-4	-	172.3	0.2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획 지 12-5	173.3	-	173.3	0.2	
	획 지 12-6	156.3	-	156.3	0.2	
	획 지 12-7	257.9	-	257.9	0.3	
	획 지 13	412.1	-	412.1	0.5	
	획 지 14-1	357.0	-	357.0	0.4	
	획 지 14-2	122.6	-	122.6	0.2	
	획 지 14-3	453.5	-	453.5	0.6	
	획 지 14-4	35.4	-	35.4	0.1	
	획 지 14-5	420.9	-	420.9	0.5	
	획 지 14-6	640.2	-	640.2	0.7	
	획 지 14-7	462.1	-	462.1	0.6	
	획 지 14-8	143.0	-	143.0	0.2	
	획 지 15-1	184.5	-	184.5	0.2	
	획 지 15-2	184.7	-	184.7	0.2	
	획 지 15-3	360.1	-	360.1	0.5	
	획 지 16-1	354.6	-	354.6	0.4	
	획 지 16-2	500.2	-	500.2	0.6	
	획 지 16-3	452.8	-	452.8	0.6	

주) 개별택지사업부지는 기존 자력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획함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79,826.6	-	79,826.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4,444.6	증) 4,243.8	28,688.4	35.9	
	제3종일반주거지역	55,382.0	감) 4,243.8	51,138.2	64.1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4,243.8	•용도지역 상향이 불필요한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부지는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환원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56	20~23	보조 간선도로	일반도로	3,260 (74)	신도림동 (신림천)	봉천동 중로1-68		건고 738호 (63.12.24)	원화차로 추가 확보
변경	중로	1	56	20~23	보조 간선도로	일반도로	3,260 (97)	신도림동 (신림천)	봉천동 중로1-68		건고 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184	20	보조 간선도로	일반도로	670	중로 1-56	구역계 (봉천제4-1구역)		서고90-362 (90.05.17)	
기정	중로	2	-	15~18	집산도로	일반도로	549.6	봉천동490-32	봉천동1699-16		서고 09-461 (09.11.19)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202	봉천동470-176	소로1-1 봉천동산101-42		서고 94-121 (94.04.22)	
기정	중로	3	①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70	봉천동492-4	지구계 봉천동478-36		서고 90-362 (90.05.17)	중로3-①축소 (L=158m)
변경	중로	3	①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58	봉천동492-25	지구계 봉천동478-36		서고 90-362 (90.05.17)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00	봉천동466-5	봉천동470-24		서고 94-121 (94.04.22)	
기정	중로	3	②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30	봉천동464-29	소로3-22 봉천동466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39	중로1-184	봉천동492-4		서고 90-362 (90.05.17)	소로1-1연장 (L=51m)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51	중로1-184	봉천동492-25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일반도로	85	중로1-56	구역계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4	중로1-184 봉천동493-2	봉천동494-23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7	봉천동480-126	봉천동480-95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2	소로3-8 봉천동493-1	지구계 봉천동496-13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①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8	소로1-1	봉천동492-5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②	4	국지도로	일반도로	58	소로3-27	봉천동464-4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③	4	국지도로	일반도로	41	봉천동464-29	소로2-4 봉천동466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④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8	봉천동 산101-441	소로3-34 봉천동495-1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⑤	4	국지도로	일반도로	34	소로4-25 소로(3-34)	중로1-184 봉천동496-1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⑥	4	국지도로	일반도로	42	중로1-184 봉천동498-3	중로1-56 봉천동501-4		서고 90-362 (90.05.17)	

※ ()는 구역내 연장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56	중로 1-56	• 원화차로 추가 확보 L = 74m → 97m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원화차로 추가 확보
소로 1-1	소로 1-1	• 도로 연장 증가 L = 39m → 51m	• 신규 존치지역으로 인해 해당 인접부 도로는 당초 도로 연장으로 환원
중로 3-①	중로 3-①	• 도로 연장 축소 L = 170m → 158m	• 신규 존치지역으로 인해 해당 인접부 도로는 당초 도로 연장으로 환원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소공원	봉천동 468-2일대	8,081.0	감) 4,081.0	4,000.0	서고2011-38 (11.02.24)	
변경				봉천동 492-27일대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 원	소공원	봉천동 492-27일대	•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봉천동 468-2일대 → 봉천동 492-27일대 - A = 8,081.0㎡ → 4,000.0㎡ (감 4,081.0㎡)	• 초등학교 주변으로 공원 위치를 이동하고, 공원 면적을 축소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 공시설을 계획

다. 학교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학 교	초등학교	봉천동 491-5일대	13,828.3	-	13,828.3	서고2011-38 (11.02.24)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 정	변 경 (연면적)	변경후 (연면적)		
신설	②	사회복지시설	-	봉천동 산101-213일대	-	증) 985.0 (2,449.9)	985.0 (2,449.9)	-	별도 부지 (서울특별시)

※ 사회복지시설(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사회복지시설	-	봉천동 산101-213일대	• 사회복지시설 신설 - A : 985.0㎡	•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회복지시설을 계획

마. 공공청사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용도	면적(㎡) (연면적)	수직적 범위		
신설	③	공공 청사	-	봉천동 480-44일대	공공청사	1,562 (3,447.5)	• 층수 : 지하1층 ~ 지상2층	-	공동주택 획지내 입체적 결정 (서울특별시)

※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임

※ 공공청사 주차장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출입구와 통합으로 계획함

※ 공공청사(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대지지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공청사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에 의해 추후 확정됨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 청사	-	봉천동 480-44일대	• 공공청사 신설 - A : 1,562㎡	•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공청사를 계획

바. 주차장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용도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수직적 범위		
신설	④	주차장	-	봉천동 480-44일대	공영 주차장	2,352 (3,849.19)	(지하시설)	- 층수 : 지하1층 ~ 지하2층 - 높이 : 31.5m ~ 39.1m (해수면 기준)	-	공동주택 획지내 입체적 결정 (관악구)

※ 주차장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임

※ 주차장(토지 및 시설)은 관악구로 귀속되며, 관악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대지지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주차장	-	봉천동 480-44일대	공영주차장 신설 - A : 2,352㎡	사업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 추후 경전철 서부선 개통 및 현대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내 입체적 결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확보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기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경 로 당	획지1	249.30	증)	50.70	300.00
변경	주민공동시설	획지1	2,146.70	증)	1,078.46	3,225.16
변경	작은도서관	획지1	193.40	증)	70.44	263.84
변경	어린이집	획지1	369.80	증)	30.20	400.00
변경	주민운동시설	획지1	154.90	증)	264.44	419.34
변경	어린이놀이터	획지1	1,048.20	증)	104.26	1,152.46
변경	관리사무소	획지1	152.50	증)	22.07	174.57
변경	근린생활시설	획지1	6,009.7	감)	3,282.83	2,726.87
						지하층 포함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79,826.6	획지1	30,080.9	봉천동 480번지 일대	206	46	-	160	-	
변경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79,826.6	획지1	33,662.4		206	47	-	159	-	

※ 기존건축물 206개동 중 존치 47개동을 제외한 159개동은 철거후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신축

7.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기정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9,769.6	획지1	30,080.9	봉천동 480-44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8 이하	-	85m 이하 (28층이하)	
			획지2	1,255.6	봉천동 101-42번지일대	종교용지	건축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3	985.0	봉천동 492-6번지일대	종교용지	건축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4	122.3	봉천동 468-2번지일대	복지시설 (노인)	건축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따름		-		
			학교	13,828.3	봉천동 482-1번지일대	초등학교	건축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따름		-		구암초교
			획지5-1~ 획지5-9	1,457.3	봉천동 482-11번지일대	개별필지 (9필지)	건축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따름		-		존치부지
			획지6-1~ 획지16-3	12,091.2	봉천동 496번지일대	개별필지 (37필지)	건축허가 당시 관계법령에 따름		-		존치부지
변경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9,826.6	획지1	33,662.4	봉천동 480-44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7.06 이하	259.63 이하	85m 이하 (28층이하)	
			획지2	1,255.6	봉천동 101-42번지일대	종교용지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3	386.0	봉천동 464-11번지일대	종교용지	관계법령에 따름		-		
			학교	13,828.3	봉천동 482-1번지일대	초등학교	관계법령에 따름		-		구암초교
			획지4	203.1	봉천동 482-25번지일대	단독, 근생	50%	250%		관계 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5-1	141.9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획지5-2	179.3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획지5-3	93.2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획지5-4	99.9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획지5-5	130.1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 구역 면적 변경사항은 기존 고시 오류 정정 사항임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변경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9,826.6	획지5-6	143.2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획지5-7	161.8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획지5-8	218.8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획지5-9	289.1	-	단독, 근생	60%	200%		21m 이하 (7층이하)	존치부지
			획지6-1	182.9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6-2	820.1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7	992.7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8	1,010.6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9-1	401.2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9-2	770.0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0-1	158.0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0-2	171.3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0-3	163.1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1-1	185.4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1-2	177.9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1-3	169.5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획지11-4	199.0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1-5	159.2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1-6	162.0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2-1	116.9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2-2	235.8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2-3	172.1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2-4	172.3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2-5	173.3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2-6	156.3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2-7	257.9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3	412.1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4-1	357.0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4-2	122.6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4-3	453.5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4-4	90.0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변경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9,826.6	획지14-5	366.3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4-6	640.2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4-7	462.1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4-8	143.0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5-1	184.5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5-2	184.7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5-3	360.1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6-1	354.6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6-2	500.2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획지16-3	452.8	-	단독, 근생	50%	250%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부지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921세대 1.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table><tr><th colspan="2">건립규모</th><th>기정</th><th>증·감</th><th>변경</th></tr><tr><td colspan="2">합 계</td><td>840</td><td>증) 81</td><td>921</td></tr><tr><td rowspan="2">85㎡이하</td><td>60㎡이하</td><td>413</td><td>증) 178</td><td>591</td></tr><tr><td>60㎡초과~85㎡이하</td><td>352</td><td>감) 104</td><td>248</td></tr><tr><td colspan="2">85㎡초과</td><td>75</td><td>증) 7</td><td>82</td></tr></table>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 제외 및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85㎡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건립규모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40	증) 81	921	85㎡이하	60㎡이하	413	증) 178	591	60㎡초과~85㎡이하	352	감) 104	248	85㎡초과		75	증) 7	82
			건립규모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840	증) 81	921																												
			85㎡이하	60㎡이하	413	증) 178	591																												
				60㎡초과~85㎡이하	352	감) 104	248																												
			85㎡초과		75	증) 7	82																												
			심의원화 사항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190% → 210%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59.6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한계선 지정 -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tr><th>구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h>비고</th></tr><tr><td>공동주택 사업부지</td><td>• 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폭 6m) 지정</td><td>도면참고</td></tr></table>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공동주택 사업부지	• 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폭 6m) 지정	도면참고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공동주택 사업부지	• 대지경계선 건축한계선(폭 6m) 지정	도면참고																																	
변경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별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 공동주택 사업부지의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tr><th>구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h>비고</th></tr><tr><td>공동주택 사업부지</td><td>• 남측(은천로)변 건축한계선(폭 6m) 지정</td><td>도면참고</td></tr><tr><td rowspan="2">준치지역</td><td>• 4m 도로변 건축한계선 (폭 1m, 보차혼용) 지정</td><td>도면참고</td></tr><tr><td>• 소로 3-20호선 및 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폭 2m, 보행전용) 지정</td><td>도면참고</td></tr></table>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공동주택 사업부지	• 남측(은천로)변 건축한계선(폭 6m) 지정	도면참고	준치지역	• 4m 도로변 건축한계선 (폭 1m, 보차혼용) 지정	도면참고	• 소로 3-20호선 및 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폭 2m, 보행전용) 지정	도면참고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공동주택 사업부지	• 남측(은천로)변 건축한계선(폭 6m) 지정	도면참고																										
							준치지역	• 4m 도로변 건축한계선 (폭 1m, 보차혼용) 지정	도면참고																										
• 소로 3-20호선 및 소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 (폭 2m, 보행전용) 지정	도면참고																																		

나. 용적률 계획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기정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79,826.6㎡	32,443.8㎡	9,118.3㎡	1,440.2㎡	1,876.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9,118.3\text{㎡} - 1,440.2\text{㎡} - 1,876.0\text{㎡} = 5,802.1\text{㎡}$ (중상향면적 대비 16.0%)				
	기준(허용)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2010.03.18.)에 따라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				
변경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21.11.25.)」 적용				
		- 상한용적률 $= \text{기준(허용)용적률} \times (1 \times 1.3\alpha)$ $= 230\% \times (1 + 1.3 \times 0.17883) = 283.5\%$ - 정비계획 용적률 : 278%이하		* $\alpha = \text{기부채납 면적} / \text{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5,802.1 / 32,443.8 = 0.17883$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79,826.6㎡	35,304.0㎡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포함)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1,117.1㎡
변경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7,966.9\text{㎡} - 303.7\text{㎡})1) + 3,572.8\text{㎡} - 1,117.1\text{㎡} - 5,305.1\text{㎡} = 4,813.8\text{㎡}$				
	기준(허용)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2010.03.18.)에 따라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1.16.)」 적용				
		상한용적률 $= \text{기준(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text{토지}))$ $+ 0.7 \times \alpha(\text{건축물, 임대주택}))$ $= 230\% \times (1 + 1.3 \times 0.876 \times 0.03730$ $+ 0.7 \times 0.10739)$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4,243.8\text{㎡} \times 190\% + 1,688.9\text{㎡} \times 230\%) \div 5,932.7\text{㎡}\} \div 230\% = 0.876$ * $\alpha(\text{토지}) = \text{기부채납 면적} \div \text{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5,629.0\text{㎡} - 6,422.2\text{㎡} + 2,034.2\text{㎡})$		

구 분		산 정 내 용	
		= 257.06%	$\div (35,304.0\text{㎡} - 2,034.2\text{㎡}) = 0.03730$ $\ast \alpha (\text{건축물, 임대주택}) = \text{기부채납 면적} \div \text{기부채납후 대지면적}$ $= 3,572.8\text{㎡} \div (35,304.0\text{㎡} - 2,034.2\text{㎡})$ $= 0.10739$
	법적상한 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59.63%(계획 기준)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2021.1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무상양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은천로변 가감속차로(303.7㎡) 제외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 제외 및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전체세대수 : 887세대 [921 - 14(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20세대(기부채납 제외)]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51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921 - 14(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20세대(기부채납 제외)]의 15%이상 : 887세대 × 15% = 133.05세대 ∴ 151세대 계획 > 134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51세대	17.0%	100.0%
40㎡이하	72세대	8.1%	47.7%
40㎡초과~50㎡이하	71세대	8.0%	47.0%
50㎡초과~60㎡이하	8세대	0.9%	5.3%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계획 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59.63% 이하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257.06%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59.63\% - 257.06\% = 2.57\%$				
		증가된 용적률의 50%	$2.57\% \times 0.5 = 1.285\%$ $33,662.4\text{㎡} \times 1.285\% = 432.56\text{㎡}$				
		의무 연면적	432.56㎡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39.88㎡	57.43㎡	4	229.72㎡	확지1
			48.99㎡	69.57㎡	2	139.14㎡	확지1
			59.99㎡	84.22㎡	1	84.22㎡	확지1
			합 계		7	453.08㎡	> 432.56㎡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환경보전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벽면녹화, 틈새투수포장의 증가로 계획부지내 생태면적률 30.04%로 최대한 확보	
	재난방지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내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시 나출지에 임시비밀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변경	환경보전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벽면녹화, 틈새투수포장의 증가로 계획부지내 생태면적률 31.98%로 최대한 확보	
	재난방지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내대지를 안정화시키며,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 토목공사는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며 강우시 나출지에 임시비밀막이나 부직포를 덮어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지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영향예측	저감방안
자연생태 환경	비오톱	•비오톱 유형평가도 4, 5 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등급, 현존식생도 시가화지역	•사업시행시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비오톱 조성계획 수립
	동식물상	•대부분 주거지 및 사업지역으로 식생훼손 영향은 없음 •사업시행 후 조경식재 지역 등에 귀화식물 유입 예상 •동물 서식지 훼손은 미미	•주기적 살수 실시 •수계 토사유입 차단(침사지 등) •차량 주행속도 제한 •야간작업 및 번식기 공사 지양
생활환경	토지이용	•총 면적 : 79,826.6㎡ •주택 및 기반시설로 구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토양 및 지형·지질	•지형변화 발생 미미 •토사유출 및 비옥도 등 발생	•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사 반출 •침사지 등으로 토사유출 저감
	물순환	•운영시 우수유출량 2.820㎡/sec 발생 •생태면적률 30%이상으로 계획	•조경면적 확보를 통한 우수유출량 최소화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수 질	•공사시 우수유출량 0.933㎡/sec 발생 •공사시 토사유출량 17.39톤/일 발생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1.44㎡/일 발생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생활급수 및 오수 발생	•사면보호공법 조기시행, 침사지 설치 등 토사저감대책 시행 •공사시 발생오수는 개별처리 또는 연계·처리 검토 •급수공급 및 오수처리는 관할 행정구역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대기질	•건설장비 가동시 배기가스 배출 •장비 이동시 날림먼지 발생 •토사의 상·하각시 먼지 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차량 이동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공사차량 제한 및 속도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사업대상지 내 녹지 조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투입인력에 의한 폐기물 35.3kg/일, 분뇨 51.7L/일 발생 •공사시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시 분리수거함, 간이화장실, 폐유보관시설 설치 •운영시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
	에너지	•사업시행 후 이용인구 증가로 에너지소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계획 및 건축재료 계획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고효율 설비기기 도입 계획
	소음 및 진동	•공사시 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운영시 주변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발생이 예상	•가설방음벽 설치 •가급적 주간에 공사 실시 •장비 분산투입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의 훼손은 없음	•사업시행 중 미발굴 문화재 출토시 문화재의 발굴·보전에 만전을 기함
	일조장해	•북측에 위치한 학교시설 및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일조영향이 예상	•세부계획 수립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주변 일조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9.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 분	시행방법	사업시행(예정)자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봉천제4-1-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642세대 • 계획 : 840세대 • 증가 : 198세대	-
변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봉천제4-1-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비구역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642세대 • 계획 : 921세대 • 증가 : 279세대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진동	•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보건·위생,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 규정 시행규칙」의 소음 및 진동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	
비산먼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저감대책 마련	
교통안전	• 정비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통계획 수립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통행을 자제하도록 함 -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확보를 위하여 차도와 인도사이의 방호 울타리 설치로 학생들의 보행 안정성 확보	
일 조 량	• 당해 정비사업은 구암초등학교와 일정거리를 이격하고, 시설 등측에 위치한 건축물이므로 조망권과 일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화구역 범위 검토

구 분	위 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거 리	비 고
구암등학교	관악구 봉천동	해당없음	일부해당	200m	
구암중학교	관악구 성현동	해당없음	일부해당	260m	
구암고등학교	관악구 봉천동	해당없음	일부해당	350m	
서울관광고등학교	관악구 봉천동	해당없음	일부해당	330m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안전 및 범죄예방	• 단지내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은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등 환경설계를 통한 자연감시 시스템(휴먼 시큐리티)을 구축 • 시선의 사각지대는 CCTV 설치를 통한 자연감시 기능 보완 • 산책로 및 보행가로변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조성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79,826.6	-	79,826.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79,826.6	-	79,826.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4,444.6	증) 4,243.8	28,688.4	35.9	
	제3종일반주거지역	55,382.0	감) 4,243.8	51,138.2	64.1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4,243.8	-	• 용도지역 상향이 불필요한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부지는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환원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56	20~23	보조 간선도로	일반도로	3,260 (74)	신도림동 (신림천)	봉천동 중로1-68		건고 738호 (63.12.24)	완화차로 추가 확보
변경	중로	1	56	20~23	보조 간선도로	일반도로	3,260 (97)	신도림동 (신림천)	봉천동 중로1-68		건고 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184	20	보조 간선도로	일반도로	670	중로 1-56	구역계 (봉천제4-1구역)		서고90-362 (90.05.17)	
기정	중로	2	-	15~18	집산도로	일반도로	549.6	봉천동490-32	봉천동1699-16		서고 09-461 (09.11.19)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202	봉천동470-176	소로1-1 봉천동산101-42		서고 94-121 (94.04.22)	
기정	중로	3	①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70	봉천동492-4	지구계 봉천동478-36		서고 90-362 (90.05.17)	중로3-①축소 (L=158m)
변경	중로	3	①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58	봉천동492-25	지구계 봉천동478-36		서고 90-362 (90.05.17)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00	봉천동466-5	봉천동470-24		서고 94-121 (94.04.22)	
기정	중로	3	②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30	봉천동464-29	소로3-22 봉천동466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39	중로1-184	봉천동492-4		서고 90-362 (90.05.17)	소로1-1연장 (L=51m)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51	중로1-184	봉천동492-25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일반도로	85	중로1-56	구역계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4	중로1-184 봉천동493-2	봉천동494-23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7	봉천동480-126	봉천동480-95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2	소로3-8 봉천동493-1	지구계 봉천동496-13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①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8	소로1-1	봉천동492-5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②	4	국지도로	일반도로	58	소로3-27	봉천동464-4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③	4	국지도로	일반도로	41	봉천동464-29	소로2-4 봉천동466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④	4	국지도로	일반도로	18	봉천동 산101-441	소로3-34 봉천동495-1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⑤	4	국지도로	일반도로	34	소로4-25 소로(3-34)	중로1-184 봉천동496-1		서고 90-362 (90.05.17)	
기정	소로	3	⑥	4	국지도로	일반도로	42	중로1-184 봉천동498-3	중로1-56 봉천동501-4		서고 90-362 (90.05.17)	

※ ()는 구역내 연장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56	중로 1-56	• 완화차로 추가 확보 L = 74m → 97m	•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추가 확보
소로 1-1	소로 1-1	• 도로 연장 증가 L = 39m → 51m	• 신규 존치지역으로 인해 해당 인접부 도로는 당초 도로 연장으로 환원
중로 3-①	중로 3-①	• 도로 연장 축소 L = 170m → 158m	• 신규 존치지역으로 인해 해당 인접부 도로는 당초 도로 연장으로 환원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변경	①	공 원	소공원	봉천동 468-2일대 ----- 봉천동 492-27일대	8,081.0	감) 4,081.0	4,000.0	서고2011-38 (11.02.24)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 원	소공원	봉천동 492-27일대	-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봉천동 468-2일대 → 봉천동 492-27일대 - A = 8,081.0㎡ → 4,000.0㎡ (감 4,081.0㎡)	초등학교 주변으로 공원 위치를 이동하고, 공원 면적을 축소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을 계획

(3) 학교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학 교	초등학교	봉천동 491-5일대	13,828.3	-	13,828.3	서고2011-38 (11.02.24)	

(4)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기 정	변 경 (연면적)	변경후 (연면적)		
신설	②	사회복지시설	-	봉천동 산101-213일대	-	증) 985.0 (2,449.9)	985.0 (2,449.9)	-	별도 부지 (서울특별시)

※ 사회복지시설(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사회복지시설	-	봉천동 산101-213일대	- 사회복지시설 신설 - A : 985.0㎡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회복지시설을 계획

(5) 공공청사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용도	면적(㎡) (연면적)	수직적 범위		
신설	③	공공 청사	-	봉천동 480-44일대	공공청사	1,562 (3,447.5)	• 층수 : 지하1층 ~ 지상2층	-	공동주택 획지내 입체적 결정 (서울특별시)

※ 공공청사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임

※ 공공청사 주차장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출입구와 통합으로 계획함

※ 공공청사(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의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대지지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공청사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에 의해 추후 확정됨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공 청사	-	봉천동 480-44일대	• 공공청사 신설 - A : 1,562㎡	•서울특별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 획」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공공청사를 계획

(6) 주차장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 고 (관리청)
					용도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신설	④	주차장	-	봉천동 480-44일대	공영 주차장	2,352 (3,849.19)	(지하시설) • 층수 : 지하1층 ~ 지하2층 • 높이 : 31.5m ~ 39.1m (해수면 기준)	-	공동주택 획지내 입체적 결정 (관악구)

※ 주차장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임

※ 주차장(토지 및 시설)은 관악구로 귀속되며, 관악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대지지분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에 의해 추후 확정됨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주차장	-	봉천동 480-44일대	• 공영주차장신설 - A : 2,352㎡	•사업지 주변 주차환경 개선, 추후 경전철 서부선 개통 및 현대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주차수요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내 입체적 결정을 통해 지 하주차장을 확보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 정

구분	가구	면 적(㎡)	비율(%)	비 고
획지	합 계	45,992.3	57.7	
	공동주택사업부지	소 계	32,443.8	40.7
		획지1	30,080.9	37.7
		획지2	1,255.6	1.6
		획지3	985.0	1.2
		획지4	122.3	0.2
획지	존치지역	소 계	13,548.5	17.0
		획 지 5-1	141.9	0.2
		획 지 5-2	179.3	0.2
		획 지 5-3	93.2	0.1
		획 지 5-4	99.9	0.1
		획 지 5-5	130.1	0.2
		획 지 5-6	143.2	0.2
		획 지 5-7	161.8	0.2
		획 지 5-8	218.8	0.3
		획 지 5-9	289.1	0.4
		획 지 6-1	182.9	0.2
		획 지 6-2	820.1	1.0
		획 지 7	992.7	1.2
		획 지 8	1,010.6	1.3
		획 지 9-1	401.2	0.5
		획 지 9-2	770.0	0.9
		획 지 10-1	158.0	0.2
		획 지 10-2	171.3	0.2
		획 지 10-3	163.1	0.2
		획 지 11-1	185.4	0.2
		획 지 11-2	177.9	0.2

존치지역
※ 면적 및 위치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환지계획을 적용함.

구분	가구	면 적(㎡)	비율(%)	비 고
	획 지 11-3	169.5	0.2	
	획 지 11-4	199.0	0.2	
	획 지 11-5	159.2	0.2	
	획 지 11-6	162.0	0.2	
	획 지 12-1	116.9	0.1	
	획 지 12-2	235.8	0.3	
	획 지 12-3	172.1	0.2	
	획 지 12-4	172.3	0.2	
	획 지 12-5	173.3	0.2	
	획 지 12-6	156.3	0.2	
	획 지 12-7	257.9	0.3	
	획 지 13	412.1	0.5	
	획 지 14-1	357.0	0.4	
	획 지 14-2	122.6	0.2	
	획 지 14-3	453.5	0.6	
	획 지 14-4	35.4	0.1	
	획 지 14-5	420.9	0.5	
	획 지 14-6	640.2	0.7	
	획 지 14-7	462.1	0.6	
	획 지 14-8	143.0	0.2	
	획 지 15-1	184.5	0.2	
	획 지 15-2	184.7	0.2	
	획 지 15-3	360.1	0.5	
	획 지 16-1	354.6	0.4	
	획 지 16-2	500.2	0.6	
	획 지 16-3	452.8	0.6	

■ 변 경

구분	가구	면 적(㎡)	비율(%)	비 고
획지	합 계	49,005.6	61.5	
	공 동 주 택 사 업 부 지	소 계	35,304.0	44.3
	공 동 주 택 사 업 부 지	획지1	33,662.4	42.2
		획지2	1,255.6	1.6
		획지3	386.0	0.5
		소 계	13,751.6	17.2
	존 치 지 역	획지4	203.1	0.3
		획 지 5-1	141.9	0.2
		획 지 5-2	179.3	0.2
		획 지 5-3	93.2	0.1
		획 지 5-4	99.9	0.1
		획 지 5-5	130.1	0.2
		획 지 5-6	143.2	0.2
		획 지 5-7	161.8	0.2
		획 지 5-8	218.8	0.3
		획 지 5-9	289.1	0.4
		획 지 6-1	182.9	0.2
		획 지 6-2	820.1	1.0
		획 지 7	992.7	1.2
		획 지 8	1,010.6	1.3
		획 지 9-1	401.2	0.5
		획 지 9-2	770.0	1.0
		획 지 10-1	158.0	0.2
		획 지 10-2	171.3	0.2
		획 지 10-3	163.1	0.2
		획 지 11-1	185.4	0.2
		획 지 11-2	177.9	0.2
		획 지 11-3	169.5	0.2
		획 지 11-4	199.0	0.2

존치지역
※ 면적 및 위치는 종전 관리처분계획
에 의한 환지계획을 적용함.

구분	가구	면 적(m ²)	비율(%)	비 고
	획 지 11-5	159.2	0.2	
	획 지 11-6	162.0	0.2	
	획 지 12-1	116.9	0.1	
	획 지 12-2	235.8	0.3	
	획 지 12-3	172.1	0.2	
	획 지 12-4	172.3	0.2	
	획 지 12-5	173.3	0.2	
	획 지 12-6	156.3	0.2	
	획 지 12-7	257.9	0.3	
	획 지 13	412.1	0.5	
	획 지 14-1	357.0	0.4	
	획 지 14-2	122.6	0.2	
	획 지 14-3	453.5	0.6	
	획 지 14-4	35.4	0.1	
	획 지 14-5	420.9	0.5	
	획 지 14-6	640.2	0.7	
	획 지 14-7	462.1	0.6	
	획 지 14-8	143.0	0.2	
	획 지 15-1	184.5	0.2	
	획 지 15-2	184.7	0.2	
	획 지 15-3	360.1	0.5	
	획 지 16-1	354.6	0.4	
	획 지 16-2	500.2	0.6	
	획 지 16-3	452.8	0.6	

※ 개별택지사업부지는 기존 지력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획함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부지
기정	허용용도	획지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기정	허용용도	획지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기정	허용용도	획지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사업부지 → 존치지역
변경	허용용도	획지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기정	허용용도	학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존치지역
기정	허용용도	획지5-1 ~16-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변경)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획지1	30% 이하	공동주택 사업부지
기정	획지2	관계법령에 따름	
기정	획지3	관계법령에 따름	
기정	획지4	관계법령에 따름	공동주택 사업부지 → 존치지역
변경	획지4	50% 이하	
기정	획지5-1 ~ 5-9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지역
변경	획지5-1 ~ 5-9	60% 이하	
기정	획지6-1 ~ 16-3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획지6-1 ~ 16-3	5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변경)

구 분	지 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획지1	230% 이하	230% 이하	278% 이하	-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78%
변경	획지1	230% 이하	230% 이하	257.06% 이하	259.63% 이하	정비 계획	허용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57.06%
							법정상한용적률 259.63%
기정	획지2	관계법령에 따름				공동주택 사업부지	
기정	획지3	관계법령에 따름					
기정	획지4	관계법령에 따름				공동주택 사업부지 → 존치지역	
변경	획지4	250% 이하					
기정	획지5-1 ~ 5-9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지역	
변경	획지5-1 ~ 5-9	200% 이하					
기정	획지6-1 ~ 16-3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획지6-1 ~ 16-3	250% 이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2010.03.18.)에 따라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

■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정	48.00%	-	총 48.00%
변경	27.06%	2.57%	총 29.63%

(다) 높이 계획 (변경)

구 분	지 역	높이 기준	비 고
기정	획지1	85m 이하 (28층 이하)	공동주택 사업부지
기정	획지2	관계법령에 따름	
기정	획지3	관계법령에 따름	
기정	획지4	관계법령에 따름	공동주택 사업부지 → 존치지역
기정	획지5-1 ~ 5-9	관계법령에 따름	존치지역
변경	획지5-1 ~ 5-9	21m 이하 (7층이하)	
기정	획지6-1 ~ 16-3	관계법령에 따름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공동주택 사업부지	■ 남측(은천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존치지역	■ 4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보차혼용)
		■ 소로 3~20호선변 ■ 소로 1~1호선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보행전용)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도면 참조

라. 경관계획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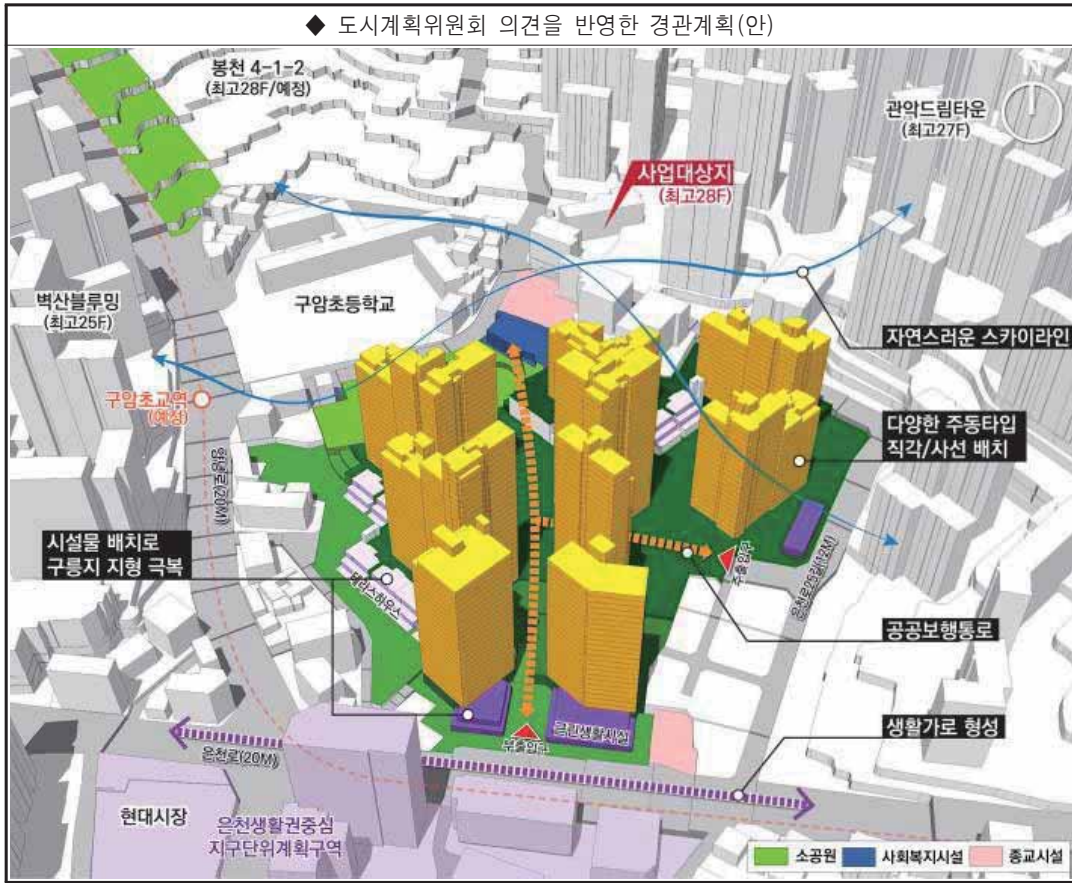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	■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은천로, 양녕로 등 대상지가 면한 주요 도로변에서 공동주택을 사선 또는 직각 배치 권장
건물 진출입구	-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계획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 공동주택 아파트	■ 다양한 평면을 조합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 옥탑층 시설 노출을 지양하고 심플한 형태로 정돈된 경관 형성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 돌출형 발코니 등 입면형태에 변화를 주어 시각적 리듬감 부여
저층부외관	■ 공동주택 아파트	■ 지형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계획으로 지형 순응형 계획 ■ 개방적인 보행 경관을 위해 전동 필로티 계획 ■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으로 조경계획과 조화
재료 및 색채	■ 공동주택 아파트	■ 유리 커튼월 등의 적용으로 재료마감에 변화를 주어 건축물의 매스를 분절하고 무게감 저감 ■ 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
진입구 처리	■ 공동주택 아파트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지양 ■ 전동 필로티계획으로 개방감을 형성하고 접근성 향상 ■ 불필요한 시각차폐를 지양하고 진입광장, 공원 등 열린 공간으로 계획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개방감	■ 은천로 남북방향	■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 공동주택 아파트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 공동주택 아파트	■ 단지 경계부로 점차 낮아지는 층수 계획으로 상도근린공원 및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획지 내	기정	■ 단지내 보행연결 구간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변경	■ 단지내 보행연결 구간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B = 4m 이상)	기존선형 유지 (북측 공원 내 공공보행통로 삭제)

※ 구체적인 위치는 관련도면 참조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영향예측	저감방안
자연생태 환경	비오톱	•비오톱 유형평가도 4, 5 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등급, 현존식생도 시가화지역	•사업시행시 녹지면적을 최대로 확보되도록 비오톱 조성계획 수립
	동식물상	•대부분 주거지 및 사업지역으로 식생훼손 영향은 없음 •사업시행 후 조경식재 지역 등에 귀화식물 유입 예상 •동물 서식지 훼손은 미미	•주기적 살수 실시 •수계 토사유입 차단(침사지 등) •차량 주행속도 제한 •야간작업 및 번식기 공사 지양
생활환경	토지이용	•총 면적 : 79,826.6㎡ •주택 및 기반시설로 구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토양 및 지형·지질	•지형변화 발생 미미 •토사유출 및 비옥토 등 발생	•지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토사 반출 •침사지 등으로 토사유출 저감
	물순환	•운영시 우수유출량 2,820㎡/sec 발생 •생태면적률 30%이상으로 계획	•조경면적 확보를 통한 우수유출량 최소화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수 질	•공사시 우수유출량 0.933㎡/sec 발생 •공사시 토사유출량 17.39톤/일 발생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1.44㎡/일 발생 •운영시 계획인구에 의한 생활급수 및 오수 발생	•사면보호공법 조기시행, 침사지 설치 등 토사저감대책 시행 •공사시 발생오수는 개별처리 또는 연계·처리 검토 •급수공급 및 오수처리는 관할 행정구역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대기질	•건설장비 가동시 배기가스 배출 •장비 이동시 날림먼지 발생 •토사의 상·하적시 먼지 발생 •운영시 연료사용, 차량 이동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공사차량 제한 및 속도 규제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사업대상지 내 녹지 조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투입인력에 의한 폐기물 35.3kg/일, 분뇨 51.7L/일 발생 •공사시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시 분리수거함, 간이화장실, 폐유보관시설 설치 •운영시 분리수거함 설치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
	에너지	•사업시행 후 이용인구 증가로 에너지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계획 및 건축재료 계획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고효율 설비기기 도입 계획

검토항목	영향예측	저감방안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장비 투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 운행시 주변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발생이 예상	- 가설방음벽 설치 - 가급적 주간에 공사 실시 - 장비 분산투입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의 훼손은 없음	사업시행 중 미발굴 문화재 출토시 문화재의 발굴·보전에 안전을 기함
일조장해	북측에 위치한 학교시설 및 공동주택지역에 대한 일조영향이 예상	세부계획 수립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주변 일조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기부채납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합 계	921	100.0	178	151	7	20	19.3	100.0	11.2
40㎡이하	176	19.1	83	72	4	7	47.2	46.6	8.4
40㎡초과~50㎡이하	132	14.3	80	71	2	7	53.8	45.0	8.8
50㎡초과~60㎡이하	283	30.8	15	8	1	6	5.3	8.4	40.0
60㎡초과~85㎡이하	248	26.9	-	-	-	-	-	-	-
85㎡초과	82	8.9	-	-	-	-	-	-	-

■ 2021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 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수정 가결	수정 사항	차량진출입구계획 : 최초 상정안 (주출입구-동측, 부출입구-남측)으로 수정	차량진출입구 계획은 최초 상정안 (주출입구-동측, 부출입구-남측)으로 수정하였음	반영
		조건 사항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공공청사(키움센터)와 위치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상한 용적률계획 등을 조정할 것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의 위치를 조정하였음	반영
			공영주차장은 진입도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경계 조정을 검토하고, 건축물 기부 채납 시 대지지분 산정 등에 대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비롯한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인 후 정비계획 결정고시 할 것. ※ 공영주차장 수요검토는 타당하게 보완 필요	-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의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였음 - 또한, 공영주차장 수요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대수 120대 → 100대, 연면적 4,477.45㎡ → 3,849.19㎡로 조정하였음	반영
			공공청사 계획 연면적은 최초 상정안과 동일하나, 건축물 환산면적은 금회 상당히 증가 (1,230.6㎡ → 1,602.0㎡) 한 바, 공시지가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검토할 것	공공청사의 건축물 환산면적 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과 동일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	반영
			상기한 공공기여계획 및 용적률계획 조정 시 임대주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공공기여계획 및 용적률계획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반영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2), 관악구 주택과(☎02-879-630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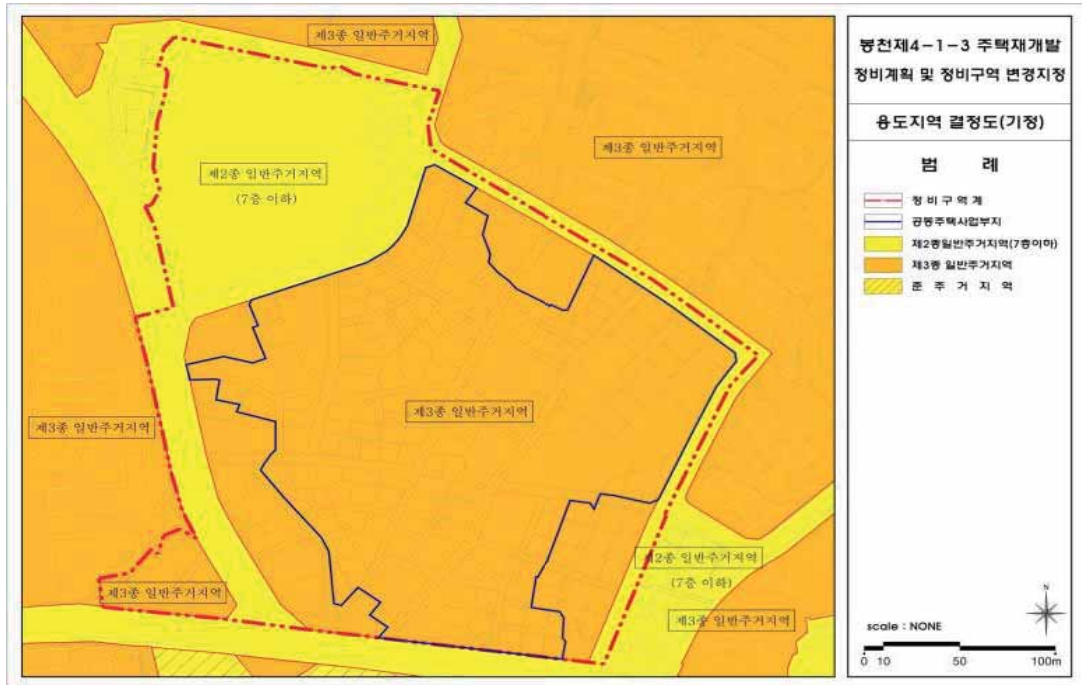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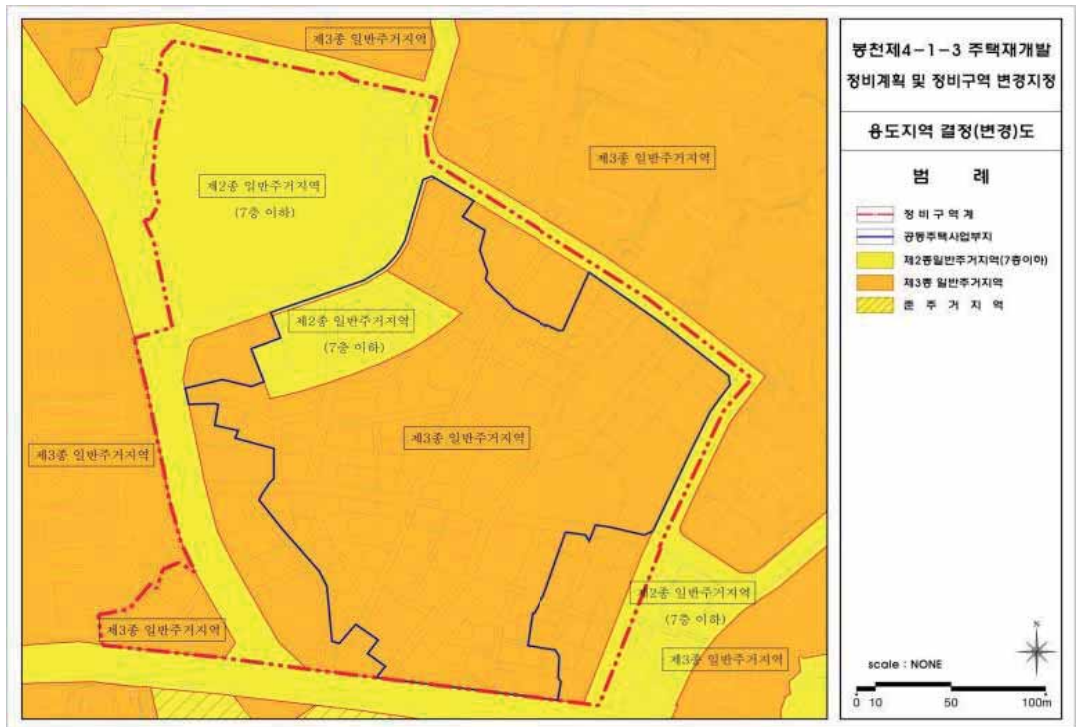
1.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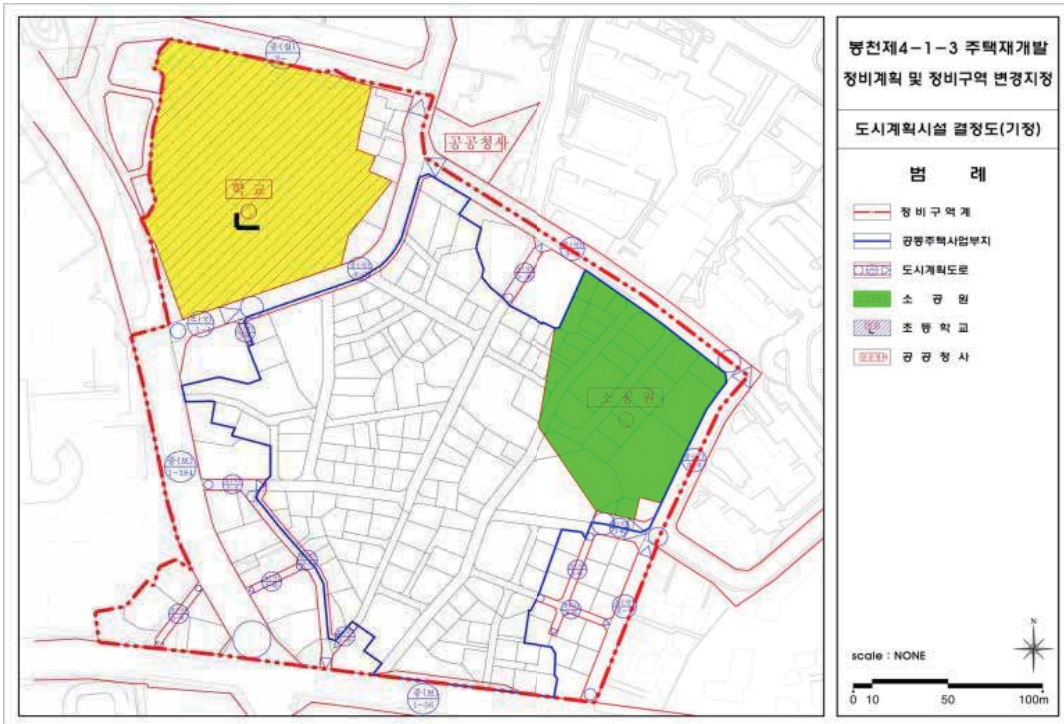
2.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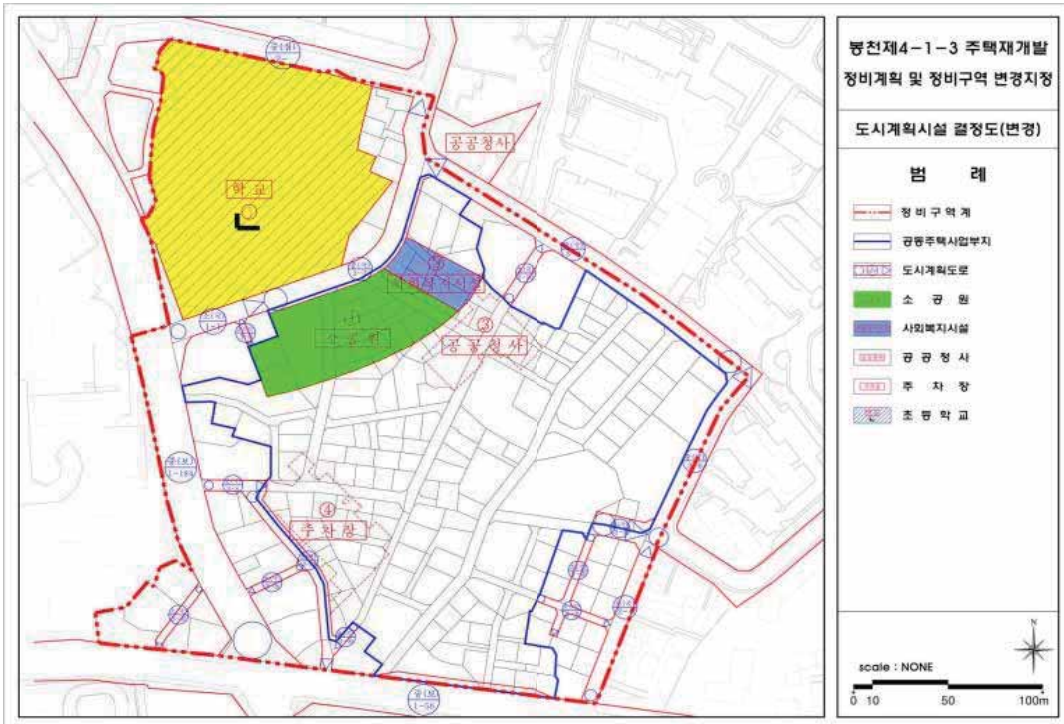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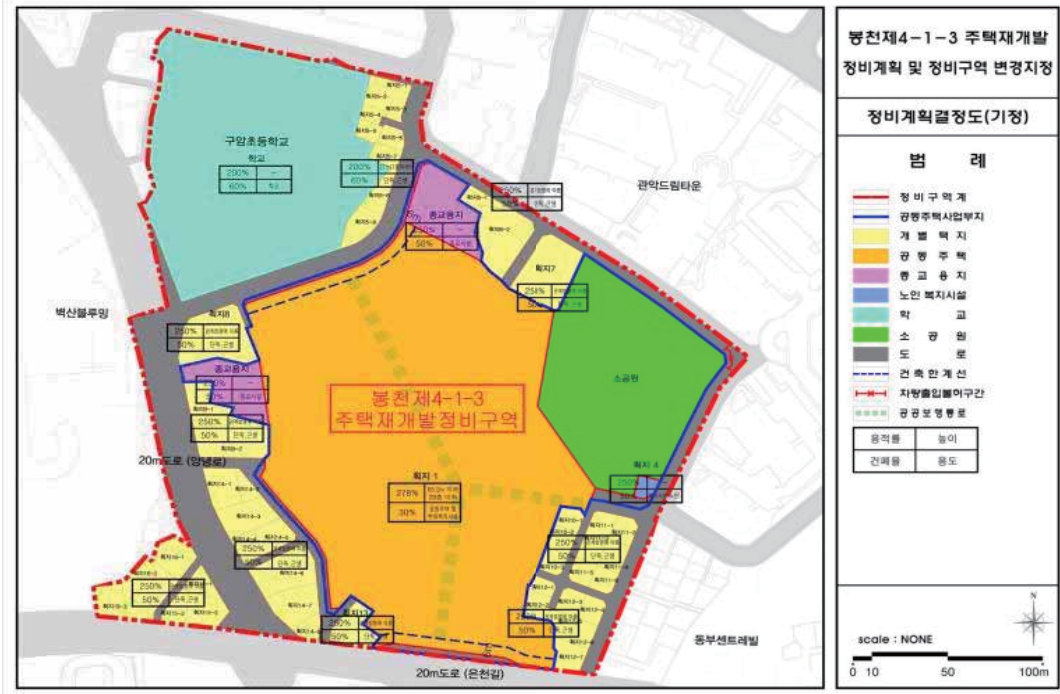
4.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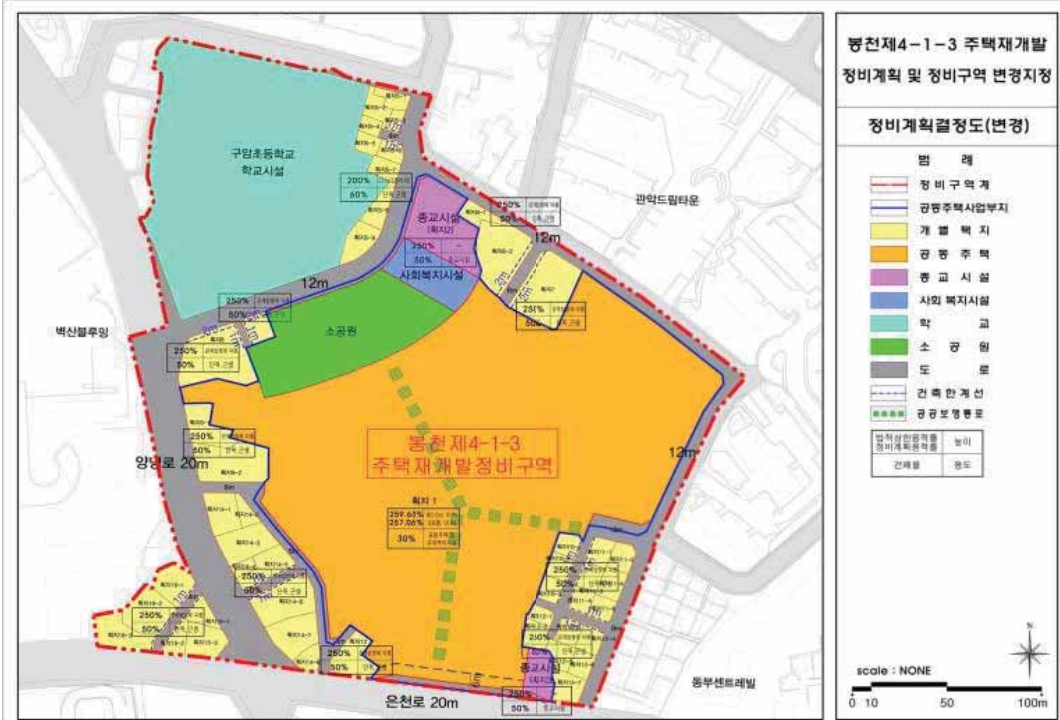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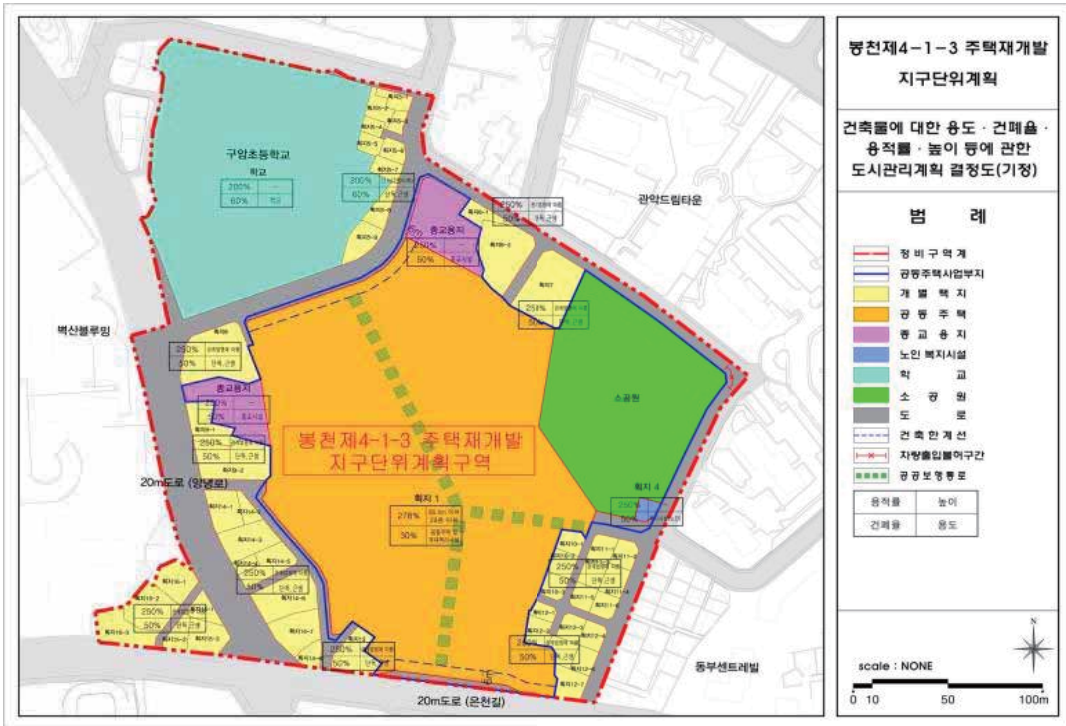
6.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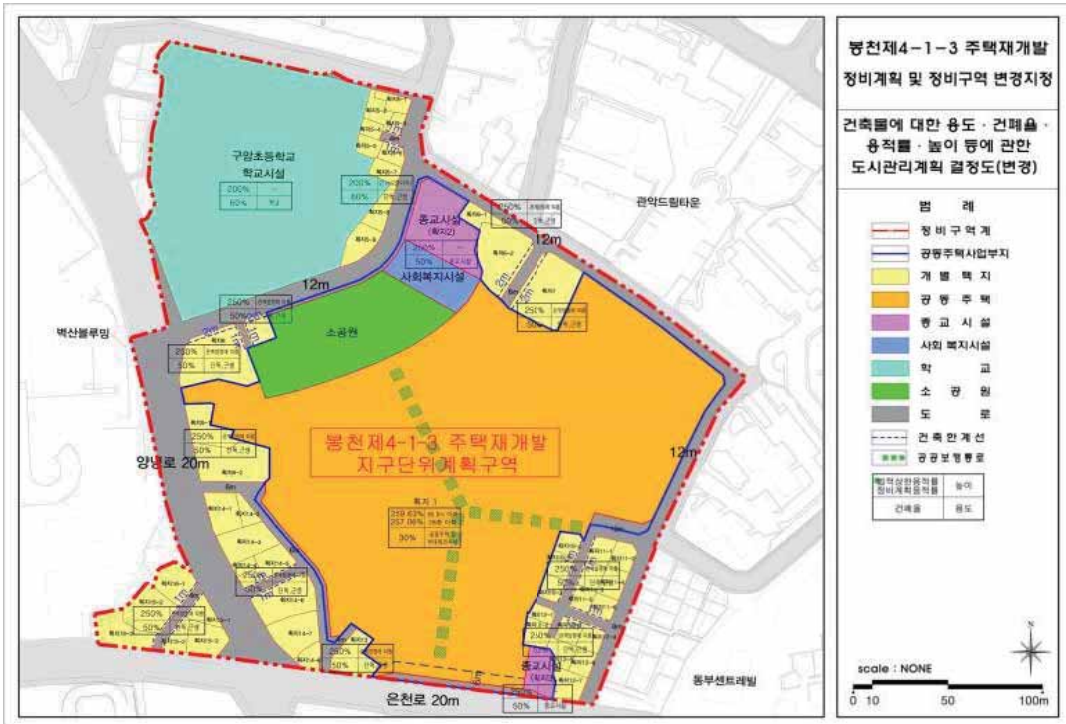
7.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8.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9.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8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 - 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1.12.1.)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I.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중림동,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	61,730.1	감) 347.3	61,382.8	●제9-1지구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 및 공공기여를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23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5	중구 중림동 500-4	중구 중림동 419-5	-	-	●미집행구간 개설

※ 소로1-23호선 미집행구간에 대하여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사업시행자가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받아 개설 예정

II.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지구 지정 조서(변경)

구분	정비지구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1,938.9	감) 347.3	1,591.6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 •공공기여를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변경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38.9	감) 347.3	1,591.6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320.3	감) 320.3	-	-	•공공기여를 토지 대신 건축물로 변경
획 지	1,618.6	감) 27.0	1,591.6	100.0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

3. 용도지역 · 지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18.6	감) 27.0	1,591.6	100.0	-
일반상업지역	1,618.6	감) 27.0	1,591.6	100.0	

※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의 공부상 면적 반영에 의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방화지구	서대문~마포	449.4	-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관리청)
신 설	-	사회복지시설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부지면적 : - (연면적 : 1,817.95㎡)	-	복합설치 (서울특별시)

※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도심권 50플러스센터 신설	●50+ 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사회공헌 활 등 지원

5.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가. 사회복지시설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도입용도	50플러스센터	
시설연면적	1,817.95 ㎡	●전용면적 1,106.23㎡ / 공용면적 711.72㎡ ●2층(공동 사용), 3층(단일 사용)
건축비	2,999,000 원/㎡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중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비용	5,452,032,050 원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부지가액	19,452,218 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가중평균값 2배 적용
환산부지면적	406.22 ㎡	●건축물 환산면적 + 토지지분면적
건축물 환산면적	280.28 ㎡	●설치비용 ÷ 부지가액
토지지분면적	125.94 ㎡	●기부채납시설 면적 ÷ 전체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817.95㎡ ÷ 22,975.36㎡) × 1,591.60㎡

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 계획

- ▶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량 : 406.22㎡ (20.33%) / 기결정 부담량 320.30㎡ (부담률 16.54%) 이상 계획
- ① 정비기반시설 부담 : -
- ② 지상2~3층부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 406.22㎡
- 토지지분 125.94㎡, 건축물 환산면적 280.28㎡ [연면적 1,817.95㎡ (전용 1,106.23㎡ + 공용 711.72㎡)]
 - 도입시설(지분 및 건축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
-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 ③ 획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 -

지구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부담 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기존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부담률
제9-1지구	1,591.6	1,591.6	-	406.22	-	•부담률 산식 = 406.22㎡ / (1,591.6㎡ + 406.22㎡) = 20.33%

■ 정비기반시설 등의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0.30	증) 85.92	406.22	100.0	
도 로	320.30	감) 320.30	-	-	
건축물	-	증) 406.22	406.22	100.0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제9-1지구	1,938.9	9-1	1,618.6	순화동 6-12일대	6	-	-	6	-	
변경	제9-1지구	1,591.6 (감 347.3)	9-1	1,519.6 (감 27.0)	순화동 6-11일대						

7.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마포로5구역 제9-1지구	1,938.9	9-1	1,618.6	중구 순화동 6-12번지 일대	업무	60이하	600/800/α	70이하	-																																														
변경		1,591.6		1,591.6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주거	60이하 (저층부 71이하)	1,030이하	70이하	-																																														
<table><tr><td rowspan="9">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td><td colspan="2">구 분</td><td>세대수</td><td>비율</td><td>비 고</td></tr><tr><td colspan="2">합 계</td><td>136</td><td>100.0</td><td></td></tr><tr><td rowspan="3">공동주택</td><td colspan="2">소 계</td><td>68</td><td>50.0</td><td></td></tr><tr><td>일반분양</td><td>84㎡</td><td>29</td><td>21.3</td><td></td></tr><tr><td>장기일반민간임대</td><td>59㎡</td><td>39</td><td>28.7</td><td></td></tr><tr><td rowspan="4">오피스텔</td><td colspan="2">소 계</td><td>68</td><td>50.0</td><td></td></tr><tr><td rowspan="3">일반분양</td><td>52㎡</td><td>34</td><td>25.0</td><td></td></tr><tr><td>82㎡</td><td>17</td><td>12.5</td><td></td></tr><tr><td>84㎡</td><td>17</td><td>12.5</td><td></td></tr></table>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136	100.0		공동주택	소 계		68	50.0		일반분양	84㎡	29	21.3		장기일반민간임대	59㎡	39	28.7		오피스텔	소 계		68	50.0		일반분양	52㎡	34	25.0		82㎡	17	12.5		84㎡	17	12.5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136	100.0																																																				
	공동주택	소 계		68	50.0																																																			
		일반분양	84㎡	29	21.3																																																			
		장기일반민간임대	59㎡	39	28.7																																																			
	오피스텔	소 계		68	50.0																																																			
		일반분양	52㎡	34	25.0																																																			
			82㎡	17	12.5																																																			
			84㎡	17	12.5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완화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제4절. 건폐율 및 높이계획 - 60% 이하 (저층부 71% 이하)																																																						
	용적률 완화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180%																																																						
		목적	인센티브대상	요 건		인센티브		적용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 그린1등급(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100%	최대 18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 240 (kWh/㎡·y)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11%이상(비주거) ○ 7%이상(주거)																																																				
		주거 안정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 택 도입(전용 60㎡ 이하, 전세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정량 부여	최대 50%	50%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 입 시		정량 부여	최대 30%	30%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258.80% ⇒ 250% 적용																																																						
	정비기반 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α]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6.22㎡ / 1,591.60㎡ = 0.2552 = 780% × (1.3 × 0.2552) = 258.80%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서소문로변 : 건축한계선 3m ○ 서소문로9길변 : 건축한계선 2m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시행면적 (㎡)	획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토지지분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획지 내 용도 폐지 국·공유지 면적(㎡)
	1,591.6	1,591.6	-	406.22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획지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406.22㎡ / (1,591.6㎡ + 406.22㎡) = 20.3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406.22㎡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환산면적 + 토지지분면적 = 406.22㎡ ●건축물 환산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5,452,302,050 / 19,452,218 = 280.28㎡ · 건축비 : 2,999,000 원/㎡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 설치비용 : 5,452,302,050 원 (건축비 2,999,000 × 건축연면적 1,817.95㎡) · 부지가액 : 19,452,218 원/㎡ (개별공시지가 9,726,109 원/㎡ 의 2배) ●토지지분면적 = 공공시설 연면적 / 전체연면적 × 대지면적 = 1,817.95㎡ / 22,975.36㎡ × 1,591.60㎡ = 125.94㎡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 = 180%					
	목적	인센티브대상	요 건		인센티브	적용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o 그린1등급(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o 240 (kWh/㎡·y)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o 11%이상(비주거) o 7%이상(주거)			
주거 안정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o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도입(전용 60㎡ 이하, 전체연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정량 부여	최대 50%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o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 입 시		정량 부여	최대 30%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780% × (1 + 1.3 × 1.0 × 0.2552) = 1,038.80% ⇒ 1,030% 이하 적용				α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6.22 ÷ 1,591.6 = 0.2552 . . .	
	▶ 대상지 · 일반상업지역 (기부채납 20.33%) · 허용용적률 : 780%, 대지면적 1,591.6㎡ · 기부채납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406.22㎡ · 계획용적률 : 1,023.88%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경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경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재난방지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 수립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우수지를 확보하고 우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계획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계획지구내 녹지가 분포치 않음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비오름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름 평가제외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
생태면적률	30%이상	●기 시가와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고효율기자재 사용 등 계획
경관	Skyline 보전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대상지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보도 개선 및 공개공지 설치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전용도로 미설치	●주변지역과 연계할 자전거전용도로 없음
일조	수인한도 만족	●대상지: 일반상업지역 ●대상지 인근: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정비구역 주변 반경 200m에 이화여자고등학교, 반경 300m에 이화여자고등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위치	●정비구역 - 교육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되는 행위 불허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 구역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기타 - 추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 폐유교환은 지정업소에서 실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교환시에는 지구내 폐유저장고를 설치하여 전량 수거 후 위탁 처리	-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정비계획결정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소규모 점포 등이 소재한 일반상업지 역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법용 CCTV 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RF Card에 의한 무정차 방식으로 입주 차량의 빠른 입·출차 확보 및 외부차량 출입통제 ●CCTV 카메라를 주차장 등 주요 장소에 설치 ●디지털 감시녹화장치(DVR)에 의한 원격감시 및 녹화 ●정전 시 발전기로 CCTV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 ●16채널 DVR SYSTEM 구축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 ●DVR의 저장 해상도는 1채널당 320×240이상	-

□ 2021년 제16차('21.1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내용	비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사전검토의견 주요 조치계획 - 소로 1-23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개설 ●조건사항 - 평면계획상 공동주택 공용공간에 채광이 가능하도록 조정 검토하고,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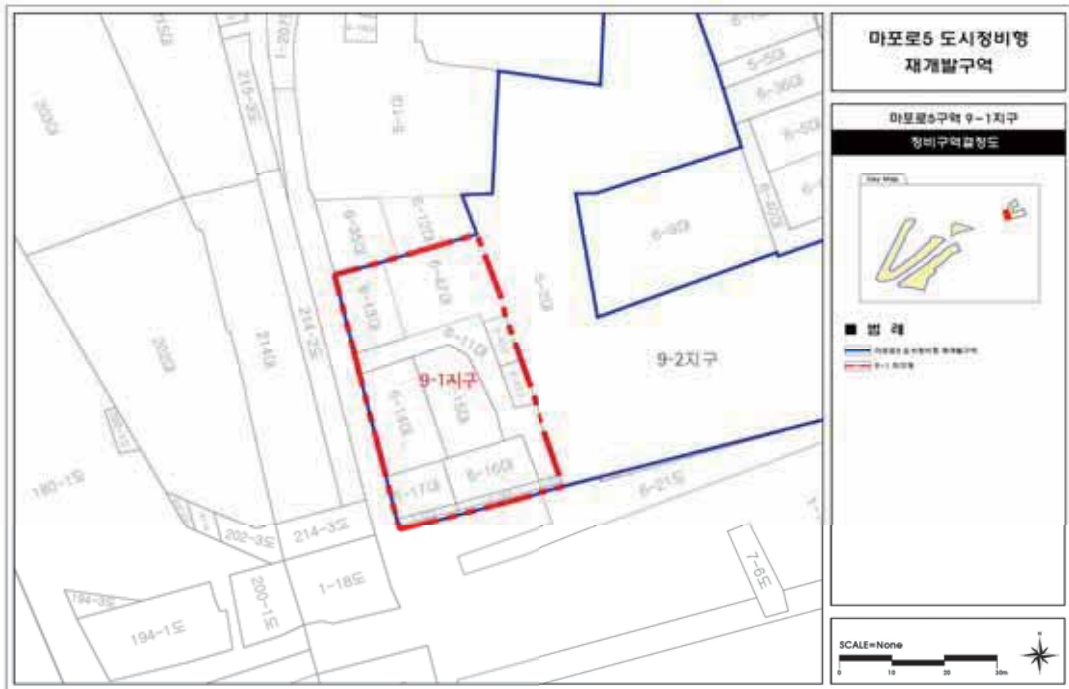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7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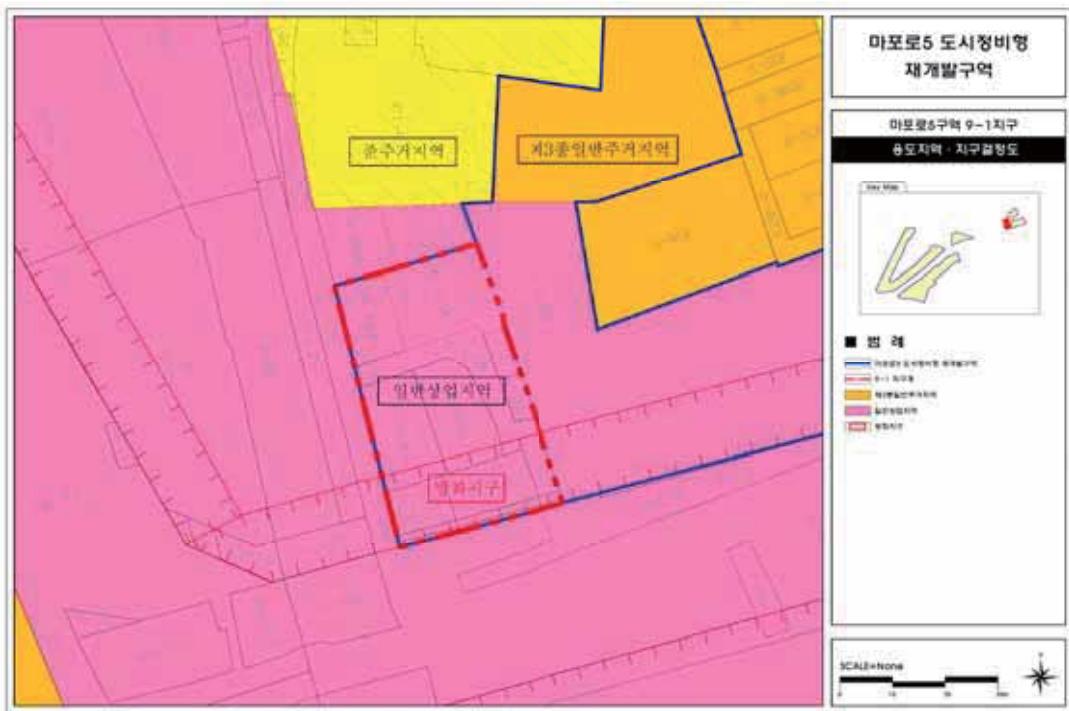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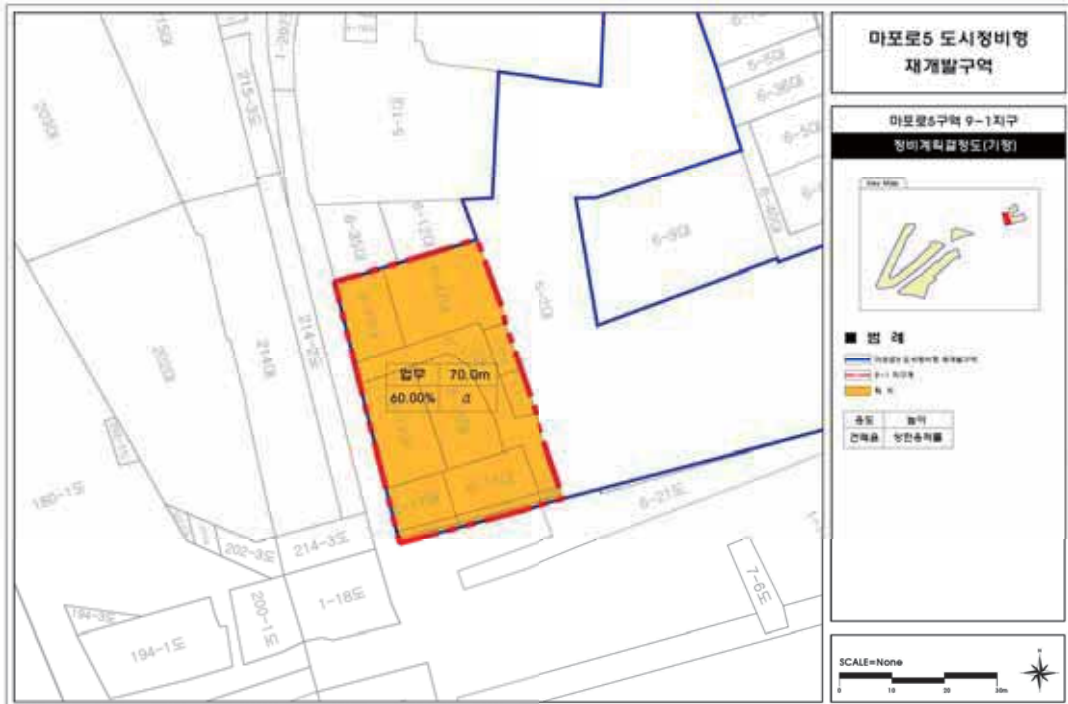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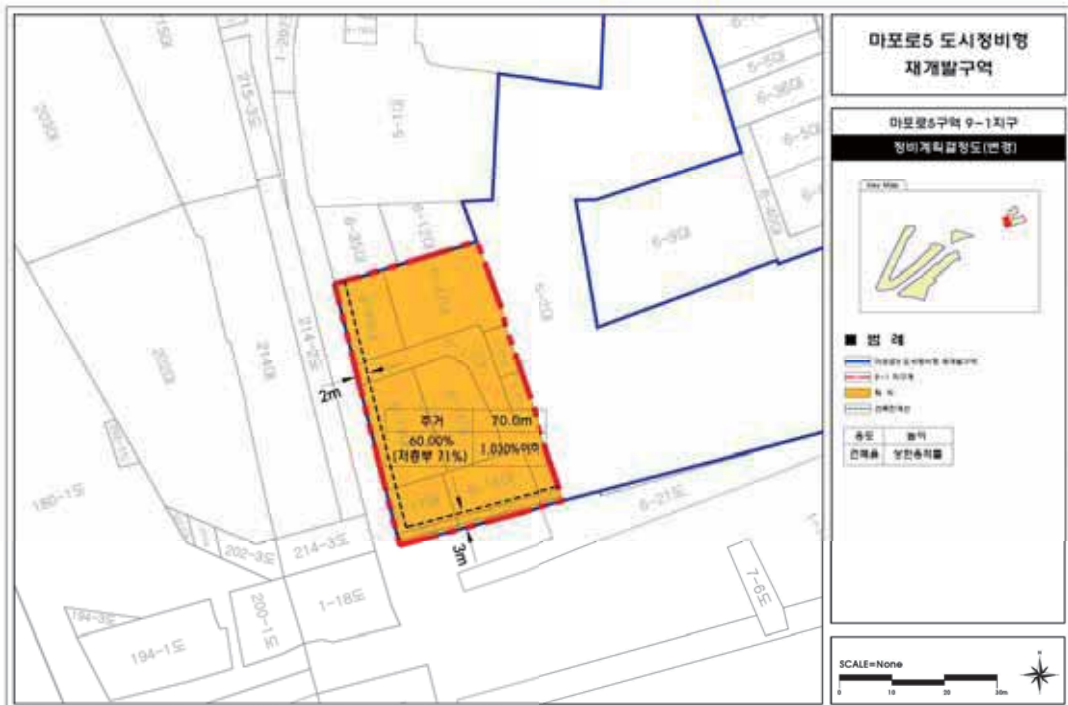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99호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100호(2006.3.23.)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2021.12.15.)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지구 지정 조서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3,280.5	증) 380.2	3,660.7	인근미집행 정비기반시설 필지 포함하여 조성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및 제84조제1항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80.5	증) 380.2	3,660.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76.5	증) 303.7	380.2	10.4%	-
	도로	76.5	감) 76.5	-	-	획지 편입
	공공공지	-	증) 380.2	380.2	10.4%	인근 미확보 도시계획시설
획지		3,204.0	증) 76.5	3,280.5	89.6%	공공주택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660.7	-	3,660.7	100.0	-
일반상업지역	3,660.7	-	3,660.7	1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06	15	집산 도로	150	도화동 559-1번지	도화동 51-7번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제146호 (80.5.19)	-

나. 공공공지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	마포구 공덕동 255-6일대	1,606.2 (-)	- (증 380.2)	1,606.2 (380.2)	서고시 제315호 (19.9.19)	-

※ ()는 구역내 포함되는 면적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변경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3,660.7	획지	3,280.5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1	-	-	1	-	-
			공공 공지	380.2	마포구 공덕동 255-6	2	-	-	-	2	-

6.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마포로 1구역 제10지구	3,280.5	획지	3,204.0	마포구 도화동 536번지	주거 (업무, 근린)	51.36	869.8	86.7	-
변경		3,660.7		3,280.5		주거	60이하	950이하	11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31세대 (임대 46세대) ■ 전체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기정	증감	변경	비율		
	합계				100	증) 131	231	100.0%		
	85㎡ 이하	40㎡이하			-	증) 58	58(임대 30)	25.1%		
		40㎡초과 85㎡이하			-	증) 144	144(임대 16)	62.3%		
	85㎡ 초과				100	감) 71	29	12.6%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임대주택 건설 : 상업지역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심의완화 사항	■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주거비율 완화 주거비율 78.3%이하 : 주거용 용적률 400% 이하 → 610.8% 이하 공공주택 : 105.4% 이상 공급 {허용용적률780%-주거용적률400%-비주거용적률(계획용적률의 21.7%) 169.2%}의 1/2이상									
공공시설 관리주체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6일대		1,482.3㎡ (지상3층)		복합설치 (마포구청)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토정로37길(20m)변, 마포대로(8m, 15m)변 건축한계선(폭 3m) 지정 • 인접대지변 건축한계선(폭 1m) 지정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	획지(㎡)	정비기반 시설(㎡)	공공시설(키움센터)(㎡)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획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3,660.7	3,280.5	380.2	계	환산부지	토지지분		
				221.8	115.8	106.0		
							51.9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면적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380.2㎡ + 221.8㎡ - 51.9㎡ = 550.1㎡ (15.24%) (※11.47%이상)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180%							
	목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정량 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주거7%, 비주거11%이상)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정량 부여	50%
		무장애도시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등급 인증시				정량 부여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투수성포장, 저류시설, 지붕저류·지붕녹화 설치기준의 120% 이상 계획 및 노후 하수관거 교체시				정량 부여	30%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조정방안 (2021.3.)」 적용							
	• 상한용적률 = 600% + 180% + 170.02% = 950.02% (950%이하 적용) • 인센티브 = 170.02% ①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공지) = 허용용적률 × (1.3 × α × 가중치) = 780% × (1.3 × 0.1001 × 1.0) = 101.48% ②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청사) = 허용용적률 × {(1.3 × β) + (1.3 × γ)} = 780% × {(1.3 × 0.0323) + (1.3 × 0.0353)} = 68.54%					α값 산정 : 순부담 면적 ÷ 대지면적 = (380.2-51.9) ÷ 3,280.5 = 0.1001 β값 산정 : 건축물 대지지분 ÷ 대지면적 = 106.0 ÷ 3,280.5 = 0.0323 γ값 산정 : 건축물 환산부지 ÷ 대지면적 = 115.8 ÷ 3,280.5 = 0.0353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계획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6.23.) - 임대주택 건설 : 상업지역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전용면적 40㎡이하로 계획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9.10)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을 공공주택으로 공급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전용 40㎡이하 확보 - 주거비를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주택 확보 시 상업지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가능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 231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46세대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완화용적률의 1/2인 105.39%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세대수 : 46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상업지역) : 12세대 ⇒ ∴ 46세대 > 12세대 • 전용 40㎡이하 세대수 : 28세대 이상		
건립규모	임대주택 세대수	전체세대수 대비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계	46	19.9%	100.0%
40㎡이하	30	13.0%	65.2%
40㎡초과~85㎡이하	16	6.9%	34.8%

※ 공공임대주택은 관련부서(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전협의 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공개추첨시기는 조합원들의 동호수 선정과 함께 추첨하여야 한다.

7.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바이오톱(biotop) 공간확장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재난 방지	수재해	• 구역 내 자연지반을 최대한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자연성 포장 및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
	산사태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산사태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 유지 및 벽면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토사유출 방지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 사업대상지는 현재 불투수 포장지역임	• 자연·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전면투수포장 적용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표1	• 주변공원과의 그린네트워크 형성	• 주변공원 계획에 부합하는 조경계획수립
3. 지형변동	지형·지질 변동최소화	• 원만한 구릉지로 지형변화 최소화	• 현 지반고를 고려 지형순응형 계획 수립
4.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3등급 • 개별비오톱평가 제외	• 조경녹지·투수성 포장으로 비오톱 기능 향상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건축물 신축시 주변 건축물 영향 예상	•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주동배치를 통해 바람길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예상	• 에너지절약성 설계기법 적용
8. 경관	Skyline 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건물 배치 및 높이 설정
9. 휴식 및 여유허용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지 주변 경의선, 한강공원 위치	• 자연·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 확보 • 대지 내 공지 활용하여 휴식공간 제공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도로 계획 수립	• 북측 보차혼용도로 위치	• 건축선 후퇴부 전면공지 및 이면부 보행공간 확충
11. 소음 및 진동	공사시 65dB이하	• 인근도로에 의한 영향 발생 지역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12. 폐기물	폐기물처리	•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 발생	•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90	231	141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서측 서울 염리 초등학교	• 청소년 유해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 허용용도에서 제외 (불허용도)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당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거리 100m이내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주상복합 이용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 •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 (전면 유리 등)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

11. 세입자 주거대책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021년 제17차('21.12.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내용	비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사항 ▪ 주거비율 완화 및 공공주택 확보에 관한 계획 - 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 106.46%(임대주택 55세대) → 105.4%(임대주택 46세대) ▪ 기반시설부담 및 상한용적률 계획 - 순부담율 : 16.41%(공공공지 380.2㎡, 키움센터 1,667.0㎡) → 15.24%(공공공지 380.2㎡, 키움센터 1,482.3㎡) - 상한용적률 : 963%이하 → 950%이하 ▪ 건축 계획 - 지하 주차장 규모 : 지하 9층(363대) → 지하 7층(305대)	-

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I.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I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8),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6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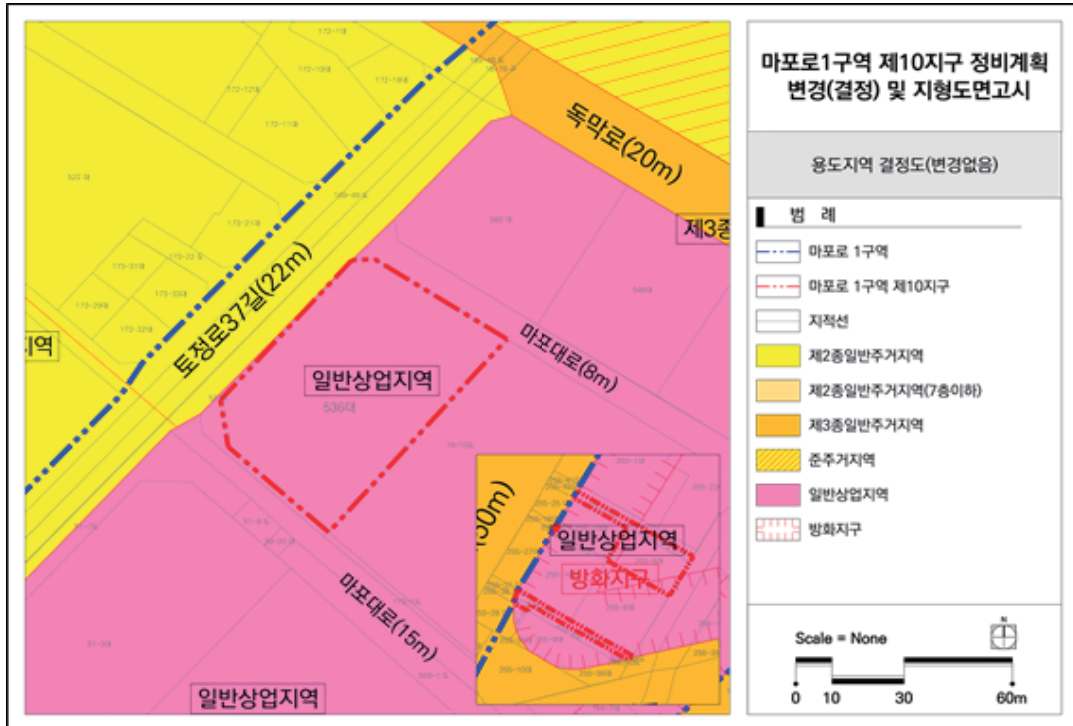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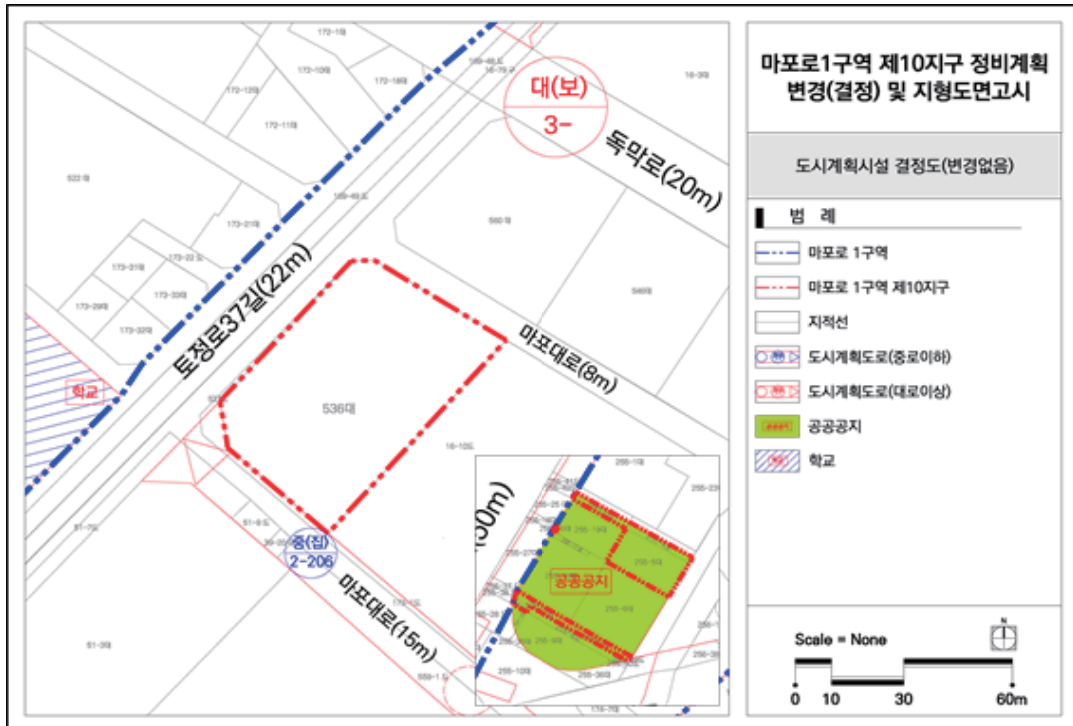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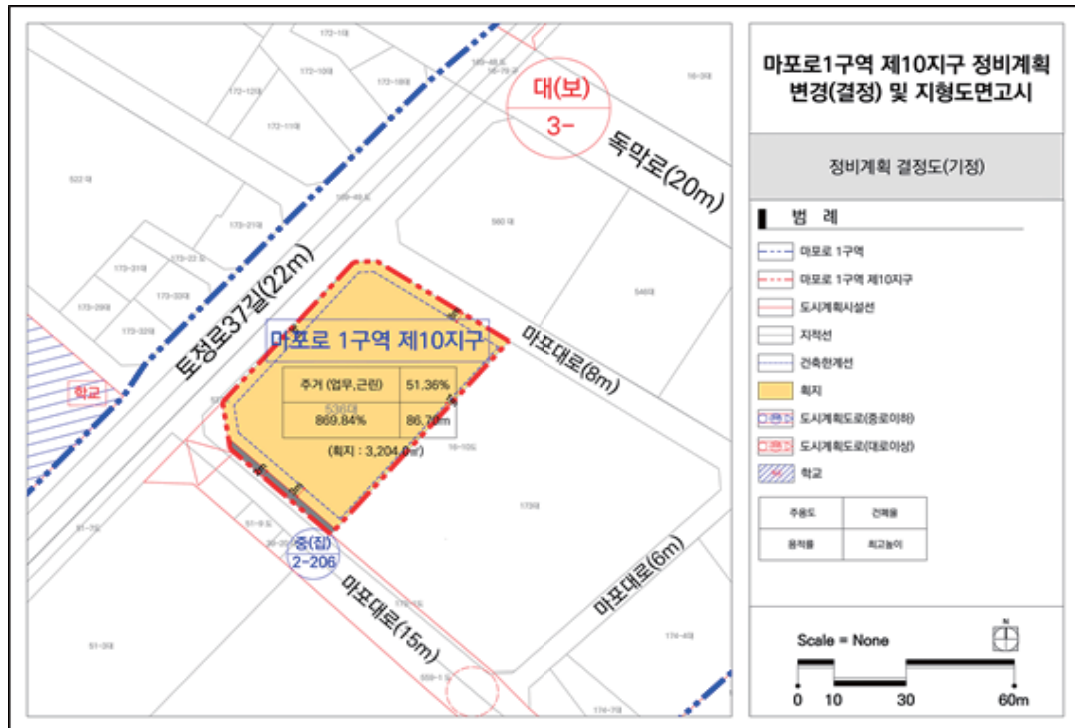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100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1.11.3.)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반포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48,929.7	-	1,548,929.7	-

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기정	1,548,929.7	238,495.9	388,886.8	921,547.0	대상지 (3주구)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548,929.70	100.0	1,548,929.70	100.0	
주거 용지	소 계	937,421.69	60.5	937,065.19	60.5	감) 356.5
	주택용지	937,421.69	60.5	937,065.19	60.5	감) 356.5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96,005.50	6.2	96,005.50	6.2	
	지구중심	37,698.50	2.4	37,698.50	2.4	
	주구중심	23,965.80	1.6	23,965.80	1.6	
	분구중심	34,341.20	2.2	34,341.20	2.2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487,464.31	31.5	487,820.81	31.5	증) 356.5
	도로용지	228,610.00	14.8	229,023.90	14.8	증) 413.9
	공원용지	59,459.17	3.9	59,401.77	3.9	감) 57.4
	녹 지	68,713.04	4.4	68,713.04	4.4	
	광 장	972.90	0.1	972.90	0.1	
	학교용지	118,440.70	7.6	118,440.70	7.6	
	공공청사	8,944.40	0.6	8,944.40	0.6	
	문화시설	2,324.10	0.1	2,324.10	0.1	
기타	소 계	28,038.20	1.8	28,038.20	1.8	
	종교용지	10,849.30	0.7	10,849.30	0.7	
	문화시설	4,012.00	0.3	4,012.00	0.3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13,176.90	0.8	13,176.90	0.8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1)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21,547.00	100.0	921,547.00	100.0	
주거 용지	소 계	575,562.83	62.4	575,206.33	62.4	감) 356.5
	주택용지	575,562.83	62.4	575,206.33	62.4	감) 356.5
중심 시설 용지	소 계	35,213.90	3.8	35,213.90	3.8	
	지구중심	-	-	-	-	
	주구중심	8,243.10	0.9	8,243.10	0.9	
	분구중심	26,970.80	2.9	26,970.80	2.9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 계	289,689.37	31.5	290,045.87	31.5	증) 356.5
	도로용지	154,286.90	16.9	154,700.80	16.8	증) 413.9
	공원용지	35,917.97	3.8	35,860.57	3.8	감) 57.4
	녹 지	40,874.00	4.4	40,874.00	4.4	
	광 장	972.90	0.1	972.90	0.1	
	학교용지	51,019.90	5.6	51,019.90	5.6	
	공공청사	6,617.70	0.7	6,617.70	0.7	
	문화시설	-	-	-	-	
기타	소 계	21,080.90	2.3	21,080.90	2.3	
	종교용지	3,892.00	0.4	3,892.00	0.4	
	문화시설	4,012.00	0.5	4,012.00	0.5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13,176.90	1.4	13,176.90	1.4	

가)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548.1	-	13,548.1	100.0	
주택용지		12,648.1	감) 356.5	12,291.6	90.7	
도시계획시설용지	소계	900.0	증) 356.5	1,256.5	9.3	
	도로	-	증) 413.9	413.9	3.1	
	공원	900.0	감) 57.4	842.6	6.2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주택용지(감소 : 356.5㎡ - 기정(12,648.1㎡) → 변경(12,291.6㎡)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주택용지 면적 변경 (주택용지→도로)
	도로용지(증가 : 413.9㎡ - 기정(-) → 변경(413.9㎡)	현행도로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공원용지(감소 : 57.4㎡ - 기정(900.0㎡) → 변경(842.6㎡)	연접 구역 공원 연계를 위한 위치 및 면적 변경

3.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 없음

- 가. 용도규제
- 나. 건축선의 지정
- 다. 건폐율 규제
- 라. 용적률 규제
- 마. 세대밀도
- 바. 건축물의 높이
- 사.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아.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 자.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 차.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카. 경관에 관한 사항
- 타.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4.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건축계획 : 변경없음

5.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계획 : 변경

- 가. 단지별 개발시행계획(공공용지 부담계획)

구분	구역	위치	대지면적 (주택용지)	공공용지면적(㎡)				공공용지 부담률(%)	비고
				계	공원	도로	공공주택 (공공기여)		
기정	한신25차 (신반포)	잠원동 61-1	10,630.0 (9,730.0)	900.0	900.0	-	-	8.47	
변경	신반포25차 일대	잠원동 61-1일대	13,548.1 (12,291.6)	1,895.3	842.6	413.9	638.8 (19세대)	10.33	증)499.1㎡ (증1.86%)

※신반포25차(기정 한신25차), 잠원CJ빌리지, 한신진일빌라트의 통합개발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계획 변경사항으로, 공공용지 부담률(10.33%)은 공공용지 면적 총 1,895.3㎡에서 무상양도 대상 496.2㎡를 제외한 1,399.1㎡의 비율임

II.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일대	13,548.1	-	13,548.1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548.1	-	13,548.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00.0	증) 356.5	1,256.5	9.3	
	도 로	-	증) 413.9	413.9	3.1	
	공 원	900.0	감) 57.4	842.6	6.2	
획지		12,648.1	감) 356.5	12,291.6	90.7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3,548.1	-	13,548.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48.1	-	13,548.1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도로 가각 설정
변경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신설	소로	3	-	8	국지 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	중로 2-4	•도로모퉁이(가각) 설정	•대로2-a(잠원로), 중로2-4 교차지점의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시설결정 기준에 적합한 도로모퉁이(가각) 계획
-	소로 3-	•신설 - 폭원 : 8m, 연장 : 124m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도로 신설

2) 공원(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900.0	감) 57.4	842.6	건고제131호 (76.8.21)	위치, 면적 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공원위치변경(서→동측) •공원면적변경(감57.4㎡)	•신반포19차 공원과 통합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 휴식공간 제공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신반포25차 아파트 일대	13,548.1	획지	12,648.1	잠원동 61-1일대	4	-	-	4	-	아파트 주동 기준
변경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획지	12,291.6							

마. 건축시설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기정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13,548.1	주택 용지	12,648.1	서초구 잠원동 61-1일대	공동 주택	50이하	230이하	-	- (13층이상)	-
변경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획지	12,291.6			50이하	265이하	300이하	112이하 (35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312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312	(100.0%)	공공주택* 40세대					
			60㎡이하	48	(15.4%)	공공주택 22세대					
			60~85㎡이하	165	(52.9%)	공공주택 18세대					
			85㎡초과	99	(31.7%)						
심의원화 사항			-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68.3%) • 본 고시문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이하 같음) - 공공주택(공공기여)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름 - 공공주택(법정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름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은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계획이며,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10/100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정상한용적률 300%이하 (초과용적률 35%)								
			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로부터 5m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합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토지	건축물 (환산부지)		
		13,548.1	12,291.6	1,895.3	1,836.5	58.8	87.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413.9㎡+842.6㎡+580.0㎡+58.8㎡) - 87.2㎡ - 409.0㎡ = 1,399.1㎡ (10.33%)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	• 1,836.5㎡ - 도로 413.9㎡ - 공원 842.6㎡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공공기여)) 대지지분 : 580.0㎡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공공기여)) 환산부지 면적 : 58.8㎡ (※공급면적 1,729.76㎡) = ㉞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④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㉞ = 건축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전용59㎡) 1,149.96㎡ × 1,037,500원 = 1,193,083,500(원) = (전용84㎡) 579.80㎡ × 1,036,800원 = 601,136,640(원) : ④ = 공시지가주2) × 2 = 15,244,978(원/㎡) × 2 = 30,489,956(원/㎡) 주1) 2016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16-339호) : 전용 50~60㎡이하(1,037,500원/㎡), 전용 60㎡초과(1,036,800원/㎡) 주2) 건축허가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20.01 기준) (대상지 내 평균공시지가)						
기준(허용)용적률	•230% 이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계획(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2019.1.16.)」 적용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주3)× α (토지)+0.7× α (건축물)) = 230% × (1+ 1.3×1×1×0.1144 + 0.7×0.0050) = 265.03% ⇒ 정비계획용적률 = 265%이하						
	α(토지)	α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주4)/공공시설등부지(토지)(A)제공 후 부지면적 = 1,340.3㎡ / 11,711.6㎡ = 0.1144					
	α(건축물)	α =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 환산부지)/공공시설등부지(토지)(A)제공 후 부지면적 = 58.8㎡ / 11,711.6㎡ = 0.0050					
	주3) 가중치 = 1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부지의 해당용적률(동일용적률)) 주4) 공공시설등부지(토지) -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값						
법적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300%이하						

바.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		300% 이하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265% 이하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300% - 265% = 35%				
	증가된 용적률의 50%	35% × 0.5 = 17.5% ∴ 12,291.6㎡(대지면적) × 17.5% = 2,151.03㎡				
	의무 연면적	2,151.03㎡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21	2,164.60㎡	> 2,151.03㎡(의무)
		59.90㎡	82.14㎡	8	657.12㎡	확지
		84.98㎡	115.96㎡	13	1,507.48㎡	확지
공공주택 확보 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구분	세대규모		세대수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총 계	-	-	40		
	공공주택 (공공기여)	소계		19	정비계획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주택	
		59.90㎡	82.14㎡	14		
		84.98㎡	115.96㎡	5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소계		21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59.90㎡	82.14㎡	8		
		84.98㎡	115.96㎡	13		

1)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합 계	312	100.0	272	40	19	21	12.8	47.5	52.5
60㎡이하	48	15.4	26	22	14	8	45.8	63.6	36.4
60㎡초과 ~ 85㎡이하	165	52.9	147	18	5	13	10.9	27.8	72.2
85㎡초과	99	31.7	99	-	-	-	-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억제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계획지구 내 공간유형별 녹지가 존재하나 다소 부족함 것으로 판단됨	·자연지반녹지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하여 생태면적율을 높이도록 설계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계획지구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연접구역 공원과 통합계획하여 주변녹지와 연계 강화 실시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사업지구 주변으로 상가건물 및 주거지(대부분 아파트)가 위치	·일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고려하여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예상(풍하방향 풍속증가, 외류생성 등)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높이 계획
	경관	가로녹시율 30%	○	·계획지구 내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18.41~38.06%로 조사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상승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공원, 획지 내 열린공간 등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추가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계획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계획
	물 순환(수질)		-	·사업지구내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실시
	폐기물		-	·사업지구내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변경	변경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후 4년 이내	신반포25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205	증)107	312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200m 이내에 잠원로8길변 하나유치원, 학교예정부지(고등학교)위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제52조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향후,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

차.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 추진 중으로 주민들 거주 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법용 CCTV 설치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	증)13,548.1	13,548.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정비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3,548.1	-	13,548.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48.1	-	13,548.1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도로 가각 설정
변경	중로	2	4	20	국지 도로	378	잠원동 100-1	잠원동 78	일반 도로	-	서고제2012-102호 (12.4.19)	
신설	소로	3	-	8	국지 도로	124	잠원동 61-1	대로 2-a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	중로 2-4	•도로모퉁이(가각) 설정	•대로2-a(잠원로), 중로2-4 교차지점의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시설결정 기준에 적합한 도로모퉁이(가각) 계획
-	소로 3-	•신설 - 폭원 : 8m, 연장 : 124m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도로 신설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900.0	감) 57.4	842.6	건고제131호 (76.8.21)	위치, 면적 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소공원	서초구 잠원동 61-1 일대	•공원위치 변경(서→동측) •공원면적 변경(감57.4㎡)	•신반포19차 공원과 통합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 휴식공간 제공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획지	소 계	12,291.6	100.0	-
	획지1	12,291.6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3)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	265%이하	300% 이하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65%
							법적상한용적률300%

■ 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35%	35%	총70%

다) 높이 계획

구분	지 역	높이(최고층수)	비 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112m이하 (35층이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4) 건축물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잠원로8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그 외 도로 및 공원변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신설 소로3-호선측 건축한계선 도면 참조)
고층부벽면한계선	잠원로8길변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후퇴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연접부	•대지경계로부터 3m 공공보행통로 지정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부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신설 소로3-호선측 일부 차도형전면공지로 조성 (도면참조) ※향후 청구아파트 재건축시 도로 직선화 방안 검토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차량출입구	잠원로8길변	•잠원로8길변 차량출입구 조성
차량출입불허구간	잠원로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출입 불허

다)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계획지구 내 공간유형별 녹지가 존재하나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자연지반녹지 등 다양한 녹지를 반영하여 생태면적율을 높이도록 설계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계획지구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연접구역 공원과 통합계획하여 주변녹지와 연계강화 실시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기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지형 변화 거의 없음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공원 및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열섬화 방지 등 실시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사업지구 주변으로 상가건물 및 주거지(대부분 아파트)가 위치	·일조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고려하여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예상(풍하방향 풍속증가, 외류생성 등)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건물높이 계획
	경관	가로녹시율 30%	○	·계획지구 내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18.41~38.06%로 조사	·조경공간의 확보를 통한 녹시율 상승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하여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공원, 휴지 내 열린공간 등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추가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운영시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기가스, 온실가스발생	·공사시 방진망 설치, 공사장 내 살수계획 운영시 계획지구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계획
	물 순환(수질)		-	·사업지구내 오수발생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실시
	폐기물		-	·사업지구내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실시
	소음 및 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설치 운영 운영시 녹지공간조성으로 소음감소

라)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당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체세대수 대비	공공기여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합 계	312	100.0	272	40	19	21	12.8	47.5	52.5
60㎡이하	48	15.4	26	22	14	8	45.8	63.6	36.4
60㎡초과 ~ 85㎡이하	165	52.9	147	18	5	13	10.9	27.8	72.2
85㎡초과	99	31.7	99	-	-	-	-	-	-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 동일·동시에 ‘공개추첨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시에는 서울특별시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IV.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수정가결	[수정사항] • 용적률 계획 : 기준230%, 정비계획 265%, 법적상한300% • 공공기여계획 : 순부담 1,399.7㎡(10.33%) ※도로416.2㎡, 공원840.0㎡, 임대주택638.8㎡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 연장 124m • 임대주택 계획 : - 기부채납 19세대(1,729.76㎡) - 법적상한 소형임대 21세대(2,164.60㎡) • 높이계획 : 122m이하(최고35층)	수정사항 반영함 • 용적률 계획 : 기준230%, 정비계획 265%, 법적상한300% • 공공기여계획 : 순부담 1,399.1㎡(10.33%) ※도로413.9㎡, 공원842.6㎡, 공공주택638.8㎡ (현황측량성과를 반영하여 수치 수정)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 연장 124m • 공공주택 계획 : - 공공기여 19세대(1,729.76㎡)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21세대(2,164.60㎡) • 높이계획 : 122m이하(최고35층)
	[조건사항] • 대상지 서측 신설 도로계획(소로3-)관련 도로의 선형은 최초 상정안을 기준으로 최대한 직선화 되도록 조정하고, 필요 시 대상지 내 건축한계선을 확대할 것 • 현재 수립중인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안)’ 상 상기한 내용을 반영할 것. 끝	• 대상지 서측 신설 도로계획 관련, 건축한계선 (차도형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최대한 직선화되도록 반영함 • 향후,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에 해당내용 반영

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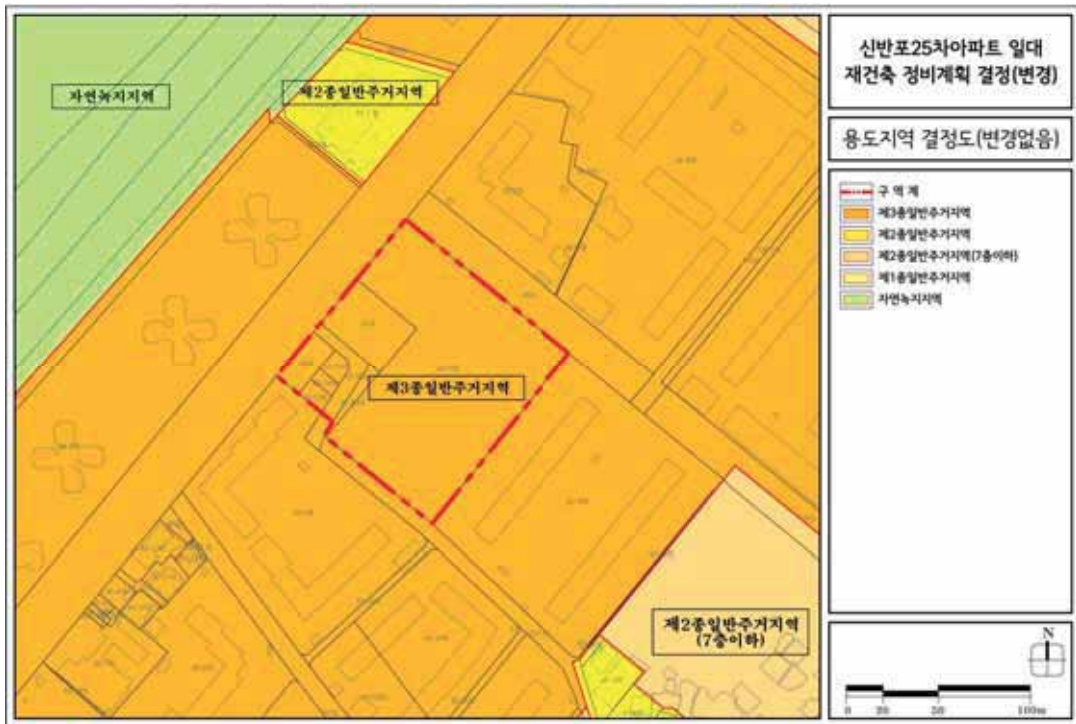
VI. 열람장소 : 시민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38)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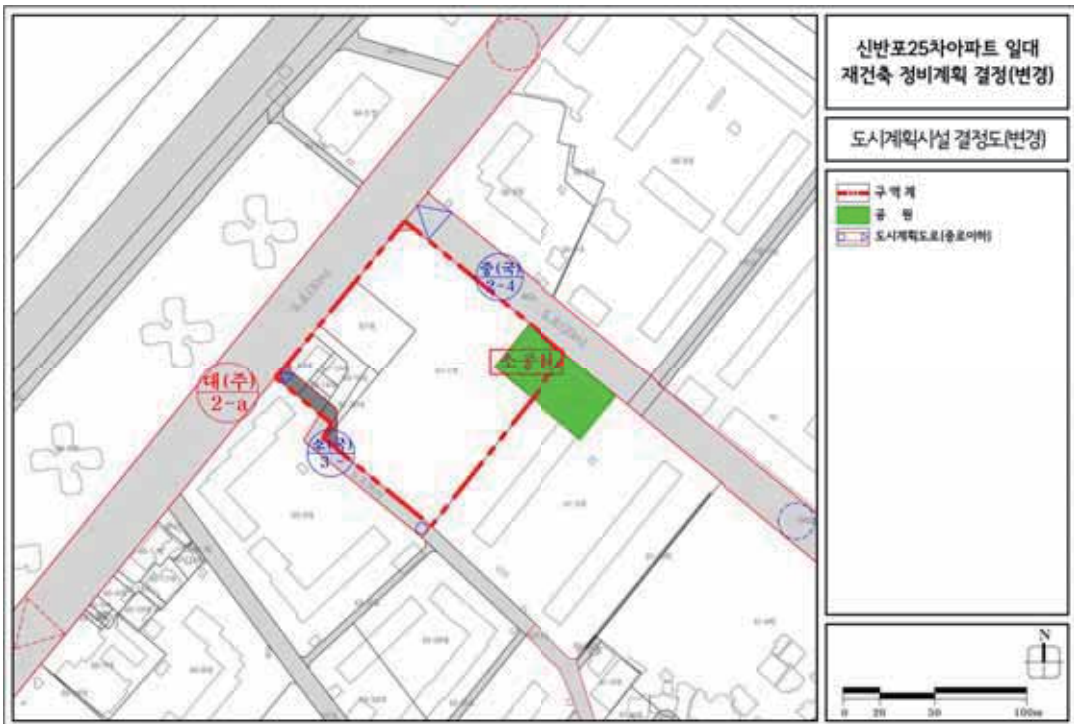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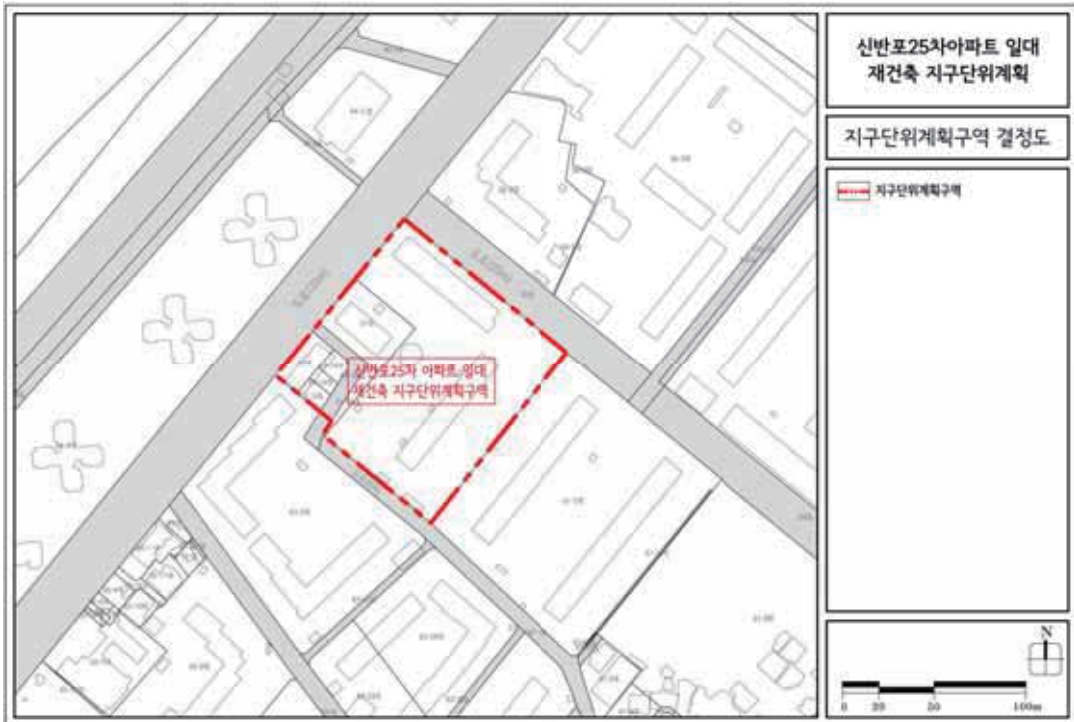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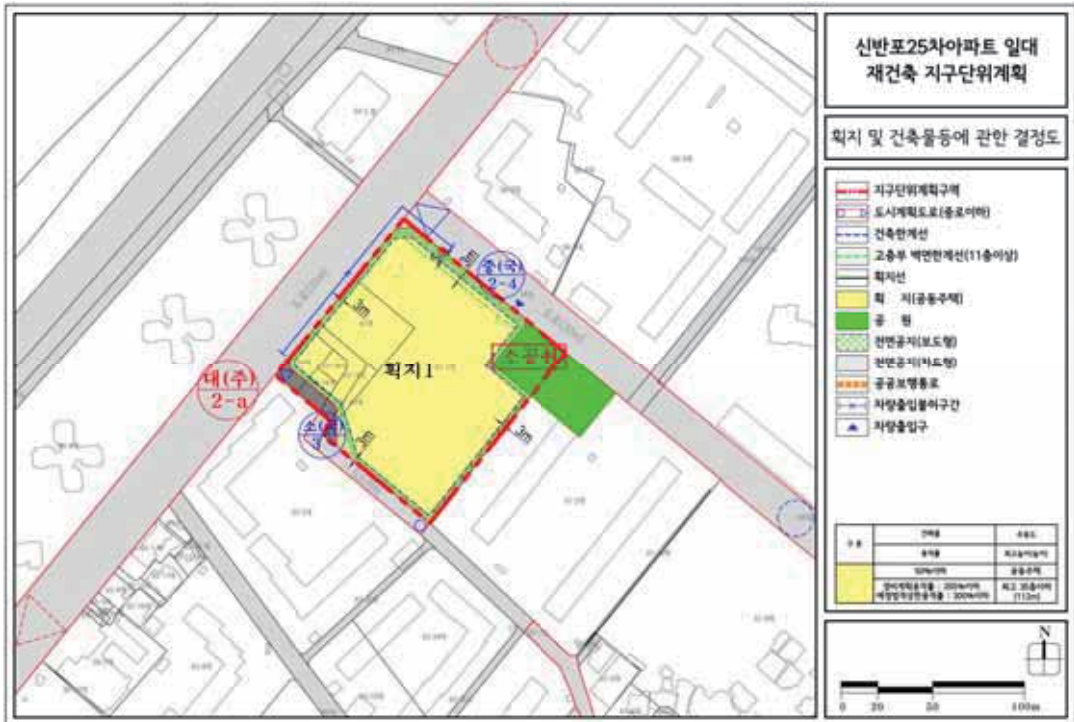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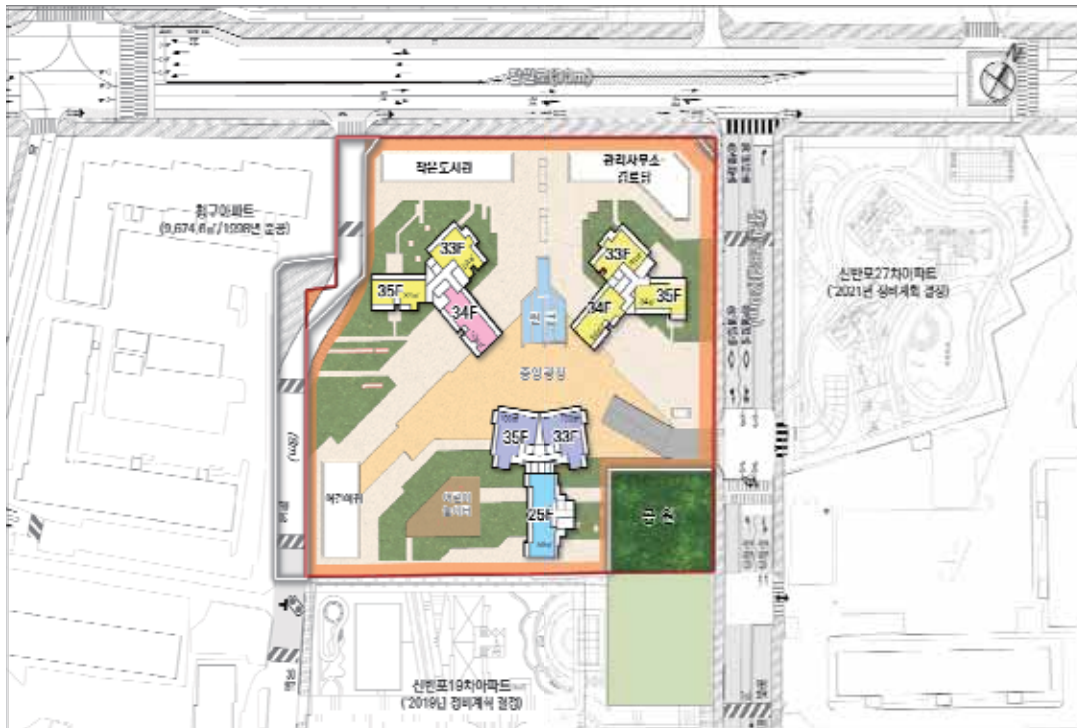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건축계획(배치도) (예시도)



※ 2021년 제15차('21.11.3.)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면으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배치도)이 확정됨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101호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 등 변경고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2-81호, 2022.2.18.)」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114(2022.2.28.))」에 따라,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2. 적용기간 : 2022년 3월 1일(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3.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교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 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사항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사항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0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중단

* 2022년 4월 1일(금) 0시 ~ 별도안내 시까지, 12세 이상인 자

5. 효력발생 시점 : 2022년 3월 1일(화) 0시부터

※ 본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81호, 2022.2.18.)」에 따름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각 시설(장소) 소관부서

※ 방역수칙 적용 대상 주요 업종별 서울특별시 소관부서 연락처
(자치구 소관 시설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종명	소관부서	연락처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02-2133-4713, 4716, 4717
2	식당·카페 등 음식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02-2133-4713, 4716, 4717
3	마트, 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58
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02-2133-5384
5	콜센터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02-2133-5248
6	노래(교인)연습장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02-2133-9221
7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02-2133-7678

연번	업종명	소관부서	연락처
8	실내체육시설(공공)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02-2133-2678
9	실내체육시설(민간)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02-2133-2747
10	학원 및 교습소 등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02-2133-3919
11	영화관·멀티방 등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02-2133-9218
12	공연장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02-2133-2553
13	종교시설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02-2133-2532
14	PC방·오락실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02-2133-9213
15	파티룸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11
16	독서실·스터디카페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02-2133-3919
17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02-2133-2678
18	박물관·미술관	문화본부 박물관과	02-2133-4236
19	과학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02-2133-5253
20	도서관	문화본부(서울도서관)	02-2133-0202
21	직업훈련기관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2133-5463

※ 전반적인 방역수칙 및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의 방역수칙 등에 관한 문의: 감염병관리과방역관리팀(전화번호: 02-2133-7883)

붙임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붙임 문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104호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전역 집회제한 변경고시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 집회금지개요

- 가. 금지대상: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300인 이상의 집회
- 2022. 2.21.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2호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제한 연장고시’는 2022. 2.28(월) 24시부로 해제함.
※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 나. 금지기간: 2022년 3월 1일 00시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다. 위반 시 처벌: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 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행정국 총무과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1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578	2022.01.28.	주식회사 오픈오브젝트 박원영 110111-3496654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1306호(구로동)
2	203579	2022.01.28.	주식회사 예본아이디 김정민 110111-609846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9, 근영빌딩 4층(면목동)
3	203580	2022.01.28.	주식회사 비엔아이앤씨(BN I&Co., Ltd) 연광흠 110111-63865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당산에스케이브이1센터 더블유동 1208호(당산동4가)
4	203581	2022.02.11.	주식회사 넥스톤(NEXTONE Co., Ltd.) 이광구 110111-815125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Ⅲ 211호(구로동)
5	203582	2022.02.11.	주식회사 구암하이텍(GUAM HITECH Inc.) 김경화 110111-816503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9길 66, 714호(가산동)
6	203583	2022.02.11.	트리허브 주식회사(treehub) 유현석 134111-054726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24, 가산아이에스비즈타워 615호(가산동)
7	203584	2022.02.11.	주식회사 템팩스정보통신 윤진영 110111-803730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9길 18, 1층(가락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8	203585	2022.02.14.	주식회사 조이앤비즈 김영인 110111-3764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선유도아이에스비즈타워 1608호(양평동5가)
9	203586	2022.02.14.	하우텍씨엔알건설(주) 하동규 110111-2755697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16, 3층(오금동)
10	203587	2022.02.17.	주식회사 코코아플러스 최용석 110111-6087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5차 1403호(가산동)
11	203588	2022.02.17.	주식회사 엠와이씨엔엠(MY C&M Co, Ltd) 배영민 110111-60932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33길 5, 제이엘레지던스 304호(용문동)
12	203589	2022.02.17.	주식회사 빅파워솔루션 권갑현 110111-41750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316호(가산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18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등록 내역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자	540290	주식회사 씨엔네트웍스 김병수 171211-0095313	경북 경주시 봉황로 139(성건동)	22.02.18.	양도 양수 (분할 합병)
	양수자	540290	금수티아이 주식회사 이형주 110111-4721729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502호(천호동, 신라빌딩)		
2	양도자	320350	서부전력 주식회사 노건철 124611-0278108	인천시 서구 경서로 26 (경서로)	22.02.17.	양도 양수 (분할 합병)
	양수자	320350	서부전기통신 주식회사 김인식 110111-8146345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 306호(노고산동)		
3	양도자	112877	대청이앤씨 송효양 118-02-17524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18길 11, 1층(회곡동)	22.02.17.	양도 양수 (법인 전환)
	양수자	112877	주식회사 대청일렉스 송효양 110111-8151451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18길 11, 1층(회곡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3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2. 3. 3. ~ 2022. 3. 17.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06085322	서울특별시 송인동 181-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1길 29-4)	수도요금	2019. 12. 외 12납기	13회	126,410원	해당 내역은 2022. 2. 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송인동 181-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1길 29-4)	정*옥	540726-2***** (등기번호115210117877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1길 29-4(송인동)		126,410원	2021. 3. 21.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윤석진 주무관(☎ 02-3146-210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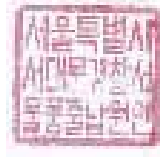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직인 등록 사유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따른 직인등록
2. 회계관계공무원 등록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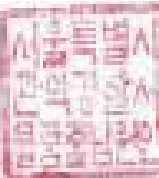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울특별시 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서울특별시경찰청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서울특별시 경찰청 정보화장비과	서울특별시경찰청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중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중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부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종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종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로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남대문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혜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혜화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혜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혜화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용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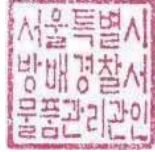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용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용산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성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성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북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마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마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성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성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성동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동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동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동작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광진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광진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서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서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부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강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강북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금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금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중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중랑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중랑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강남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강남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남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관악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관악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관악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관악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강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강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강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강동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종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종암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종암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구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1cm×2.1cm 훈민정음체		2022. 2.23.
구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구로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서초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서초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양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양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양천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송파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송파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노원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노원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방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방배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은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은평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은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은평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도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등록일자
도봉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수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물품관리관인	2.0cm×2.0cm 훈민정음체		2022. 2.23.
수서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 물품출납원인	1.8cm×1.8cm 훈민정음체		2022. 2.2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67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대한환경 안전기술주	제189호	' 22.2.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619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68호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서울특별시는 ‘2021년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5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 업무처리 실적(단위: 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3,106	148	-	8	30	2,920

□ 업무처리 우수사례

- 사업부도로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현재 청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납세자는 소유하고 있는 임야(공시지가 5백만원 상당)가 압류(2011년 00세무서 등 8개 관청)되고 처분도 할 수 없어 체납세금 시효가 중단된 채 생활고를 받고 있었으나, 영등포구 납세자보호관이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압류부동산을 납세담보 받아 공매처분하여 체납세금 정리 및 소멸시효 권리보호
- 장애등급 변경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세무정보 부족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 강남구 납세자보호관이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세금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감면받지 못한 82대에 대하여 감면 처리하고, 착오 납부된 자동차세 등 39,239천원을 환급 조치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한 임야에 재산세가 과대 부과된다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은평구 납세자보호관은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자 납세자보호관이 물건 현장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끈질긴 설득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산세를 감액 처리함

□ 문의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 02-2133-6688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85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 건 명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 변상금 산출내역 : 연도별 공시지가*점유면적*요율*점유일수

소재지	년도	점유 면적 (㎡)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원)	요율	산출 대부료	변상금(원)	점유기간		
								시작	종료	일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112-5, 대, 5㎡	2021	5.0	2,817,000	14,085,000	2%	281,700	338,040	2021-1-1	2021-12-31	365
	2020	5.0	2,672,000	13,360,000	2%	267,200	320,640	2020-1-1	2020-12-31	366
	2019	5.0	2,516,000	12,580,000	2%	251,600	301,920	2019-1-1	2019-12-31	365
	2018	5.0	2,300,000	11,500,000	2%	230,000	276,000	2018-1-1	2018-12-31	365
	2017	5.0	2,261,000	11,305,000	2%	202,560	243,070	2017-2-8	2017-12-31	327
소 계							1,479,670			

- 1) 대부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적용
 2)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산정
 3) 요율: 기본요율(상업용 등) 5%, 주거용 2%, 경작용 1%

○ 법적근거

가. 변상금 사전통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공시송달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김○ (57년생)	시유재산 변상금 (2017~2021년분) 사전통지	- 무단점유재산 : 관악구 신림동 산112-5 - 점유기간 : 2017.02.08.~2021.12.31. - 점유면적 : 5㎡ - 사전통지 내역 : 총액1,479,670원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길 32 4**호(반포동, 효성빌라)	폐문부재

※ 공시송달기간 : 2022.03.03.~ 2022.03.17. (15일간)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89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 건 명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상금 사전통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공시송달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임○숙 (76년생)	사유재산 변상금 (2017~2021년) 사전통지	- 무단점유재산 : 동작구 상도동 283-223 - 점유기간 : 2017.02.10.~2021.12.31. - 점유면적 : 1㎡ - 사전통지 내역 : 총액 283,480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 2동 ***호	폐문부재

※ 공시송달기간 : 2022.03.03.~ 2022.03.17.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90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3.3.~2022.3.17.
 - 가. 이의제기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 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이의제기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다. 이의제기 접수처 및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녹색교통과장팀)
 - 전화번호 : 02-2133-1335~1336

(이의제기 방법)

 - 팩스 제출 : 02-2133-1446
 - 이메일 제출 : green5@seoul.go.kr
 - 인터넷 제출 : <https://oksign.seoul.go.kr>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증가산금이

가산되며,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재산에 대한 압류 등)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납부기한 : 2022.4.30.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 ※ 납부기한, 체납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02-2133-1335~1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이의제기 대상 및 이의제기 작성서식 1부.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주요내용	과세연월	과세번호	차량번호	과세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1	890331-*****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73	87구3*47	200,000	2021-11-25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2	671125-*****	서*득	경기도 화성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63	01다1*52	100,000	2021-11-2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3	134811-*****	신*에이비엠주식회사(신일정유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37	97투9*31	200,000	2021-03-16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4	134811-*****	신*에이비엠주식회사(신일정유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35	97투9*31	200,000	2021-03-1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5	134811-*****	신*에이비엠주식회사(신일정유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36	97투9*31	200,000	2021-03-1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6	840522-*****	윤*나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38	869다2*04	20,000	2020-08-21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7	840522-*****	윤*나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40	869다2*04	20,000	2020-10-0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	921006-*****	이*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84	02수3*09	100,000	2021-11-06	백범광장(소월로3길)
9	720619-*****	N*M SERGEY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69	09다4*77	100,000	2021-11-26	경향신문사(경동길)
10	750309-*****	김*희	부산광역시 북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71	80다5*18	100,000	2021-11-11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1	660408-*****	김*우	경상북도 영주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80	28다2*22	200,000	2021-11-09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2	861210-*****	현*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90	209다6*92	100,000	2021-11-07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3	720515-*****	한*수	경기도 고양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93	78다9*81	100,000	2021-10-31	시창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4	741007-*****	장*수	충청북도 청주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95	54다7*20	100,000	2021-11-0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과제명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15	680215-*****	서*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64	12드4*92	100,000	2021-11-11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16	670112-*****	고*준	광주광역시 북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99	74저3*01	100,000	2021-11-01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17	690722-*****	백*흠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67	78저7*43	100,000	2021-11-12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18	921006-*****	이*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85	02스3*09	200,000	2021-11-20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9	110111-*****	주*회사 한일개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02	80스5*69	100,000	2021-11-10	해화문(정경로, 진입)
20	820712-*****	이*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79	65우*58	100,000	2021-11-20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21	131211-0034616	은*산업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26	88오0*07	100,000	2021-11-11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22	790107-*****	조*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81	57저7*65	100,000	2021-11-26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23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87	80스6*92	100,000	2020-06-10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4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88	80스6*92	100,000	2020-08-01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25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89	80스6*92	100,000	2020-06-12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26	600727-*****	김*철	서울특별시 중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310	87무3*00	50,000	2021-02-2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진입)
27	110111-2119653	(*)부길전력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36	92우*09	200,000	2021-11-01	해화문(정경로, 진입)
28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90	80스6*92	200,000	2020-06-13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과제명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29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91	80*6*92	200,000	2020-06-15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30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92	80*6*92	200,000	2020-06-18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31	600727-*****	김*철	서울특별시	종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311	87무*00	50,000	2021-02-28	반안트리(강종단로, 진입)
32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314	92도6*30	100,000	2020-08-03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33	771223-*****	서*화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045	90무8*70	200,000	2021-11-06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34	660814-*****	방*환	울산광역시	중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31	울산99*5960	100,000	2021-11-10	반안트리(강종단로, 진입)
35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98	80*6*92	200,000	2020-06-28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36	640115-*****	이*용	전라남도	함평군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86	33비1*96	100,000	2021-11-06	백범광장(소월로3길)
37	760228-*****	C-I YUJIE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312	50무2*62	200,000	2020-01-24	백범광장(소월로3길)
38	760607-*****	신*훈	경기도	파주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038	86*2*29	200,000	2021-11-25	경철박물관(세문안로, 진입)
39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93	80*6*92	200,000	2020-06-20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40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94	80*6*92	200,000	2020-06-22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41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96	80*6*92	200,000	2020-06-25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42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합과테로	2022-01	000195	80*6*92	200,000	2020-06-24	남산1호터널(심일대로)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주요내용	과제명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43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97	80*6*92	200,000	2020-06-27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44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02	80*6*92	200,000	2020-07-1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45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321	92도6*30	100,000	2020-10-07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진입)
46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317	92도6*30	100,000	2020-09-2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47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319	92도6*30	100,000	2020-09-26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48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320	92도6*30	100,000	2020-09-27	홍인지문(종로, 진입)
49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313	92도6*30	100,000	2020-06-09	홍인지문(종로, 진입)
50	660911-*****	서*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68	80*1*53	200,000	2021-11-0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51	890331-*****	김*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74	87도3*47	200,000	2021-11-27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52	680117-*****	이*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40	14도4*16	100,000	2021-11-05	서울과학고(해화로)
53	921125-*****	조*운	경기도 용인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47	48도1*90	100,000	2021-11-06	반얀트리(정충단로, 진입)
54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03	80*6*92	200,000	2020-07-1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55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05	80*6*92	200,000	2020-07-1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56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06	80*6*92	200,000	2020-07-2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과제명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57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199	80구6*92	200,000	2020-07-06	남산1호터널(섬일대로)
58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00	80구6*92	200,000	2020-07-07	남산1호터널(섬일대로)
59	840622-*****	윤*나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42	86구2*04	20,000	2020-10-24	시흥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0	840622-*****	윤*나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39	86구2*04	20,000	2020-08-24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61	840622-*****	윤*나	경기도	시흥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41	86구2*04	20,000	2020-10-15	시흥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62	760713-*****	편*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43	95도9*81	100,000	2021-04-18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진입)
63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315	92도6*30	100,000	2020-08-02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64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316	92도6*30	100,000	2020-09-2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진입)
65	760112-*****	한*원	경기도	김포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318	92도6*30	100,000	2020-09-25	흥인지문(종로, 진입)
66	571106-*****	양*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079	86부6*62	100,000	2021-11-03	근화유지원(동호로20나길)
67	660408-*****	김*우	경상북도	영주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081	28하2*22	200,000	2021-11-27	남산1호터널(섬일대로)
68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01	80구6*92	200,000	2020-07-08	남산1호터널(섬일대로)
69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04	80구6*92	200,000	2020-07-17	남산1호터널(섬일대로)
70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안과테로	2022-01	000207	80구6*92	200,000	2020-07-29	정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주요내용	과제명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71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08	8046*92	200,000	2020-07-30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72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1	8046*92	100,000	2020-08-0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73	760713-*****	편+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44	9559*81	100,000	2021-04-29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4	760713-*****	편+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45	9559*81	100,000	2021-05-12	백범광장(소월로3길)
75	630226-*****	하+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46	0846*73	75,000	2021-02-20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76	630226-*****	하+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48	0846*73	75,000	2021-01-03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77	630226-*****	하+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47	0846*73	75,000	2021-02-27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78	110111-2119653	(*) 부길전력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35	92우*09	200,000	2021-10-31	해오름(성경동로, 진입)
79	120111-0144890	가+산업(주)	인천광역시 서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17	28리*42	100,000	2021-11-04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진입)
80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09	8046*92	100,000	2020-08-03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81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0	8046*92	100,000	2020-08-04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82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2	8046*92	100,000	2020-08-06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83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3	8046*92	100,000	2020-08-12	반얀트리(장충단로, 진입)
84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6	8046*92	100,000	2020-08-21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과제명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85	630226-*****	하*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49	0846*73	75,000	2021-01-10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86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0	0842*89	50,000	2020-01-09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87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2	0842*89	50,000	2020-04-30	해회문성경궁로, 진입)
88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4	0842*89	50,000	2020-05-05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89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8	0842*89	50,000	2020-05-24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90	771223-*****	서*화	경기도	안양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44	9048*70	200,000	2021-11-05	해회문성경궁로, 진입)
91	890613-*****	조*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21	0143*26	100,000	2021-11-03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92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4	8046*92	100,000	2020-08-13	반안트리(정충단로, 진입)
93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5	8046*92	100,000	2020-08-18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94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7	8046*92	100,000	2020-08-2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95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8	8046*92	100,000	2020-08-29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96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20	8046*92	100,000	2020-09-0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97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9	0842*89	50,000	2020-07-05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98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운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1	0842*89	50,000	2020-03-26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과제년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99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3	08라2*89	50,000	2020-05-0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0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5	08라2*89	50,000	2020-05-08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01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6	08라2*89	50,000	2020-05-17	경찰박물관(세문안로, 진입)
102	880602-*****	장*익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50	23우7*38	100,000	2021-11-1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103	800209-*****	김*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34	96숙4*24	100,000	2021-11-13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88길)
104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22	80숙6*92	100,000	2020-09-21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5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24	80숙6*92	100,000	2020-10-05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6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19	80숙6*92	100,000	2020-09-03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07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21	80숙6*92	100,000	2020-09-12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8	500602-*****	강*구	경기도	성남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23	80숙6*92	100,000	2020-09-28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09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57	08라2*89	50,000	2020-05-2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10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2	08라2*89	50,000	2020-08-07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11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0	08라2*89	50,000	2020-08-02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12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1	08라2*89	50,000	2020-08-01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순번	주민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과제년월	과제번호	차량번호	과제금액	단속일시	단속장소
113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3	08리2*89	50,000	2020-08-08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14	521222-*****	남*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56	08리1*97	200,000	2021-11-04	경찰박물관(세문로, 진입)
115	940720-*****	이*희	경상북도	경주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59	94리9*14	100,000	2021-11-25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16	700824-*****	자*수	강원도	춘천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145	92주8*23	100,000	2021-11-2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117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4	08리2*89	50,000	2020-08-09	반안트리(장충대로, 진입)
118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5	08리2*89	50,000	2020-08-10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19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6	08리2*89	50,000	2020-08-16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0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7	08리2*89	50,000	2020-08-27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진입)
121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8	08리2*89	50,000	2020-08-28	송래문 서측(세종대로, 진입)
122	850828-*****	홍*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63	19리7*12	100,000	2021-11-06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123	760713-*****	편*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066	95리9*81	200,000	2021-11-0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124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69	08리2*89	50,000	2020-09-03	장충체육관(동호로, 진입)
125	131411-0394595	(*)우라이엔씨	경기도	안산시	[시특별] 녹색 교통지역은행제한과테로	2022-01	000270	08리2*89	50,000	2020-09-10	경찰박물관(세문로, 진입)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안내

-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행정청(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서는 당사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며, 관련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
-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그 처리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 이의제기 신청서(아래붙임), 과태료고지서, 이의제기 관련 적법·타당성을 증명할만한 자료

☐ 제출방법

-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유선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녹색교통과징팀)
- 팩스번호 : 02-2133-1446, 전화번호 : 02-2133-1335~6
- Email 주소 : green5@seoul.go.kr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또는 사업자명		주 민 번 호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Email)		연락처	
위반차량	차량번호		차 종		
	소 유 자	(신청인과의 관계)			
과 태 료 처 분	처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832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납부번호 (부과일자)	(년 월 일)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처분사유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 태 료 처 분 불복사유	※ 내용이 많을 경우 요약 기재후 별지에 작성 ※ 증빙자료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등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95호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안)

서울시에서는 현 시금고와의 약정이 20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금고의 수 : 복수금고(2개) 지정

○ 제1금고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 제2금고 : 기금

※ 단,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은행으로 지정함.

2. 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희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3. 지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금융 기관으로 선정

○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

4. 약정기간 : 2023.1.1~2026.12.31(4년)

5.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제2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제1금고와 제2금고 중복 신청 가능

6. 신청절차

(1)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 3. 11.(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2)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2. 3. 14.(월)~ 2022. 4. 4.(월)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사무실(☎2133-3228)

(3)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4. 5.(화)~2022. 4. 11.(월)
-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
- 제출서류 : 시금고지정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정관·등기부등본, 기타 서울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제출서류 밀봉)
- ※ 제1금고와 제2금고 중복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안서 별도 제출
- 제출부수 : 각 서류 당 14부(원본1, 사본13)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6. 그 밖에 사항	2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조

8. 심사방법

- 제1금고, 제2금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금고별 개별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 기관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선정.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당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9. 약정 및 손해배상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 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시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서울시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서울시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로 문의(☎2133-3228)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597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1. 모범납세자

가. 선발기준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 대상기간: 2014.1.1.부터 2021.12.31.까지(8년)

▶ 적용세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재산분)

나. 선발결과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사망자, 국가 및 공공기관,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외하고 263,139명 선발

< 모범납세자 선발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 수	263,139	251,766	11,373

주) 법인납세자: 단체납세자 등 포함

2. 유공납세자

가. 선발기준 : 모범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나. 선발결과 : 모범납세자 중 자치구 추천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48명 선발

< 유공납세자 선발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수	148	97	51

주) 법인 : 단체납세자 등 포함

3. 지원혜택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 1회)	2년	
	공영주차장 면제	1년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신한 최대 0.5%)	1년	세부 내용 신한·우리은행 개별 문의
	각종 수수료 면제(신한 26종, 우리 21종)	1년	
	환율적용 우대(신한 30~90%, 우리 30~80%)	1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1년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 (최대 5점)	1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0.3점)	1년	
	두산아트센터 자체 제작 공연 할인(50%)	1년	코로나19로 미운영

4. 유지기간 : 2022. 3. 3. 부터 2023. 3. 2. 까지

5. 선발결과확인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STAX : 서울시 세금납부)

6. 기타 사항

가. 시금고(신한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 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주민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무과(☎02-2133-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601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42호(20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공람명칭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2. 3. 3. ~ 2022. 3. 17.(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청 도시활성화과(도시활성화정책팀)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활성화과 도시활성화정책팀(배현경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xodiddls@seoul.go.kr
 -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2133-4635)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내용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2호(' 19.10.17.)로 변경결정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변경(안)
 - 변경사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내 '주거 주용도' 허용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50% → 90%), 준주거지역 용적률(400% → 500%) 상향을 ' 19.10.17.부터 3년 한시로 운영 중이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I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범위 : 목표연도는 <u>2025년으로 동일</u> ○ 공간적범위 : 대상지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범위와 동일	I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범위 : 목표연도는 2025년 ○ 공간적범위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 범위
I -3.경과조치 및 구속력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u>운영 기간(3년 한시) 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까지 유효</u> ○ 한시적 주거비율 완화 이외의 변경사항은 2030 도 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 문)수립 전까지 적용	I -3.경과조치 및 구속력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u>2025 년 3월27일까지(다만, 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문)이 수립될 경우, 그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 가(건축허가) 신청까지 유효</u>
II.협향분석 및 개선방향 (생략)	< 삭제 >
III-2.주거비율 및 공공주택 확보기준 < 신설 > ○ 금회 주거비율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 해 주거비율 적용과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별도로 마련 [주거비율] (생략)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u>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u> [공공주택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II -2.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 주거비율 90%이하인 한양도성 도심부는 <u>변경없음</u> ○ 금회 주거비율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위 해 주거비율 적용과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별도로 마련 [주거비율] (현행과 같음) < 삭제 >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변경 전	변경 후												
1/2은 공공주택 공급 〈 신 설 〉 [상한용적률 적용사항] (생략) 주거허용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공급 〈그림〉 주거비율 완화기준 및 공공주택 확보기준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 〈 삭 제 〉 주거허용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공급 〈그림〉 주거비율 완화기준 및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표〉주거비율 적용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별 주거비율 운영현황</th><th>변 경</th></tr> </thead> <tbody> <tr> <td>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td><td> 주거비율 적용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율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td></tr> <tr> <td>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td><td></td></tr> </tbody> </table>	지역별 주거비율 운영현황	변 경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주거비율 적용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율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표〉주거비율 적용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경</th><th>변 경</th></tr> </thead> <tbody> <tr> <td>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td><td>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td></tr> <tr> <td>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td><td>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율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등 확보의무 제외 </td></tr> </tbody> </table>	기 경	변 경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율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등 확보의무 제외
지역별 주거비율 운영현황	변 경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주거비율 적용기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율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기 경	변 경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 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청 도심부 ○ 용도용적제 폐지시점으로 인해 주거90%이하 가능(비주거 10%이상 의무)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비주거 50% 이상 확보 - 주거주용도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운영 관리	한양도청 도심부 이외 지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90%이하 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 주거완화비율은 90%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등 확보의무 제외												
IV. 행정사항 및 적용절차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운영 기간(3년 한시) 내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한 때 까지 유효 ○ 한시적 주거비율 완화 이외의 변경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 문)수립 전까지 적용	III. 행정사항 및 적용절차 ○ 주거도입을 위한 완화사항(주거비율완화 및 주거주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후 2025년 3월27일까지(다만, 해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문)이 수립될 경우, 그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 신청까지 유효												

<붙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양식

성명	(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의견			
제출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22 - 67호

주식매각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식매각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김 춘 례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우	100	매각	7,220	2022.01.14.	하나금융투자
본인	일진하이솔루스	66	매각	3,537	2022.01.07.	하나금융투자
본인	일진하이솔루스	34	매각	1,825	2022.01.07.	하나금융투자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2 - 2호

2022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서울산업진흥원			직위	원장	성명	김현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1,461,984			
배우자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347번지 125.60㎡		1,461,984 (1,461,984)			
	▶ 건물(소계)			7,161,807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건물 97.35㎡ 중 48.68㎡		941,500 (941,500)			
본인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물 137.24㎡		1,500,000			

본인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대지 148.80㎡ 중 37.20㎡ 건물 39.10㎡	105,359 (105,359)	
본인	복합건물(주택 +상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건물 2,521.15㎡	1,473,448 (1,473,448)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건물 97.35㎡ 중 48.67㎡	941,500 (941,5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건물 163.56㎡	2,200,000 (2,2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63,010	
본인	자동차	2020년식 제네시스 G90 배기량(3,778cc)	63,010 (63,010)	
▶ 예금(소계)			2,512,315	
본인		(주)KB손해보험 2,146, AIA생명보험주식회사 454, NH투자증권 2, 국민은행 46,084, 농협은행 21, 대신증권 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91,000, 미래에셋대우(주) 2,084,085, 스탠다드차티드은행 8,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13,444, 우리은행 34,798, 키움닷컴증권 49, 푸르덴셜생명보험 41,475, 한국카카오은행(주) 519, 한국투자증권 3,074	2,417,195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8, NH투자증권 3, 국민은행 4,265, 씨티은행 901, 우리은행 1, 유안타증권 2, 키움닷컴증권 6, 한국투자증권 800	5,996	
장남		NH투자증권 8,603, 국민은행 527, 미래에셋대우(주) 1, 우리은행 14,400	23,531	
장녀		국민은행 51,146, 우리은행 14,400, 한국카카오은행(주) 47	65,593	

▶ 증권(소계)			1,518,256	
본인	상장주식	[002466]천제리튬 5,200주, [600066]정주유통버스 11,000주, 씨티케이 12,416주, 아센디오 4,500주, 아주스틸 4,200주, 에코마케팅 6,600주, 투비소프트 8,098주, 플러그파워 358주, 휴온스 26주, 휴온스글로벌 8주	453,508	
본인	회사채	칼제이십오차유동화전문1-7(월) 10,000,000주	10,026	
본인	비상장주식	아이플래테아 7,694주	38,470	
본인	기타(채권)	BNTNF 10 01/01/29 NTNF 1,143,000주, 수시형 2,088,903주, 에프엔상도 제일차20211018-123-31 800,000,000주	1,016,252	
▶ 채권(소계)			172,500	
본인		사인간채권	172,500	
▶ 채무(소계)			4,150,000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2,350,000	2,35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임대보증금	80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임대보증금	50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임대보증금	500,000	
▶ 고지거부 및 등특제외사항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8,739,872	

소속	서울시복지재단			직위	대표이사	성명	김상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본인	임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기읍 싹계리 산 46-1번지 199,949.00㎡ 중 6,649.00㎡		230,696			
부	답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기읍 420번지 1,758.00㎡		218,662 (5,000)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천왕 이편하우스 3단지 건물 114.00㎡		226,950			
부	단독주택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대지 247.00㎡ 건물 187.00㎡		267,000			
▶ 예금(소계)							
본인		국민은행 18,500, 농협생명보험 37,800, 디지털생명보험(주) 7,860, 유안타증권 4,944, 중소기업은행 21,220		125,332			
배우자		DB순해보험(주) 4,289, 농협중앙회 30,719		35,008			
▶ 증권(소계)							
부	상장주식	LG 1,156주, LX홀딩스 560주, 미래에셋증권2우B 11,000주, 케이씨텍 861주		185,334			

▶ 채무(소계)		40,000	
부	금융채무	NH투자증권 40,000	40,000
총 계		995,312	

소속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위	사장	성명	김현동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단위 : 천원)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건물 82.51㎡		1,842,000		
				1,842,000 (1,842,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1년식 그랜저 배기량(3,000cc)		15,000 (15,000)		
▶ 예금(소계)						
본인		국민은행 15,953, 농협은행 33,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350, 신한은행 4, 우리은행 6, 중소기업은행 99, 한국카카오은행(주) 50, 한국투자증권 4		16,499		
배우자		(주)KB손해보험 350, 국민은행 10,021, 신한은행 301, 우체국 19,160, 한국투자증권 2		29,834		
장남		농협은행 1,580, 씨티은행 10		1,590		
▶ 채무(소계)						
본인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370,930, KB캐피탈 41,241, 국민은행 14,000, 하나카드 628		426,799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장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478,124		

소속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위	이사장	성명	주철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배우자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67-1번지 1,299.00㎡				146,519		
배우자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467-2번지 651.00㎡				93,918 (93,918)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건물 130.93㎡ 중 65.47㎡				2,143,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건물 130.93㎡ 중 65.46㎡				661,500 (661,5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건영아파트 건물 84.39㎡				661,500 (661,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21년식 제네시스 G80 배기량(2,500cc)				820,000 (820,000)	57,900	
▶ 현금(소계)								
본인	현금					3,700	3,700	

▶ 예금(소계)			2,218,307	
본인		(주)KEB하나은행 209,532, DB손해보험(주) 16,824, IBK연금보험주식회사 135,700, 국민은행 10,000, 신한금융투자(주) 29, 신한은행 780,826,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7,134	1,190,045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488,504, 롯데손해보험 126, 삼성생명보험 37,463, 신한금융투자(주) 28, 신한은행 36,678,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02,976, 현대해상화재보험 955	866,730	
차녀		(주)KEB하나은행 109,069, 신한은행 37,682, 씨티은행 17, 우리은행 12,566, 한국카카오은행(주) 10, 현대해상화재보험 2,188	161,532	
▶ 증권(소계)			168,297	
본인	상장주식	POSCO 7주, 노브메타파마 5,500주, 신한알파리츠 7,300주	166,966	
배우자	상장주식	하나금융지주 33주	1,331	
▶ 채무(소계)			484,443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건영아파트 임대보증금	480,000	
차녀	금융채무	신한은행 4,443	4,443	
▶ 보석류(소계)			20,000	
본인		시계	5,000	

본인	18k반지		2,000	
본인	시계		3,000	
배우자	18k반지		2,000	
배우자	진주목걸이, 귀걸이		3,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2,000	
배우자	에머랄드 목걸이, 반지		3,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장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4,273,280	

소속	서울디자인재단			직위	대표이사	성명	이경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본인	임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동리 산 540번지 44,570.00㎡	122,604				
본인	임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동리 산 550번지 10,314.00㎡	81,563 (81,563)				
본인	임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동리 산 551번지 7,537.00㎡	4,940 (4,940)				
본인	임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용동리 산 643번지 57,917.00㎡	32,491 (32,491)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한빛마을레미안이스트팰리스2단지 건물 148.66㎡	1,269,600				
본인	오피스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대지 13,369.10㎡ 중 7.09㎡ 건물 62.16㎡	227,300 (227,300)				
본인	오피스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대지 13,369.10㎡ 중 7.09㎡ 건물 62.16㎡	227,300 (227,3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64,82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제규어XF 배기량(2,000cc)	30,330 (72,900)	
본인	자동차	2020년식 링컨MKZ 배기량(2,000cc)	34,490 (59,050)	
▶ 예금(소계)			767,922	
본인		(주)KEB하나은행 782, 국민은행 179,148, 대신증권 2,02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45,239, 삼성생명보험 89,567, 삼성화재해상보험 216, 신한금융투자(주) 1,021, 신한라이프(신한생명) 3,990, 신한은행 1,599, 씨티은행 500, 우리은행 60,099, 케이디비생명보험 50,694, 한국교직원공제회 64,980, 한국카카오은행(주) 447, 한국투자증권 2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64,289, 현대해상화재보험 15,175	679,789	
배우자		국민은행 7,338,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3,327, 신한금융투자(주) 68, 신한은행 2, 악사(AXA)손해보험 283, 한국카카오은행(주) 349	21,367	
장남		국민은행 16,781, 삼성생명보험 17,147, 신한은행 2,838,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0,000	66,766	
▶ 증권(소계)			17,088	
본인	상장주식	대한항공 93주, 아시아나항공 149주, 한국전력 60주	8,424	
본인	비상장주식	(주)씨리텍 1주, (주)엔스퍼트 1주, (주)중앙디자인 1주	0	
배우자	상장주식	동화약품 90주, 삼성전자 30주, 카카오 10주	5,125	

장남	상장주식	JYPEnt. 5주, 동성화인텍 9주, 와이제엔터테인먼트 41주, 이트론 3주, 카카오 6주	3,539	
▶ 채무(소계)			2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2건 임대보증금	20,000	
총 계			2,222,034	

소속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직위	대표이사	성명	항정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본인	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구장리 17번지 2,460.00㎡ 중 615.00㎡		40,108			
본인	임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구장리 산 14-4번지 2,301.00㎡ 중 575.25㎡		10,412 (3,000)			
본인	임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구장리 산 14-13번지 476.00㎡ 중 119.00㎡		2,513 (300)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장아파트 건물 71.44㎡		207,000 (3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01년식 쉐타페 배기량(1,991cc)		1,000 (1,900)			
▶ 예금(소계)							
본인			DB금융투자 11, 농협은행 5,534, 농협중앙회 45, 키움닷컴증권 1,766	7,356			

정년		(주)KEB하나은행 10, NH투자증권 2,632, 국민은행 1,198, 동협중앙회 19,792, 디지털생명보험(주) 5,049, 우리은행 8,183, 한국카카오은행(주) 11,217	48,081	
▶ 증권(소계)				
본인	상장주식	덕성보통주 1,370주, 모비릭스 850주, 알체라 350주, 카카오보통주 400주	103,875	
정년	상장주식	AT&T 1주, AgeagleAerial 70주, Amazon.com 1주, Apple 29주, CJENM 4주, CrisprTherapeut 4주, FIRSTTSTNASDAQCLEANEDIDETF 4주, ISHARESGLOBALCLEANENERGYETF 2주, LG생활건강 1주, NAVER 4주, Starbucks 3주, TechnicalComm 10주, Tesla 2주, 동원산업 15주, 삼성전자 25주, 엔씨소프트 2주, 이마트 4주, 카카오 21주, 카카오게임즈 69주, 하이브 6주, 현대차 5주	34,678	
▶ 채무(소계)				
정년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150,000	150,000	
총 계			292,098	

○ 퇴 직

소속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직위	(전)사장	성명	김성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617,000	203,000	0	820,000		
부	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래미안파크스위트 건물 84.00㎡	617,000	203,000	0	820,000	기준시가 상승	
▶ 예금(소계)			74,799	6,406	3,737	77,468		
본인		(주)KEB하나은행 35(63 감소), DB손해보험(주) 7,775(764 증가), NH투자증권 2, 교보증권 2, 국민은행 3,004(2,990 증가), 농협은행 1,226(530 증가), 메리츠 화재해상보험(보험) 957(638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21, 신한금융투자(주) 6, 신한은행 4,920(644 증가), 우 리은행 24, 중소기업은행 19	12,488	5,566	63	17,991	임상적인 입출금 수준의 변동 사항 없음	
부		교보증권 3, 국민은행 8,315(2,577 감소), 농협은행 11,460(1,095 감소), 미래에셋대우(주) 2, 신한은행 38,639(838 증가)	61,253	840	3,674	58,419		
장녀		(주)KEB하나은행 3, 씨티은행 2	5	0	0	5		
차녀		국민은행 499, 한국카카오은행(주) 554	1,053	0	0	1,053		

▶ 증권(소계)		0	2,244	0	2,244	
차녀	상장주식	0	2,244	0	2,244	신규취득
▶ 채무(소계)		188,031	47,999	21,031	214,999	
본인	금융채무	188,031	47,999	21,031	214,999	생활비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71,000	0	0	71,000	
본인	출자	71,000	0	0	71,000	
총 계		574,768	163,651	-17,294	755,713	증감액: 180,945천원 (+)액변동: 203,000천원)

소속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직위	(전)대표이사		성명	김영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배우자	임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36번지 699,305.00㎡		924,561	0	0	924,561		
배우자	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81번지 565.00㎡		11,865	0	0	11,865		
배우자	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82번지 2,043.00㎡		42,903	0	0	42,903		
배우자	임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36번지 1호 33,058.00㎡		40,992	0	0	40,992		
배우자	임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37번지 10,612.00㎡		12,946	0	0	12,946		
배우자	전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83-2번지 555.00㎡		11,655	0	0	11,655		
▶ 건물(소계)									
배우자	아파트(전세(임 차)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1단지아파트 건물 144.70㎡		294,000	0	0	294,000		
차남	연립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코팩테크노타운 건물 39,924.00㎡ 중 99.81㎡		158,000	0	0	15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58,460	0	11,692	46,768	
본인	자동차 2019년식 넥쏘 배기량(0cc)	54,660	0	10,932	43,728	
차남	자동차 2007년식 소나타 배기량(1,998cc)	3,800	0	760	3,040	
▶ 예금(소계)		185,490	2,041	65,713	121,818	
본인	(주)KEB하나은행 11, NH투자증권 1, 국민은행 4, 농협은행 6, 삼성화재해상보험 710, 신한은행 13,745, 우리은행 100, 중소기업은행 9,654, 한국카카오은행(주) 29	24,260	0	0	24,260	
배우자	(주)상상인증권 26, DB손해보험(주) 37,637(1,210 증가), NH투자증권 1, 교보생명보험 2,670, 국민은행 3, 농협중앙회 6, 대신증권 0(11,902 감소), 메리츠화재상보험(보험) 5,274(238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048(139 증가), 삼성생명보험 20,985,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28,272 감소), 신한은행 1,041(4,279 감소), 중소기업은행 0(102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5,413(15,838 감소)	152,910	1,667	60,473	94,104	자금이체
차남	국민은행 80	80	0	0	80	
장녀	국민은행 153(54 증가), 신한은행 1,496(4,756 감소), 중국은행 0(1 감소), 중소기업은행 1,512(191 감소)	8,055	294	5,188	3,161	
차녀	신한은행 200(63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3(35 감소)	185	80	52	213	

▶ 증권(소계)		1,453,454	0	1,037,273	416,181	
배우자	상장주식	13,048	0	13,048	0	주식매매
	LSELECTRIC 0주(81주 감소), OCI 0주(10주 감소), SK 우 2주, 삼성엔지니어링 50주, 삼화콘덴서 10주, 아모레 G 0주(1주 감소), 아스타 0주(4주 감소), 파트론 0주(50 주 감소), 한국조선해양 0주(3주 감소), 한국콜마 0주(34 주 감소), 한미약품 0주(3주 감소), 현대건설 0주(12주 감소), 현대로템 0주(10주 감소), 현대에너지솔루션 0주 (20주 감소)					
배우자	비상장주식	1,329,606	0	945,438	384,168	
	(주)안양제일자동차공업소 3,000주					
장녀	비상장주식	66,480	0	47,272	19,208	주식매매
	(주)안양제일자동차공업소 150주					
차녀	비상장주식	44,320	0	31,515	12,805	
	(주)안양제일자동차공업소 100주					
▶ 채권(소계)		200,000	50,000	0	25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200,000	50,000	0	250,000	
▶ 채무(소계)		743,525	74,503	0	818,028	
본인	금융채무	179,036	0	0	179,036	
	신한은행 150,000, 현대캐피탈 29,036					
배우자	금융채무	440,731	74,503	0	515,234	
	신림조합중앙회 295,234(74,503 증가), 중소기업은행 220,000					
차남	금융채무	123,758	0	0	123,75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23,758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530,440	-22,462	1,114,678	1,393,300	증감액: -1,137,140천원 (기액변동: -1,037,718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위	(전) 구의원		성명	이관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건물(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건물 59.48㎡ 중 29.74㎡	1,883,258	244,000	0	2,127,258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101.00㎡	557,500	122,000	0	679,500			
본인	복합건물(주택+상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건물 178.90㎡	250,000	0	0	25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건물 59.48㎡ 중 29.74㎡	518,258	0	0	518,258			
▶ 현금(소계)									
본인		현금 감소	10,000	0	8,000	2,000			
▶ 예금(소계)									
본인		(주)KEB하나은행 308(2,377 감소), 국민은행 21,316(1,242 증가), 농협은행 104(429 감소), 롯데손해보험 12,635(1,412 증가), 새마을금고 203(3 증가), 신한은행 1,612(2,733 감소), 우리은행 11,933(3,769 증가), 우체국 6, 중소기업은행 8,233(6,602 증가), 키	48,861	16,052	7,760	57,153	수입저축, 부동산(아파트, 상가 사무실)상승		

		음다컴증권 803(803 증가)						
배우자		(주)KB손해보험 7,276(1,169 증가), 국민은행 2,881(46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2,163(1,163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52,690(4,533 증가), 신한은행 11,633(1,025 증가), 우리은행 54,173(3,567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4,914(908 증가)	123,411	24,608	2,289	145,730	수입저축,부동산(아파트,상가,사무실)	
차남		우리은행 1,100(280 증가)	820	280	0	1,100		
장녀		우리은행 1,300(200 증가)	1,100	200	0	1,300		
▶ 증권(소계)			0	68,679	0	68,679		
본인	상장주식	명문제약보통주 427주(427주 증가), 삼성이앤씨 788주(788주 증가), 웰바이오테크보통주 12,607주(12,607주 증가), 진원생명과학보통주 220주(220주 증가), 케이씨그린홀딩스보통주 6,871주(6,871주 증가)	0	68,679	0	68,679	증권 확보 및 가격하락	
▶ 채무(소계)			1,038,002	13,998	67,503	984,497		
본인	사인간채무		50,000	0	0	50,000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320,000, 신한은행 56,499(1,667 감소), 우리은행 13,998(13,998 증가), 중소기업은행 94,000, 현대캐피탈 0(1,836 감소)	474,002	13,998	3,503	484,497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임대보증금	210,000	0	0	21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임대보증금	30,000	0	0	30,000	
배우자	금융채무	신한은행 0(64,000 감소)	64,000	0	64,000	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아파트 임대보증금	210,000	0	0	210,000	
▶ 고통품 및 예술품(소계)			0	3,000	0	3,000	
본인		도자기 (조선백자, 40세티 *25센티Cm, 19세기) 증가	0	3,000 (4,000)	0	3,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029,448	342,821	-49,454	1,421,723	증감액: 392,275천원 (+)액변동: 244,000천원)

구 고 시

광진구고시 제2022 - 33호

제2차 광진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완료 고시

제2차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서울시 고시 제2020-455호, 2020.11.12.) 완료에 따른 제2차 광진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광진구청장

1. 계획수립의 개요

☐ 계획수립 근거 및 기간

☐ 법적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등)
-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계획기간 : 2021. 3. ~ 12.

☐ 계획의 성격

- ☐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광진구 현장여건에 맞게 광진구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10년단위 법정계획

2. 계획의 범위

- ☐ 광진구 관내 노선 중 가로수가 식재된 시도로 10개 노선, 구도로 20개 노선 등 총 30개 노선 53.72km를 대상으로 함

3. 계획의 목표

☐ 광진구 생활, 문화, 생태를 잇는 시원한 광진 바람숲길 조성

- ☐ 아름다운 연결숲 조성
- ☐ 생육개선을 통한 바람길 기능 향상
- ☐ 가로수 관리체계 구축

4. 세부전략 및 추진계획

☐ 다양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 형성

- ① 가로 특성 고려한 가로주제 설정

- 가로변 토지이용현황 및 가로수 생육환경 등 종합적 검토하여 가로유형 설정
- 바람길 기능 향상을 위한 특성화 노선 선정 및 정비기준 수립
- ② 가로수종 다양화를 통한 다양한 가로경관 조성
 - 가로수종 다양화를 위한 식재수종 선정
 - 가로수 바뀌심기 2개노선(구의로, 뚝섬로), 신규식재 1개 노선(천호대로) 선정
 - 가로수량 증진을 위한 가로수 공분 보식
- ③ 떠돌지 조성 및 강화를 통한 바람길숲 조성
 - 노선별 보도폭에 따른 떠돌지 조성모델 수립
 - 아름다운 연결숲 조성계획 종합

☐ 가로수 생육기반 정비 및 개선

- ① 도시기후 대응을 위한 생육기반 정비
 - 보도폭별 가로수 및 떠돌지 생육기반 정비기준 및 방안 수립
- ② 도시 물순환을 위한 가로수 보호시설물 및 녹지 정비
 - 가로수 담수기능 강화, 떠돌지 LID기법 도입, 뿌리융기 방지시설 적용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가로수 관리

- ① 통합적 가로수 생육 및 수형관리 추진
 - 개별가로수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적용
 - 수형불량 노선 가로수 전정 관리 방안
 - 수산손상 및 생육불량 가로수 관리 방안
 - 노선별 병충해 관리 체계 구축
- ② 가로수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시민참여형 관리 체계 구축
 - 시민참여형 가로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5. 문의처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02-450-7792)

동대문구고시 제2022 - 41호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32호(2021.8.21)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21-197호(2021.9.30.)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답십리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3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사업시행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1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답십리근린공원) 사업
 - 명 칭 : 답십리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3. 사업규모(변경없음) : 1,965㎡
 -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용도변경 포함) 및 녹지대 정비
 - 건축개요(변경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건축면적	779.07 ㎡	
연면적	2,929.68㎡	
층수/건물높이	지하1층, 지상3층 / 16.7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문화및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15인승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동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간 연장	인가일로부터 ~ 2022.2.28.	인가일로부터 ~ 2022.4.30.	

6.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자 (변경없음)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1	답십리동 산 2-121	임야	1,965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2127-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고시 제2022 - 2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강 북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기존 통행로를 정비하고 등유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일시적인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공지를 결정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우이동 126번지	-	증)99	99	-	자연녹지지역 국립공원
신설	②	공공공지	우이동 128번지 일대	-	증)2,137	2,137	-	

나. 결정 사유서

- 북한산둘레길 및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의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일시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 관계도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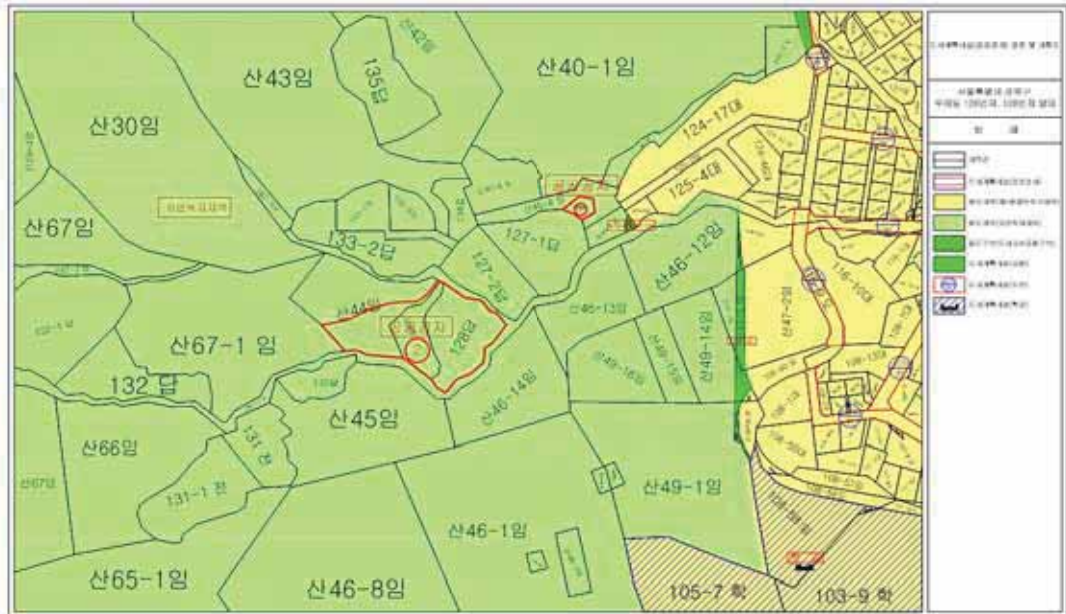
-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901-6847), 공원녹지과(☎901-6933)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



금천구고시 제2022 - 33호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58호(2019.12.31.)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0-101호(2020.11.2.)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0-33(2020.5.4.)로 사업시행자 고시된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금 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
 - 나. 구역면적: 10,559.1㎡
 - ※ 예비확정측량 결과로서, 준공 시 대지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
 - 가. 사업시행자: (주)무궁화신탁(대표 권준명)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2. 2. 28.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713.5㎡	2,899.15㎡	31,565.73㎡	33.272%	226.6682%	39.9m	5개동 219세대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타입별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동주택	45	18	45.99㎡	62.05㎡
	59A	67	59.96㎡	81.14㎡
	59A-1	21	59.96㎡	80.89㎡
	59B	14	59.90㎡	81.93㎡
	74A	78	74.96㎡	101.00㎡
	74A-1	12	74.97㎡	100.98㎡
	74B	9	74.98㎡	101.68㎡
합 계		219세대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하수도 (하천)	하수도	시흥동 703-10번지	392	국유지

나.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1,845.6	개발주체 가 조성 후 시설 및 토지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 로	소로 2-(A)	시흥동 230-114번지 일원	1,501	
하수도	하수도	시흥동 703-78번지 일원	344.6 (도로중복결정 824㎡ 제외)	

9. 기타 관계도서: 생략 ※ (주)무궁화신탁 및 금천구 주택과에 관련 도서 비치

동작구고시 제2022 - 41호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호(2012. 1. 12)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14-18호(2014. 2. 20), 동작구고시 제2014-91호(2014. 9. 4), 동작구고시 제2016-21호(2016. 3. 10), 동작구고시 제2018-43호(2018. 6. 14.), 제2019-36호(2019. 5. 9) 및 동작구고시 제2021-316호(2021.12.30.)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정 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작동 102번지 일대	20,667.7	-	20,667.7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용도 지역	계		20,667.7	-	20,667.7	100.0	-
	자연녹지지역		302.0	-	302.0	1.46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26.4	-	1,926.4	9.3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331.3	-	10,331.3	49.99	-
		제2종일반주거지역	8,108.0	-	8,108.0	39.23	-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667.7	-	20,667.7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008.8	-	4,008.8	19.40	
	도 로	1,705.0	-	1,705.0	8.25	
	근린공원	2,200.8	-	2,200.8	10.65	
	공공공지	103.0	-	103.0	0.50	
택 지 (획 지)	소 계	16,658.9	-	16,658.9	80.60	
	획 지1	16,191.9	-	16,191.9	78.34	
	획 지2	253.0	-	253.0	1.22	
	획 지3	214.0	-	214.0	1.0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6~17.4 (9.3~11.1)	국지 도로	705 (122)	동작동 102-18	동작동 102-35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	9.3~11.1	국지 도로	122	동작동 102-18	동작동 102-90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1	6~7	국지 도로	55.6	동작동 332-4	동작동 102	일반 도로	-	-	-

※ ()는 구역 내 연장 및 폭원임

(1)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	소로1-1	- 폭원 변경 6~17.4m(9.3~11.1m) → 9.3~11.1m - 연장 변경 705(122)m → 122m	• 교통영향평가 반영에 대한 변경 및 사도 착오 고시에 따른 정정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현충	근린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1,106,402.2 (2,200.8)	-	1,106,402.2 (2,200.8)	건설부187 (1962.12.20.)	-

※ ()는 구역 내 면적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공공공지	동작동 산89-1일대	103.0	-	103.0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법 정
			기정	변경	변경후	
공 공 이 용 시 설	관리사무소	획지1	134.38	-	134.38	주1)
	경로당		172.69	-	172.69	면적기준 삭제
	어린이놀이터		567.00	-	567.00	면적기준 삭제
	주민공동시설		541.94	-	541.94	기준변경 주2)
	작은도서관		116.42	-	116.42	해당없음
	어린이집		230.88	-	230.88	21×4.29㎡ = 90.09
	근린생활시설		571.65	-	571.65	세대당 6㎡ = 2,196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제3목(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주1) 10㎡+(세대수-50)×0.05㎡ = 25.8㎡

※ 주2) 세대당 2.5㎡ X 1.25 = 1,143.75㎡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작은도서관+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 = 1,628.93㎡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후	
기정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667.7	획지1	16,191.9	동작동 102번지 일대	89	-	-	89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획지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동작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20,667.7	획지1	16,191.9	동작동 102번지 일대	공동주택	30 이하	236.0 이하	45m 이하 (최고15층) 평균 1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table><tr><td>구 분</td><td>세대수</td><td>비율(%)</td></tr><tr><td>합 계</td><td>366</td><td>100.0</td></tr><tr><td>60㎡이하</td><td>88</td><td>24.04</td></tr><tr><td>60~85㎡이하</td><td>278</td><td>75.96</td></tr><tr><td>85㎡초과</td><td>-</td><td>-</td></tr></table>							구 분	세대수	비율(%)	합 계	366	100.0	60㎡이하	88	24.04	60~85㎡이하	278	75.96	85㎡초과	-	-
			구 분	세대수	비율(%)																			
			합 계	366	100.0																			
			60㎡이하	88	24.04																			
			60~85㎡이하	278	75.96																			
			85㎡초과	-	-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시철도(4호선)변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 인접대지 경계선 및 남측·서측도로 : 3~6m																					
기타사항(변경없음)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m, 3m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대 지 (획 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20,667.7㎡	16,658.9㎡	4,008.8㎡	164.7㎡	595.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4,008.8\text{㎡} - 164.7\text{㎡} - 595.8\text{㎡} = 3,248.3\text{㎡}$ (구역면적대비 15.72%)				
계획(기준) 용적률	○ 계획용적률 : 190% 이하				
개발가능 용 적 륜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1.3\alpha)$ $= 190 \times (1 + 1.3 \times 0.19499)$ $= 238.16\%$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248.3\text{㎡} / 16,658.9\text{㎡} = 0.19499$ ○ 정비계획 용적률 = 236.00% < 238.16%				

6)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행) 185세대 계획) 366세대 증가) 181세대	-

2. 지형도면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전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주택과(☎820-9776)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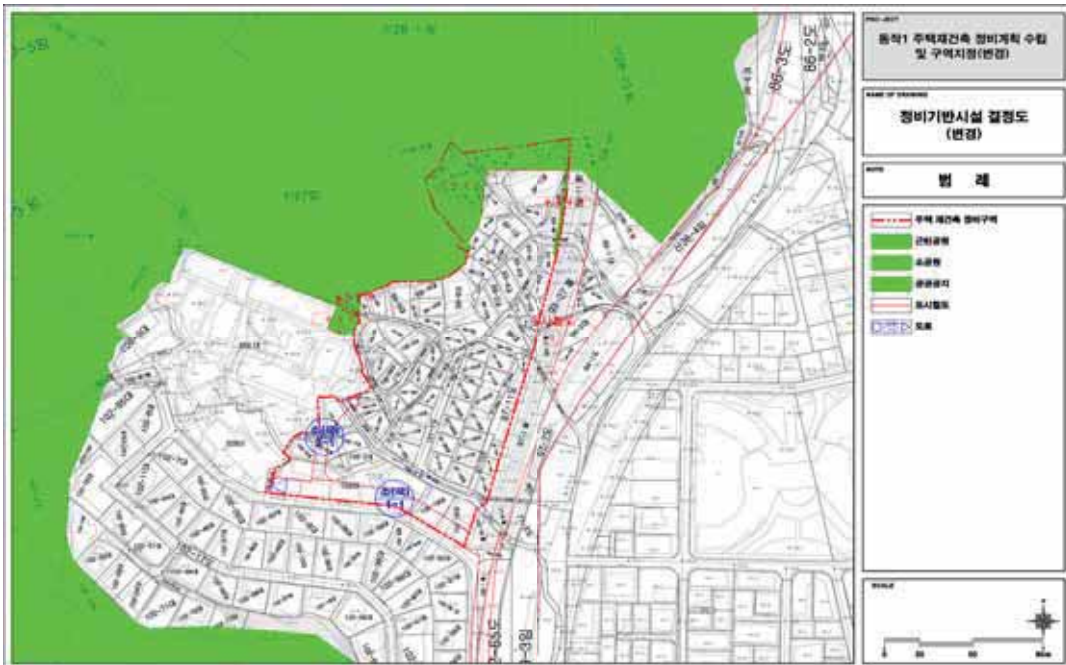
붙임

가.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1)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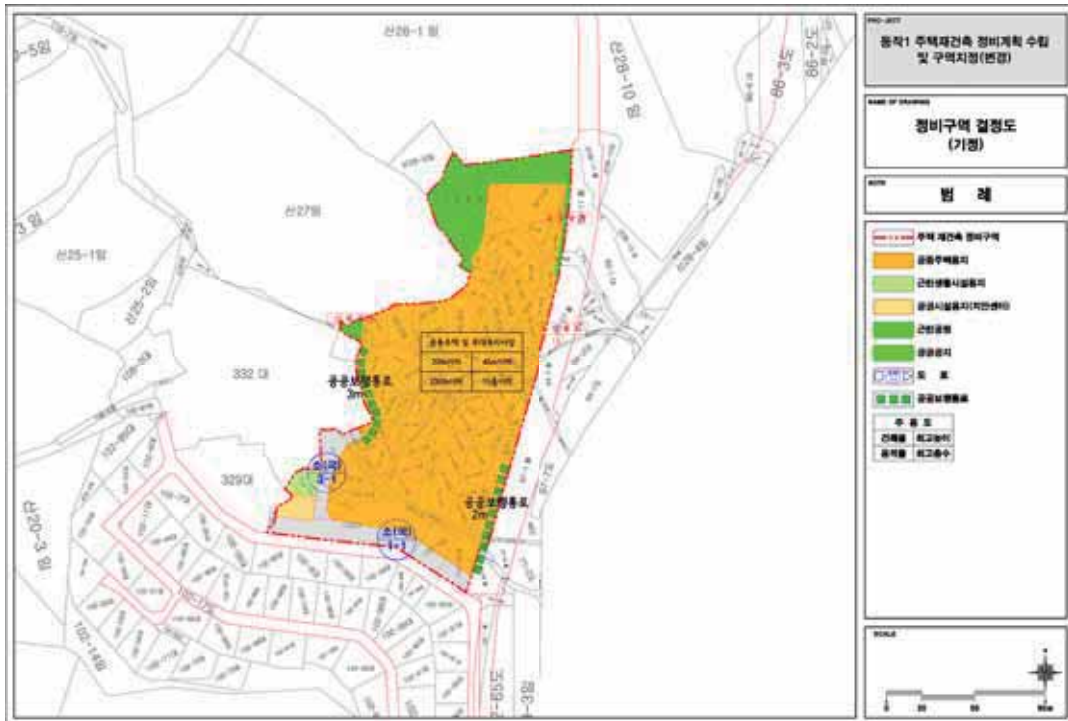


2)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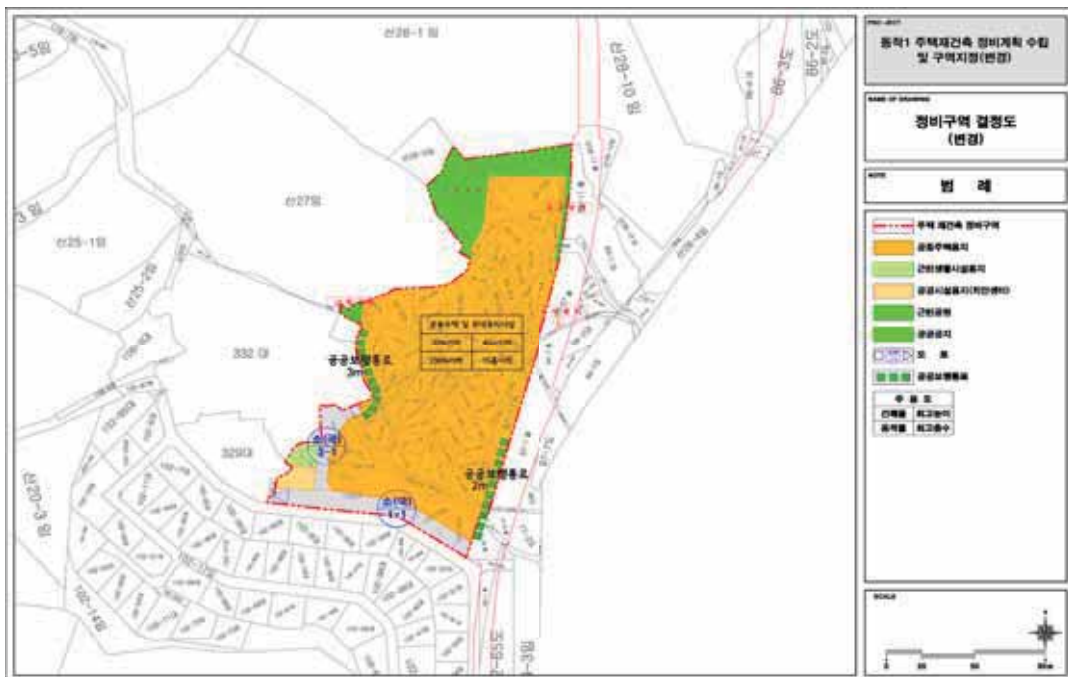


나. 정비계획 결정도

1) 기정



2) 변경



동작구고시 제2022 - 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로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및 동작구고시 제2019-52호(2019.7.4.), 동작구고시 제2022-11호(2022.1.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동작구 동작동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및 소로3-1호선)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경미한)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소로1-1호선, 소로3-1호선(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동작구 상도동 도시계획도로(중(보)로3-35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

라. 사업시행지의 규모 (변경)

구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비고
		기 정	변 경	
소로 1-1호선	연장 : 705(122)m 폭원 : 6~17.4m	연장 : 705(122)m 폭원 : 6~17.4m(9.3~11.1m)	연장 : 122m 폭원 : 9.3~11.1m	국지도로
소로 3-1호선	연장 : 55.6m 폭원 : 6~7m	연장 : 55.6m 폭원 : 6~7m	연장 : 55.6m 폭원 : 6~7m	국지도로
도로 면적	소로 1-1호선 : 1,200 m ² 소로 3-1호선 : 505 m ²	소로 1-1호선 : 1,200 m ² 소로 3-1호선 : 505 m ²	소로 1-1호선 : 1,200 m ² 소로 3-1호선 : 505 m ²	

※ 착오 고시로 인한 정정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20 18.11.22.)로부터 60개월

사. 주요 변경(경미한 사항) 내용

○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

아.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변경없음)

○ 편입토지조서 총괄표

구분		합 계		공유지				사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 지	면 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 지	면 적
대	기정	8	1,606.7					9	1,606.7
도로	기정	4	85.3	2	22	1	25.7	1	37.6
구거	기정	1	13			1	13		
합계	기정	13	1,705.0	2	22	2	38.7	10	1,644.3

○ 세부 편입토지조서

▶ 도시계획시설 (소로1-1호선)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102	대	1,875	8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2-18	대	416	18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2-19	대	370	1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2-90	대	14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계		기정	4필지		2,675	1,200						

▶ 도시계획시설 (소로3-1호선)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98-1	도	415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기정	100-36	도	14	5		서울특별시				
		기정	102	대	1,875	6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3-5	대	181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3-6	대	181	94.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3-8	도	139	37.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4-1	대	288	23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4-5	구	258	13		동작구				
		기정	104-12	대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332-4	도	95.5	25.7		동작구				
계		기정	10필지		3,449.5	505						

서초구고시 제2022 - 39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02-5호(2002.01.09.)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재건축사업에 따른 교통 완화차선 확보로 기존 보도상의 환기구를 이설하고, 공동주택 단지
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및 출입구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921정거장)	서초구 반포동 885일대	7,749	증)330.9	8,079.9	2002.01.0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5호)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양재역)	• 면적변경 - 7,749㎡ → 8,079.9㎡ (증 330.9㎡)	• 재건축사업에 따른 교통 완화차선 확보로 기존 보도상의 환기구를 이설하고, 공동주택 단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및 출입구를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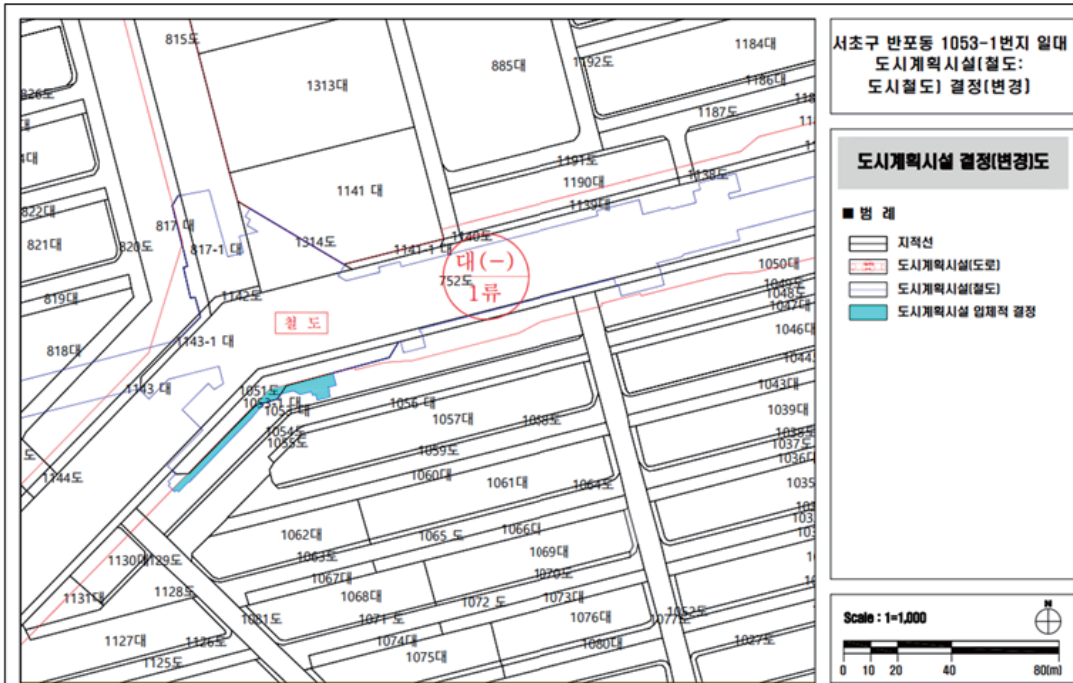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고시 제2022 - 4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53호(1997.05.16.)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지하철 정거장의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고속터미널역 4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철도	도시철도 (고속터미널역)	서초구 반포동 118-8일대	5,931	증) 236.0	6,167.0	서울시고시 제1997-153호 (1997.05.16.)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고속터미널역)	• 면적변경 - 5,931㎡ → 6,167.0㎡ (증 236.0㎡) • 시설면적의 3.8%이내 • 엘리베이터(E/L)신설 설치	• 지하철 정거장의 교통약자(노인, 임산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고속터미널역 4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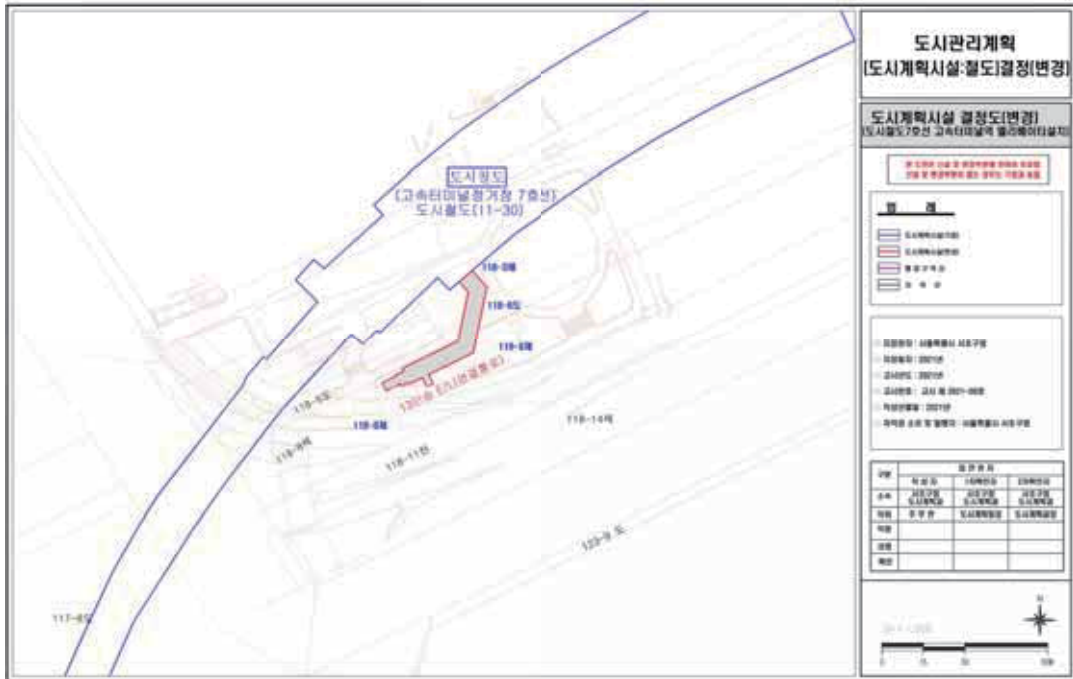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불임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고시 제2022 - 4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87호(1981.08.0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재건축사업에 따라 잠원역과 신축건물의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고, 기존 계단형 출입구를 양방향 에스컬레이터로 계획하여 출입구를 개선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철도	도시철도 (잠원역)	서초구 잠원동 93-17일대	4,200	증 126.8	4,326.8	서울시고시 제1981-287호 (1981.08.03.)	

-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잠원역)	- 정거장 규모확대(면적변경) - 4,200㎡ → 4,326.8㎡ (증 126.8㎡)	재건축사업에 따라 잠원역과 신축건물의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고, 기존 계단형 출입구를 양방향 에스컬레이터로 계획하여 출입구를 개선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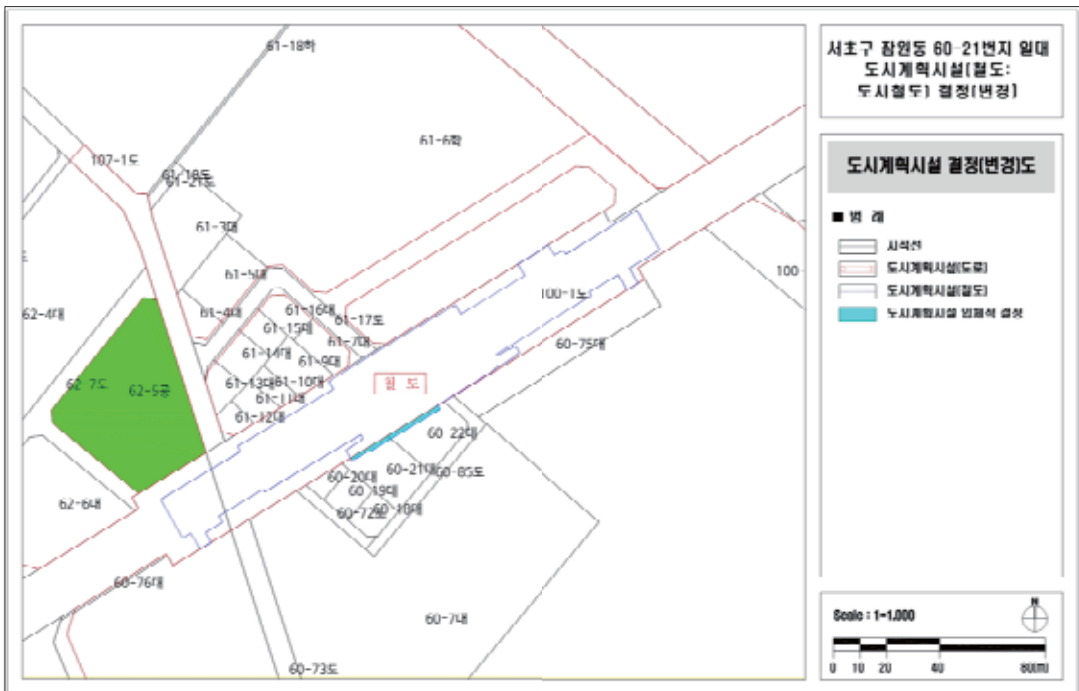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불입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고시 제2022 - 39호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7호(2018.4.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9호(2020.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22-295호(2022.2.10.)로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3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 당 초: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21-2
- 변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21-10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사업

라. 사업의내용(변경없음):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변경없음): 토지보상 236㎡

바. 사업기간(변경)

-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 12. 31일까지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 12. 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따로 붙임(변경)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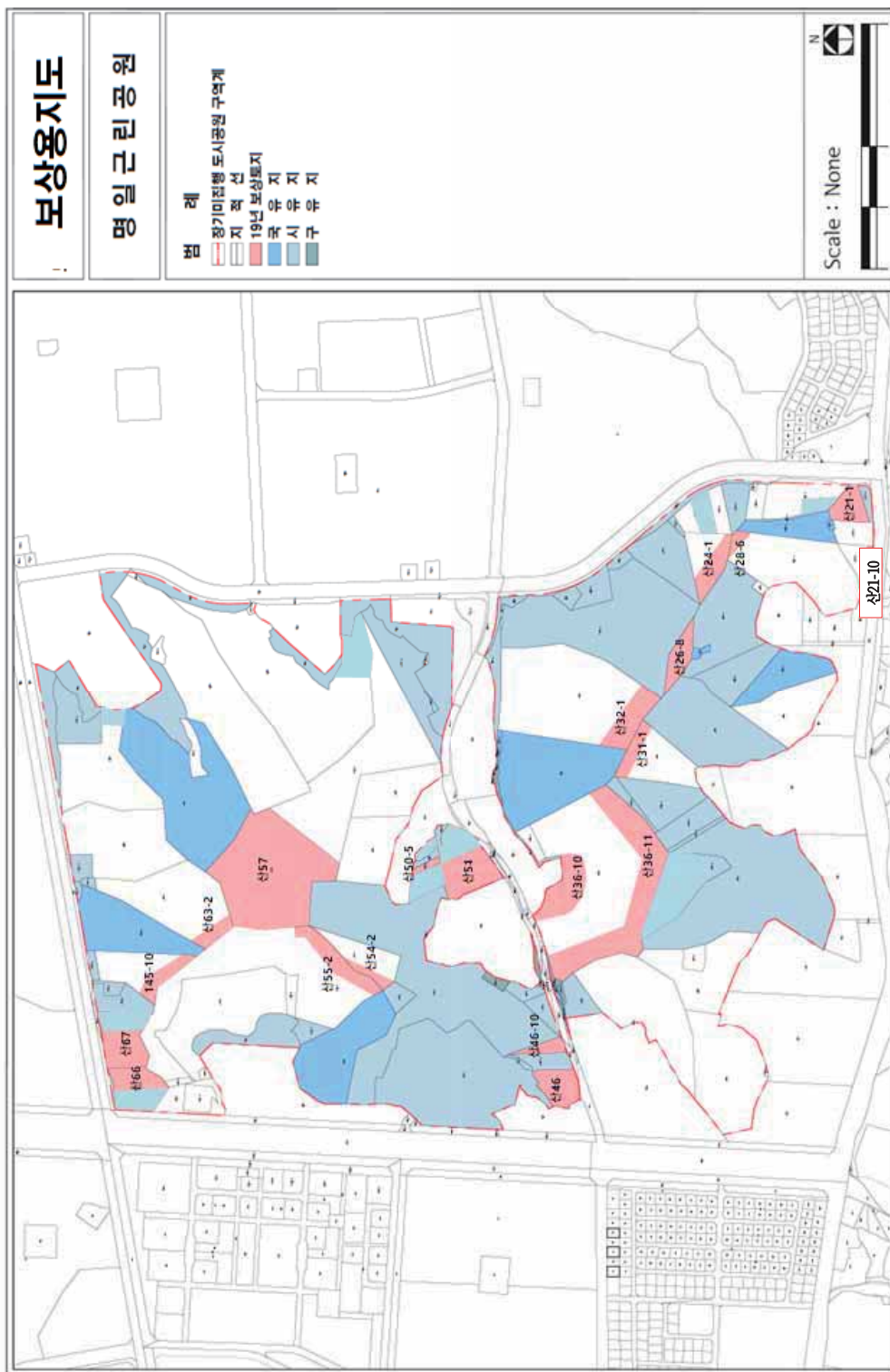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필지	1필지		1,627	236	236								
1	신21-2 신21-10	임야	1,627	236	236	양*자	서울특별시 **구 **동 ****-	1/3						
						장*문	서울특별시 **구 **로 **길 **(**동)	1/3						
						김*철	경기도 고양시 ***구 **로 ****-****호(**동)	1/6						
						김*래	경기도 하남시 ***로 ***, ****호(**동)	1/6						

※ 변경사항: 소유자 중 공유자(1명) 추가, 이해관계인(1명) 삭제

보 상 용 지 도(사용할 토지)



구 공 고

동대문구공고 제2022 - 250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공고 제2020-1005호(2020.09.17.)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1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22.)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①	전농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33번지 일대	24,773	-	-	서고 제149호 (96.06.03)
변 경	①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33번지 일대	-	감) 9	24,764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773	감) 9	24,764	100.0	
주거 지역	소 계	5,909	-	5,909	23.9	
	제3종일반주거지역	4,557	-	4,557	18.4	
	준주거지역	1,352	-	1,352	5.5	
상업 지역	소 계	18,864	감) 9	18,855	76.1	
	근린상업지역	18,864	감) 9	18,855	76.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대로	3	11	26~35 (31~34)	보조 간선	1,900 (310)	답십리동	전능동	일반 도로	총고 제722호 (36.12.26)	-
변 경	대로	3	11	26~35	보조 간선	1,900	답십리동	전능동	일반 도로	-	폭원축소,선형변경, 구역제척
기 정	소로	1	3	10 (10)	국지 도로	63 (63)	전능동 295-413	전능동 27-30	일반 도로	서고 제215호 (07.07.05)	-
변 경	소로	2	-	6 (6)	국지 도로	70 (70)	전능동 295-411	전능동 27-30	일반 도로	-	폭원축소,선형변경
기 정	소로	1	5	10 (10)	국지 도로	252 (252)	전능동 295-2	전능동 38-2	일반 도로	서고 제215호 (07.07.05)	-
변 경	소로	2	-	6~10 (6~10)	국지 도로	252 (252)	전능동 295-2	전능동 38-2	일반 도로	-	폭원축소,선형변경
신 설	소로	2	-	9~11 (9~11)	국지 도로	26 (26)	전능동 295-16	전능동 295-306	일반 도로	-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도로폭원임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㉓	소공원	전능동 25-1	546	감) 546	-	서고 제215호 (07.7.5)	-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㉑	공공공지	전능동 55-75	236	감) 236	-	서고 제215호 (07.7.5)	-

- 이하 여백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변	이면부	
기 정	3,000 이하	1,500 이하	○ 적용예외 - 특별계획구역
변 경	3,000 이하	1,500 이하	○ 적용예외 - 특별계획가능구역, 공동개발(지정) ○ 단, 간선변과 이면부가 공동개발할 경우 간선변 기준을 적용함

주) 전농동 295-410번지 간선변 기준 적용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생략

■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 생략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용도	비고
기정	전구역 (A)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 해당하는 획지에 한함)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금속가공 및 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창고시설, 고물상, 폐기물 및 차량수리 및 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 및 밧데리 등 관련소매점, 건축자재, 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페인트 등과 관련된 업종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유흥, 위락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변경		· 단독주택 ·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 기타시설 중 -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금속 및 페인트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함)	

구분	도면 표시	용도	비고
		·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 위락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 공동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용도	비고	비고
기정	간선변 (a)	· 판매시설중 소매시장(대형점)2 : 교차가각부에 한함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연구소(사가정길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 의료시설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제외) : 특별계획구역3 제외 ·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이면부 (b)	·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변경	간선변 (a)	전층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업무시설 중 사무실(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기타 전문 서비스업 중 창업보육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한함) · 의료시설 중 병원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체육 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이면부 (b)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업무시설 중 사무실(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기타 전문 서비스업 중 창업보육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한함)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체육관련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주1)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 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주2) 전농동 295-410번지 간선변 기준 적용

■ 건폐율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건폐율	비고
기정	간선변 및 특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50% 이하	-
	이면부		60% 이하	-
변경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주)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적용

■ 용적률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교차가각부		300%	5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1996.6.3)
	간선도로변(전농로, 사가정길)		300%	450%	600%	
	이면도로변		300%	400%	60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1996.6.3)
	특별계획구역3	준주거지역	300%	4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7.7.5.)
변경	근린 상업지역	교차가각부	300%	500%	600%	전농동 32-4, 33-38, 33-16에 한함
		간선도로변	300%	450%	600%	
		이면도로변	300%	400%	600%	
	준주거지역		300%	400%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특별계획가능구역	200%	230%	250%	
		특별계획가능구역 제척필지	200%	200%	400%	용도지역 선 상향지 기존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6)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1)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주2)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기준

①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근린상업지역 중 교차각각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33.5%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16.5%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허용용적률 450%인 구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00.2%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4.9%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 근린상업지역 중 이면도로변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66.8% 이하(허용용적률의 66.7%)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33.2% 이하(허용용적률의 83.3%)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주3)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 상기 사항을 반영하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주4)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르며, 운영 기준 개정 시 개정된 기준에 따름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토지 + 0.7 × α 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 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 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주5)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주6) 특별계획가능구역에서 제척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필지는 용도지역 선 상향지(서고 제2007-215호, '07.7.5.)로 기존 용도지역 용적률을 적용(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200%/230%/2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200%/200%/400%)한 사항임

주7) 전농동 295-410번지 간선도로변 기준 적용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정	간선가각부 및 전농로변	80m	100m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정 준수
	사가정길변 및 특별계획구역 3	-	80m	
	이면부	-	50m	
변경	특별계획가능구역		60m	
	근린상업지역	교차가각부	80m	
		간선변	60m	
		이면부	50m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50m	

주) 전농동 295-410번지 간선변 기준 적용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배치	벽면 한계선	· 벽면선 후퇴부분에는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 적용 : 1층 - 피로티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 폐지	결정도 참조
	건축 한계선	· 지정된 대지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 시설이 건축한계선 넘을 수 없음 - 교차가각부 : 5~12m	· 지정된 대지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 시설이 건축한계선 넘을 수 없음 - 교차가각부 : 3~5m	결정도 참조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간선변 : 3m - 이면부 : 2m(도로지적경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반대편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8~10m 지정)	- 간선변 : 3~6m - 이면부 : 1~3m	
형태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 폭 25m 이상에 접한 대지의 1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 부분에 대하여 고층부 탑상형 권장 · 5층 이상 고층부의 건폐율은 40% 이하 및 장변과 단변의 길이 2분의1 이상	· 폐 지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3~4m로 하되,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 최소면적 25㎡, 최소폭 5m로 간선변 및 가각부의 정해진 위치에 조성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구역 : 8개소(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 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폐지	결정도 참조
	전면공지	· 공개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교차가각부 : 5m · 간선변 : 3~5m · 이면부 : 1~3m	· 보도형 전면공지 - 교차가각부 : 3~5m, 간선변 : 3~6m, 이면부 : 1~2m · 차도형 전면공지 - 이면부 : 2m 이하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기 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 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 주체가 조성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 · 전면공지 및 쌈지형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쌈지형공지형태로 공개공지 설치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조성 · 개방형 구조로서 조명, 벤치 등 인근 이용자를 위한 다중이용 편의시설 설치 · 가각부 등 보행결절점에 조성 · 전구역 : 3개소	결정도 참조
	대지안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 준용	·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의 규정 준용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H101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간선변 : 1개소(폭8m이상,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 폐지	결정도 참조
	보차혼용 통로	· 24시간 일반인 및 차량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전구역 : 1개소(폭6~8m, 건축한계선)	· 폐지	결정도 참조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 불허 ·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 불가 필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로 차량진입을 불허함	결정도 참조
주차출입구		·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 간선변 : 사가정길변 1개소(이면부에서 주차출입이 가능한 일부필지에 지정)	· 간선부에 면한 대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봄 · 간선변 : 4개소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출입구		-	· 연결한 대지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차출입구 설치 · 간선변 : 3개소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	· 대상 필지 : 전농동 35-3, 전농동 295-101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한 위 대상 필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 - 100% 완화 : 개방화장실 설치 및 1층 전용면적의 80% 이상 권장용도 설치 시 · 단, 대상 필지가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하는 경우 제외	결정도 참조
주차장 설치방식		·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함	·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함	

- 이하 여백 -

4)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조서 : 폐지

구 분	도면표시	위치	대지면적(㎡)	면적(㎡)	비고
기 정	특별계획구역3	0-25	15	5,909	· 답십리동 소재 지번 : 97-2, 97-18, 97-19 · 부분편입 : 25-5전
		14-41	31		
		15-1	36		
		15-2	135		
		15-3	145		
		15-27	17		
		15-31	50		
		15-33	86		
		15-34	117		
		15-35	23		
		15-37	17		
		15-38	63		
		15-39	85		
		15-42	221		
		15-45	99		
		15-46	336		
		15-48	41		
		16-13	100		
		16-14	117		
		16-23	39		
		25-1	556		
		25-4	464		
		25-5	3		
		25-6	224		
		25-7	16		
		25-8	192		
		25-9	215		
		25-10	304		
		25-11	96		
		25-12	137		
		26-9	128		
		26-10	83		
		26-11	192		
		26-12	126		
		26-13	334		
		26-14	96		
		26-15	321		

구 분	도면표시	위치	대지면적(㎡)	면적(㎡)	비고
		26-16	96		
		26-18	165		
		26-19	13		
		27-31	13		
		97-2	126		
		97-18	127		
		97-19	60		
		산53-1	49		

※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임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조서 : 신설

구 분	도면표시	위치		대지면적(㎡)	면적(㎡)	비고
신 설	특별계획 가능구역	전농동	15-1	86	3,750	
		전농동	15-2	135		
		전농동	15-3	145		
		전농동	15-27	17		
		전농동	15-33	86		
		전농동	15-34	117		
		전농동	15-35	23		
		전농동	15-37	17		
		전농동	15-38	63		
		전농동	15-39	85		
		전농동	15-41	66		
		전농동	15-42	221		
		전농동	15-45	99		
		전농동	15-46	336		
		전농동	15-48	41		
		전농동	16-13	100		
		전농동	16-14	117		
		전농동	16-23	39		

구 분	도면표시	위치		대지면적(㎡)	면적(㎡)	비고
		전농동	25-6	224		
		전농동	25-7	16		
		전농동	25-8	192		
		전농동	25-9	215		
		전농동	25-10	304		
		전농동	25-11	96		
		전농동	25-12	137		
		전농동	26-9	128		
		전농동	26-10	179		
		전농동	26-11	192		
		전농동	26-14	96		
		전농동	26-18	165		
		전농동	27-31	13		

주1) 상기면적은 CAD구적면적이며, 향후 사업시행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주2) 특별계획가능구역 면적은 도로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임

(2)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폐지

구분			계획내용
위치			· 전농동 26-11번지 일대
면적			· 5,909㎡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8.5% 이상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a(의료시설 중 병원 제외)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준주거지역 : 3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적률(%)	· 준주거지역 : 400% 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 이하
		상한용적률(%)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최고높이	· 8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 시 완화 · 산정방식 : $\text{최고높이} \times [1 + (\text{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 \div \text{공공시설을 제공하기전의 대지면적})]$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 3m · 이면부 :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권장
	교통처리계획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쌈지형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지정 (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정대상일 경우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 적용)

주1)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주2) 사업시행시 공공공지부담계획도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용적률,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음

주3) 주거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 및 경과년수 기준을 만족해야 함

주4)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내용
위치	· 전농동 26-10번지 일대
면적	· 3,750㎡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분			계획내용
공공시설계획			· 용도지역 선 상향('07.07.05)된 면적의 10% 이상 설치 · 지침도 상 명기된 복측 도로 및 공공시설 건축물(노인여가시설 등) 기부채납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건축물 용도 결정
건축물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권장용도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b
	건폐율(%)		· 준주거지역 :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준주거지역 : 3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허용용적률(%)	· 준주거지역 : 4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 이하
		상한용적률(%)	· 준주거지역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60m 이하
		최고높이 완화	·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시 완화 · 산정방식 : $\text{최고높이} \times [1 + (\text{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text{당초 대지면적})]$ 이내 - 단, 완화된 최고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 3m, 이면부 : 2m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간선변 : 3m, 이면부 : 2m
	공개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조성

주1)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주2)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

주3)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을 계획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20.05.)' 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형 계획수립기준' 을 적용함

주4) 최고높이 완화항목은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과 중복 적용 불가

(3)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 지침(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 신설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간선변	3,000 이하	◦ 단, 간선변과 이면부가 공동개발할 경우 간선변 기준을 적용함
이면부	1,500 이하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필지	계			
1	전농동	15-2	135.0	321.0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15-3	145.0				
	전농동	15-48	41.0				
2	전농동	15-42	221.0	320.0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15-45	99.0				
3	전농동	26-9	128.0	499.0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26-10	179.0				
	전농동	26-11	192.0				
4	전농동	15-1	86.0	103.0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15-27	17.0				
5	전농동	15-33	86.0	86.0	264.0	-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15-37	17.0	102.0		공동개발(지정)	
	전농동	15-39	85.0			공동개발(지정)	
	전농동	15-38	63.0	76.0		공동개발(지정)	
	전농동	27-31	13.0				
6	전농동	15-34	117.0	217.0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16-13	100.0				
7	전농동	16-14	117.0	156.0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16-23	39.0				
8	전농동	25-6	224.0	631.0		공동개발(권장)	
	전농동	25-8	192.0				
	전농동	25-9	215.0				

주) 상기면적은 CAD구적면적이며, 향후 사업시행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불허용도	권장용도	비 고
간선변	불허용도 A	권장용도 a	-
이면부	불허용도 A	권장용도 b	-

■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 허용 / 상한)	최고높이	비 고
준주거지역	60% 이하	300% / 400%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50m	결정도 참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200% / 200% / 400%	50m	결정도 참조

- 주1)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한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주2) 특별계획가능구역에서 제척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필지는 용도지역 선 상향지(서고 제2007-215호, '07.7.5.)로 기존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200%/230%/2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200%/200%/400%)

■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 지정된 대지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벽면과 부속시설이 건축한계선 넘을 수 없음 - 간선변 3m - 이면부 1m	결정도 참조
1층부 형태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3~4m로 하되, 연접대지내 기존 건축물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투시벽 설치 : 간선도로변 1층 벽면의 50% 이상 · 투시형 셔터 설치 : 간선도로변의 1층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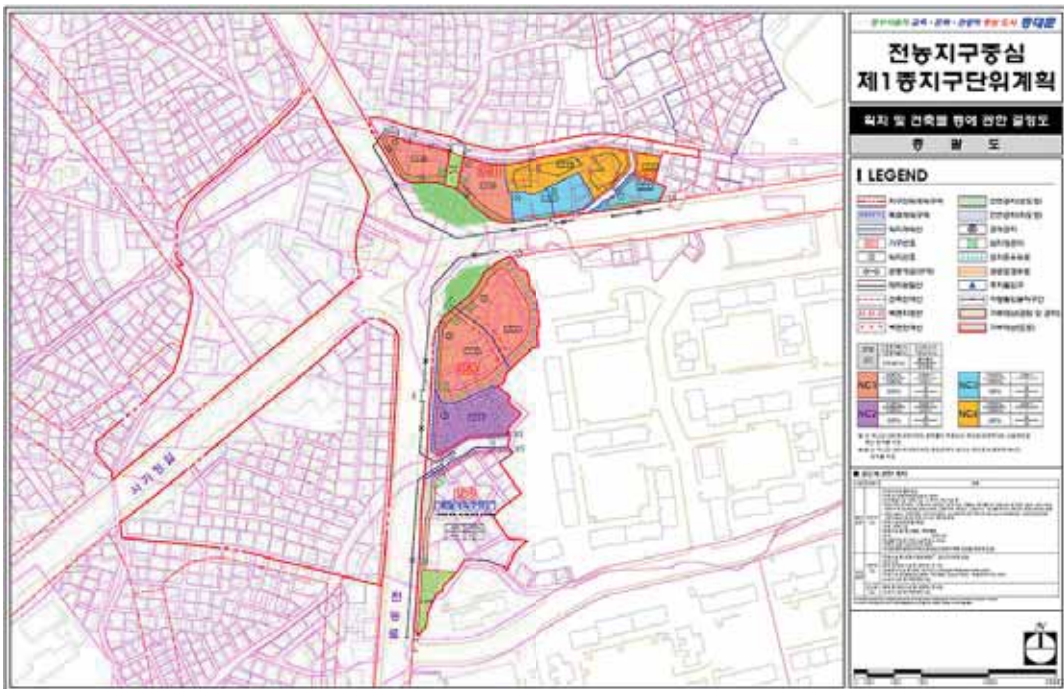
■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 간선변 3m · 차도형 전면공지 : 이면부 1m · 조성지침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기 조성된 공공부분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 인접 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 재료로 포장 - 건축물 신축 시 개발 주체가 조성	결정도 참조
대지안의 조정	·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의 규정 준용	결정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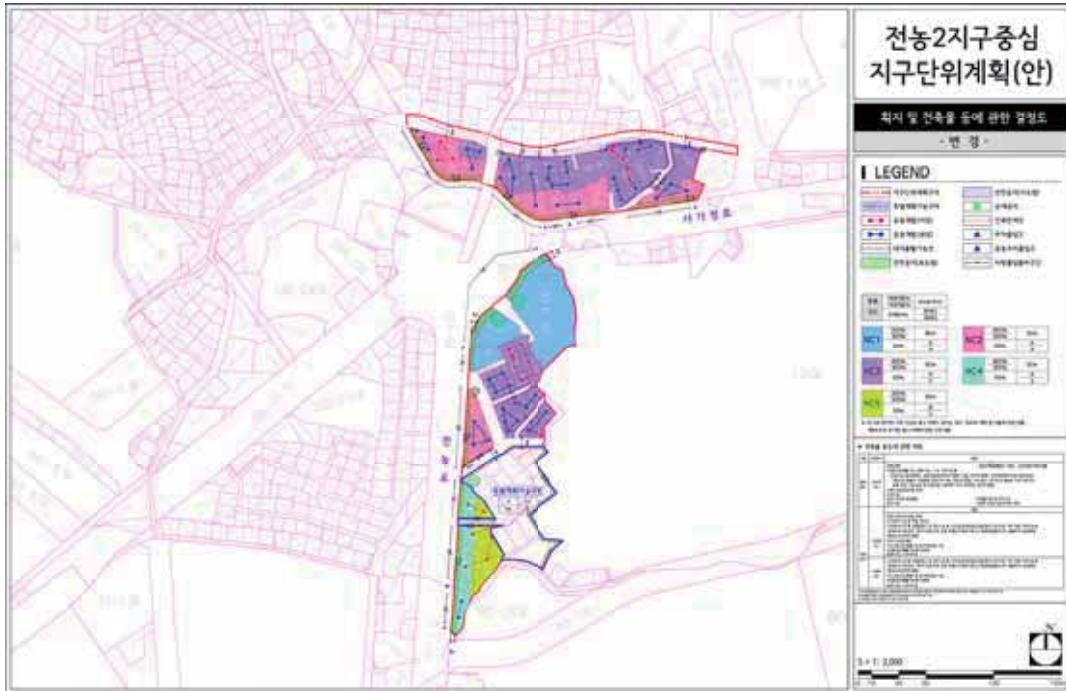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신설·폐지 포함)의 변경
3.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4. 차량출입구 위치 변경 및 그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6. 법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도>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2127-4947)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끝.

은평구공고 제2022 - 389호

도시계획시설(서오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103호(2004.4.10.)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2022-71호(2022.2.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오릉근린공원에 대하여 앵봉산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3일

은 평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서오릉근린공원

나.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382 일대

다. 면 적 : 58,509.5㎡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의 내용

－ 서오릉 근린공원(변경) 총괄

1) 부지면적(총괄) : 58,059.5㎡ → 57,579.7㎡

2) 지구명칭 변경 : 방아다리지구 → 앵봉산 가족캠핑장

3) 면적 변경 : 12,521.2㎡ → 11,591.4㎡

－ 앵봉산 가족캠핑장(변경) 세부

1) 기반시설(도로) : 1,060.5㎡ → 1,587.0㎡

2) 조경시설 : 0㎡ → 108.7㎡

3) 휴양시설 : 53.64㎡ → 1,745.7㎡

4) 유흥시설 : 0㎡ → 175.7㎡

5) 운동시설 : 42.25㎡ → 0㎡

6) 편익시설 : 22.80㎡ → 615.9㎡

7) 관리시설 : 0㎡ → 62.1㎡

8) 녹지 및 기타 : 11,341.92㎡ → 7,296.3㎡

※ 세부조서 및 도면 별첨 참조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사.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오릉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서오릉 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기 정(서오릉 도시자연공원)					구분	변 경(서오릉 근린공원)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58,509.50	14,253.90	3	351.26	351.26	56	계	57,579.70	17,419.72	4	480.66	480.66	56	감 929.80㎡
	58,509.50	14,253.90	3	351.26	351.26	56	소계	57,569.70	17,369.71	4	480.66	480.66	56	감 929.80㎡
	21,426.70	6,893.13	2	328.46	328.46	36	탐골 지구	21,426.70	6,943.13	2	328.46	328.46	36	합산 오류 정정
	12,521.20	1,179.28	1	22.80	22.80	4	방아다리 지구	11,591.40	4,295.10	2	152.20	152.20	4	감 929.80㎡
	278.00	-	-	-	-	-	갈현3 지구	278.00	-	-	-	-	-	
공원시설구 역	11,050.60	479.60	-	-	-	6	갈현2 지구	11,050.60	479.60	-	-	-	6	
	13,233.00	5,701.89	-	-	-	10	갈현1 지구	13,233.00	5,701.89	-	-	-	10	
	-	-	-	-	-	-	시설지구외	-	-	-	-	-	-	
시설율 (법정40%)	14,253.90 / 58,509.50 x 100 = 24.36%					17,419.72 / 57,569.70 x 100 = 30.26%								
건폐율 (법정15%)	351.26 / 58,509.50 x 100 = 0.60%					480.66 / 57,569.70 x 100 = 0.83%								

나. 시설별 총괄표(시설지구)

구 분	기 정(서울특별시자연공원)					변 경(서울시 근린공원)					비고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253.90	3	351.26	351.26	56	17,419.72	4	480.66	480.66	56	증)3,165.82㎡
기본 시설	소계	-	-	-	13	7,504.98				13	증)526.41㎡
	도로	(5,572.55)	-	-	-	(6,098.96)					증)526.41㎡
	광장	(1,406.02)	-	-	13	(1,406.02)				(13)	
조경시설	1,707.68	-	-	-	5	1,816.38				7	증)108.7㎡
휴양시설	2,109.45	-	-	-	12	3,801.51				10	증)1,692.06㎡
유흥시설	-	-	-	-	-	175.70				2	증)175.70㎡
운동시설	1,505.80	-	-	-	7	1,463.55				5	감)42.25㎡
교양시설	1,551.60	1	177.66	177.66	7	1,551.60	1	177.66	177.66	7	
편익시설	250.00	1	22.80	22.80	-	893.10	1	90.10	90.10		증)643.10㎡
관리시설	150.80	1	150.80	150.80	-	212.90	2	212.90	212.90		증)62.10㎡
특지및기타	-	-	-	-	12					12	-

다. <변경> 지구별 세부조서
1-1 서오릉 근린공원 탐골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탐골지구)						변 경(탐골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1,426.70	6,893.13	2	328.46	328.46	36	21,426.70	6,943.13	2	328.46	328.46	36	합산오류정정
기 반 시 설	소계	3,781.10	-	-	-	-	3,781.10	3,781.10	-	-	-	-	
	도로	(3,626.64)	(3,626.64)	-	-	-	(3,626.64)	(3,626.64)	-	-	-	-	
	광장	(154.46)	(154.46)	-	-	-	(154.46)	(154.46)	-	-	-	-	
조경시설	817.70	817.70	-	-	-	5	817.70	817.70	-	-	-	5	
휴양시설	314.90	314.90	-	-	-	9	314.90	314.90	-	-	-	9	
유흥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49.83	49.83	-	-	-	5	49.83	49.83	-	-	-	5	
교양시설	1,551.60	1,551.60	1	177.66	177.66	7	1,551.60	1,551.60	1	177.66	177.66	7	
편익시설	227.20	227.20	-	-	-	-	227.20	227.20	-	-	-	-	
관리시설	150.80	150.80	1	150.80	150.80	-	150.80	150.80	1	150.80	150.80	-	
복지 및 기타	14,533.57	-	-	-	-	10	14,533.57	-	-	-	-	10	

1-2 서오릉 근린공원 탐골지구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기 정(탐골지구)							변 경(탐골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21,426.70	6,893.13	-	2	328.46	328.46	36			21,426.70	6,943.13	-	2	328.46	328.46	36	합산오류정정
	소 계			3,781.10	3,781.10	-	-	-	-	-			3,781.10	3,781.10	-	-	-	-	-	
	도로		-	3,626.64	3,626.64	-	-	-	-	-		-	3,626.64	3,626.64	-	-	-	-	-	
	광 장	가	-	154.46	154.46	-	-	-	-	-	가	-	154.46	154.46	-	-	-	-	-	
		가-1	진관동 387	118.56	118.56	-	-	-	-	-	가-1	진관동 387	118.56	118.56	-	-	-	-	-	
조 경 시 설		가-2	진관동 산62-1	35.90	35.90	-	-	-	-	-	가-2	진관동 산62-1	35.90	35.90	-	-	-	-	-	
	소 계			817.70	817.70	-	-	-	-	-			817.70	817.70	-	-	-	-	-	
	관상용 식수대 (자생초 화원)	나	진관동 387-3	719.00	719.00	-	-	-	-	5	나	진관동 387-3	719.00	719.00	-	-	-	-	5	
		다	진관동 산63-4	98.70	98.70	-	-	-	-	-	다	진관동 산63-4	98.70	98.70	-	-	-	-	-	
	소 계			314.90	314.90	-	-	-	-	9			314.90	314.90	-	-	-	-	9	
후 향 시 설		라	-	314.90	314.90	-	-	-	-	9	라	-	314.90	314.90	-	-	-	-	9	
	휴게소	라-1	진관동 387	22.20	22.20	-	-	-	-	1	라-1	진관동 387	22.20	22.20	-	-	-	-	1	
		라-2	진관동 387	22.20	22.20	-	-	-	-	1	라-2	진관동 387	22.20	22.20	-	-	-	-	1	

구	분	시설명	기 정(탑골지구)										변 경(탑골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라-3	진관동 387	22.20	22.20	-	-	-	-	1	라-3	진관동 387	22.20	22.20	-	-	-	-	1	
			라-4	진관동 390	45.40	45.40	-	-	-	-	1	라-4	진관동 390	45.40	45.40	-	-	-	-	1	
			라-5	진관동 390	24.20	24.20	-	-	-	-	1	라-5	진관동 390	24.20	24.20	-	-	-	-	1	
			라-6	진관동 388	38.00	38.00	-	-	-	-	1	라-6	진관동 388	38.00	38.00	-	-	-	-	1	
			라-7	진관동 387-3	26.00	26.00	-	-	-	-	2	라-7	진관동 387-3	26.00	26.00	-	-	-	-	2	
			라-8	진관동 388-5	29.70	29.70	-	-	-	-	-	라-8	진관동 388-5	29.70	29.70	-	-	-	-	-	
			라-9	진관동 산61	72.50	72.50	-	-	-	-	1	라-9	진관동 산61	72.50	72.50	-	-	-	-	1	
			라-10	진관동 산61	12.50	12.50	-	-	-	-	-	라-10	진관동 산61	12.50	12.50	-	-	-	-	-	
			소 계		49.83	49.83	-	-	-	-	5			49.83	49.83	-	-	-	-	5	
			안남동	시정	체력 단련장		-	49.83	49.83	-	-	-	-	5		-	49.83	49.83	-	-	
마-1	진관동 388-5	19.35				19.35	-	-	-	-	2	마-1	진관동 388-5	19.35	19.35	-	-	-	-	2	
마-2	진관동 388-5	14.57				14.57	-	-	-	-	1	마-2	진관동 388-5	14.57	14.57	-	-	-	-	1	
마-3	진관동 388-5	10.30				10.30	-	-	-	-	1	마-3	진관동 388-5	10.30	10.30	-	-	-	-	1	

구분	시설명	기 정(탑골지구)										변 경(탑골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마-4	진관동 388-5	5.61	5.61	-	-	-	-	1	마-4	진관동 388-5	5.61	5.61	-	-	-	1	
	소 계			1,551.60	1,551.60	-	1	177.66	177.66	7			1,551.60	1,551.60	177.66	177.66	7		
교 양 시 설	식물원 (자연 학습장)	바	진관동 390	1,264.60	1,264.60	-	-	-	-	7	바	진관동 390	1,264.60	1,264.60	-	-	-	7	
	전시장 (목공 전시장)	사	진관동 산63-4	287.00	287.00	-	1	177.66	177.66	-	사	진관동 산63-4	287.00	287.00	177.66	177.66	-		
	소 계			227.20	227.20	-	-	-	-	-			227.20	227.20	-	-	-	-	
편 의 시 설		아	-	227.20	227.20	-	-	-	-	-	아	-	227.20	227.20	-	-	-	-	
	주차장	아-1	진관동 387	98.60	98.60	-	-	-	-	-	아-1	진관동 387	98.60	98.60	-	-	-	-	
		아-2	진관동 387-3	59.10	59.10	-	-	-	-	-	아-2	진관동 387-3	59.10	59.10	-	-	-	-	
		아-3	진관동 388	69.50	69.50	-	-	-	-	-	아-3	진관동 388	69.50	69.50	-	-	-	-	
	소 계			150.80	150.80	-	1	150.80	150.80	-			150.80	150.80	150.80	150.80	-		
	관리 사무소	1	진관동 387	150.80	150.80	-	1	150.80	150.80	-	1	진관동 387	150.80	150.80	150.80	150.80	-		
	소 계			14,533.57	14,533.57	-	-	-	-	10			14,533.57	14,533.57	-	-	-	10	
	복지		-	14,533.57	14,533.57	-	-	-	-	10		-	14,533.57	14,533.57	-	-	-	10	

1-3 서오릉 근린공원 탐골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1,261.30	3,626.64				
기정	소 로	계			360.98	1,901.33				
기정		3류	3-1	6.0	20.69	126.39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1	
기정		3류	3-2	4.0-7.8	257.64	1,372.5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기정		3류	3-3	4.0-14.0	21.65	102.64	진입로	소로 3-2	공원경계	
기정		3류	3-3	3.8-7.0	61.00	299.7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21	
기정	산책로	계			900.32	1,725.31				
기정			1	1.2-2.0	112.74	226.1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기정			2	1.0	31.38	32.4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기정			3	1.5	40.30	60.88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5	
기정			4	1.5	12.51	18.83	연결로	광장,가-1	산책로 5	
기정			5	2.5	100.52	251.54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기정			6	2.0	17.66	51.14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10	
기정			7	3.0	10.50	35.27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0	
기정			8	1.5-4.0	19.51	32.89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기정			9	1.5	26.22	45.58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10	2.5	102.69	257.13	산책로	산책로 12	소로 3-2	
기정			11	1.5-4.0	26.22	68.33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기정			12	2.0	121.65	243.70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0	
기정			13	2.0-4.0	5.23	11.65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 12	
기정			14	1.5-9.5	15.33	33.71	산책로	산책로 10	산책로 12	
기정			15	1.2	76.23	95.61	연결로	주차장 아-3	소로 3-2	
기정			16	1.7	6.94	11.87	산책로	소로 3-2	녹지대	
기정			17	1.0-3.5	9.78	11.41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9	
기정			18	1.2	47.00	97.72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기정			19	1.2	30.97	37.15	진입로	녹지대	산책로 16	
기정			20	1.0	23.20	25.21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1	
기정			21	1.2	63.84	77.11	연결로	소로 3-4	휴게소 라-10	

2-1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변경)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방아다리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2,521.20	1,179.28	1	22.80	22.80	4	11,591.4	4,295.1	2	152.2	152.2	4	감)929.81㎡
	1,060.59	1,060.59	-				1,587.0	1,587.0	-	-	-	-	증)526.40㎡
	(1,060.59)	(1,060.59)	-				(1,587.0)	(1,587.0)	-	-	-	-	
조경시설	-	-	-				108.7	108.7	-	-	-	2	신규 증)108.70㎡
휴양시설	53.64	53.64	-			2	1,745.7	1,745.7	-	-	-	-	증)1,692.06㎡
유흥시설	-	-	-			2	175.7	175.7	-	-	-	2	신규 증)175.7㎡
운동시설	42.25	42.25	-				-	-	-	-	-	-	폐지 감)42.25㎡
편익시설	22.80	22.80	1	22.80	22.80		615.9	615.9	1	90.1	90.1	-	증)593.1㎡
관리시설	-	-	-				62.1	62.1	1	62.1	62.1	-	신규 증)62.1㎡
녹지 및 기타	11341.92	-	-				7,296.3	-	-	-	-	-	감)4,045.62㎡

2-2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변경)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방아다리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시설	합계			12,521.20	1,179.28	-	1	22.80	22.80	4			11,591.40	4,295.10		480.66	480.66	4	감)929.81㎡
	소계			1,060.59	1,060.59	-	-	-	-	-			1,587.0	1,587.0					증)526.40㎡
	도로		-	1,060.59	1,060.59	-	-	-	-	-			1,587.0	1,587.0					
조경시설	소계					-	-	-	-	-			108.7	108.7				2	증)108.7㎡
	건천		-	-	-	-	-	-	-	-	나		108.7	108.7					신규
	안내판										①							1	신규
	가벽										②							1	신규
휴양시설	소계			53.64	53.64	-	-	-	-	2			1,745.7	1,745.7					증)1,692.06㎡
	가		-	53.64	53.64	-	-	-	-	2									감)53.64㎡
	가-1	진관동 382-2		36.00	36.00	-	-	-	-	1									폐지
	가-2	진관동 384-1		17.64	17.64	-	-	-	-	1									폐지
											가		1,745.7	1,745.7					증)1,745.7㎡
											가-1		63.0	63.0					신규
											가-2		62.2	62.2					신규
											가-3		63.2	63.2					신규
											가-4		53.6	53.6					신규
											가-5		63.8	63.8					신규
야영장											가-6		62.7	62.7					신규
											가-7		62.0	62.0					신규
											가-8		52.0	52.0					신규

구	관	시 설 명	기 정									변 경(방이다리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하 양 시 설	이영장									가-9		52.0	52.0						신규		
										가-10		51.3	51.3						신규		
										가-11		49.3	49.3						신규		
										가-12		51.0	51.0						신규		
										가-13		63.4	63.4						신규		
										가-14		59.4	59.4						신규		
										가-15		53.8	53.8						신규		
										가-16		64.1	64.1						신규		
										가-17		65.4	65.4						신규		
										가-18		65.6	65.6						신규		
										가-19		58.0	58.0						신규		
										가-20		65.5	65.5						신규		
										가-21		65.2	65.2						신규		
										가-22		64.8	64.8						신규		
										가-23		68.3	68.3						신규		
										가-24		64.6	64.6						신규		
										가-25		67.2	67.2						신규		
										가-26		64.9	64.9						신규		

유 양 시 정

이영장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방이다리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가)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구모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가)
												가-27		46.8	46.8						신규
												가-28		42.7	42.7						신규
												가-29		41.6	41.6						신규
												가-30		38.3	38.3						신규
유 회 시 설		소 계			42.25	42.25	-	-	-	-	2			175.7	175.7					2	증)175.7㎡
		놀이터						-	-	-	2	다		175.7	175.7						신규
		조함 놀이대										③								1	신규
		미끄럼틀										④								1	신규
안 논 용 시 설		소 계			42.25	42.25	-	-	-	-	2										감)42.25㎡
		체력 단련장	나	진관동 382-2	42.25	42.25	-	-	-	-	2										
편 인 시 설		소 계			22.80	22.80	-	1	22.80	22.80	-			615.9	615.9			90.1	90.1		증)593.1㎡
		화장실	1	진관동 382-1	22.80	22.80	-	1	22.80	22.80	-	1		90.1	90.1			90.1	90.1		증)67.3㎡
		주차장										라		525.8	525.8						신규
관 리 시		소 계												62.1	62.1			62.1	62.1		증)62.1㎡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방이다리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γ)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γ)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설	관리 사무소										2		62.1	62.1			62.1	62.1		신규
녹지 및 기타	소계			11,341.92	-	-	-	-	-	-	-		7,296.3							합계 14,045.62 ㎡
	누계			11,341.92	-	-	-	-	-	-	-		7,296.3							

2-3 서오릉 근린공원 방아다리지구(변경) 도로조서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합계			509.70 551.10	1,060.59 1,587.00				
당초 변경		소로 소계			80.20 286.5	405.69 1,146.0				
당초 변경	소로	3류	3-1	2.5-4.0	65.2	291.68	진입로	공원경계	화정실 1	
당초 폐지		3류	3-2	4.0	286.5	1,146.0	진입/순환로	공원경계	소로 3-1	
당초 폐지				7.0	15.0	114.01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당초 변경		산책로 소계			429.50 264.60	654.90 441.00				
당초 변경		1		2.0	185.0	332.0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변경				1.5	69.0	103.5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변경	산책로	2		1.2	25.9	31.69	연결로	산책로 1	체력단련장 나	
당초 변경				1.5	55.4	83.1	연결로	소로 3-1	소로 31-	
당초 변경		3		1.2-1.5	65.0	89.9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변경				2.0-4.7	26.8	99.3	연결로	소로 3-1	소로 31-	
당초 변경		4		1.2	7.8	9.95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 가-1	
당초 변경				1.2	28.2	33.8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3	
당초 변경		5		1.2	29.8	36.21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0	
당초 변경				1.2	22.2	33.3	연결로	산책로 4	소로 3-1	
당초 변경		6		1.5	29.5	45.0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초 변경				1.5	16.4	24.6	연결로	소로 3-1	야영장 가-12	

구 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단조			7	1.5	10.6	17.52	연결로	신책로 6	신책로 6	
변경				1.4~1.8	14.8	21.6	연결로	소로 3-1	아영장 가-19	
단조			8	1.0	13.4	14.30	연결로	신책로 1	신책로 1	
변경				1.5	9.1	13.6	연결로	소로 3-1	아영장 가-27	
단조			9	1.0	17.2	18.07	연결로	신책로 1	신책로 1	
변경				1.5	9.9	14.9	연결로	소로 3-1	아영장 가-30	
단조			10	1.2	37.6	48.13	연결로	신책로 1	휴게소 가-2	
변경				1.0~1.5	12.8	13.3	연결로	소로 3-1	늘이터 다	
단조			11	1.2	7.7	11.94	연결로	신책로 1	휴게소 가-2	
폐지										

3-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갈현3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탕)	바다면적 (㎡)	연면적 (㎡)				바다면적 (㎡)	연면적 (㎡)			
계	278.00	-	-	-	-	-	278.00	-	-	-	-	-	
녹지 및 기타	278.00	-	-	-	-	-	278.00	-	-	-	-	-	

3-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갈현3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건 축물 연면적 (㎡)	고잔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건 축물 연면적 (㎡)
부지및기타	합계			278.00	-	-	-	-	-	-			278.00	-	-	-	-	-	-
	소계			278.00	-	-	-	-	-	-			278.00	-	-	-	-	-	-
	특지				-	-	-	-	-	-			278.00	-	-	-	-	-	-

3-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3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리뷰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해당사항없음										

4-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갈현2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050.60	479.60	-	-	-	6	11,050.60	479.60	-	-	6
기 반 시 설	소계	479.60	-	-	-	4	479.60	479.60	-	-	4
	도로	(245.60)	-	-	-	-	(245.60)	(245.60)	-	-	-
	광장	(234.00)	-	-	-	4	(234.00)	(234.00)	-	-	4
복지 및 기타	10,571.00	-	-	-	-	2	10,571.00	-	-	-	2

4-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								변경(갈현2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합계					11,050.60	479.60	-	-	-	6			11,050.60	479.60	-	-	-	6	
					479.60	479.60	-	-	-	4			479.60	479.60	-	-	-	4	
기반시설				-	(245.60)	(245.60)	-	-	-	-		-	(245.60)	(245.60)	-	-	-	-	
			가	갈현동 신49-22	(234.00)	(234.00)	-	-	-	4	가	갈현동 신49-22	(234.00)	(234.00)	-	-	-	-	4
복지및기타				-	10,571.00	-	-	-	-	2		-	10,571.00	-	-	-	-	2	
				-	10,571.00	-	-	-	-	2		-	10,571.00	-	-	-	-	-	2

4-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2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계				138.00	245.60				
신설			계		138.00	245.60				
신설	산책로		1	1.2	38.0	45.60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2	2.0	100.0	200.00	산책로	공원경계	관장가	

5-1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총괄표

구 분	기 정(갈현지구)						변 경(갈현1지구)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반 시 설	계	13,233.00	5,701.89	-	-	10	13,233.00	5,701.89	-	-	-	10		
	소계	1,657.28	1,657.28	-	-	9	1,657.28	1,657.28	-	-	-	9		
		도로	(639.72)	(639.72)	-	-	-	(639.72)	(639.72)	-	-	-	-	
		광장	(1,017.56)	(1,017.56)	-	-	9	(1,017.56)	(1,017.56)	-	-	-	9	
조경시설	889.98	889.98	-	-	-	889.98	889.98	-	-	-	-			
휴양시설	1,740.91	1,740.91	-	-	-	1	1,740.91	1,740.91	-	-	-	1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1,413.72	1,413.72	-	-	-	-	1,413.72	1,413.72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복지 및 기타	7,531.11	-	-	-	-	-	7,531.1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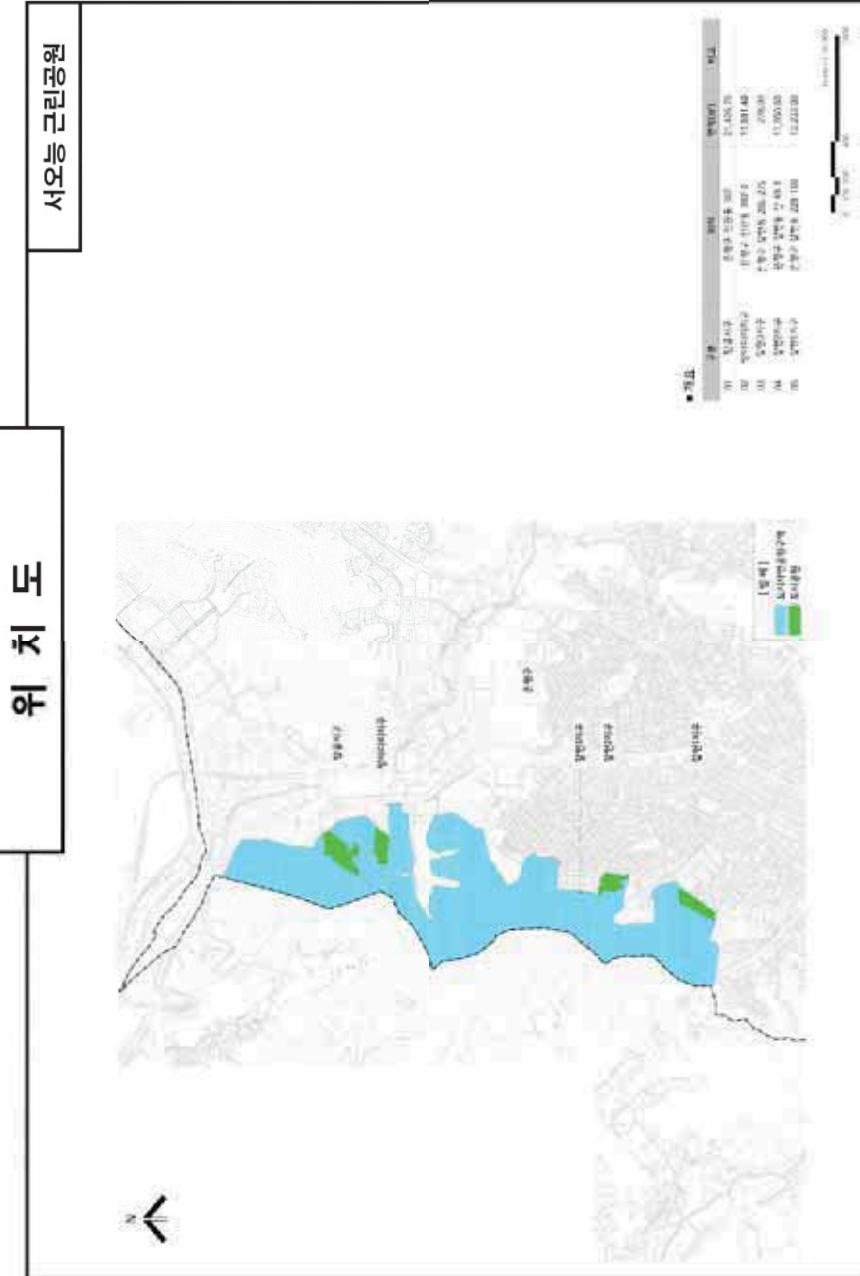
5-2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기정(갈현지구)							변경(갈현지구)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시설	합계			13,233.00	5,701.89	-	-	-	10			13,233.00	5,701.89	-	-	-	10	
	소계			1,657.28	1,657.28	-	-	-	9			1,657.28	1,657.28	-	-	-	9	
	도로		-	639.72	639.72	-	-	-	-		-	639.72	639.72	-	-	-	-	
	광장	가	-	1,017.56	1,017.56	-	-	-	9	가	-	1,017.56	1,017.56	-	-	-	9	
	진입광장	가-1	갈현동 228-61	428.70	428.70	-	-	-	1	가-1	갈현동 228-61	428.70	428.70	-	-	-	1	
조경시설	다목적광장	가-2	갈현동 228-100	588.86	588.86	-	-	-	8	가-2	갈현동 228-100	588.86	588.86	-	-	-	8	
	소계			889.98	889.98	-	-	-	-			889.98	889.98	-	-	-	-	
	잔디밭	나	갈현동 228-61	37.88	37.88	-	-	-	-	나	갈현동 228-61	37.88	37.88	-	-	-	-	
	초화원	다	갈현동 228-61	852.10	852.10	-	-	-	-	다	갈현동 228-61	852.10	852.10	-	-	-	-	
	소계			1,740.91	1,740.91	-	-	-	1			1,740.91	1,740.91	-	-	-	1	
휴양시설	휴게데크	라	갈현동 228-16	92.10	92.10	-	-	-	1	라	갈현동 228-16	92.10	92.10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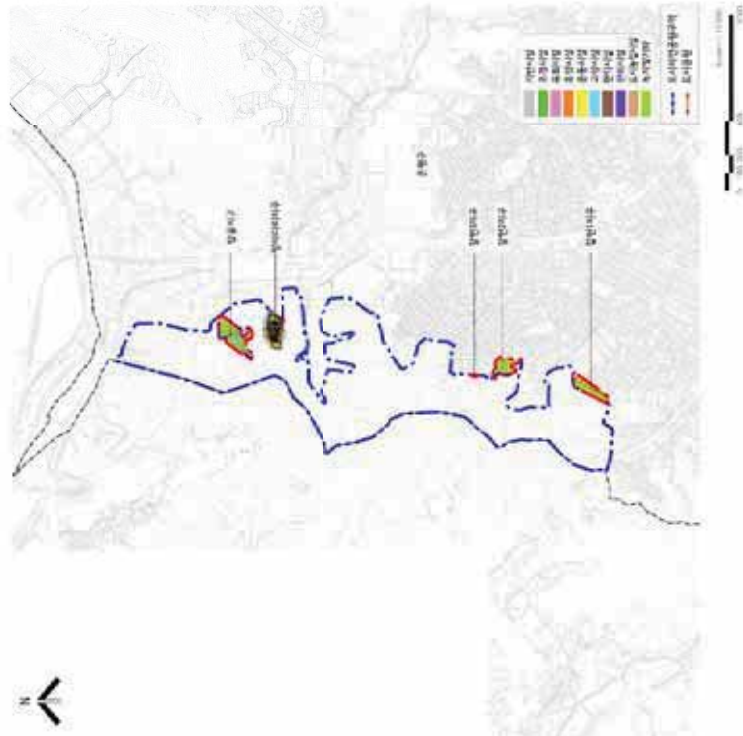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영	기 정(갈현지구)									변 경(갈현지구)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휴게소	갈현동 228-100	1,648.81	1,648.81	-	-	-	-	-	마	갈현동 228-100	1,648.81	1,648.81	-	-	-	-	-	-	
					소 계			1,413.72	1,413.72	-	-	-	-	-		1,413.72	1,413.72	-	-	-	-	-	-	
					테니스장	바	1,413.72	1,413.72	1,413.72	-	-	-	-	-	갈현동 228-100	1,413.72	1,413.72	-	-	-	-	-	-	
					소 계		7,531.11	7,531.11	-	-	-	-	-	-		7,531.11	-	-	-	-	-	-	-	
					녹지	-	-	-	-	-	-	-	-	-	-	7,531.11	-	-	-	-	-	-	-	

5-3 서오릉 근린공원 갈현1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단초	합계				215.83	639.72				
변경					215.83	639.72				
단초	산책로			계	215.83	639.72				
변경					215.83	639.72				
신설	산책로		1	2.8	212.30	631.45	진입로	잔디밭 다	광장 가-2	
신설			2	2.0-2.7	3.53	8.27	산책로	공원 경계	베드민턴장 바	



서울능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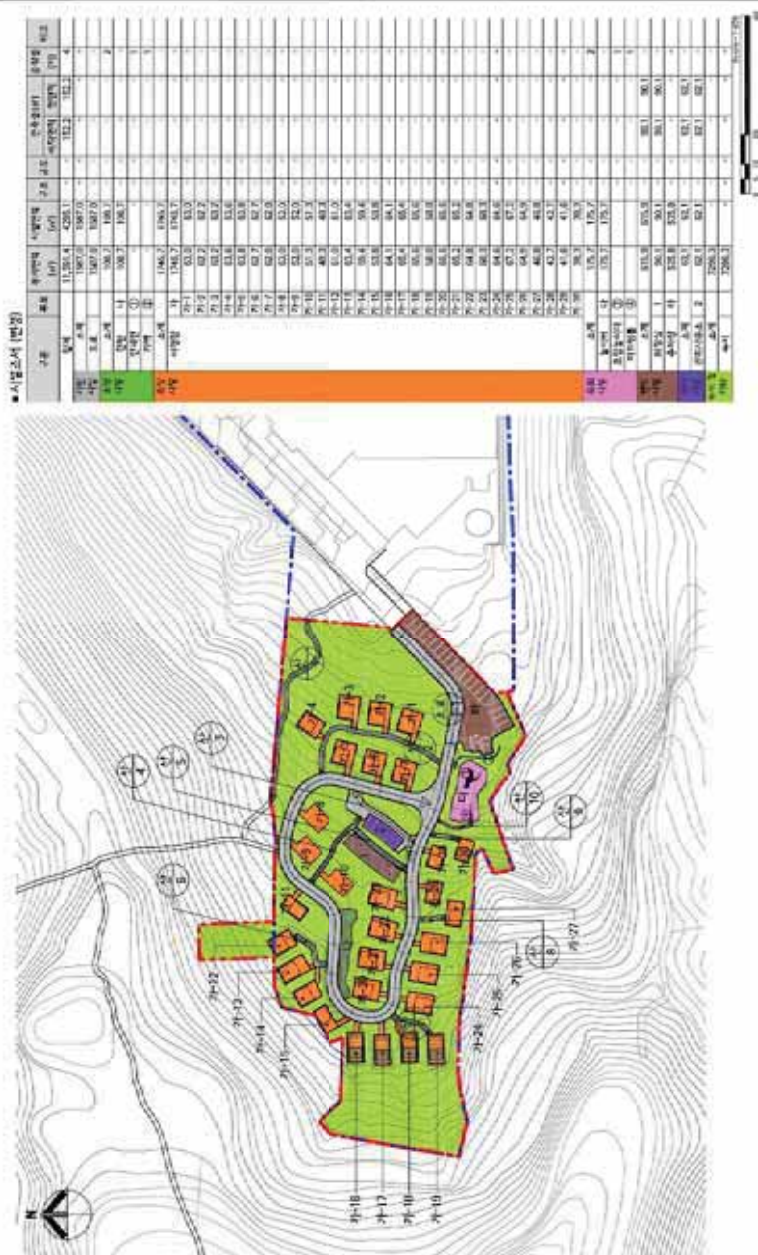
● 면적표

구분	총계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1. 녹지보전지	59,806.04	71,653.72	11,079.40	279.10	11,063.01
2. 녹지보전지	87,019.72	1,073.17	4,251.70	-	479.01
3. 녹지보전지	7,618.20	3,781.11	3,837.10	-	479.01
4. 녹지보전지	6,408.86	1,626.64	1,801.00	-	245.66
5. 녹지보전지	1,402.20	754.44	-	-	279.00
6. 녹지보전지	1,004.20	817.70	186.50	-	1,014.56
7. 녹지보전지	2,001.21	214.80	1,786.41	-	800.00
8. 녹지보전지	176.20	-	176.20	-	1,796.10
9. 녹지보전지	1,063.50	49.60	-	-	1,412.72
10. 녹지보전지	1,511.60	1,511.60	-	-	-
11. 녹지보전지	893.10	277.20	615.90	-	202.30
12. 녹지보전지	232.20	155.60	42.10	-	-
13. 녹지보전지	43,209.90	14,113.55	6,766.30	75.00	11,579.05
14. 녹지보전지	6,513.10	-	-	-	-
15. 녹지보전지	400.00	238.40	111.20	-	-
16. 녹지보전지	400.00	238.40	111.20	-	-
17. 녹지보전지	150	76	0	-	0
18. 녹지보전지	-	-	-	-	-
19. 녹지보전지	-	-	-	-	-
20. 녹지보전지	-	-	-	-	-

● 면적비율 : 1/4000 (1:1/4000) = 1:2000
 ● 면적비율 : 1/4000 (1:1/4000) = 1:2000

조성계획도 [변경후]

방아다리지구





조성계획도

같은 1지구



은평구공고 제2022 - 401호

진관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진관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3월 3일

은 평 구 청 장

■ 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안)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72-5

나. 계약면적 : 3,372㎡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 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따로붙임[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및 문의처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03)

붙임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4. 6.>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 외 1명을 “토지소유자” 라 정하고, 은평구청장을 “공원관리청”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72-5	임야	3,372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 (무상사용인 경우)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 (유상사용인 경우)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부지사용료 지급방법) 부지사용료는 최초 입금일은 ○○○○년 ○○월 ○○일로 하고, 계약 후 1년 단위(1년 미만 단위는 그 계약기간만큼을 계산)로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계약서에 본조 삭제).

부지사용료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6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7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구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

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8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9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10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부지사용료를 유상으로 하는 경우 본조 삭제).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2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4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5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7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은평구청장) (인)

구로구공고 제2022 - 390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열람공고

1. 구로구 오류동 산43-31 ~ 온수동 45-5간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5)

구로구청홈페이지(<http://guro.go.kr>→고시·공고),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

1)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신설	-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오류동 산43-31	온수동 45-5	489m 터널 폭3.3m×연장448m (지하 45.5~65.0m) 관로 폭1.0m×연장 41m (지하 1.5m 이상)	1,550	-	

2) 결정사유

- 대흥·성원·동진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중, 사업지 상부를 통과하고 있는 가공 송전선로를 지중화, 대심도 터널형 송전선로로 변경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하고자 함.

라. 관련도서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사항

-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도



구로구공고 제2022 - 430호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7호(2016.03.31.)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구로구청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어린이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

다. 면 적 : 1,651.00㎡

2. 조성계획 결정(최초)

가. 목 적 :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 현황과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외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구로구청 녹색도시과(☎02-860-2321)

6.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651.00	987.10				38	
공 원 시 설	소 계		987.10				38	
	기 반 시 설	소계	397.60				-	
		광장	37.60				-	
		도로	360.00				-	
	휴양시설		151.30				9	
	유희시설		370.30				7	
	운동시설		67.90				5	
	관리시설		-				17	
	녹지 및 기타		663.90				-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 적	연 면적		
합계				1,651.00	987.10					38	
기 반 시 설	계			397.60	397.60					-	
	광 장	가	부지내	37.60	37.60					-	
	도 로		"	360.00	360.00					-	
휴 양 시 설	계			151.30	151.30					9	
	휴게소	나	부지내	151.30	151.30					-	
	휴게소-1	나-1	"	(58.60)	(58.60)					-	
	휴게소-2	나-2	"	(8.90)	(8.90)					-	
	휴게소-3	나-3	"	(8.10)	(8.10)					-	
	휴게소-4	나-4	"	(42.40)	(42.40)					-	
	휴게소-3	나-5	"	(33.30)	(33.30)					-	
	파고라	①	"	-	-	목재				1	
	스윙형벤치	②	"	-	-	목재				2	
	등의자	③	"	-	-	목재				6	파고라 하부
유 희 시 설	계			370.30	370.30					7	
	놀이터	다	부지내	370.30	370.30					-	
	조합놀이대	④	"	-	-	목재				1	
	그네	⑤	"	-	-	목재				1	
	마운딩놀이대	⑥	"	-	-	고무칩				3	
	흔들놀이대	⑦	"	-	-	목재				2	
온 동 시 설	계			67.90	67.90					5	
	체력단련장	다	부지내	67.90	67.90					-	
	체력단련시설	⑧	"	-	-	철재				5	
관 리 시 설	계			-	-					17	
	공원등	⑨	부지내	-	-	목재				9	
	CCTV	⑩	"	-	-	철재				3	
	분전함	⑪	"	-	-	철재				1	
	공원명안내판	⑫	"	-	-	목재				2	
	공원이용안내판	⑬	"	-	-	목재				1	
	경계웬스	⑭	"	-	-	목재				1	
녹지 및 기타	소계			663.90	-					-	
	녹지			663.90						-	

3.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94.4	360.0	산책로	-	-	
산책로	3	1	4.0	46.3	194.5	산책로	산-3 산책로	북측 대지경계	
산책로	3	2	1.5	14.5	24.3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	나-2 휴게소-2	
산책로	3	3	3.0	39.7	141.2	산책로	가 광장	동측 대지경계	

동작구공고 제2022 - 328호

사당동 161 - 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820-9734, fax 820-9798)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4) 기타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기타사항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내용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동작구공고 제2022-360호
**사당동 1008-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을 위한
재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773호(2021.04.29.)로 열람공고하고, 2021년 제16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021.12.29.) 심의결과(조건부가결)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8-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지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2. 3. 3. ~ 2022. 3. 17.(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재열람 사유

- 건축물 밀도계획(건축계획) 변경,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및 높이계획 결정 변경

다.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02-2133-6296)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 02-820-9747)

라. 열람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건축허가(안)

마. 사업개요

1) 공급촉진지구 개요

- 지 구 명 : 동작구 사당동 1008-1 공공지원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8-1, -15번지
- 면 적 : 1,248.9㎡

2) 지구계획 개요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관리계획사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4) 지구지정 제안자 : 강태원

바.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 02-2133-62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공고 제2022 - 455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초 구 청 장

가. 인가신청의 요지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19-3, 19-12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호남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용도변경 및 대수선)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정류장			-
대지면적	59,149.40 m ²			-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32층			-
주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
건축면적	25,756.96m ²	25,738.34m ²	- 18.62m ²	-
연 면 적	288,252.15m ²	288,322.22m ²	70.07m ²	-
용 적 륜 산정연면적	162,588.85m ²	162,658.92m ²	70.07m ²	-
건 폐 율	43.55%	43.51%	- 0.04%	-
용 적 율	274.88%	275.00%	0.12%	-
주차대수	법정(최고):2,475대	법정(최고):2,475대	-	-
	계획 :2,438대	계획 :2,459대	21대	-

- 세부시설 면적 변경

구분	시설용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존	금회
도시 계획 시설	주 시설	대합실	9,796.35	9,796.35	0.00	76.92	77.05
		승강장 (승차대기장)	실내	1,436.73	1,436.73		
			실외	536.30	536.30		
		정류장소 (승하차장)	실내	117.23	117.23		
			실외	2,224.42	2,224.42		
		사무실	1,428.32	1,428.32	0.00		
		세차장	실내	265.74	265.74		
			실외	301.23	301.23		
		박차장	13,995.69	13,995.69	0.00		
		전체공유	3,565.65	3,621.56	55.91		
	부대 시설	정비고	927.07	927.07	0.00	10.56	10.43
		주유소	210.69	210.69	0.00		
		부속시설(매표소 등)	3,441.50	3,385.59	-55.91		
		가스정압실	42.00	42.00	0.00		
	편익 시설	소화물취급소	164.38	164.38	0.00	12.52	12.52
		식당, 소매 등	5,314.75	5,314.75	0.00		
	소 계		43,768.05	43,768.05	0.00	100.00	100.00
비 도시 계획 시설	숙박시설		43,588.74	43,588.74	0.00	16.66	16.66
	판매시설		143,779.12	143,458.56	-320.56	54.97	54.84
	문화 및 집회		3,023.71	3,023.71	0.00	1.16	1.16
	업무시설		3,583.76	3,583.76	0.00	1.37	1.37
	운동시설		9,954.44	9,954.44	0.00	3.81	3.81
	창고시설		0.00	0.00	0.00	0.00	0.00
	자동차관련시설		123.93	123.93	0.00	0.05	0.05
	근린생활시설		654.72	654.72	0.00	0.25	0.25
	주차장		56,833.32	57,223.95	390.63	21.73	21.86
	소 계		261,541.74	261,611.81	70.07	100.00	100.00

※ 승강장, 정류장소, 박차장, 세차장 실외면적은 시설면적에 산입 되나, 건물연면적 산정시 제외.

－ 증축 및 대수선 세부사항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면적(㎡)	비 고
대수선	지상 중1층	판매시설	(철거) -7.43	판매시설 증축
		판매시설	(신설) 20.47	
		판매시설	76.00	판매시설 신설
	지상 중1층	판매시설	-18.97	바닥면적 제외(승강기 운행불가)

－ 용도변경 세부사항

구분 층별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하3층	용도변경	판매시설	142.53	주차장	142.53	판매시설→주차장
지하2층	용도변경	판매시설	248.10	주차장	248.10	판매시설→주차장
지상1층	시설 내 변경	운수시설 (직원휴게실)	55.91	운수시설 (전체공유)	55.91	운수시설 내 세부용도변경
비운수시설 용도변경				390.63		비시설간 용도변경
운수시설 내 용도변경				55.91		운수시설 내 세부용도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명 : ㈜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 박주형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19-3, 19-2

5) 시행기간

- － 사업착수일 : 인가완료 후
- －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6)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대	-	59,149.40	㈜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공고 제2022 - 4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연구시설,하천)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초구 우면동 143-3일대 양재천 제방도로 신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연구시설, 하천) 결정(신설, 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가. 교통시설(도로)

1. 교통시설(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1	A	10~11	국지도로	399	서초구 우면동 143-3	서초구 우면동 142	일반도로	하천중복결정 (중복면적 4,622㎡)

2. 공공문화체육시설(연구시설)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연구시설	우면동 142 일대	35,396.7	감)234.0	35,162.7	82. 2.18. (건고76)	자연녹지지역

3. 방재시설(하천)

구분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변경	하천	양재천 (지방2급 하천)	우면동	탄천 합류점		7,900	732,492	79. 6.27. (서고283)	도로중복결정(중복 면적 3,025㎡)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로 같음)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diddudals1@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 - 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해양공간정보기술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1102호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 부근)	선박 1척 (교무보트)	수심측량	2022.3.2.~ 2022.3.18.	2022. 2.24.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 - 9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 복단	선박 38척	공사 대기 수상 정박	2022.3.1.~ 2022.3.31.	2022. 2.24.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 - 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디엘이앤씨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서울시계 내 한강 (동호대교)	선박 2척	안전점검	2022.3.21.~ 2022.3.31.	2022. 2.24.

사업소공고

서울시립미술관공고 제2022 - 19호

소 장 작 품 구 입 공 고

2022년 제1차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작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서울시립미술관장

1. 구입대상작품

-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과정 중 주요 사조, 운동, 경향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술사적 대표 작품
- 한국현대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가들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 작품
-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특성을 드러내는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
- ※ 2022년 하반기 제2차 소장작품 구입공고(주제공모) 시행 예정

2. 신청자격

-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 법인 관련자 등
- ※ 최종선정 후 계약 시 신청자명과 작품계약자명, 통장소유주명 일치해야 함
- ※ 계약 시 미술관서식 사용, 작가 날인 진품보증서 제출 필수
(작고작가의 경우, 공인된 감정 기관 또는 단체 발행 진품보증서 제출)

3.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화) ~ 2022년 3월 31일(목)
-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우편접수 마감일 등기 소인까지 인정)

4.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점

- ① 2022년 개정된 신청 서식을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개정 전 서식 사용 불가)
 - ② 신청 서식 작성 후 출력(작품매도신청서, 작품설명서, 작가이력서)
 - 작품매도신청서 하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및 자필 서명 필수
 - ③ '신청 서류' 와 서식 파일·작품이미지 파일을 저장한 'USB' 를 우편봉투에 동봉
 - USB에 저장한 모든 파일명에 작가명(신청자명) 및 작품명 표기 필수
- 예) 작품매도신청서_홍길동 / 작품매도신청서_홍길동화랑 / 작품설명서_홍길동_무제 / 작가이력서_홍길동 / ※작품이미지 파일(.jpg)의 경우 홍길동-1-무제

- ④ 우편봉투 표지 하단에 ‘개인(작가·소장자) 신청’ 또는 ‘화랑·법인 신청’ 중 택일하여 명기

신청 구분	개인(작가, 작품소장자)	접수서류 봉투에 “ 작품매도신청서 재중[개인] ”으로 명기
	화랑, 법인	접수서류 봉투에 “ 작품매도신청서 재중[화랑] ” 혹은 “ [법인] ”으로 명기

5. 신청방법

- 우편 접수(※ 우편물 분실 우려 있으므로 등기우편 이용)
- 접수 주소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서울시립미술관 사무동 2층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수집담당자 앞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우편접수만 실시 (우편접수 마감일 등기 소인까지 인정)

5. 신청서류 (※ 서류 및 USB 제출)

- USB에 담긴 모든 파일명에 “작가명(신청자명)_작품명” 표기하며, 다운로드한 양식의 파일 저장 시 형식은 변경 금지(ex. 엑셀xlsx/한글.hwp/워드.doc에서 PDF 변환 금지)

신청서류	작성 방법	㉠ 서류제출	㉡ USB 제출
① 작품매도신청서 1부 (별첨 서식1호 :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USB에 담긴 모든 파일형식 변경금지)	○ 파일명 양식: 작품매도신청서_매도자명 (예시: 작품매도신청서_홍길동 혹은 작품매도신청서_홍길동화랑) ○ 매도신청 작품수: 개인(작가소장자) 신청자당 3점 / 화랑법인 신청자당 5점까지 신청 가능 (*1점 기준: 작품이 여러 피스일 경우, 개별 피스의 전시가 불가능하면 1점으로 간주) ※ 기준 초과 신청 시 접수 불가 ○ 부문: 10개 부문 중 택일하여 기재 - 부문 아래 빈칸 클릭 → 드롭다운 목록에서 부문 확인 및 선택 - 10개 부문: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사진, 디자인, 서예, 조각, 설치, 뉴미디어, 공예 ○ 작품규격: cm / 분초 - 평면작품: 세로(H)×가로(W)cm / 입체작품: 높이(H)×폭(W)×깊이(D)cm - 영상작품: 00분00초 (※작품이 여러 피스일 경우, 피스 개수 및 각각의 규격 기재) ○ ‘비고’ 란 - 에디션(edition) 필수 기재 · 해당 부문: 드로잉&판화, 사진, 조각, 설치, 뉴미디어 · 에디션 표기 예시: ed.1/5 (5+A.P.2) - 서울시립미술관 지원비 수혜 작품의 경우, 해당 여부 필수 기재 (해당 시 추후 별도 연락 및 상세내용 확인) ○ 기타 유의사항	0	0

신청서류	작성 방법	㉔ 서류제출	㉕ USB 제출
	- 뉴미디어(영상) 작품 경우, 영상파일만 구입하며, 관련 기자재는 구입하지 않음 (*단, 작품 상영에 필요한 특정 플레이어 및 작품 구성의 필수 일부가 되는 기자재에 한해서만 반입하되, 일반적인 TV, 모니터, 빔프로젝터 등은 작품 구성에 포함하지 말 것) ※ <u>작품명, 작품규격, 작품이미지, 에디션이 작품반입검사(수)시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 불가하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u>		
㉒ 작품설명서 1부 (별첨 서식2호)	○ 파일명 양식: 작품설명서_작가명_작품명 (예시: 작품설명서_홍길동_무제) ※USB 제출 시 작품 1개당 작품설명서 파일 1개씩 제출 - 작품 이미지 삽입(또는 사진 부착) 및 작품설명 작성 - 에디션 표기 필수 · 해당 부문: 드로잉&판화, 사진, 조각, 설치, 뉴미디어 · 에디션 표기 예시: ed.1/5 (5+A.P.2) · 에디션 넘버별 소장처 필수 기재	○	○
㉓ 작가이력서 1부 (별첨 서식3호)	○ 파일명 양식: 작가이력서_작가명 (예시: 작가이력서_홍길동) - 작가이력서(전시경력, 작품매도경력 등)	○	○
㉔ 작품 이미지 파일(jpg)	○ 파일명 양식: 작가명_매도신청서 상 작품번호_작품명 (예시: 홍길동_1_무제) - USB에 담아 제출 - 이미지 파일 작성법 : 작가명-매도신청서 상 작품번호-작품명 (ex.홍길동-1-무제) - 이미지 용량 1~2MB ※ 세부이미지 또는 다른 각도의 이미지 첨부 가능	x	○
㉕ 작품 영상 파일 (스틸컷 이미지 포함)	○ 파일명 양식: 작가명_매도신청서 상 작품번호_작품명 (예시: 홍길동_1_무제) - 뉴미디어(영상) 작품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저용량 영상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 · H.264/AVC코덱으로 압축된 MP4파일(용량 2GB 이하) · 비트레이트 10000kbps 미만 · 2채널 이상의 작품인 경우, 모든 채널이 한 화면에 나오는 심의용 리뷰파일 필수 제출 - 영상작품의 대표 스틸컷 이미지(jpg) 파일 필수 제출 ※ 최종구입결정 후, 반입단계에서 총 3가지 버전의 파일을 각 저장장치에 담아 반입함 ①전시용 파일 ②리뷰용 저용량 파일 ③마스터 파일(선택)	x	○
㉖ 작품 매도경력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 별첨 서식3호 작가이력서의 작품매도경력에 기재한 내용 중 주요매도경력 증빙자료 필수 제출(2~3건) - 국공립미술관, 갤러리 등 주요 매도경력에 대한 기관 발행 서식의 근거 자료 제출(작품정보 포함) ※ 작품 구입 심의 시 참고자료가 되는 매도경력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x	○

※ 제출자료 (A, B 모두 제출해야 함)

① 서류 제출 - ①, ②, ③은 출력하여 제출 (①, ③에 서명 필수)

② USB 제출 - ①부터~⑥까지

6. 구입작품 선정

수집선별회의, 소장작품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심의 등 서울시립미술관 작품수집 절차에 의거하며, 구입 작품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함

<작품구입절차>

작품매도신청 접수

→ 수집선별회의 (추천대상작품선별)

→ 소장작품추천회의 (구입추천작품선정)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작품가격평가)

→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구입여부 최종결정)

→ 구입계약 / 작품반입

※ 최종 선정된 작품의 실제 외형(구도, 색상, 크기 등)이 매도신청 시 제출한 이미지와 다를 경우 계약 불가

※ 뉴미디어(영상) 작품 중 매도신청서에 “특수 반입기자재” 를 기재한 경우, 기자재 반입 필수

(매도희망가격에 장비가격 포함)

7. 구입가격결정: 가격평가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결정: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매도신청자와 작품구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격을 따름

9. 결과발표: 8월 중(예정)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sema.seoul.go.kr

※ 결과발표 시기는 심의 절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구입계약 및 작품반입: 작품구매계약 체결 후 작품의 미술관 반입 및 대금지급

(※작품구매계약 및 반입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통보)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심의 종료 후 파기 및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수집 담당자(☎ 02-2124-8915, 8916)에 문의

※ 문의시간: 평일 10:00~17:00 / (토, 일, 공휴일 제외)

【별첨】 2022년 개정서식을 미술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1. (서식1호) 작품매도신청서(2022)
2. (서식2호) 작품설명서(2022)
3. (서식3호) 작가이력서(2022)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 - 2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샛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남서울경전철(주)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7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7번지 등 19필지
 - 면 적: 7,739㎡(영구 4,979㎡, 일시 2,75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신림선 경전철 샛강 횡단
 - 내 역: 경전철 터널 390m, 경전철 정거장 1개소, 경전철 작업구 1개소
5. 점용기간: (당초) 영구
(변경) 2022.02.01. ~ 2027.06.30.
6. 공사기간: (당초) 2017.07.07. ~ 2022.01.31.
(변경) 2017.07.07. ~ 2022.05.26.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